2023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국 방 부	소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병 무 청	소관
방위사업청	소관

2024. 9.

국 방 위 원 회

【 목 차 】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 1

Ⅱ. 심사경과 ····· 3

Ⅲ. 제안설명의 요지 ····· 5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3

Ⅴ. 대체토론 요지 ····· 387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389

Ⅶ. 심사결과 ····· 390

Ⅷ. 부대의견 ····· 391

Ⅸ. 소수의견의 요지 ····· 393

Ⅹ. 시정요구사항 ····· 394

2023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4. 9. .

국방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 결산

1. 국방부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기금결산

- 군인연금기금
- 군인복지기금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3. 병무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4. 방위사업청 소관

○ 세입세출결산

- 일반회계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4. 5. 31.

2. 회부일자 : 2024. 6. 1.

3. 상정 및 의결일자

가. 국방부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 8.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4.)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 8.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4.)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다. 병무청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 8.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5.)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라. 방위사업청 소관

-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 8. 2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2024. 9. 4.)
  상정, 축조심사, 원안의결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국방위원회(2024. 9. 5.)
  상정, 소위원회 심사보고, 원안의결

Ⅲ. 제안설명의 요지

1. 국방부 소관

(국방부차관 김 선 호)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예산 현액은 42조 7020억 원이며 40조 4631억 원을 집행하고 1조 740억 원은 이월, 1조 1649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5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3499억 원은 수납하고 1053억 원은 미수납하였으며 2억 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조 9571억 원이며 이 중 38조 9731억원을 집행하였고 9672억 원은 이월, 1조 168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9672억 원은 대부분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및 계약 체결 지연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장비계약 유찰 등에 따른 계약 지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 1조 168억 원은 초급부사관 운영률 하락 등에 따른 인건비 불용 및 계약체결 정산 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909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133억 원이며 이 중 미군기지 이전사업 등에 8862억 원을 지출하였고 228억 원은 이월, 43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228억 원은 한미 간 협의에 따른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한 것이며 불용액 43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감소에 따른 이자 상환 집행 잔액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6828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316억 원이며 이 중 군사시설 이전 등에 6039억 원을 지출하였고 840억 원은 이월, 1437억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액 840억 원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1437억 원은 토지매각 수입 부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을 계획대로 지출하지 못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군인연금기금은 4조 1406억 원을 조성하여 연금지급금 등으로

4조 787억 원을 지출하고 619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군인복지기금은 8916억 원을 조성하여 복지시설 운영 및 전세자금 지원 등에 6065억 원을 지출하고 2851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 결산입니다.

2023년 말 기준 국방부 자산은 전년 대비 7조 4036억 원 증가한 273조 1621억 원이며 부채는 전년 대비 4조 622억 원 증가한 263조 7550억 원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 병무청 소관

(병무청장 김 종 철)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병무청은 우수한 병역자원 선발 및 충원 등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에서 이루어진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3400만 원으로 이 중 4억 8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48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800만 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3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92.3%인 307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56억 210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병역의무자 지원사업 등에서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재무 결산입니다.

2023년 말 자산은 3772억 1400만 원으로 주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일반유형자산이며 부채는 536억 9400만 원으로 장기충당부채, 유동부채 등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감한 순자산은 3235억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장 석 종 건)

존경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방위사업청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한 해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와 첨단 국방 R&D 가속화, 지속성장형 방산 수출 기반 마련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세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는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9725억 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4069억 원을 수납하였고 5656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FMS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집행 잔액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은 지체상금과 물품대금 반환금인데 소송 등이 진행 중에 있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조 9169억 원이며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20억 원을 포함하여 17조 2989억 원이었습니다. 23년에는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방산업체의 경영여건 개선과 방위력개선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16조 8671억 원을 지출하여 97.5%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4318억 원이며 이 중 2635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683억 원은 불가피하게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말 자산은 전년 대비 2조 1624억 원 감소한 28조 9807억 원이고 부채는 전년 대비 104억 원 증가한 209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방위사업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내용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Ⅳ.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국방부 소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Ⅰ 결산 개요

1. 결산 총괄

○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그리고 군인연금기금과 군인복지기금으로 이루어져 있음.

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6조 6,573억원보다 4,804억원 증가한 7조 1,377억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 중 6조 9,049억원이 수납되고 1,632억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년도 세입 및 기금수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일반회계	219,224	455,455	349,930	178	105,347	241,897
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회계	879,936	914,535	909,041	13	5,481	642,621
국방·군사시설 이전 특별회계	599,553	693,662	682,838	-	10,824	576,701
군인연금기금	4,143,856	4,151,976	4,140,639	-	11,337	4,259,184
군인복지기금	814,687	922,074	822,431	259	30,195	851,806
합 계	6,657,256	7,137,702	6,904,879	450	163,184	6,572,209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주: 기금 예산액은 수정액 기준

○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4,555억원으로 예산액 2,192억원보다 2,363억이 증가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3,499억원이 수납되었음. 징수결정액은 재산수입(455억원), 경상이전수입(3,312억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695억원), 관유물매각대(50억원), 기금전입금(43억원)임.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는 예산액 8,799억원보다 346억원이 증가한 9,145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090억원을 수납하였음. 국방·군사시설 이전특별회계는 예산액 5,996억원 보다 941억원이 증가한 6,937억원을 징수결정하고 6,828억원을 수납하였음.

한편, 군인연금기금은 예산액 4조 1,439억원보다 81억원이 증가한 4조 1,520억원을 징수결정하고 4조 1,406억원을 수납하였음.

군인복지기금은 예산액 8,147억원보다 1,074억원이 증가한 9,221억원을 징수결정하고 8,224억원을 수납하였음.

나.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 2023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총액은 45조 4,262억원으로 일반회계 38조 9,731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8,862억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6,039억원, 군인연금기금 4조 1,406억원, 군인복지기금 8,224억원임.

[2023년도 세출 및 기금지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년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일반회계	40,097,410	859,650	±303,622	40,957,060	38,973,056	967,166	1,016,838	41,771,198
주한미군 기지이전 특별회계	879,936	33,364	±3,912	913,300	886,219	22,767	4,314	642,621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599,553	232,087	±4,417	831,640	603,879	84,031	143,730	576,701
군인 연금기금	4,143,856	-	-	4,143,856	4,140,639	-	3,217	4,259,184
군인 복지기금	814,687	8,317	-	823,004	822,431	3,816	36,385	851,806
합 계	46,535,442	1,133,418	±311,950	47,668,860	45,426,224	1,077,780	1,204,484	48,101,510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주: 기금 예산액은 수정액 기준

○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0조 9,571억원으로 그 중 38조 9,731억원을 지출하였고, 9,672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조 168억원임.

○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133억원으로 그 중 8,862억원을 지출하였고, 228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3억원임.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8,316억원으로 6,03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840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1,437억원은 불용하였음.

○ 그리고 군인연금기금은 지출 예산현액 4조 1,439억원보다 33억원이 감소한 4조 1,406억원을 지출하였고, 군인복지기금은 지출 예산현액 8,230억원보다 6억원이 감소한 8,224억원을 지출하였음.

2. 재원별 결산 내역

가. 일반회계

(1) 세 입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4,554억 5,500만원 중 3,499억 3,000만원이 수납되었고, 1억 7,800만원이 불납결손, 1,053억 4,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 수입	9,871	45,495	44,516	2	977
- 관유물대여료	8,090	43,949	42,970	2	977
- 기타재산수입	1,781	1,546	1,546	-	-
□ 경상이전수입	143,028	331,170	229,309	176	101,685
- 벌금 및 몰수금 등	4,815	6,249	5,624	6	619
- 변상금 및 위약금	19,436	44,681	28,808	10	15,863
- 기타 경상이전수입	118,774	280,240	194,877	160	85,203
- 가산금	3	-	-	-	-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61,987	69,501	66,816	-	2,685
- 병원 수입	17,481	15,442	15442	-	-
- 면허료 및 수수료	787	767	767	-	-
- 입학금및수업료	561	601	601	-	-
- 항공항만수입	1,821	2,688	2,688	-	-
- 기타 잡수입	41,337	50,003	47,318	-	2,685
□ 관유물매각대	-	4,951	4,951	-	-
- 토지매각대	-	4,951	4,951	-	-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군인복지기금전입금 등)	4,338	4,338	4,338	-	-
합 계	219,224	455,455	349,930	178	105,347

○ 미수납액 1,053억 4,700만원 중 대부분은 경상이전수입(1,016억 8,500만원)이며, 이 외 재산수입(9억 7,700만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26억 8,500만원)으로 이루어짐.

(2) 세 출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40조 9,571억원이고 그 중 38조 9,73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9,672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조 168억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	전용	이용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세출	40,097,410	859,650	±77,954	±225,668	40,957,060	38,973,056	95.1	967,166	1,016,838

○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0조 9,571억원은 당초 예산액 40조 974억원보다 8,597억원이 증가한 규모임.

전년도 이월액 8,597억원은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재가격 인상에 따른 관급자재 수급 지연, 감리방식 전환(직접감독→건설사업관리용역)에 따른 행정기간 소요 및 계약 유찰에 따른 이월

4,146억원, 군수지원과 관련하여 업체의 생산·납품 지연, 계약체결 지연, 업체의 대금청구 지연 등에 의한 이월 2,261억원, 해외파병부대 재보급 수송일정 지연 및 물자·장비 등의 납품기일 연장 등에 따른 이월 688억원, 급식 및 피복과 관련하여 보훈·복지단체 소송, 방탄물자 업체 민원제기 및 조달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439억원, 과학화훈련 체계개선사업 선금 미청구, 교육시설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이월 394억원, 동원훈련장 공사 공기 부족, 원자재 수급 지연 등에 따른 훈련장비 납품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247억원, 의무장비 및 물자 생산지연, 의무시설 사업 연도말 계약으로 인한 이월 153억원, 국방획득정보체계 구축 계약체결 지연, 통신공사와 연계된 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167억원, 기타 사유로 인한 이월액 102억원 등임.

○ 다음연도 이월액은 9,671억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 여건 변동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및 설계 지연, 감리방식 변경에 따른 계약체결 지연, 대관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 등에 따른 이월 5,053억원, 군수지원과 관련하여 계약유찰/민원 등에 따른 계약지연, 정산서류 및 업체대금 미청구 등 행정조치 지연 등에 의한 이월 2,477억원,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차수별 계약기간으로 인한 계약금액 이월, 해파부대

재보급수송일정 지연 등에 따른 이월 529억원, 급식 및 피복과 관련하여 보훈·복지단체 소송, 방탄물자 업체 민원제기 및 조달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236억원, 과학화훈련 체계 계약지연 및 생산기간 부족, 시설사업 공기연장 및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른 이월 664억원, 동원훈련장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 부족, 전투장구 납품업체 대금청구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 122억원, 의무장비 및 물자 생산지연, 의무시설 사업 연도말 계약으로 인한 이월 218억원, 국방획득정보체계구축 신규 체계구축사업 계약체결 지연, 시설연계 통신공사 시설본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월 224억원, 기타 사유로 인한 이월액 148억원 등임.

○ 이용액 2,256억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839억, 5.·18민주화운동 관련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판결 선고에 따른 배상금 및 법정보상금 667억, 방위비분담금 608억원 등임.

○ 전용액 779억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471억, 배상금 및 보상금 부족분 21억원, 집중호우 등 재난 관련 피해복구비 24억, 코로나 대응관련 부족예산 42억원 등임.

○ 불용액 1조 168억원은 초급부사관 획득 저조에 따른 운영률 하락 등에 따른 군인인건비 3,099억, 내일준비적금 중도해지자 및 해지지연 등에 따른 1,570억, 장비 획득 및 유지사업 계약 해제 등에 따른

1,214억,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관련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잔액 1,611억, 민간조리원 채용 저조, 급식 및 피복분야 피복 낙찰가 하향으로 인한 계약 잔액 등 652억원 등임.

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 세 입

○ 2023회계연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9,145억 3,500만원 중 9,090억 4,100만원이 수납되었고, 54억 8,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3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수입	438	909	587	-	322
- 토지대여료	174	613	291	-	322
- 기타재산수입	264	296	296	-	-
□ 경상이전수입	710	3452	384	-	3,068
- 변상금	120	1,579	323	-	1,256
- 기타경상이전수입	590	1,873	61	-	1,812
□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15	1,099	1,079	13	7
- 기타잡수입	115	1,099	1,079	13	7
□ 관유물매각대(토지매각대)	576,434	580,406	578,322	-	2,084
□ 전년도 이월금	-	33,364	33,364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143	55	55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02,096	295,250	295,250	-	-
합 계	879,936	914,535	909,041	13	5,481

(2) 세 출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9,133억원이며, 8,862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미군기지이전사업	57,535	12,211	△1,809	67,937	48,880	18,313	744	27,553
- 평택기지이전사업	46,231	12,211	-	58,442	39,385	18,313	744	27,553
- 연합토지관리계획	11,304	-	△1,809	9,495	9,495	-	-	-
□ 미군기지이전지원	68,545	21,153	1,809	91,507	85,933	4,454	1,120	56,837
- 환경조사 및 치유	65,002	20,491	2,399	87,892	83,552	4,340	-	54,223
- 기타이전지원	3,543	662	△590	3,615	2,381	114	1,120	2,614
□ 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686,300	-	-	686,300	686,300	-	-	484,254
□ 공자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67,556	-	-	67,556	65,106	-	2,450	73,977
합 계	879,936	33,364	±3,912	913,300	886,219	22,767	4,314	642,621

○ 미군기지이전사업 예산현액은 679억 3,700만원으로 평택기지이전사업(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과 연합토지관리계획 사업비로 488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군기지이전지원 예산현액은 915억 700만원으로 환경조사 및 치유, 기타이전지원 사업비로 859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예산현액은 7,538억 5,600만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7,514억 600만원을 지출함.

다. 국방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 세 입

○ 2023회계연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 6,936억 6,200만원 중 6,828억 3,800만원이 수납되었고, 108억 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3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재산 수입	137	-	-	-	-
- 기타재산수입	137	-	-	-	-
□ 경상이전 수입	290	2,386	7	-	2,379
- 기타경상이전수입	290	2,386	7	-	2,379
□ 관유물매각대	367,095	221,274	212,830	-	8,444
- 건물매각대	5,230	325	325	-	-
- 토지매각대	361,865	220,949	212,505	-	8,444
□ 전년도 이월금	-	232,087	232,087	-	-
□ 전년도 세계잉여금	26,192	32,079	32,079	-	-
□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205,839	205,839	205,839	-	-
- 예수금	178,420	178,420	178,420	-	-
- 기금예탁원금회수	27,000	27,000	27,000	-	-
- 기금예탁이자수입	419	419	419	-	-
합 계	599,553	693,662	682,838	-	10,824

(2) 세 출

○ 2023회계연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8,316억 4,000만원이며,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에 5,531억 6,700만원, 사유재산 정리사업에 507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음.

[2023년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 결산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군시설이전사업	528,029	230,274	±801	758,303	553,167	73,291	131,845	504,439
□ 사유재산정리	67,956	1,813	±3,616	69,769	50,712	10,740	8,317	63,776
□ 예수이자상환	3,568	-	-	3,568	-	-	3,568	8,486
합 계	599,553	232,087	±4,417	831,640	603,879	84,031	143,730	576,701

라. 군인연금기금

(1) 개 요

○ 2023회계연도 군인연금기금의 운용 결산총액은 당초 예산액 3조 9,193억 1,100만원보다 2,213억 2,800만원이 증가한 4조 1,406억 3,900만원임. 예산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것은 주로 여유자금 회수 규모가 당초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임.

여유자금 회수액을 포함한 총수입액 4조 1,406억 3,900만원 중 여유자금운용액(618억 7,4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4조 787억 6,500만원임.

[2023년도 군인연금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결산액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767,586	767,586	788,542	20,956	2.7
	정부내부수입	3,101,725	3,101,725	3,101,725	-	-
	여유자금회수	50,000	274,545	250,372	△24,173	△8.8
합 계		3,919,311	4,143,856	4,140,639	△3,217	△0.01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3,846,539	4,128,805	4,078,498	△50,307	△1.2
	기금운영비	-	279	266	△13	△4.6
	여유자금운용	72,772	14,772	61,874	47,102	318.9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2) 내 용

○ 수입액 4조 1,406억 3,9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7,885억 4,200만원으로, 재산수입이 583억 3,200만원, 기여금 등 경상이전수입이 7,302억 900만원임.

- 정부내부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조 1,017억 2,500만원이며,

- 여유자금 회수는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2,501억원, 한국은행 예치금회수 2억 7,200만원임.

○ 지출액 4조 1,406억 3,9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사업비인 군인연금지급으로 4조 784억 9,800만원을 지출하였고,

- 기금운영비로 2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 여유자금 운용은 618억 7,400만원으로,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617억 5,000만원, 한국은행예치금 1억 2,400만원임.

마. 군인복지기금

(1) 개 요

○ 2023회계연도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결산총액은 당초 예산액 8,146억 8,700만원보다 77억 4,400만원이 증가한 8,224억 3,100만원임. 예산현액 대비 운용액이 증가한 이유는 여유자금 운용이 계획 대비 증가하였음.

여유자금 회수액을 포함한 총수입액 8,224억 3,100만원 중 여유자금 운용 지출액(2,159억 5,800만원)을 제외한 순수지출총액은 6,064억 7,300만원임.

[2023년도 군인복지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결산액 (B)	증 감	
		당초	수정(A)		(B-A)	%
수입 (자금조달)	자체수입	463,299	463,299	489,946	26,647	5.8
	정부내부수입	155,000	155,000	143,258	△11,742	△7.6
	여유자금회수	196,388	196,388	189,226	△7,162	△3.6
합 계		814,687	814,687	822,431	7,744	1.0
지출 (자금운용)	사업비	613,701	637,345	605,582	△31,763	△5.0
	정부내부지출	1,012	1,012	891	△121	△11.9
	여유자금운용잔액	199,974	176,330	215,958	39,628	22.5

주: 여유자금회수 및 운용액 순계 기준

(2) 내 용

○ 수입액 8,224억 3,1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자체수입은 계획액 4,632억 9,900만원의 105.8%인 4,899억 4,600만원이며,

- 정부내부수입은 주거지원 보증금 수납금으로 수입계획액 1,550억원의 92.4%인 1,432억 5,800만원을 수납하였고,

- 여유자금회수는 수입계획액 1,963억 8,800만원의 96.4%인 1,892억 2,600만원임.

○ 지출액 8,224억 3,100만원의 세부 내역을 보면,

- 장병복지향상사업 등의 사업비는 지출계획액 6,373억 4,500만원의 95.0%인 6,055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 정부내부지출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에 따른 이자지급액으로, 계획액 10억 1,200만원의 88.1%인 8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음.

- 한편, 여유자금운용은 지출계획액 1,763억 3,300만원의 122.5%인 2,159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음.

3. 재무제표 분석

○ 국방부의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재정상태표

○ 2023회계연도 국방부의 자산은 273조 1,621억원으로 전년대비 7조 4,036억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전년대비 4조 622억원이 증가한 263조 7,550억원이며, 순자산은 9조 4,071억원으로 나타남.

○ 자산은 유동자산 11조 8,739억원, 투자자산 1조 6,537억원, 일반유형자산 259조 3,729억원 등으로 구성됨. 자산은 전기말 대비 7조 4,036억원(2.8%)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군수품 도입 및 시설자산 취득 등 일반유형자산이 7조 8,092억원(3.1%) 증가하였기 때문임.

○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251조 6,268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5조 7,427억원 등으로 구성됨. 부채는 전기말 대비 4조 622억원(1.6%) 증가한 것으로 이는 주로 물가상승율 변동 등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등 장기충당부채가 4조 562억원 증가(1.6%)한 결과임. 그 결과 순자산은 9조 4,071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 3,414억원 증가하였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증감률
자 산 합 계(a)	2,731,621	2,657,585	74,036	2.8
유동자산	118,739	122,549	△3,810	△3.1
투자자산	16,537	17,494	△957	△5.5
일반유형자산	2,593,729	2,515,637	78,092	3.1
무형자산	2,596	1,885	711	37.7
기타비유동자산	20	20	-	0.0
부 채 합 계(b)	2,637,550	2,596,928	40,622	1.6
유동부채	33,629	33,118	510	1.5
장기차입부채	30,226	30,167	59	0.2
장기충당부채	2,516,268	2,475,706	40,562	1.6
기타비유동부채	57,427	57,937	△509	△0.9
순 자 산(a-b)	94,071	60,657	33,414	55.1

나. 재정운영표

○ 본 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대비 5조 3,734억원 증가한 57조 6,161억원으로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급여정책(16조 7,551억원), 군인연금(연금정책 / 15조 5,314억원), 군수지원 및 협력(14조 5,040억원) 등이 있음.

○ 관리운영비는 7,581억원, 비배분비용은 2,029억원, 비배분수익은 4조 2,787억원이며, 재정운영결과(재정운영순원가 - 비교환수익 등)는 54조 2,982억원으로 재정운영 제비용이 수익을 초과하였음[1].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억원, %)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비 율
Ⅰ. 프로그램순원가	576,161	522,427	53,734	10.3
Ⅱ. 관리운영비	7,581	7,181	400	27.8
Ⅲ. 비배분비용	2,029	6,484	△4,455	△68.7
Ⅳ. 비배분수익	42,787	67,557	△24,770	△36.7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542,984	468,535	74,449	15.9
Ⅵ. 비교환수익 등	2	8	△6	△69.2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542,982	468,527	74,455	15.9

주: 재정운영결과는 원가(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것으로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손실, (-)이면 이익을 의미함.

1)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순손실)과 달리 국가회계에서는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용된 자원(비용)이 중요하므로 원가정보를 앞에 표시하기 때문에 재정운영결과가 (+)이면 비용이 수익보다 많은 것으로서 손실을 의미하고, (-)이면 이익을 의미함. 그러나 정부의 목적이 이익을 남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의 경우와는 그 의미가 다름.

다. 순자산변동표

○ 국방부의 기말순자산은 전년도보다 3조 3,414억원(55.1%) 증가한 9조 4,071억원으로 이는 본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49조 786억원, 조정항목이 8조 5,610억원 발생하였고,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54조 2,982억원 발생한 결과임.

○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50조 8,935억원과 국고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8,14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196억원, 자산재평가이익 8,211억원 및 기타 순자산의증감 7조 7,20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8조 5,610억원이 발생하였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억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A-B	비 율
Ⅰ. 기초순자산	60,657	73,232	△12,575	△17.2
Ⅱ. 재정운영결과	542,982	468,527	74,455	15.9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90,786	438,826	51,960	11.8
Ⅳ. 조정항목	85,610	17,126	68,484	399.9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94,071	60,657	33,414	55.1

Ⅱ 총괄적 검토

1. 세출결산 총괄검토

○ 정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9.5%, 2020년 8.5%, 2021년 8.5%, 2022년 7.6%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2023년 9.1%로 다소 증가하였음.

즉, 2023년도의 경우 정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449조 672억원)에서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40조 9,571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 1.5%p 증가한 9.1%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정부 전체 예산현액이 2022년에 비해 9.8% 감소한 것에 비해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은 8.0%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국방부 결산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정부전체 (%)	3,362,994 (100.0)	3,904,205 (100.0)	4,258,810 (100.0)	4,978,955 (100.0)	4,490,672 (100.0)
	국방부 (%)	318,160 (100.0)	330,627 (100.0)	362,587 (100.0)	379,310 (100.0)	409,571 (100.0)
	비 중 (%)	9.5	8.5	8.5	7.6	9.1
지출액	정부전체 (%)	3,308,841 (98.4)	3,852,230 (98.7)	4,177,207 (98.1)	4,850,492 (97.4)	4,058,863 (90.4)
	국방부 (%)	308,856 (97.1)	321,502 (97.2)	347,394 (95.8)	364,804 (96.2)	389,731 (95.2)
이월액	정부전체 (%)	12,936 (0.4)	14,248 (0.4)	26,477 (0.6)	27,933 (0.6)	20,056 (0.4)
	국방부 (%)	4,559 (1.4)	4,151 (1.4)	9,515 (2.6)	8,596 (2.3)	9,672 (2.4)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불용액	정부전체	41,216	37,728	55,127	100,531	411,753
	(%)	(1.2)	(1.0)	(1.3)	(2.0)	(9.2)
	국방부	4,745	4,975	5,678	5,909	10,168
	(%)	(1.5)	(1.5)	(1.6)	(1.6)	(2.5)
이체 및 이·전용액	정부전체	11,589	27,313	18,801	34,049	18,352
	(%)	(0.3)	(0.7)	(0.4)	(0.7)	(0.4)
	국방부	2,807	4,495	4,916	6,529	3,036
	(%)	(0.9)	(1.3)	(1.4)	(1.7)	(0.7)

주: 일반회계 기준
자료: 국방부

○ 2023년도 국방부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5.2%로서 전년대비 1.0p% 하락하였으나, 정부 전체 세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인 90.4%에 비하여 4.8%p 높음.

○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의 경우 국방부는 2023년도 2.4%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인 0.4%에 비해 2.0%p 높음[2].

○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의 경우 국방부는 2023년도 2.5%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인 9.2%보다 6.7%p 낮은데, 이는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2022년에 비해 7.2p% 증가한데 반해 국방부의 경우에는 0.9p% 증가한 것에 따른 것으로 정부 전체 대비 국방부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예산의 이월·불용 등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적절

2) **국방부** 이월액은 **정부부처 전체 이월액 중 48.2%를 차지**하여 **전 정부부처 중 이월액 순위 1위**를 차지함.

하지 않으므로, 국방부는 이월·불용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예측 및 관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음.

○ 한편, 2023년도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 대비 이체 및 이·전용 비율은 0.7%로서 정부 전체 예산현액 대비 이체 및 이·전용 비율인 0.4%에 비해 0.3%p 높으며, 2022년 대비 1.0%p 감소하였음.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고 행정부가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이체 및 이·전용은 이에 대한 예외이므로, 가급적 그 규모를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 세출 프로그램별 검토

○ 국방부 일반회계는 병력운영과 전력유지 부문으로 나누어지고, 12개 프로그램, 64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됨.

병력운영에는 급여정책, 급식 및 피복, 기금 전출금 프로그램이 있으며, 전력유지에는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군인사 및 교육훈련,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비전력관리, 책임운영기관 운영,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국방행정지원이 있음.

[최근 5년간 연도별 프로그램 집행실적]

(단위: 억원, %)

사 업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급여정책	예산현액	136,459	145,228	153,159	159,588	171,427
	집행액	135,818	145,212	153,144	158,677	168,042
	집행률(%)	99.5	100	100.0	99.4	98.0
급식 및 피복	예산현액	22,258	22,607	25,056	26,134	26,959
	집행액	21,899	22,273	24,320	25,316	26,071
	집행률(%)	98.4	98.5	97.1	96.9	96.7
기금 전출금	예산현액	29,406	30,213	30,798	32,242	33,921
	집행액	29,406	30,129	30,471	32,225	33,921
	집행률(%)	100	99.7	98.9	99.9	100
국방정보화	예산현액	5,086	5,838	6,514	7,449	7,575
	집행액	4,714	5,458	6,246	7,165	7,250
	집행률(%)	92.7	93.5	95.9	96.2	95.7

사 업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예산현액	3,728	4,572	5,083	7,679	12,015
	집행액	3,618	4,496	4,658	6,162	9,898
	집행률(%)	97.0	98.3	91.6	80.3	82.4
군수지원 및 협력	예산현액	55,438	53,971	61,642	61,455	66,426
	집행액	52,261	51,847	57,330	58,366	62,360
	집행률(%)	94.3	96.1	93.0	95.0	93.9
군인사 및 교육훈련	예산현액	6,261	6,748	8,300	9,082	9,942
	집행액	5,695	6,120	7,377	8,350	8,896
	집행률(%)	91.0	90.7	88.9	91.9	89.5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예산현액	35,515	38,893	47,662	50,356	54,584
	집행액	32,971	37,201	42,294	44,896	47,920
	집행률(%)	92.8	95.6	88.7	89.2	87.8
예비전력관리	예산현액	1,717	1,378	1,737	2,027	2,863
	집행액	1,612	1,238	1,271	1,695	2,568
	집행률(%)	93.9	89.8	73.2	83.6	89.7
책임운영기관 운영	예산현액	2,257	1,975	2,072	2,193	2,386
	집행액	2,040	1,845	1,853	2,063	2,256
	집행률(%)	90.4	93.4	89.4	94.1	94.5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예산현액	12,049	11,881	12,216	13,477	13,889
	집행액	11,731	8,767	10,501	12,661	13,248
	집행률(%)	97.4	73.8	86.0	93.9	95.4
국방행정 지원	예산현액	7,986	7,323	8,348	7,628	7,583
	집행액	7,091	6,916	7,928	7,229	7,301
	집행률(%)	88.8	94.4	95.0	94.8	96.3

자료: 국방부

○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의 12개 프로그램 중 11개 프로그램은 2019년에 비해 2023년 예산현액이 증가하였으나,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은 2019년과 비교해 2023년 예산현액이 △5.0% 감소하였음.

‘국방행정지원’ 프로그램의 예산현액이 감소한 이유는 2020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전 소송에 따른 배상금으로 지급되어 왔던 소음피해 배상금이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2500)’ 프로그램의 소음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되었고, 그 외에 기본경비성 예산의 감액편성 추세에 따라 예산현액이 감소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임.

○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은 2019년에 비해 2023년 예산현액이 222.3% 증가하여 총 12개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는 병 봉급 인상과 관련한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임.

그 다음으로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은 예비군의 편성, 관리, 훈련 체계 등을 발전시켜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킴으로써 전시 즉시대응 동원지원체계 및 통합방위 작전 수행능력 확립을 위한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으로 66.7%,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58.8%,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 53.7%, ‘국방정보화’ 프로그램은 48.9%로 그 뒤를 잇고 있음.

○ 이에 반해 ‘책임운영기관 운영’ 프로그램은 5.7%,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15.3%, ‘기금 전출금’ 프로그램은 15.3%,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은 19.8%, ‘급식 및 피복’ 프로그램은 21.1%, ‘급여정책’ 프로그램은 25.6% 증가하여 최근 5년간 국방부 소관 예산현액 증가율인 28.7% 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2023년 국방부 소관 일반회계 프로그램의 예산현액 대비 평균 집행률은 95.2%인데 반해,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프로그램의 집행률은 82.4%로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장병 전역시 사회진출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에서 실제 장병들의 가입률과 월평균 납입액이 예산 편성 기준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동 예산 편성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사시설건설 및 운영’ 프로그램(87.8%)은 병영생활관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89.5%)은 교육훈련장 시설공사 부진 등으로 인해, ‘예비전력관리’ 프로그램(89.7%)은 예비군훈련장 시설공사 부진으로 인해 타 사업과 비교할 때 집행률이 다소 낮음. 특히 언급된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측면이 있는 바, 해당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 제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Ⅲ 세부검토

1. 일반회계

(1) 부사관인건비(1101-152): 임기제부사관 획득률 제고를 위한 금전적 유인체계 강화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부사관인건비(1101-152) 사업은 군인(부사관)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6조 6,745억 8,000만원에 이·전용등(감) 33억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조 6,712억 3,600만원 중 6조 5,301억 6,400만원이 집행되고 1,410억 7,2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부사관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사관 인건비	6,674,580	-	△3,344	6,671,236	6,530,164	-	141,072	6,856,75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임기제부사관 획득률 제고를 위한 금전적 유인체계 강화 필요

○ 부사관인건비의 2023년 예산 불용액은 1,410억 7,2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불용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는 최근 임기제 부사관 획득률의 저조를 들 수 있음.

임기제부사관은 현역병 복무를 마친 후 4년 내의 임기 동안 복무하는 부사관으로 2023년 정원 대비 운영률이 51.7%에 불과함[3].

육군 임기제부사관의 2023년 기준 기본급 예산운영률은 46.4%에 불과하여 운영률이 가장 저조하고, 해군과 공군 역시 2023년 기준 기본급 예산운영률은 각각 76.5%, 59.0%에 불과함.

3) 2023년 임기제부사관 정원은 8,490명이고, 운영인력은 4,389명임

[임기제부사관 예산편성인원 및 운영인력 현황(2021~2023년)]

(단위 : 명, %)

구분	연도	정원	예산편성인원(A)		운영인력(B)		편성인원대비 운영인력 (B-A)
				편성률		운영률	
육군	2021	7,212	6,130	85.0%	5,666	78.6%	-464
	2022	7,212	6,130	85.0%	4,891	67.8%	-1,239
	2023	**7,212**	**6,130**	**85.0%**	**3,343**	**46.4%**	**-2,787**
해군	2021	472	401	85.0%	326	69.1%	-75
	2022	472	401	85.0%	339	71.8%	-62
	2023	**472**	**401**	**85.0%**	**361**	**76.5%**	**-40**
공군	2021	586	498	85.0%	637	108.7%	139
	2022	586	586	100.0%	588	100.3%	2
	2023	**586**	**586**	**100.0%**	**346**	**59.0%**	**-240**
해병대	2021	220	220	100.0%	414	188.2%	194
	2022	220	220	100.0%	438	199.1%	218
	2023	**220**	**220**	**100.0%**	**339**	**154.1%**	**119**

자료: 국방부

○ 임기제부사관 운영률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최근 급격한 병 월급 인상에 따른 부사관과 병사의 수입(봉급+기타 지원금) 차이 감소를 들 수 있음.

초급간부의 기본급 인상률은 최근 수년간 3~6%에 그친 데 반해, 대통령 공약인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 200만원 수준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병 봉급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4)]

하사 기본급과 병 봉급의 차이는 2023년 기준 77만원에서 2024년은 63만원이고, 2025년은 병 봉급(병장기준)은 25만원이 상승하는데

4) 2023년 하사 기본급 177만원, 병 봉급(병장기준) 100만원
2024년 하사 기본급 188만원, 병 봉급(병장기준) 125만원
※2025년 병 봉급(병장기준)은 150만원임

비해 하사 기본급 기존 인상률(3~6%)을 반영할 경우[5] 그 격차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 봉급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있어서도 병사와 임기제부사관의 처우 개선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현행 제도에 따른 병사와 임기제부사관의 지원금 차이는 2024년 기준 266.6만원 수준임.

[병사와 임기제부사관의 지원금 비교(2022~2025년)]

(단위: 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임기제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A)	500	750	1,000	(미확정)
병 내일준비적금 전역시 지원금(B)	254.5	541.2	733.4	1,025.9
차이(A-B)	245.5	208.8	266.6	-

주: 병사는 병내일준비적금 최대납입시 전역시 지원금임
자료: 국방부

다만, **과세 여부의 차이**에 따라 실수령액 차이는 위의 표보다 적은데, 병의 내일준비적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6]을 받지만 임기제부사관의 단기복무장려수당은 과세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임.[7]

---

5) 2025년 하사의 기본급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임

6)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① 가입 당시 현역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현역병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이하 이 조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가입일부터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적금(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하는 금액: 월 40만원
2.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하는 금액: 월 55만원

종합하면, 임기제부사관의 운영률이 저조한 것은 병에 비해 복무기간은 긴 데 비해[8], 봉급 및 지원금 실수령액 차이는 감소하는 등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로 인한 사기저하와 더불어 금전적 유인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우수한 임기제부사관을 당초 목표만큼 충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7) 이와 관련하여 단기복무장려수당 과세 문제가 언론에서도 제기된 바 있음. “한 달 소득세 갑자기 2백만 원” 장교 아닌 부사관만 받는 세금폭탄, KBS, 2024.4.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4599&ref=A) 등 참조

8) 임기제부사관 48개월, 육군, 해병대 병 18개월, 해군 병 20개월, 공군 병 21개월

② 임기제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비과세 추진 관련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단기복무장려수당** 단순 비과세 추진은 유사제도와의 차이로 인한 법령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지급방식 변경 등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친 제도설계가 필요해 보임.

○ 국방부는 우수한 자질의 임기제부사관을 획득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수당[9]을 임관 후 2개월 이내 봉급과 함께 지급하고 있음.

○ 2023년에는 **1인당 단기복무장려수당 단가가 50% 증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임용률 저조로 인해 지출액이 전년 대비 25% 이상 감소**하였음.

[단기복무장려수당 단가 및 지출액 현황]

구분	단가	지출액
2019년	5,000,000원	4,739,540,260원
2020년	5,000,000원	4,866,908,360원
2021년	5,000,000원	5,570,520,840원
2022년	**5,000,000원**	**16,405,187,580원**
2023년	**7,500,000원**	**12,090,000,000원**
2024년	10,000,000원	-
2025년(안)	13,000,000원	-

주: 2025년도 단가는 국방부 요구안 기준임.
자료: 국방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9)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함

○ 국방부는 임기제부사관 운영률 제고를 위해 **단기복무장려수당 증액 뿐 아니라** 현재 과세 대상인 동 **수당을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제도와 같이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음.

우수한 부사관 획득을 위해서는 병 봉급 및 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인상 등을 고려한 부사관 처우 형평성 제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임.

다만, **임기제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의 경우 유사한 제도인 민간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10] 제도 역시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11]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소득세법」 위반 여지가 있음**.

참고로, 장교 단기복무장려금은 임관 전에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세법」 상 명확히 부합하는 과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10) 기업이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

1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 5. 생략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 【반환조건부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구분 등】
①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사이닝보너스는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한다.

[단기복무장교 선발 및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시기]

선발전형	선발시기	단기복무장려금 지급시기
학군사관후보생	대학교 1~2학년	**대학교 3학년 1학기**
예비장교후보생	대학교 1~3학년	**대학교 4학년 1학기**
학사장교후보생	대학교 졸업 예정자(대학교 4학년)	**선발 ~ 임관 전**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단기복무장려수당 비과세 추진 과정에서 관계 법령 및 유사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제도적 검토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2) 증/특식(1231-302): 과다추계로 발생한 잉여재원 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부적정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증/특식(1231-302)은 훈련 및 특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병의 체력 보강 및 유지를 위해 증식과 특식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517억 9,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억 400만원과 이·전용 등(감) 164억 7,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60억 2,300만원 중 1,352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억 5,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증/특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증/특식	151,797	704	△16,479	136,023	135,241	27	755	128,49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3년 증/특식 단가의 인상 현황을 보면, 현지물가보조비(도서물가보조비) 단가만이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고, 나머지 증/특식 단가는 모두 동결됨.

○ 그런데 격오지/비무장지대 근무자를 위한 증/특식 단가의 경우 2019년 이후 5년간 동결되었고, 영내자를 위한 증/특식 단가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9년 동안 지급단가가 동결되었으며, 항공사 및 특수임무병을 위한 증/특식 단가의 경우 2012년 이후 11년 동안 지급단가가 동결되었음.

[증/특식 단가 변동 추이]

(단위: 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경축일특식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2,000	3,000	3,000
특수 근무자 증식	상황근무병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1,000
	폭발물처리반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1,000	2,000	2,000
	지뢰탐지작업병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2,000	2,000	2,000
	유해발굴병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2,000	2,000	2,000
	낙하훈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재해복구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격오지/비무장지대	600	700	700	700	700	700	700	1,000	1,000	1,000	1,000	1,000
	항공사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정비병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1,000	1,000	1,000
	화력궤도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1,000	1,000	1,000
	군기순찰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1,000	1,000	1,000
	땅굴탐사병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1,000	1,000	1,000
	장거리운전병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1,000	1,000	1,000
	하역병	600	600	600	600	600	600	600	600	1,000	1,000	1,000	1,000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선수특수훈련	-	-	-	3,850	3,800	3,800	3,800	4,432	8,430	8,430	8,430	8,430
	조리병	-	-	-	-	-	-	-	-	-	-	1,000	1,000
	특수임무(특무병)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비상수원식수	-	-	-	-	-	-	-	-	-	-	640	640
기초훈련 장병증식	훈련병	-	5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생도/후보생 등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000	2,000
환자치료 증식	일반식	600	6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700
	저염식	1,100	1,1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1,300
	고단백식	1,600	1,6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기본급식 보조 및 군외급식 지원	도서물가보조비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2,000
	해외훈련급식보조($)	-	-	-	-	-	-	1.718	1.718	1.718	1.718	1.718	1.718
	해상근무자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2,000	2,000	2,000	2,200	2,200
	잠수함승선자	4,400	4,4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15,000
	매식비	5,000	5,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7,000	7,000	7,000
	상륙매식보조($)	11.27	11.27	11.27	11.27	11.27	11.27	11.27	11.27	11.27	11.27	11.27	11.27
	외국함합동훈련($)	9.2	9.2	9.2	9.2	9.2	9.2	10.45	10.45	10.45	10.45	10.45	10.45
	한미상호지원차액보전($)	-	-	-	-	-	-	-	-	-	-	-	-
영내자증식		4,532	4,742	5,742	5,742	5,742	5,742	5,742	5,742	5,742	5,742	5,742	5,742
생일특식		10,000	10,000	10,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1,000	15,000	15,000	15,000

자료: 국방부

○ 따라서 국방부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장병들에 대한 체력보강의 필요성 등을 바탕으로 지급대상별로 증/특식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

○ 우리 위원회는 2023년도 동 사업 예산을 심사하면서, 격오지/비무장지대 근무자의 증/특식 단가 인상(1,000원→2,000원)을 위해 179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영내장병(영내자) 및 조리병에 대한 증/특식 단가 인상을 위해 70억 1,800만원을 증액한 바 있으며,[12)13)]

12) 제400회국회(정기회) 국방위 제1차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위자료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안)	증감액	수정이유	비고
증/특식 (1231-302)	151,797	17,949	○ 격오지/비무장지대 근무자의 증/특식 단가는 2019년 이후 동결되어 왔는 바, 동 단가의 인상(1,000원→2,000원)이 필요함.	배진교 위원

현재 국방부도 일반 부대 장병에 비해 고강도 훈련을 수행하는 기초훈련장병은 기초군사훈련 시 체력 소모와 피로가 더욱 극심하여 이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보강을 위하여 기초훈련장병 증식비의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14]

○ 그런데 국방부는 모병률 저조 등을 이유로 동 사업에서 발생한 164억 7,900만원의 잉여 재원[15][16]을 증/특식 단가 인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 사업의 집행재원으로 사용하였음.

[동 사업 잉여재원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이·전용등 금액	조정된 세부사업 및 금액	
	세부사업	금액
△16,479	기본급식(1231-301)	16,140
	특수식량(1231-303)	339
	합계	16,479

자료: 국방부

세부사업명	2023(안)	증감액	수정이유	비고
			* 산출내역 - 60,638명×1,000원×296일=179억 4,900만원	
		7,018	○ 영내장병(영내자) 및 조리병에 대한 증/특식 단가의 인상이 필요함. * 산출내역 - 영내자증식비 단가인상: 5,742원→6,500원, 29억 3,800만원 증액 - 조리병증식비 단가인상: 1,000원→2,000원, 40억 8,000만원 증액	신원식 위원

13) 그러나 우리 위원회 증액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14) 또한 국방부는 선수특수훈련 증식비의 경우 '24년 체육부대 식비 단가는 21,430원으로, 진천선수촌 1일 급식비('23년 44,000원)와 비교 시 1/2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군 입대로 인한 엘리트 체육인의 기량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여 단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5) 참고자료 1(2023년 증/특식 전체 사업별 결산내역) 참조

16) 164억 7,900만원의 잉여 재원이 발생한 이유는 예산편성 당시 지급대상 인원을 과다 추계하였기 때문으로, 재해복구 증/특식비의 경우 약 3배, 정비병 증/특식비의 경우 약 1.65배, 생일특식의 경우 1.18배 각각 과다 추계되었기 때문임.[참고자료 2(2023년 동 사업 편성 및 집행 인원 현황) 참조]

○ 동 사업이 장병들의 건강증진과 체력보전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인 점을 감안할 때,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높은 기초훈련장병 등이 존재하였음에도 동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재원을 지속적으로 타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동 사업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127,708	33	△5,107	122,635	120,951	1,120	564
2021	136,787	1,120	△13,482	124,424	123,060	-	1,364
2022	157,627	-	△15,785	141,842	139,914	704	1,223
2023	151,797	704	△16,479	136,023	135,241	27	755

자료: 국방부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동 사업에서 잉여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단가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증/특식 단가 인상에 우선 충당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지급대상별 증/특식 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2023년 증/특식 전체 사업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① 경축일특식	8,720	129	△416	8,433	8,422	-	10
② 특수근무자 증식	45,830	493	△7,118	39,205	39,068	21	116
격오지/비무장지대	17,949	-	△1,453	16,496	16,469	-	27
항공사 1호/2호	5,188	-	△637	4,551	4,550	-	1
낙하훈련	814	-	△69	745	745	-	-
정비병	2,816	-	△1,167	1,649	1,646	-	3
재해복구	3,480	-	△2,287	1,193	1,169	-	24
화력궤도	2,407	-	△212	2,195	2,195	-	-
체육부대	590	-	-	590	590	-	-
기타	12,585	493	△1,292	11,786	11,705	21	61
③ 기초훈련장병	21,315	-	△1,704	19,611	19,608	-	2
훈련병	16,768	-	△655	16,113	16,112	-	0
생도/후보생 등	4,546	-	△1,048	3,498	3,496	-	2
④ 환자치료증식*	495	-	△1	494	363	-	131
⑤기본급식비보조 및 군외급식지원	48,253	-	△5,697	42,556	42,080	-	476
해상근무자/잠수함승선자	10,897	-	△80	10,817	10,728	-	88
매식비	21,180	-	△5,024	16,156	15,858	-	298
현지물가보조	7,260	-	△336	6,924	6,915	-	9
특수임무	4,809	-	△31	4,778	4,772	-	6
기타	4,107	-	△226	3,881	3,806	-	75
⑥ 영내자증식	22,340	83	△778	21,645	21,628	6	10
⑦ 생일특식	4,844	-	△764	4,080	4,072	-	8
합 계	151,797	704	△16,478	136,023	135,241	27	755

자료: 국방부

<참고자료 2>

[2023년 동 사업 편성 및 집행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편성 인원	집행 인원	편성·집행 인원 차이 발생 사유
①경축일특식	322,954	311,934	1. 모병률 저조로 인한 지급인원 감소 2. 낙찰차액 등의 집행 잔액
②특수근무자 증식	-	-	
격오지/비무장지대	60,638	55,638	
항공사 1호/2호	6,881	5,959	
낙하훈련	22,603	20,682	
정비병	19,785	11,990	
재해복구	64,331	21,632	
화력궤도	20,062	18,288	
체육부대	389	389	
기타	140,985	133,275	
③기초훈련장병	-	-	
훈련병	251,321	241,493	
생도/후보생 등	34,256	26,341	
④환자치료증식	-	-	
일반식	941	830	
저염식	36	38	
고단백식	342	191	
⑤기본급식비보조 및 군외급식지원	-	-	
해상근무자/잠수함승선자	17,311	13,274	
매식비	12,087	9,216	
현지물가보조	10,371	9,878	
특수임무	9,320	9,249	
기타	139,869	102,764	
⑥영내자증식	324,226	313,887	
⑦생일특식	322,954	271,442	

자료 국방부

(3) 민간조리원(1231-305): 민간조리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민간조리원(1231-305)은 군 급식의 맛과 질 개선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식수인원의 취사장에 민간조리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054억 3,700만원에 이·전용 등(감) 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048억 3,700만원 중 882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165억 7,0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민간조리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민간 조리원	105,437	-	△600	104,837	88,267	-	16,570	110,02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3년 동 사업의 집행결과를 보면, 편성예산 중 6억원이 편성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되었고, 165억 7,000만원이 불용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3.7%에 그침.

이는 국방부가 2023년에 동 사업 예산을 과다 편성하였기 때문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조리원의 채용률은 2020년말 기준으로 96.5%에 달하였으나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인 2022년 9월말에는 76.4%로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음.

[민간조리원 채용현황]

(단위: %, 명)

구분	정원(A)	현원(B)	채용률(B/A)
2020	1,987	1,919	96.5
2021	2,278	2,014	88.4
2022.9	3,188	2,438	76.4

자료: 국방부

그런데도 국방부는 기존 인원 3,188명과 신규 인원 117명의 2023년도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신규 인원의 경우 인력운용률 약 58%를 기준으로 편성한 반면, 기존 인원에 대하여는 인력운용률 100%[17]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17) 2023년 1월 1일에 기존 인원 3.188명이 전원 채용되었다는 전제하에 2023년도 예산안이 편성되었다는 의미임.

[2023년도 민간조리원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민간조리원	105,437	○ 비정규직보수(110-03, 210-12) : 88,516 가. 상용임금(110-03) : 86,888 · 인원 : 3,305명(기존 3,188명, 신규 117명) · **(26,687천원×기존 3,188명)**+(15,476천원×117명)=86,888 나. 복리후생비(210-12) : 1,628 · **(500천원×기존 3,188명)**+(292천원×신규 117명)=1,628 ○ 보상금(320-09) : 16,921 가. 고용부담금 : 16,921 · 4대보험료 9,714 퇴직금 7,207

자료: 국방부

○ 민간조리원은 해마다 정원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용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기존 인력의 인력운용률을 100%로 적용하여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따라, 동 예산안은 실제로 집행가능한 예산보다 과다편성되었던 것임.

○ 그러나 우리 위원회는 과다편성된 동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교육공무직 조리사에 비하여 열악한 민간조리원의 처우수준[18]을 개선하여 채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오히려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의 신설을 위한 예산 27억 4,800만원을 증액 의결[19][20]한 바 있음.

18) 2023년을 기준으로 국방부 소속 민간조리원과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처우 수준을 비교하면 국방부 소속 민간조리원의 처우 수준이 월 급여 기준으로 약 396,534원이 낮음.
19) 국방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소위원회 심사자료

[2023년 교육공무직 조리사 임금과 국방부 민간조리원 임금 비교]

(단위: 원)

구분	국방부 민간조리원	교육공무직 조리사
1인당 월 급여 계	2,265,533	2,662,067
기본급	1,922,210	1,918,000
급식비	140,000	140,000
교통보조비	70,000	-
위험근무수당	-	50,000
면허수당(월 기본급 5%)	-	95,900
명절상여금(연간)	1,100,000	1,600,000
정기상여금(연간)	-	1,000,000
복리후생비(연간)	500,000	650,000
근속수당(1~2년 근무 기준)	-	39,000
가족수당(4인 가족 기준)	-	140,000
건강검진비(격년 지급)	-	200,000

자료: 국방부

○ 근로조건이 유사·동일할 경우 급여수준이 낮은 곳의 인력난은 더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안)	증감액	수정이유	비고
민간조리원 운영 (1231-305)	105,437	2,748	❍ 2022년을 기준으로 국방부 소속 민간조리원과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처우 수준을 비교하면 국방부 소속 민간조리원의 처우 수준이 월 급여 기준으로 약 183,230원이 낮음. ❍ 국방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민간조리원의 기본급을 2.3%(43,200원) 인상하고 명절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각각 10만원씩 인상하였으나, 교육공무직 조리사와의 격차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움. ❍ 동일업무 직군과의 처우 격차 개선과 격오지 채용률 제고를 위해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의 신설이 필요함. * 산출내역 - 위험근무수당(110-03): 50,000원(3,305명), 19억 5,400만원 증액 - 특수지근무수당(110-03): 381명, 3억 5,000만원 증액 - 수당 인상에 따른 고용부담금 인상분(320-09): 4억 4,400만원 증액	김병주 위원 배진교 위원 송갑석 위원 신원식 위원 윤후덕 위원 정성호 위원 한기호 위원

20) 그러나 우리 위원회 증액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아니하였음.

가중될 수 밖에 없고 저조한 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조리원의 처우개선이 긴요함에도,

과다편성으로 발생한 잉여예산을 민간조리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용처리한 국방부의 예산집행방식은 적절하지 아니함.

○ 국방부는 '21년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민간조리원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처우 개선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21년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 중 민간조리원 부분]

○(민간조리원) 민간조리원 편성 기준을 확대(80명당 1명→2명)하여 취약시간대 조리지원(조식·휴일 조리 등)이 가능토록 운영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적극 추진 * 2,278명 → 3,188명(+910명) / '22년

그러나 민간조리원의 처우수준[21] 개선속도는 매우 더디어 월 급여 기준으로 교육공무직 조리사와의 처우 수준 격차는 2022년 183,230원에서 2023년에는 369,630원으로 더욱 확대됨.

21) 연도별 민간조리원 처우수준

(단위: 원)

구분	기본급	급식비	명절상여금	복리후생비	교통보조비
2021	1,839,700	140,000	800,000	400,000	-
2022	1,879,000	140,000	1,000,000	400,000	70,000
2023	1,922,210	140,000	1,100,000	500,000	70,000
2024	1,983,400	140,000	1,100,000	500,000	70,000

자료: 국방부

[2022년 및 2023년 1인당 월급여 비교]

(단위: 원)

구분	국방부 민간조리원	교육공무직 조리사	처우격차
2022년	2,205,667	2,388,900	183,230
2023년	2,265,533	2,662,067	369,630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지속적으로 병역자원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병영식당을 조리병 중심에서 민간조리원 중심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조리원의 원활한 채용이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22)]

22) 이에 대해 국방부는 높은 업무 강도, 격오지 근무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민간조리원 운영률 제고를 위해 처우 수준 상향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제 매년 예산 편성 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신규 수당 신설 요구를 통한 처우 개선을 재정당국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힘.

(4) 기본피복(1241-301): 재고수량 파악업무와 신규 소요수량에 대한 예측력 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본피복(1241-301)은 장병들의 기본임무수행에 필요한 전투복, 전투화 등 공통 개인피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3,748억 1,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0억 700만원과 이·전용 등(감) 357억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71억 7,800만원 중 3,219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100억 7,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1억 1,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기본피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본피복	374,810	18,070	△35,702	357,178	321,990	10,073	25,115	374,18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3년 동 사업의 집행결과를 보면, 편성예산 중 편성목적 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된 금액이 357억 2,200만원에 달함.

타 사업으로 이용된 금액은 공공요금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328억 8,100만원이 사용되었고, 군 소음피해 배상금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28억 4,100만원이 사용되었음.

[2023년 이용 금액의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기본피복 이용(감) 금액	이용된 금액의 사용		
	세부사업	금액	사용
35,722	2536-302	32,881	공공요금 부족예산 충당
	2131-307	2,841	군 소음피해 배상금 부족예산 충당
	합계	35,722	

자료: 국방부

○ 타 사업으로 이용된 금액의 주된 재원은 운동복 등 10개 품목의 조달물량을 당초 예산편성 물량보다 축소함으로써 발생한 예산편성액과 집행액 간의 차액으로,

운동복 품목에서 139억원, 전투화 품목에서 90억원, 운동화 품목에서 31억원 등 총 357억 2,200만원이 이용재원으로 사용되었음.

[품목별 타 사업으로의 이용 재원]

품목	운동복	전투화	운동화	팬티	방상내·외피	런닝	장갑	축구화	전투용 안경	합계
이용 재원	139 억원	90 억원	31 억원	30 억원	19 억원	15 억원	14.8 억원	10 억원	8.4 억원	357.22 억원

자료: 국방부

품목별로 물량을 축소한 현황을 보면, 운동복 품목 중 하운동복의 경우 조달물량을 예산편성 물량의 75.1%로 축소하였고, 전투화 품목은 61.5%로 축소하였으며, 운동화 품목 및 축구화 품목은 50% 이하로 축소하였음.

[이용재원으로 활용된 품목별 물량축소 현황: 육군]

품목	물량 축소 현황
운동복	동운동복 편성 : 362,505개 → 조달 : 294,839개 (-67,666개 / 81.3%) 춘추운동복 편성 : 362,175개 → 조달 : 344,250개 (-17,925개 / 95.0%) **하운동복 편성 : 362,505개 → 조달 : 272,171개 (-90,334개 / 75.1%)**
전투화	**전투화 편성 : 465,769개 → 조달 : 286,598개 (-179,171개 / 61.5%)**
운동화	**운동화(런닝용) 편성 : 177,965개 → 조달 : 81,353개 (-96,612개 / 45.7%)** **운동화(트레일용) 편성 : 212,499개 → 조달 : 86,463개 (-126,036개 / 40.7%)**
팬티	드로즈팬티 편성 : 1,817,227개 → 조달 : 1,711,622개 (-105,605개 / 94.2%) 사각팬티 편성 : 743,005개 → 조달 : 535,373개 (-207,632개 / 72.1%)
런닝	디지털런닝 편성 : 1,531,607개 → 조달 : 1,371,716개 (-159,891개 / 89.6%) 하계언더셔츠 편성 : 1,029,981개 → 조달 : 865,220개 (-164,761개 / 84.0%)
장갑	모장갑 편성 : 224,602개 → 조달 : 176,245개 (-48,357개 / 78.5%) 일반장갑 편성 : 180,847개 → 조달 : 132,568개 (-48,279개 / 73.3%) 전투용장갑 편성 : 224,602개 → 조달 : 127,998개 (-96,604개 / 57.0%)
축구화	**축구화 편성 : 176,514개 → 조달 : 69,073개 (-107,441개 / 39.1%)**
전투용 안경	전투용안경 편성 : 175,158개 → 조달 : 117,720개 (-57,438개 / 67.2%)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유재고를 고려하여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조달물량을 축소[23]하였다고 설명함.

○ 그런데 동 사업의 2022년 집행결과를 보면, 2023년과 동일한 사유로 조달물량을 축소함으로써 발생한 예산편성액과 집행액 간의 차액 64억 9,000만원을 타 사업의 이용 재원으로 사용하였음.

[2022년 품목별 이용 재원 및 물량축소 사유: 육군]

품목	이용재원	물량 축소 현황	물량 축소 사유
런닝	26억원	런닝 편성 : 2,593,350매 → 조달 : 2,360,522매 (-232,828매 / 91%)	품질개선 및 **보유재고 고려** **적정재고 수준 유지**
동내의	13.5억원	동내의 편성 : 341,997착 → 조달 : 313,552착 (-28,445착 / 91.6%)	**보유재고 고려** **적정재고 수준 유지**
팬티	18.8억원	팬티 편성 : 2,592,138매 → 조달 : 2,261,962매 (-330,176매 / 87%)	**보유재고 고려** **적정재고 수준 유지**
운동복	6.6억원	동운동복 편성 : 522,335개 → 조달 : 481,343착 (-40,992착 /92%)	**보유재고 고려** **적정재고 수준 유지**
합계	64.9억원		

자료: 국방부

○ 또한, 국방부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보유재고자산을 고려하여 기능성전투화 등 16개 품목의 조달 물량을 축소하여 발생한 79억 8,000만원 등 총 83억 6,0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

23) 보유재고를 고려하여 적정재고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조달물량을 축소하였다는 의미는 집행단계(즉, 2023년)에서 파악한 재고수량이 예산편성단계(즉 2021년하반기 또는 2022년)에서 예측하였던 재고수량보다 많아 적정제고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 조달물량을 축소하였다는 의미임.

[2022년 품목별 추경 감액 현황: 각 군]

(단위: 백만원)

품목	'22년 편성	'22년 추경 감액분	'22년 추경 감액 사유		해당 군
기능성전투화	33,170	2,513	조달물량 축소 (465,589개→453,634개로 축소)		육군
운동화	9,272	673	608	조달물량 축소 (348,682개→314,385개로 축소)	육군
			65	조달물량 축소 (13,091개→8,436개로 축소)	해병대
영내화	834	19	조달물량 축소 (197,089개→184,065개로 축소)		육군
축구화	3,238	1,123	1,056	조달물량 축소 (177,639개→124,782개로 축소)	육군
			67	조달물량 축소 (11,947개→8,298개로 축소	해병대
단화	2,628	6	조달물량 축소 (1,144개→0개로 축소) * 재고자산 및 판매실적 고려 미조달		해병대
동운동복	39,263	1,827	조달물량 축소 (522,335개→481,343개로 축소)		육군
전투모	1,858	158	조달물량 축소 (188,175개→105,776개로 축소)		육군
근무모	52	2	조달물량 축소 (1,144개→500개로 축소)		해병대
동내의	10,650	1,090	990	조달물량 축소 (341,997개→313,552개로 축소)	육군
			100	조달물량 축소 (13,091개→8,990개로 축소)	해병대
팬티	16,252	528	378	조달물량 축소 (229,466개→211,375개로 축소)	공군
			150	**편성 대비 계약단가 하락** (조달 : 175,469개→194,606개)	해병대
양말	8,566	411	조달물량 축소 (2,238,292개→2,179,989개로 축소)		육군
장갑 (모장갑)	8,081	0.4	조달물량 축소 (13,091개→13,000개로 축소)		해병대
가방 (학과가방)	3,500	0.9	**편성 대비 계약단가 하락** (조달 : 46개→120개)		해병대
학군단피복	3,071	0.04	조달물량 축소 (30개→28개로 축소)		해병대
보충역피복	17,445	0.3	**집행잔액 반납** (조달 : 395개→395개)		해병대
넥타이/ 넥타이핀	394	8	조달물량 축소 (1,144개→0개로 축소) * 재고자산 및 판매실적 고려 미조달		해병대
합계		8,360[24]	-		

자료: 국방부

○ 더욱이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이·전용 현황을 보면 편성목적 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전용된 금액이 2021년 71억 2,900만원에서 2023년에는 357억 2,2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함.

[최근 3년간 이·전용 금액의 사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기본피복 이·용(감) 금액			이·전용된 금액의 사용		
	이용 감	전용 감	합계	세부사업	금액	사용
2021년	-	7,129	7,129	1231-301	7,129	급식비 부족예산 지원
				소계	7,129	
2022년	8,799	-	8,799	2335-301	100	유류비(취사연료) 부족예산 충당
				2335-302	1,516	유류비(난방연료) 부족예산 충당
				2335-303	6,878	유류비(장비운영용연료) 부족예산 충당
				7136-301	305	군 소음피해 배상금 부족예산 충당
				소계	8,799	
2023년	35,722	-	35,722	2536-302	32,881	공공요금 부족예산 충당
				2131-307	2,841	군 소음피해 배상금 부족예산 충당
				소계	35,722	

자료: 국방부

○ 이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소요물량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문제로, 우리 위원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면서 보유재고량을 사유로 하여 조달물량을 축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요구[25]하였음에도,

24) 8,359.64백만원을 반올림한 금액임.

동일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점에 비추어 예산편성 및 집행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약 2년이라는 편성단계와 집행단계의 시차가 발생하는 현행 예산 편성 방식에 기인한다는 설명과 함께 향후 각 군에서 보유 재고수준을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향후 국방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재고수량 파악업무와 신규 소요 수량에 대한 예측 역량을 강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25) 2021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시정 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과도한 조달물량 축소 지양 필요	관련 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피복(1241-301)	주의
	지적 사항	○ 육군은 **보유재고량을 고려하여** 2021년도 중 베레모 등 11종의 예산 편성 물량을 다음과 같이 축소하여 집행함. - 육군은 당초 베레모 등 11종의 피복 4,234,303개를 구매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변경(1,159,951개 축소)하여 3,074,352개만의 피복을 구매함	
	시정 요구 사항	○ 국방부는 예산 편성 단계부터 품목별 피복 소요량에 대한 추계를 면밀히 실시하여 조달물량이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	

(5) 통신시설(2131-305): 선행 사업 지연에 따른 연쇄적 집행부진 개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통신시설(2131-305) 사업은 군 통신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군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노후 통신시설 보수·교체 및 부대 이전 및 신축 시 통신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591억 7,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3억 6,000만원과 이·전용(감) 등 20억 4,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94억 8,700만원 중 507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61억 6,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억 3,6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통신시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통신시설	59,177	2,360	△2,049	59,487	50,785	6,167	2,536	56,67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통신시설 사업 중 '부대 이전·신축시 통신지원' 사업은 선행 시설공사와 연계된 통신시설사업으로써[26] 시설건축물의 정보통신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통신시설 공사임.

○ 2023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4%로 지난 3년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월액과 불용액은 증가하고 있음.

[최근 4년간 통신시설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38,091	231	2,129	40,451	38,816	101.9	96.0	332	1,303
2021	44,186	332	△689	43,829	41,185	93.2	94.0	1,164	1,480
2022	48,507	1,164	653	50,324	45,546	93.9	90.5	2,360	2,418
2023	59,177	2,360	△2,049	59,487	50,785	85.8	85.4	6,167	2,536

자료: 국방부

○ 2023년도 예산의 주요 이월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부대 이전·신축시 통신지원 사업에서 선행 사업인 시설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통신시설 사업 또한 연쇄 지연되어 이월이 발생한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26) 신/개/증축 건물의 통신케이블, 외부에서 건물로 연결되는 통신케이블, 관로 포설 및 맨홀 설치공사, 포설한 케이블을 건물 통신실 등 내부 장비와 연결공사, 전산장비 이전설치 등을 포함함

[통신시설 주요 이월 내역사업 및 집행 부진사유]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률 (B/A)	집행 부진사유
해군 1함대 작전지원시설 신축 통신공사	3,923	1,310	2,613	33.4	건설장비 운용 지연 및 암반 출현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통합행정시설 신축 통신공사	1,697	1,000	697	58.9	건설사업 승인지연 및 용역계약 미체결 등으로 공사중지
해군 1함대 기계실 신축 통신공사	723	205	518	28.4	옥외소화설비 및 전기지중화공사 지연 등
해군 3함대 기계실 신축 통신공사	897	450	447	50.1	건축승인 지연 및 착공제한사항(흙막이) 발생으로 시설공정 추가에 따른 통신공사 지연
육군 제9보병사단사령부 통신센터 이전공사	441	100	341	22.7	사단 본청 신축건물 지휘통제실 내부 구성 확정이 지체되어 통신센터 이전 실시설계 계약 지연

자료: 국방부

[통신시설 주요 이월 내역사업의 선행 시설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통신시설 사업명	각각의 선행 시설사업명	선행시설사업 총사업비	시설공사계약기간 연장내역
해군 1함대 작전지원시설 신축 통신공사	해군 1함대 작전지원시설 시설공사	19,137	'22.3.30.~'24.4.16. →'24.11.30.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통합행정시설 신축 통신공사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노후시설개선 시설공사	4,127	'22.9.6.~'23.12.24. →'24.8.31.
해군 1함대 기계실 신축 통신공사	해군 1함대 기계실 신축 시설공사	2,785	'21.12.28.~'23.12.8. →'24.12.4.
해군 3함대 기계실 신축 통신공사	해군 3함대 기계실 신축 시설공사	1,480	'23.11.25.~ '24.6.21 →'24.10.25.
육군 제9보병사단사령부 통신센터 이전공사	육군 제9보병사단 부대시설공사	15,000	'23.2.1.~ '24.7.1 →' 24.8.26

자료: 국방부

○ 이처럼, 선행 시설공사 지연이라는 동일한 사유에 따른 이월이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부대 이전·신축시 선행 시설공사 지연을 고려할 수 있도록 연도별 예산 배분 방식을 조정하거나, 시설공사와 통신공사를 연계하여 계약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국방부는 통신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 통신시설 사업의 적기 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6) 의무장비획득(2231-302): 연도말 계약 추진 및 예산 미편성 사업 추진 지양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의무장비획득(2231-302)은 환자후송을 위한 구급차, 셔틀버스 등 **의무기동장비획득** 사업과 군 병원에서 활용하는 진료장비 등 **일반의무장비획득** 사업으로 구분됨.

○ 2023년도 예산액 371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1억 2,400만원과 이·전용등(감) 1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1억 1,500만원 중 324억 8,500만원이 집행되고, 24억 4,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1억 8,8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의무장비획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의무장비획득	37,191	3,124	△1,200	39,115	32,485	2,442	4,188	32,530
일반의무 장비획득	30,846	1,797	△2,779	29,863	23,829	1,902	4,131	21,62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의무장비획득사업 중 **일반의무장비획득**은 CT, MRI, 엑스선기, 원격진료체계 등 환자 진료시 실제 활용되는 의무장비를 확보하는 내역사업임.

그런데, 구급차 등 기동의무장비획득에 비해 일반의무장비획득 사업은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일반의무장비획득 사업 최근 5년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집행액(C)	집행률(C/A)	집행률(C/B)
2019년	23,183	20,612	19,204	82.8	93.2
2020년	23,422	26,618	24,133	103.0	90.7
2021년	37,543	39,565	33,441	89.1	84.5
2022년	29,690	29,073	23,595	**79.5**	81.2
2023년	30,846	29,863	23,829	**77.3**	79.8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조달청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지연, 사업체의 계약관련 서류 미충족 등에 따라 집행이 저조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2023년 일반의무장비획득 사업에서 19억 200만원의 이월이 발생했으며 **전체 21건의 이월 중 19건이 10월 중순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3년 일반의무장비획득 사업 이월 사례]

(단위: 백만원)

구분	재무관서	장비명	계약일	실 집행일	예산액	계약액
1	육군	세균배양기 바이러스추출장치	'23. 6.19.	'24. 3.13.	53 (18대)	46 (18대)
2	해군	약품포장기 자동식	'23. 8.18.	'24. 3.25.	179 (2대)	135 (2대)
3	의무사	광간섭촬영기	'23.10.18.	'24. 2. 8.	427 (2대)	320 (2대)
4	의무사	환자관찰장치 중앙 및 침상용	'23.10.19.	'24. 1.30.	287 (3대)	169 (3대)
5	의무사	격리병실음압유지기	'23.10.27.	'24. 2. 8.	14 (3대)	3 (1대)
6	의무사	전기소작기 내시경용	'23.10.27.	'24. 2.22.	94 (1대)	18 (1대)
7	의무사	주변시야계	'23.10.30.	'24. 2.20.	172 (2대)	83 (1대)
8	의무사	지혈대 자동식	'23.10.31.	'24. 2. 6.	80 (3대)	32 (2대)
9	의무사	환자관찰장치 이동형	'23.10.31. '23.11. 9.	'24. 1.31.	195 (13대)	211 (14대)
10	의무사	전자동정제분류포장기	'23.11. 7.	'24. 2. 8.	204 (3대)	154 (3대)
11	의무사	의료용 항온항습기	'23.11.14.	'24. 2. 8.	20 (2대)	23 (2대)
12	의무사	수술대 신경외과용	'23.12. 8.	'24. 2.29.	195 (1대)	158 (1대)
13	**의무사**	**수술등 입식**	**'23.12.11.**	**'24. 2. 1.**	-	**15 (1대)**
14	의무사 (통합조달)	멸균소독기 소형(통합조달)	'23.12.12.	'24. 2. 2.	285 (73대)	254 (73대)
15	의무사	수술대 정형외과용	'23.12.15.	'24. 4.11.	208 (1대)	196 (1대)
16	**의무사**	**무산동안저카메라**	**'23.12.18.**	**'24. 2. 6.**	-	**47 (1대)**
17	의무사	소독기 저온멸균형(EO Gas)	'23.12.18.	'24. 3. 6.	130 (4대)	82 (4대)
18	의무사	초음파진단기	'23.12.20.	'24. 2.20.	97 (1대)	91 (1대)
19	**의무사**	**자동흉부압박기**	**'23.12.20.**	**'24. 2.22.**	-	**28 (1대)**
20	의무사	안구운동요법기	'23.12.20.	'24. 1.31.	3 (1대)	3 (1대)
21	의무사	인공호흡기 고급형	'23.12.28.	'24. 1.31.	59 (1대)	57 (1대)

자료: 국방부

○ 이처럼 연도말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납품기한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10월 18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19건 모두 국군의무사령부 사업임.**

국군의무사령부는 군 환자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의 연구·발전을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창설한 국직부대[27]로 군 의무 전문기관인바, 해당 부대에서 계약을 추진한 장비들에서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 한편, 19건의 이월 중 수술 등 입식, 무산동안저카메라, 자동흉부압박기 등 3건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2월 이후 이월을 감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음.

이는 국회의 예산심사권한과 예산단년주의의 취지에 배치되는 예산집행으로서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해당 사례가 시급한 필요 등 목적외 집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음.[28]

○ 따라서 국방부와 국군의무사령부는 의무장비 소요제기시부터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상반기 중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당초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연도말에 추진하여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7) **「국군의무사령부령」 제1조(설치와 임무)**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28) 국방부의 **「국방예산운용지침」**(2023.1)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비계획 사업이나 신규사업 추진을 억제하여 국회나 언론 등 외부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7) 의무물자확보(2231-304): 안경제작 사업 제도개선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의무물자확보(2231-304)는 의약품, 의료기재(마스크 등) 및 장비 운영소모품(시약비 등) 등을 확보하는 사업과 저시력자를 위해 방독면 안경 및 전투용 안경을 제작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예산액 1,526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200만원과 이·전용등(감) 304억 8,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28억 1,700만원 중 1,099억 5,200만원이 집행되고, 13억 4,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5억 2,1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의무물자확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의무물자확보	152,668	632	△30,483	122,817	109,952	1,345	11,521	111,214
의약품 확보	65,361	30	△14,976	50,415	49,469	11	934	54,135
안경제작	5,587	-	△80	5,507	3,944	-	1,563	4,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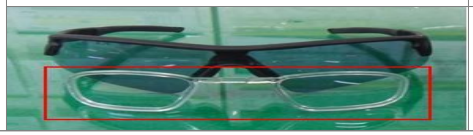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안경제작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 필요

○ 안경제작 사업은 저시력 장병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방독면 안경, 전투용 저시력자 안경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29]

[안경제작 사업 형상]

① 방독면 안경 금속테(구형) 플라스틱테(신형)	K-1(구형) 방독면 안경 	K-5(신형) 방독면 안경 
② 저시력자용 전투용 안경 플라스틱테	저시력자 안경 	저시력자 안경 결합모습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은 2021년까지는 중앙조달 방식으로 안경을 제작했으나, 2022년부터는 조달방식이 변경되면서 안경이 필요한 저시력 병사의 불편이 다소 가중된 상황임.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신교대 또는 훈련소에서 개인 소지 안경을 도수측정기로 측정하여 제조업체가 안경테·렌즈를 일괄 제작 후 배치부대로 안경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병사 개인의 행정 소요가 없는 방식이었으나,

29) 두 종류 안경 외에 측정장비 및 해·공군조종사 안경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2023년 기준 예산이 1,958만원으로 전체 안경제작 예산 55억 8,700만원 대비 0.4%에 불과함.

2022년부터 제조업체는 안경테만 제작하고 병사 개인이 직접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렌즈를 제작하고 수령한 후,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음.

이는 조달기관인 조달청에서 기존 방식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30]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2022년 집행률이 58.1%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2023년에도 70.6%에 그치고 있음.

[안경제작사업 최근 5년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6
예산액	2,692	1,931	6,152	5,587	4,821
집행액	1,761	1,408	3,573	3,944	1,574
집행률	65.4	72.9	**58.1**	**70.6**	**32.6**
조달방식	중앙조달		**개별 구매**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은 조달방식 변경 이전에도 저시력자 수 추계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2022년 이후에는 병사 개인의 행정 부담 증가라는 집행상 어려움이 가중된 것임.

---

30)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없다.**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2.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⑥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 국방부는 집행률 저조의 원인을 조달방식 변경 초기에 따른 홍보 부족으로 설명하면서, 장병 안경제작을 위한 외출제도 및 부대장 대상 집행 독려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겠다는 입장이나,

병사 개인에게 제작 책임을 지우는 조달방식을 유지할 경우 병사들이 제작 과정의 불편함으로 인해 안경제작없이 훈련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저시력 장병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인 특례 마련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②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 해소 필요

○ 지난 3년간 **국방부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매년 각급 부대에서 의약품을 적절히 관리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거나 관련자 주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각급 의무대에서 **의약품 관리를 소홀**히하여 시효가 경과한 의약품을 정상의약품과 함께 보관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분하지 않은 사례가 **2021년 3건, 2022년 6건, 2023년 4건 발생**하였음.

[2021～2023년 국방부 자체감사 의약품 관리 지적 현황]

구 분	대상기관	처분 종류	처분 제목	처분내용	통보 일자
2021년 설 연휴 공직기강 감사	**육군 3사관학교**	기관 주의	의약품 및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소홀	일반 냉장고에 치과 진료품과 음료수 등을 함께 보관, 의약품 냉장고에 의약품과 음료수를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관리 소홀	2021.3.24.
2021년 특별 공직기강 확립 감사	**해군본부**	기관 경고	향정신성의약품 및 의료용 냉장고 관리 소홀	'해양의료원'의 「의료법」, 「의료용(시약보관용) 냉장고 철저 관리 강조 지시」, 「군수용 마약류 관리 업무 훈령」등의 준수 소홀	2021.9.14.
2021년 연말 공직기강 감사	**공군 교육사령부**	기관 경고	의약품 보관 냉장고 관리 소홀	공군 교육사령부 '기지병원'의 「의료법」, 「공군 규정」등 미준수로 의약품 보관 소홀 관리	2022.2.4.
2022년 설 명절 공직기강 감사	**해군 인천해역 방어사령부**	기관 주의	의약품 보관 의료용 냉장고 관리 소홀	'의무대'의 「의료법」, 「의료용(시약보관용) 냉장고 철저 관리 강조 지시」등을 소홀히 하여 의약품 관리	2022.2.25.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직기강 감사	**육군 제50사단**	주의	의무대임상병리실 의료용 냉장고 관리 소홀	「의료법」, 「의료용(시약보관용) 냉장고 철저 관리 강조 지시」등에 따른 의약품 및 의료용 냉장고 관리 소홀 관련자 "주의" 조치	2022.7.5.

구 분	대상기관	처분 종류	처분 제목	처분내용	통보 일자
	해군 제1함대 사령부	기관 경고	의무대 향정신성의약품 등 의무물자 관리 소홀	'의무대'의 진단시약(albumin reagent(시효 '21.8.31.)1병/ldh liqui-uv(시효'21.12.31.) 2병) 시효 경과 에도 정상관리 품목과 함께 보관하는 등 의약품 및 의무물자 관리소홀	2022.7.5.
	해군 6항공전단	기관 주의	의무대 시효 경과 의약품 관리 미흡	의무대 약제실은 폐기 시점인 '22.3.23.이전의 시효 경과 의약품인 '세프라딘 캡슐('22.3.2. 한) 169(cap)' 등 5종의 의약품을 폐기하지 않는 등 의약품 시효 관리 미흡	2022.7.5.
	해병대 교육훈련단	기관 주의	의무실 의약품 시효 관리 소홀	의무대는 시효가 각각 '21.7.31.(4개), '21.10.31.(5개), '21.12.31.(5개), '22.3.31.(5개) 등 시효기간 경과에도 폐기하지 않음	2022.7.5.
2022년 1차 국직부대 종합감사	**국방대학교**	기관 경고	시효 경과 및 시효 임박 의약품 관리 미흡	근무지원단은 시효 경과 된 의약품은 폐기처리하고, 시효 임박한 의약품은 관리전환 또는 신품으로 교환하도록 "개선"조치	2022.9.13.
2023년 설 명절 공직기강 감사	**국군 의무사령부**	주의	약제과 시효 초과 의약품 관리 소홀	국방부 「의무물자 보급관리 업무 지시」, 「의무사령부규정 400 의무물자 보급 규정」등의 준수를 소홀히 한 관련자"주의" 조치	2023.2.17.
	해군 잠수함 사령부	기관 경고	의무대 의약품 시효 관리 소홀	'의무대'의 의약품 시효 관리 소홀	2023.2.17.
2023년 해병대사령부 종합감사	**해병대 사령부**	기관 경고/ 시정	의약품 계약 및 백신 관리 부적정	'의무대'의 미사용 예상 백신을 반납·관리전환 등 별도 조치없이 폐기 처분 및 시효 임박(3개월) 백신 수령하여 폐기 처분 (의약품계약시 교환조건을 반영하도록 예하부대 강조)	2023.8.25.
	제6해병 여단	기관 경고	의약품 계약 및 백신 관리 부적정	'제6의무중대'의 미사용 예상 백신을 반납·관리전환 등 별도 조치없이 폐기 처분 및 시효 임박(3개월) 백신 수령하여 폐기 처분	2023.8.25

자료: 국방부

○ 특히 2021년 해군 해양의료원, **2023년 국군의무사령부** 등 군 의무전문 부대에서도 의약품 관리 소홀이 지적됐는데, 이는 장병들을 의약품 부작용에 노출시키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국방부는 각급부대의 의약품 관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각 급 부대에 전파할 필요가 있음.

(8) 의무시설개선(2231-305): 의무시설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의무시설개선(2231-305)은 각급 부대의 의무대 등 의무시설을 신축,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 시설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520억 7,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07억 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27억 8,100만원 중 426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165억 3,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6억 1,4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의무시설개선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의무시설개선	52,079	10,702	-	62,781	42,635	16,532	3,614	46,524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주요 사업들의 집행부진에 따라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2022년** 및 **2023년** 연이어 '**미흡**' 평가를 받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시정요구사항**으로 "국방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무시설 개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어 집행부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주의)을 받은 바 있음.

그런데, 2023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022년과 거의 유사한 67.9%로 여전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의무시설개선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24,622	21,122	5,655	△36	26,740	24,707	116.9	92.3	1,603	430
2021	19,041	19,041	1,603	2,010	22,654	20,002	105	88.2	1,917	735
2022	45,534	45,534	1,917	△127	47,324	32,078	70.4	**67.8**	10,702	4,544
2023	52,079	52,079	10,702	-	62,781	42,635	81.9	**67.9**	16,532	3,614
2024	46,524	46,524	16,532	-	63,055	-	-	-	-	

자료: 국방부

○ 2023년 의무시설개선 사업 총 22건 중 특별히 이월 또는 불용이 과다한 6건은 다음과 같음.

우선, **육군 53사단 의무대 신축 등 3건**은 당초 2023년 완공예정이었으나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2024년으로 연장되었는데 2024년 6월 현재까지도 이월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으로, 특히 **국군외상센터 헬리포드 개선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임.

[2023년 준공예정이었으나 연기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① 육군 53사단 의무대 신축(2021~2023) : 총사업비 65억 2,8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198	-	-	198	92	46.5	76	-
2022	2,167	76	-	2,243	1,574	70.2	272	397
2023	4,163	272	△1,021	3,414	61	1.8	3,180	173
2024.6	-	3,180	-	3,180	1,668	52.5		
집행부진 사유	해운대구청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 미완료**로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2023년 이월 예산(3,180백만원)으로 2024년 준공 예정							

② 육군 31사단 의무대 신축(2021~2023) : 총사업비 59억 1,7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206	-	-	206	100	48.5	-	106
2022	1,748	-	-	1,748	1,381	79.0	324	43
2023	3,963	324	267	4,554	2,777	61.0	1,628	149
2024.6	-	1,628	-	1,628	1,207	74.1		
집행부진 사유	**감리용역 계약체결 지연**, 공사부지 내 **전신주 이설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2023년 이월 예산(1,628백만원)으로 2024년 준공 예정							

③ 국군외상센터 헬리포드 개선(2022~2023) : 총사업비 24억 2,9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154	-	-	154	72	46.8	10	72
2023	2,275	10	△157	2,127	80	3.8	1,879	168
2024.6	-	1,879	-	1,879	-	0.0		
집행부진 사유	헬리패드 **특허공법 심의** 및 기존 건축물 **구조안전성 검토** 등으로 사업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으며, 2023년 이월 예산(1,879백만원)으로 2024년 준공 예정							

자료: 국방부

다음,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진료시설 증·개축**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지연이 예상되어 2023년 예산 20억원을 **계룡대 지구병원 신축**으로 조정하고, 2024년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연부액을 조정**했는데, 이같은 연부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집행률은 55.9%, 2024년 6월 기준 집행률은 50.1%에 그치고 있어 기대했던 집행률 제고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음.

[2023년 중 연부액 조정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①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진료시설 증·개축(2022~2025) : 총사업비 120억 1,2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320	-	-	320	320	100.0	-	-
2023	5,226	-	△2,000	3,226	1,804	55.9	1,243	180
2024.6	2,673	1,243	2,000	5,916	2,963	50.1		
2025(안)	3,793							
집행부진 사유	사업계획 변경으로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추가 행정소요 발생으로 사업 지연됨에 따라, **"계룡대 지구병원 신축" 사업과의 연부액 조정(±20억원)**							

② 계룡대 지구병원 신축(2021~2024) : 총사업비 119억 5,3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1	280	-	-	280	138	49.3	142	-
2022	3,020	142	-	3,163	1,912	60.4	950	301
2023	4,265	950	2,000	7,215	5,470	75.8	1,434	310
2024.6	4,387	1,434	△2,000	3,821	3,762	98.5		
집행부진 사유	사업 종료기간이 2024년 상반기인 점을 고려하여 **2023년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진료시설 증·개축" 사업과의 연부액 조정(±20억원)**							

자료: 국방부

마지막으로, **해병 6여단 의무대 신축**은 2022년 설계 계약 체결 이후 2023년 상반기 중 규모 축소 설계,[31] 별도사업인 의무대 창고 사업과의 통합집행 결정,[32] 2023년 6월 설계가 90% 완료된 상황에서 설계 일시중지 후 **방폭설계 필요성 재검토**[33] 등 면밀하지 못한 사업집행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었음.

[설계변경 등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① 해병 6여단 의무대 신축(2022~2024) : 총사업비 100억 1,800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2	281	-	-	281	281	100.0	-	-
2023	2,629	-	△6	2,623	1,378	52.5	1,175	70
2024.6	7,108	1,175	-	8,283	3,282	39.6		
집행부진 사유	설계 진행 과정에서 **규모 변경**, **방폭설계 필요성 재검토** 등에 따라 2023년도 공사비 등 1,175백만원을 2024년도로 이월							

자료: 국방부

31) 2023년 2월, 당시 설계 기준 **설계사가 총사업비 확대 필요성(38.5억원)을 제기**했으나 예산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3월, **규모 축소 설계를 추진**함. 그러나 국방부 「국방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임의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설계 규모 변경 과정 자체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음.

32) **의무대 창고**는 '일반시설개선(2533-302)' 사업(28억 300만원)에 속한 사업인데, 의무대가 활용하는 시설물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대 신축사업과 통합 집행하기로 결정함.

33) **2022년 예산편성 당시**, 해병대는 부지 및 주변 지형을 감안할 때 **별도의 방폭설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자체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 6월** 방폭설계에 대한 외부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시설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해당 시점에서 재검토**함에 따라 사업지연이 발생함.

○ 종합하면,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며, 2023년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의 경우 사전·사후 절차 지연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와 각 군은 향후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관리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9) 병 내일준비지원(2242-304): 불합리한 예산 과다편성에 따른 불용 발생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병 내일준비지원(2242-304)은 의무복무 기간(24개월 한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전역(소집해제)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6,584억 2,100만원 중 5,014억원이 집행되고, 1,570억 2,1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병 내일준비 지원	658,421	-	-	658,421	501,400	-	157,021	1,019,10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월급 200만원'** 수준 지원 확대 계획에 따라 병사가 연도별로 증가하는 납입한도액까지 납입할 경우 전역시 지원금을 지급받는 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2025년이 되면 병사가 월 최대납입액 55만원을 납입할 경우 전역시 지원금 월별환산액과 봉급을 합칠 경우 205만원에 이르게 됨.

[병 내일준비적금 및 봉급 현황(2022~2025년)]

(단위: 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액	40	40	40	55
전역시 지원금(최대납입시)	349.2	600	810	990
전역시 지원금 월별환산액 (최대납입시)(A)	14.1	30	40	55
병 봉급(병장기준)(B)	67.6	100	125	150
합계(A+B)	**81.7**	**130**	**165**	**205**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은 사업개시연도인 2022년 병사들의 가입 저조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41.3%에 그쳤는데, 2023년의 경우에도 76.2%만 집행되어 **1,570억 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국방부에 따르면, 집행부진은 다음 5가지 사유에서 기인함.

첫째, 2023년 **예산 편성**시 '**적금 가입률 95%, 납입금액 4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2023년 중 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인 '2021년 5월~2022년 5월 입대자'의 적금 가입률과 납입금액[34]이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였음.

둘째, 2023년 중 **중도해지**(7,330명, 약 290억원), 조기전역(1,632명, 약 55억원), 신분전환[35](1,983명, 약 50억원) 등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불용이 약 395억원 발생함.

셋째, **2023년 12월 전역자**의 경우 2024년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애초에 불가능**하나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약 490억원의 불용이 발생함.

넷째, 전환복무자[36] 대상 예산 편성시 전역 예상인원 과다 편성(편성 1,311명, 집행 48명)으로 약 31억원의 불용이 발생함.

다섯째, 실제 지급 절차에서 일별 또는 월별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분기별로만 지급하고 있는 것에 따른 불용 및 대상자가 전역 후 신청을 지연함에 따른 불용 등도 발생함.

---

34) 국방부는 병 내일준비적금과 관련하여 월별 통계가 아닌 연도별 통계만 관리하고 있음. 연도별 통계를 보면 **2021년 가입률 77.8%, 평균 납입액 29만원, 2022년 가입률 95%, 평균 납입액 37만원**임.
35)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
36)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복무하는 제도

○ 이같은 사유를 보면, ① 당시 입대자의 병장 기준 봉급이 60.8~67.6만원임을 고려할 때 95%가 가입하고 최대 납입액인 40만원을 납입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인 가정인 점, ② 지원금 규모도 2023년 이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미가입 또는 중도해지 유인이 높았다는 점, ③ 12월 전역자에 대한 집행 불능 또는 지연 신청자 발생 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특히, ④ 국회 예산심사 시점인 **2022년 중후반에는 당시의 낮은 가입률과 평균 납입액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방부는 2023년 예산 편성 시부터 과다편성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사유없이 매우 높은 수준의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 지급 시기를 고려한 예산편성, 적금 해지 지연자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홍보 강화, 온라인 가입 및 해지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제도 구축 등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처럼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형해화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10) 장비획득 단위사업(2331)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국방부의 사업 점검방안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장비획득 단위사업은 기동장비 등 정수 대비 부족장비를 확보하고 수명이 다한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6,493억 8,7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35억 5,000만원과 이·전용(감) 273억 3,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56억 700만원 중 5,661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737억 5,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56억 6,0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649,387	53,550	△27,330	675,607	566,197	73,750	35,660	575,107
기동장비 (2331-301)	259,365	6,969	1,638	267,972	254,223	12,303	1,446	249,410
화력장비 (2331-302)	25,797	3,079	△585	28,291	19,545	2,871	5,875	23,356
항공장비 (2331-303)	51,991	3,422	△9,032	46,381	34,779	9,608	1,994	38,255
함정장비 (2331-304)	46,765	6,716	△7,855	45,626	35,436	7,605	2,584	36,125
통신전자장비 (2331-305)	66,383	12,198	716	79,297	62,412	10,752	6,134	58,448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장비 (2331-306)	107,360	14,346	△1,836	119,870	95,502	15,298	9,070	84,339
특수장비 (2331-307)	21,845	120	△719	21,245	19,443	1,282	520	27,789
정밀측정장비 (2331-308)	14,295	1,375	△1,240	14,430	12,578	1,338	514	13,239
정비장비 (2331-309)	55,586	5,326	△8,418	52,494	32,278	12,693	7,523	44,14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2023년 동 단위사업의 사업취소 현황을 보면, 국방부는 총 129개 획득사업을 취소하였음.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정비장비 획득사업에서 33개 사업, 항공장비 획득사업에서 26개 사업이 각각 취소되었고 나머지 7개 획득사업에서 70개 사업이 취소되었음.

취소시기별로는 2023년 1분기 중에 37개 사업, 2분기 중에 23개 사업, 3분기 중에 19개 사업, 4분기 중에 50개 사업이 각각 취소되었음.

○ 총 129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이들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던 예산 474억 2,600만원 중 133억 1,300만원은 이·전용 재원으로 사용되었고, 244억 1,000만원은 장비획득 단위사업의 획득 재원으로 사용

되었으며, 5,900만원은 장비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96억 4,4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3년 장비획득 단위사업 사업취소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취소 건수 및 2023년 편성 예산			취소 예산 활용	
	분기	건수	2023년 편성 예산	구분	금액
기동장비 (2331-301)	1분기	5	1,616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
	2분기	2	1,310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5,439
	3분기	4	1,966	불용	775
	4분기	4	1,322	기타	-
	소계	15	6,214	합계	6,214
화력장비 (2331-302)	1분기	-	-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411
	2분기	-	-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272
	3분기	4	854	불용	1,168
	4분기	7	997	기타	-
	합계	11	1,851	합계	1,851
항공장비 (2331-303)	1분기	12	255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4,105
	2분기	4	3,904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3,958
	3분기	3	3,766	불용	30
	4분기	7	168	기타	-
	소계	26	8,093	합계	8,093
함정장비 (2331-304)	1분기	1	128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3,450
	2분기	2	2,008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1,301
	3분기	2	1,925	불용	1,675
	4분기	6	2,365	기타	-
	소계	11	6,426	합계	6,426
통신전자장비 (2331-305)	1분기	6	2,900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1,243
	2분기	2	240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2,969
	3분기	-	-	불용	650
	4분기	3	1,781	기타(장비관련 소송비용)	59
	소계	11	4,921	합계	4,921
일반장비 (2331-306)	1분기	3	62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1,319
	2분기	2	147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2,440

구분	취소 건수 및 2023년 편성 예산			취소 예산 활용	
	분기	건수	2023년 편성 예산	구분	금액
	3분기	2	1,319	불용	2,193
	4분기	7	4,424	기타	-
	소계	11	5,952	합계	5,952
특수장비 (2331-307)	1분기	-	-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719
	2분기	4	719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
	3분기	-	-	불용	-
	4분기	-	-	기타	-
	소계	4	719	합계	719
정밀측정장비 (2331-308)	1분기	1	652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863
	2분기	1	326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505
	3분기	2	537	불용	147
	4분기	-	-	기타	-
	소계	4	1,515	합계	1,515
정비장비 (2331-309)	1분기	9	4,957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1,203
	2분기	6	3,961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7,526
	3분기	2	167	불용	3,006
	4분기	16	2,650	기타	-
	소계	33	11,735	합계	11,735
합계	1분기	37	10,570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13,313
	2분기	23	12,615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24,410
	3분기	19	10,534	불용	9,644
	4분기	50	13,707	기타(장비관련 소송비용)	59
	합계	129	47,426	합계	47,426

자료: 국방부

○ 그런데 2023년에 취소된 사업 중에는 시장조사 실시시기가 부적정하여 사업이 취소되거나,

관련 계획이 변경되어 2022년 중에 사실상 취소된 사업예산이 별다른 여과장치 없이 편성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여 취소된 예산이 134억 5,000만원이었음.

취소된 사업예산 중 25억 100만원은 이용재원으로 사용되었고, 96억 6,400만원은 장비획득 단위사업의 획득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12억 8,500만원은 불용되었음.

[세부사업별 사업취소 사례]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취소 사례	예산편성건명	사업취소 예산	취소예산 사용	
				금액	사용내역
기동장비 (2331-301)	시장조사 실시 시기 부적정으로 사업취소	폭발물운반용 트레일러 (육군 '22년도 추경 감액건)	1,213	1,213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2022년 중 계획변경으로 사실상 사업이 취소된 예산 편성	트럭(패널형 1톤탑차)	267	267	불용
항공장비 (2331-303)	시장조사 범위 미흡으로 사업취소	대형 항공기 자동화 세척장비	1,885	1,885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함정장비 (2331-304)	작전부대 운용여건 등을 미고려한 채 장비획득 예산 편성 후 사업취소	고속단정 15인승(공기팽창 매트형)	1,183	1,023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160	불용
통신전자장비(2331-305)	2022년 중 미탑재 결정된 장비획득 예산 편성	항만경비정 음탐기	616	616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정비장비 (2331-309)	단종으로 납품 불가한 장비획득 예산편성	레이더 정비장비(이동식) 등 8종	4,382	3,524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858	불용
	2022년 중 소요부대가 구매취소 건의한 장비획득 예산편성	기어박스 시험기 등 4종	3,904	3,904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합계			13,450	2,501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
				9,664	장비획득 단위사업 획득 재원으로 활용
				1,285	불용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세부 내용은 세부사업별 검토보고 참조)

○ 기획재정부는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세·세외수입 등의 세입여건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제기된 새로운 국정과제 이행을 재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2023년 4대 재정혁신[37] 과제의 하나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제시하면서 국방분야에 대하여는 지출효율화의 일환으로 사업 우선순위 점검 등을 통한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38]하도록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

○ 따라서 국방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점검하여 사업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검증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투입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37)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4대 재정혁신의 내용

□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 4대 재정혁신 추진
❶ (재정지출 재구조화)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른 투자 재조정, 의무지출 관련 근본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출을 전면 재구조화
❷ (재량지출 절감)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경직성 경비 등 제외 모든 재량지출의 10% 수준 절감
❸ (재원관리 강화) 공공서비스 제공에 국유재산·민간투자 활용을 확대하고, 재정준칙 제도화 등 중기재정관리 강화
❹ (열린 재정) 예산편성 과정의 민주성·투명성·개방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 열린 재정 실현
⇨ 4대 중점투자 및 4대 재정혁신('4+4 전략') 전면 추진

38)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중 국방분야 지출효율화 계획의 내용

(9) 국방 분야
2. 지출 효율화 계획
□ 상비병력 감축과 연계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부진·성과미흡 사업 구조조정, 사업 우선순위 점검을 통한 지출 재구조화 실시
□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에서의 물가상승률 과다 반영 사례를 개선하는 등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 강화

2023회계연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사업이 취소된 것은 국방부가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점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1) 기동장비(2331-301) : 시장조사 실시 시기 부적정으로 사업취소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동장비(2331-301)는 표준 및 상용차량의 정수 대비 부족 물량을 확보하고 수명초과 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2,593억 6,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9억 6,900만원과 이·전용 등(증) 16억 3,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79억 7,200만원 중 2,542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123억 3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억 4,6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기동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동장비	259,365	6,969	1,638	267,972	254,223	12,303	1,446	249,41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시장조사 실시 시기 부적정으로 사업취소

○ 국방부는 2023년에 폭발물운반용 트레일러 획득사업 예산 1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3년도 폭발물운반용 트레일러 획득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폭발물운반용 트레일러 (육군 '22년도 추경 감액건)	1,213	-	△1,213	-	-	-	-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3년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실시한 시장조사 결과 국내·외에 조달이 가능한 업체가 부재함에 따라 2023년 5월 30일에 동 사업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취소된 동 사업예산 12억 1,300만원은 편성목적과 다른 용처인 2.5톤 부식차 등 12종의 단가상승에 따른 계약액 부족분의 충당 재원으로 집행되었음.

[폭발물운반용 트레일러 획득사업 취소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건명	편성 예산액	사업취소 사유	사업취소 일자	취소예산 사용		
				금액	일자	사용내역
폭발물운반용 트레일러 (육군 '22년도 추경 감액건)	1,213	- '23년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시장조사 결과 국내·외 조달 업체 부재 및 조달 제한에 따른 사업취소	'23.5.30.	1,213	'23.06.09.	2.5톤부식차 등 12종 단가상승에 따른 계약액 부족 지원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의 취소 경과를 살펴 보면, 국방부(육군)는 폭발물운반용 트레일러용 구매요구서[39]를 개정하기 위한 시장조사를 2023년 4월 26일에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의뢰함.

이후 2023년 5월 24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시장조사 결과 조사된 트레일러는 모두 국외제조이고,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장비는 식별되지 않아 군 요구성능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육군)에 통보함.

국방부(육군)는 이를 근거로 2023년 5월 30일에 ‘군 요구성능에 적합한 장비 없음’을 사유로 동 사업을 취소한 것임.

○ 그런데 폭발물운반용 트레일러 획득사업은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2023년 취소사유와 사실상 동일한 사유(국내 생산업체 부재 및 해외조달시 연내납품 제한)로 감액된 사업이었음.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감액사업 산출근거]

① 사고이월 예상되는 사업 취소('23년 편성 보장 필요) : ('22) 19,428백만원 → ('22추경) 168백만원(타차종 단가인상분 활용), 19,260백만원 감액 - (산출) **트레일러(폭발물 운반용) 13대 1,210백만원(국내 생산업체 부재, 해외조달 시 연내납품 제한 예상) 등**

자료: 국방부

39) 민수 상용품 등의 조달을 위하여 해당 품목의 주요 기능, 성능 또는 필수 요구 사항을 서술하여 조달에 활용하는 기술문서를 말함.

이처럼 동 장비 획득사업은 조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동 장비용 구매요구서를 개정하기 위한 시장조사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임.

○ 현행 육군 「구매요구서 관리 예규」는 구매요구서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동 사례의 경우 2022년 12월말)까지 작성토록 규정하면서 구매요구서를 작성(제·개정)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부(육군)가 동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장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획득사업 예산이 편성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회계연도 개시 이후 시장조사를 실시한 국방부(육군)의 업무수행 방식은 부적정하였다 할 것임.

[구매요구서 작성 절차]

① 작성 의뢰	⇨	② 기본 제원 작성	⇨	③ **시장 조사**	⇨	④ 구매 요구서(안) 작성	⇨	⑤ 기술 검토	⇨	⑥ **구매 요구서(안) 확정심의**	⇨	⑦ 조달 적용

자료: 국방부

○ 향후 국방부는 조달이 불투명한 장비용 구매요구서를 개정하는 경우 육군 「구매요구서 관리 예규」에 따라 시장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② 2022년 중 계획변경으로 사실상 사업이 취소된 예산 편성 부적정

○ 국방부는 2023년에 트럭(패널형 1톤탑차) 획득사업 예산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3년도 트럭(패널형 1톤탑차) 획득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트럭(패널형 1톤탑차)	267	-	-	-	-	-	267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부(육군)는 '22년 물류혁신추진계획'이 변경[기존(1톤 탑차, 3.5톤, 5톤, 14톤)→변경(3.5톤, 5톤, 14톤)]됨에 따라 2023년 1월 18일에 1톤 탑차 획득사업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취소된 동 사업 예산 2억 6,700만원은 전액 불용되었음.

[트럭(패널형 1톤탑차) 획득사업 취소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건명	편성 예산액	사업취소 사유	사업취소 일자	취소예산 사용		
				금액	일자	사용내역
트럭(패널형 1톤탑차)	267	- '22년 물류혁신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취소 * 기존(1톤탑차, 3.5톤, 5톤, 14톤)→변경(3.5톤, 5톤, 14톤)	'23.1.18	267	'23.12.31	불용

자료: 국방부

○ 그런데 ‘22년 물류혁신추진계획’은 2022년 8월 18일에 변경되어 패널형 1톤 탑차의 획득사업은 계획변경 시점에서 사실상 취소됨.

따라서 패널형 1톤 탑차의 사업예산은 편성하더라도 편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정부 예산편성 단계 또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동 장비 예산을 삭감하였어야 함.

○ 이에 대해 국방부(육군)는 ‘22년 물류혁신추진계획’이 변경된 시점(’22.8.18.)에는 이미 기획재정부에서 국방예산 1단계 심의절차가 마무리된 단계이었기 때문에, 동 장비 예산을 개별적으로 삭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제한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함.

○ 그러나 물류혁신추진계획이 변경된 시점(’22.8.18.)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이전이었고, 설혹 정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삭감하지 못하였더라도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얼마든지 삭감이 가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국방부(육군)의 설명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워 보임.

[2023년 예산 편성관련 주요 일정]

구분	'22년 물류혁신추진계획 변경일	예산안 정부 제출	국방위 예산안 의결
일자	2022. 8. 18.	2022. 9. 2.	2022.11.4.

국방부가 계획의 변경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출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점검을 통한 지출 재구조화[40]를 실시토록 한 정부의 2023년 예산편성 기조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2023년 예산 편성단계에서 추진 개연성이 있었던 사업의 예산 편성을 제한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한 부적절한 예산편성임.

향후 국방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40)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 2023년 4대 재정혁신과제의 하나로 재정지출 재구조화를 제시하면서 국방분야에 대하여는 지출효율화계획의 일환으로 사업 우선순위 점검 등을 통한 지출 재구조화를 실시토록 한 바 있음.

(12) 항공장비(2331-303) : 시장조사 범위 미흡으로 사업취소 부적정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항공장비(2331-303)는 항공장비 정비지원 및 정비점검을 위한 작전 지원장비 획득과 전·평시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수명초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519억 9,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4억 2,200만원과 이·전용 등(감) 90억 3,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63억 8,100만원 중 347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96억 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 9,4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항공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항공장비	51,991	3,422	△9,032	46,381	34,779	9,608	1,994	38,25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세부사업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평가를 받아 2025년 예산안 편성시 지출구조조정[41]이 예정된 사업으로,

국방부는 동 세부사업 중 2023년에 대형 항공기 자동화 세척장비 획득사업 예산 1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3년도 대형 항공기 자동화 세척장비 획득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대형 항공기 자동화 세척장비	1,885	-	△1,885	-	-	-	-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부(공군)는 적격심사 기준 상의 납품실적 적용이 제한되었고,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납기까지 장시간(약 27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취소된 동 사업 예산 18억 8,500만원은 편성목적과 다른 용처인 공공요금 부족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전액 이용되었음.

41) ○ 지출구조조정 사유(집행률 부진) : 항공장비 특성상 해외도입 장비가 대다수로 획득 기간 장기소요 및 국제 정세에 민감하여 96억원의 이월이 발생하여 집행률이 저조함.
○ 지출구조조정 금액: 2024년 예산(382억) 대비 3.0%(1,138백만원) 삭감 예정임.

[대형 항공기 자동화 세척장비 획득사업 취소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건명	편성 예산액	사업취소 사유	사업취소 일자	취소예산 사용		
				금액	일자	사용내역
대형 항공기 자동화 세척장비	1,885	ㅇ적격심사 기준 (납품실적) 적용 제한 (최초 도입품목) 및 납기(270일) 고려 취소	'23.7.6	1,885	'23.10.10	공공요금 부족 재원 이용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의 취소경과를 살펴 보면, 동 장비는 공군에 최초도입되는 품목으로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는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의거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음.

그러나, 국방부(국군재정관리단)가 입찰공고 준비를 위해 동 장비에 대한 원가 계산 중 동 장비가 국내에 도입된 실적이 없는 장비라는 사실을 확인함.

이에 국방부(공군)는 동 훈령 제9조(낙찰자 결정)[42]에 의거, 100점 기준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하나, 적격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 항목의 배점한도가 10점으로 규정되어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는 등[43]의 사유로 입찰공고의 실익이 없어 동 사업을 취소한 것임.[44]

---

42)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43) 복수견적 확보 불가에 따른 원가산정이 불가하였고, 업체가 제출(견적서)한 소요일수(270일)는 공

[동 훈령 상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중 납품실적 사항]

(단위: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제조	구매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납품실적	①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②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10	미적용

○ 결국, 동 사업은 예산집행단계에서 유사장비가 국내에 도입된 실적이 없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는데, 동 사업과 같이 국내 납품실적이 낙찰자 선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에는 예산편성단계에서 이에 관한 시장조사가 충실히 실시될 필요가 있었음.

○ 그런데 국방부(공군)는 동 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시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업체로부터 동 장비의 납품이 가능하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고, 기존에 납품실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하지 아니함.

이처럼 국방부(공군)의 시장조사 범위가 협소하게 실시된 점이 동 사업이 취소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점을 고려할 때 국방부의 시장조사 방식은 미흡하였다 할 것임.

군의 요구시기내 납기 준수가 불가하였던 점도 동 사업을 취소한 배경이 되었음.

44) 한편,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7조에 따르면 국내구매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외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방부는 해외 조달원 존재여부 확인 등을 위한 행정기간이 부족하여 국외구매도 추진하지 못하였음.

○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7조[45]에 따르면 각 군은 구매요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원에 시장조사에 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향후 국방부(공군)는 납품실적이 낙찰자 선정여부를 좌우하는 장비의 획득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 시장조사의 범위에 납품실적 존재여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원인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획득 업무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음.

45)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27조(구매) ④ 각 군은 군수품의 원활한 구매를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격(구매요구서)을 작성한다. 이때 시장조사, 품질보증 사항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를 국기연(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에 요청할 수 있다.

(13) 함정장비(2331-304): 작전부대 운용여건 등을 미고려한 채 장비획득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부적정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함정장비(2331-304)는 함정장비에 대한 편제 대비 부족소요(발전기 M/F 장비 등) 및 수명주기 초과장비(냉난방 장치, 오수처리장치, 주파수변환기 등)등 함정 임무 필수장비와 잠수기세트 등 해상 구조장비 및 수명초과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467억 6,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7억 1,600만원과 이·전용 등(감) 78억 5,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56억 2,600만원 중 354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76억 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5억 8,4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함정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함정장비	46,765	6,716	△7,855	45,626	35,437	7,605	2,584	36,12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2023년에 고속단정 15인승(공기팽창 매트형) 획득사업 예산 1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3년도 고속단정 15인승(공기팽창 매트형) 획득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고속단정 15인승(공기팽창 매트형)	1,183	-	△1,023	-	-	-	160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부(육군)는 작전부대의 운용 여건과 작전 측면에서 장비 운용이 제한되어 2023년 5월 3일에 동 사업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취소된 동 사업 예산 11억 8,300만원은 편성목적과 다른 용처인 일반장비 등의 구매재원으로 10억 2,300만원이 조정 집행되었고, 나머지 1억 6,000만원은 불용되었음.

[고속단정 15인승(공기팽창 매트형) 획득사업 취소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건명	편성 예산액	사업취소 사유	사업취소 일자	취소예산 사용		
				금액	일자	사용내역
고속단정 15인승(공기팽창 매트형)	1,183	- 작전부대 운용 여건 및 작전 측면 고려 장비 운용 제한으로 획득 소요 소멸로 취소	'23.05.03	361	2023.10.26	일반장비(리치트럭 등) 구매재원 지원
				178	2023.11.28	일반장비(승차식잔디깎기 등) 구매재원 지원
				484	2023.11.28	함정장비(육경정추진기 등) 재원 지원
				160	2023.12.31	불용
합 계				1,183		

자료: 국방부

○ 그런데 국방부(육군)가 취소의 원인으로 제시한 작전부대의 운용 여건과 작전 측면에서 장비운용이 제한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고속단정을 실제로 운용할 작전부대에는 동 장비를 운용할 인원 및 해당 인원에 대한 생활공간과 정비시설이 없는 등 운용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작전 측면에서도 인접부대에서 강상 수색을 시행 중이므로 추가 장비 획득이 불필요하였음.

[작전부대 운용 여건 및 작전 측면에서 장비 운용 제한 사항]

· 운용 여건: 장비를 운용할 인원 및 해당 인원에 대한 생활공간과 정비시설이 없으며, 퇴적물(뻘)로 인해 선착장을 설치할 수 없음
· 작전 측면: 운용부대(0사단) 책임 지역은 1달 기준 1주 이내만 작전이 가능하며, 인접부대(0사단)에서 강상 수색을 시행 중이므로 추가 장비 불필요

자료: 국방부

○ 즉, 국방부(육군)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획득장비를 실제로 운영할 작전부대의 운영 여건 등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예산을 편성한 후 사후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사업을 취소한 것임.

[예산편성 및 사업취소 주요경과]

○ '23~'27년 중기계획상 '23년 반영 사업을 기준으로 편제보강 사업으로 예산편성 ○ 조달요구 전 해당부대에 구매요구서 제원 수정 소요 여부, 필요성 유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운영 여건 및 작전측면의 제한사항 인지 ○ 육본 지시에 의거 0군단 재검토 결과 '불필요 의견'에 따라 사업 취소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운영여건과 작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된 편제로 인식하였으며, 해당 요소를 보급 전 고려하여야 하는 특수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 이와 같이 국방부가 2023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미흡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국방부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46].

46) 이에 대해 국방부는 편제 반영 단계에서부터 장비운영에 필요한 여건(인원, 시설 등) 상태와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육본 및 군수사는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전 장비별 특성에 따른 고려요소에 대해 부대별 재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함.

(14) 통신전자장비(2331-305): 2022년 중 미탑재 결정된 장비획득 예산편성 부적정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통신전자장비(2331-305)는 개인전투장비(청력보호헤드셋, 피아식별용IR), 대테러장비(주파수교란장비, 벽투시레이더 등), 경계용 CCTV, 무선통신기, 방송용앰프 등 통신전자장비를 획득하고 수명초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663억 8,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1억 9,800만원과 이·전용 등(증) 7억 1,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92억 9,700만원 중 624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107억 5,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1억 3,4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통신전자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통신전자장비	66,383	12,198	716	79,297	62,412	10,752	6,134	58,44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2023년에 항만경비정 음탐기 획득사업 예산 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3년도 항만경비정 음탐기 획득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항만경비정 음탐기	616	-	△616	-	-	-	-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부(해군)는 항만경비정-Ⅱ의 신규 소요를 결정하면서 노후 음탐기도 교체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3년 1월 20일에 동 사업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취소된 동 사업 예산 6억 1,600만원은 편성목적과 다른 용처인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액 이용되었음.

[항만경비정 음탐기 획득사업 취소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건명	편성 예산액	사업취소 사유	사업취소 일자	해지 또는 취소예산 사용		
				금액	일자	사용내역
항만경비정 음탐기	616	- 항만경비정-Ⅱ 전력화 계획(음탐기 미탑재)에 따라 음탐기 교체대상인 기존 항만경비정에 대한 음탐기 교체사업도 취소	'23.01.20	616	'23.09.15	방위비 분담금

자료: 국방부

○ 그런데 노후 음탐기 미교체의 원인이 된 항만경비정-Ⅱ의 신규 소요 결정은 2022년 7월 27일 345차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되었고, 항만경비정-Ⅱ의 신규 소요 결정 시 탑재장비 중 음탐기는 항만방호구역이 저수심 등의 환경임을 고려해 미탑재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기존 항만경비정의 노후된 음탐기도 교체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따라서 항만경비정 음탐기 사업예산은 편성하더라도 편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는 정부 예산편성 단계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동 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초 예산편성(안) 작성 시점 이후 변경되는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 이와 같이 국방부가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국방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15) 정비장비(2331-309) : 단종으로 납품 불가한 장비획득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부적정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정비장비(2331-309)는 전차, 유도탄 정비장비, 소음·진동 측정장비 등 각종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장비의 정비를 지원하는 정비장비 획득 및 수명초과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555억 8,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3억 2,600만원과 이·전용 등(감) 84억 1,8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4억 9,400만원 중 322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126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5억 2,3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정비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정비장비	55,586	5,326	△8,418	52,494	32,278	12,693	7,523	44,14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단종으로 납품 불가한 장비획득 예산 편성 후 사업취소 부적정

○ 동 세부사업은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평가를 받아 2025년 예산안 편성시 지출구조조정[47]이 예정된 사업으로,

국방부는 동 세부사업 중 2023년에 레이더 정비장비(이동식) 등 8종의 획득사업 예산 4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3년도 레이더 정비장비(이동식) 등 8종 획득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레이더 정비장비(이동식)	97	-	△97	-	-	-	-
비호복합 포탑정비장비	117	-	△117	-	-	-	-
시험세트(전자계통용)	120	-	△120	-	-	-	-
시험세트(안테나,정렬용)	343	-	△343	-	-	-	-
안테나 정비장비 세트	140	-	△140	-	-	-	-
정비 장비 세트(다목적용)	567	-	△567	-	-	-	-
정비쉘터조립체(사격통제용,트럭용)	2,927	-	△2,069	858	-	-	858
진행파관진폭부 검사키트(휴대용)	71	-	△71	-	-	-	-
합계	4,382	-	△3,524	858	-	-	858

자료: 국방부

47) ○ 지출구조조정 사유(집행률 부진) : 장비특성상 다품종 소량 품목이 대부분으로 '23년 계약 추진 간 부품단종, 업체 협상 결렬 등의 사업취소,납품지체, 계약체결 지연 등으로 이월액(126억원)과 불용액(75억원)이 증가하여 집행률이 저조함.
○ 지출구조조정 금액: 2024년 예산(441억 4,600만원) 대비 31.8%(140억 7,500만원) 삭감 예정임.

○ 이에 대해 국방부(육군)는 레이더 정비장비(이동식) 등 8종의 장비가 단종됨에 따라 2023년 3월 6일에 동 사업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취소된 동 사업 예산 35억 2,400만원은 편성목적과 다른 용처인 통신장비 구매재원 등으로 조정되어 집행되었고, 나머지 8억 5,800만원은 불용되었음.

[레이더 정비장비(이동식) 등 8종 획득사업 취소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건명	편성 예산액	사업취소 사유	사업취소 일자	취소예산 사용		
				금액	일자	사용내역
레이더 정비장비(이동식)	97	단종으로 인한 업체제작 불가로 사업취소	'23.03.06	97	2023.10.16	통신장비 구매 재원
비호복합 포탑정비장비	117	단종으로 인한 업체제작 불가로 사업취소	'23.03.06	117	2023.09.26	화력정비장비 구매재원
시험세트(전자계통용)	120	단종으로 인한 업체제작 불가로 사업취소	'23.03.06	38	2023.10.19.	항공정비장비 구매재원
				82	2023.10.25	화력정비장비 구매재원
시험세트(안테나, 정렬용)	343	단종으로 인한 업체제작 불가로 사업취소	'23.03.06	343	2023.10.16	통신장비 구매재원
안테나 정비장비 세트	140	단종으로 인한 업체제작 불가로 사업취소	'23.03.06	56	2023.10.25	차량,통신장비 구매재원
				48	2023.11.09	항공정비장비 구매재원
				36	2023.10.27	통신장비 구매재원
정비 장비 세트(다목적용)	567	단종으로 인한 업체제작 불가로 사업취소	'23.03.06	567	2023.10.27	통신장비 구매재원

예산편성 건명	편성 예산액	사업취소 사유	사업취소 일자	취소예산 사용		
				금액	일자	사용내역
정비쉘터조립체(사격통제용,트럭용)	2,927	단종으로 인한 업체제작 불가로 사업취소	‘23.03.06	1,089	2023.09.06	차량 구매재원
				980	2023.10.16	통신장비 구매재원
				858	2023.12.31	불용
진행파관진폭부 검사키트 (휴대용)	71	단종으로 인한 업체제작 불가로 사업취소	‘23.03.06	71	‘23.09.26	화력정비장비 구매재원
합계				4,382		

자료: 국방부

○ 그런데 국방부(육군)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편성 중이었던 2022년 6월 국방부(육군)와 업체 간 검토회의에서 해당업체로부터 이들 장비들의 단종 사실과 함께 2023년 중에는 납품이 제한됨을 통보[48]받았음.

이들 장비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5호라목(「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49]에 의거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되던 품목으로 해당 업체(○○)이외 다른 업체의 생산 실적이 없어 대체 생산이 사실상 불가한 품목임.

48) 해당 업체는 2022년 6월 국방부(육군)와의 검토회의에서 2025년까지 대체장비를 연구개발 후 2026년 이후부터 납품이 가능하다고 국방부(육군)에 통보함.

4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레이더 정비장비 등 8품목의 최근 획득 실적]

연도	품목	구매수량	계약자	계약방식	수의계약근거
2006	레이더 정비장비,이동식	1대	○○	수의계약	제26조1항5호 라목
2014	비호복합 포탑정비장비	4대	상동	수의계약	제26조1항5호 라목
2014	시험세트, 전자계통용	5대	상동	수의계약	제26조1항5호 라목
2006	시험세트,안테나,정렬용	1대	상동	수의계약	제26조1항5호 라목
2006	안테나 정비장비 세트	1대	상동	수의계약	제26조1항5호 라목
2006	정비 장비 세트,다목적용	1대	상동	수의계약	제26조1항5호 라목
2006	정비쉘터조립체,사격통제용,트럭용	1대	상동	수의계약	제26조1항5호 라목
2006	진행파관진폭부 검사키트,휴대용	1대	상동	수의계약	제26조1항5호 라목

자료: 국방부

○ 이처럼 국방부(육군)는 2023회계년도 예산안이 편성 중이었던 2022년 6월에 이들 장비들의 단종으로 인해 2023년에는 납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동 장비들의 획득예산은 편성하더라도 편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육군)는 정부 예산편성 단계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동 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 이에 대해 국방부(육군)는 단종 확인 후 다른 생산업체 생산가능 여부 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해당품목은 최초 도입부터 주체계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확보하던 품목으로 다른 생산업체 확인이 제한되었고, 추가 생산업체 확인 불가 등 단종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사업을 취소하였다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미흡하였다고 설명함.

○ 이와 같이 국방부가 2023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국방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50].

50)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정비장비 품목의 경우, 소량 생산 및 조달주기가 장기 소요되는 장비특성을 고려하여 다년차 계약 확대 추진을 통해 단종상황 등 우발 사태에 의한 예산 편성 변동을 최소화하고, 생산업체와 지속적인 협력으로 조달상황을 최신화하며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예산 편성 변동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답변함.

② 2022년 중 소요부대가 구매취소 건의한 장비획득 예산편성 후 사업취소 부적정

○ 국방부는 2023년에 기어박스 시험기 4종의 획득사업 예산 3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음.

[2023년도 기어박스 시험기 등 4종 획득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어박스 시험기	900	-	△900	-	-	-	-
피치조절 작동시험기	544	-	△544	-	-	-	-
댐퍼시험기 시험장비	915	-	△915	-	-	-	-
엔진시동기 시험장비	1,545	-	△1,545	-	-	-	-
합계	3,904	-	△3,904	-	-	-	-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방기술연구소가 기어박스 시험기 등 4종의 구매요구서 작성이 제한됨을 통보함에 따라 2022년 5월 17일에 동 사업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취소된 동 사업 예산 39억 400만원은 편성목적과 다른 용처인 FMS 획득 부족예산 등으로 조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음.

[기어박스 시험기 등 4종 획득사업 취소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편성 건명	편성 예산액	사업취소 사유	사업취소 일자	취소예산 사용		
				금액	일자	사용내역
기어박스 시험기	900	○ 국기연 구매요구서 작성관련 검토결과 : 구매요구서 작성 제한(국기연군수기술 1팀-568(2022. 4. 18.) 「항공 정비장비 8품목」 구매요구서 작성 관련 검토결과 통보)	'22.05.17	552	'23.03.30	FMS 획득 부족예산 보전 (정지필 유니트)
				348	'23.12.19	FMS 획득 부족예산 보전 (동력 유닛)
피치조절 작동시험기	544		'22.05.17	307	'23.04.20	FMS 획득 부족예산 보전 (충전기 전자용)
				157	'23.12.19	FMS 획득 부족예산 보전 (동력 유닛)
				80	'23.01.26	FMS 획득 부족예산 보전 (정지필 유니트 등 2품목)
댐퍼시험기 시험장비	915	○ 국기연 구매요구서 작성관련 검토결과 : 구매요구서 작성 제한(국기연군수기술 1팀-568(2022. 4. 18.) 「항공 정비장비 8품목」 구매요구서 작성 관련 검토결과 통보)	'22.05.17	10	'23.04.20	'23년 현금배정 부족예산 보전 (오븐, 열건조용, 전기식 - 항공사)
				40	'23.10.10	'23년 정비장비 부족예산 보전 (FOD 청소차)
				865	'23.12.19	FMS 획득 부족예산 보전 (동력 유닛)
엔진시동기 시험장비	1,545		2022.05.17	1,545	2023.06.12	'23년 정비장비 부족예산 보전 (시험장비 진동 분석용)
합계				3,904		

자료: 국방부

○ 그런데 국방기술연구소는 2023년 예산안이 편성 중이었던 2022년 4월 18일에 기어박스 시험기의 경우 시험대상 기종의 도태 완료까지 장비유지비를 통해 지속 활용이 가능하여 신규 장비 도입의 필요성이 낮다는 등의 사유로 구매요구서 작성이 제한된다는 검토결과를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에 통보하였음.

[구매요구서 작성 관련 국방기술연구소 검토결과 주요 내용]

품 목	국기연 검토 결과	국기연 판단 사유
기어 박스 시험기	• 시험대상 기종의 도태 완료까지 장비유지비를 통해 지속 활용 • 신규 시험장비 도입 불필요 판단	• 신규 장비 도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피치조절 작동 시험기	• 작동시험기내 2개의 시스템 중 현재 사용 가능한 유압/전자 장비는 유지보수하고, 전기시험콘솔만 재구매 검토 • 원제작사 제품 획득 범위 재설정 필요 판단	• 국내·외 생산 가능 업체 조사 결과 원제작사 외 생산업체가 없어 경쟁조달 불가
댐퍼 시험기 시험장비	• UH-60 제작사(美, Sikorsky) 전용 Package 장비로 국내업체 통한 획득 제한 • 해외 구매 검토 필요	• 국내·외 생산 가능 업체 조사 결과 1개 업체만 생산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쟁조달 불가
엔진 시동기 시험기	• 장비 고장 발생 시 정비장비유지비로 조치 가능하므로 신규 시험장비 도입 불필요 • 신규 시험장비 도입 불필요 판단	• 국내·외 생산 가능 업체 조사 결과 원제작사 외 생산업체가 없어 경쟁조달 불가

자료: 국방부

○ 이후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는 2022년 4월 26일에 예하 소요부대에 이들 장비의 소요 재검토를 지시하였고, 예하 소요부대는 2022년 5월 11일에 고장 발생 시 정비 장비 유지비용을 통해 수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을 사유로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에 이들 장비의 구매취소를 건의하였음.

[예하 소요부대 구매취소 건의 내용]

- 고장 발생 시 정비 장비 유지비용 활용으로 수리 사용 가능
- 구매요구서 충족하는 2개 이상 공통제원 적용 가능 업체 제한
- 국내 생산 가능업체 없어 부대 구매 제한

자료: 국방부

○ 이처럼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이 편성 중이던 2022년 6월에 이들 장비의 구매요구서 작성이 제한되고 예하 소요부대도 구매취소를 건의하였으므로,

동 장비들의 획득예산은 편성하더라도 편성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국방부(육군군수사령부)는 정부 예산편성 단계나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동 예산을 삭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

○ 이에 대해 국방부(육군)는 소요부대의 구매취소 건의 사실을 2023년 예산이 편성된 후 인지하였고, 관련 사실이 국회 예산심의 단계 전에 보고되었다면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판단이 미흡하였다고 설명함.

○ 이와 같이 국방부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23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51]

51)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업취소 또는 예상시 상급부대 보고 등 적절한 조치는 당연한 업무절차이나 당시 실무자들의 판단 미흡이었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 및 육본-군수사 합동토의간 강조할 예정이며, 現 군수사 실무자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단위로 업무공유 및 추진방안 토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답변함.

(16) 수송활동(2336-301) : 이사화물임 현실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수송활동(2336-301)은 육로·철도·해상·항공수단으로 병력 및 군수장비·물자를 원활하게 수송하여 전·평시 군수지원태세 완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 1,210억 5,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4,300만원과 이·전용 등(증) 2억 9,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18억 9,800만원 중 1,20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7,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4,5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수송활동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수송활동	121,058	543	297	121,898	120,577	276	1,045	120,057
수송제요금	115,379	477	△427	115,429	114,164	247	1,018	114,422
수송활동지원	5,679	66	724	6,469	6,413	29	27	5,63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세부사업은 수송제요금 및 수송활동지원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송제요금 내역사업은 육로여객임, 철도여객임, 항공여객임 등 8개 하위사업으로 세분됨.

[2023년 수송요금 내역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금액(A)	집행금액(B)	집행률(B/A)
합계	115,379	114,164	98.9%
①육로여객임(210-01)	12,454	6,293	50.5%
고속버스	2,542	499	19.6%
직행버스	5,690	1,165	20.5%
용역버스 등	4,222	4,629	109.6%
②철도여객임(210-02)	21,154	20,575	97.3%
철도후불임	16,072	13,504	84.0%
군 전세객차 · 훈련이동 등	5,082	7,071	139.1%
③항공여객임(210-01)	1,400	1,024	73.1%
제주 거주·근무 병사 후급지원	1,115	583	52.3%
제주 공무출장 지원	285	441	154.7%
④해상여객임(210-01)	2,516	2,252	89.5%
⑤차량보험료(210-02)	18,078	20,939	115.8%
장기	15,188	16,758	110.3%
단기	893	2,157	241.5%
자기분담금	652	911	139.7%
드론	1,345	1,113	82.8%
⑥군 이사화물임(210-01)	34,837	34,829	100.0%
가족이사(육로) 등	28,058	27,492	98.0%
독신이사	6,779	7,337	108.2%

구분	편성금액(A)	집행금액(B)	집행률(B/A)
⑦화물임(210-01, 02)	21,231	21,347	100.5%
육로,해상,항공	17,626	18,728	106.3%
철도	3,605	2,619	72.6%
⑧상용차량 임차료(210-07)	3,707	6,905	186.3%

자료: 국방부

○ 이들 하위사업 중 군 이사화물임 사업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족이사에 대한 지원과 독신이사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되며, 그 지급기준은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서 정하고 있음.

동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사화물 수송임 중 육로수송임의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가족이사의 경우 거리별(40km이하~481km이상)로 정액(119만원~289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고, 단독이사의 경우 29만원을 정액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족이사비의 1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 따른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기준]

1. 가족이사
   가. 육로수송임

(단위 : 만원)

구 분	수송임	가산금
40km이하 (통합 관리지역 내에서 이사시에도 동일)	119	12
41~80km	138	14
81~120km	151	15
121~160km	172	17
161~200km	188	19
201~240km	210	21
241~280km	222	22
281~320km	230	23
321~360km	246	25
361~400km	255	26
401~440km	270	27
441~480km	280	28
481km~	289	29

* 가산금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新주소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에 한하며, 수송임의 10% 가산(소수점 이하 반올림)

나. 해상수송임(생략)

2. 단독이사 : 29만원 정액 지급

○ 그런데 동 훈령에 따라 군인 및 군무원에게 지원하는 금액과 군인 및 군무원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비교하면,

지원액이 실제 지출비용보다 낮아 그 차액을 군인 및 군무원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담액의 규모는 이사거리가 증가할수록 더욱 확대됨.

[국군복지단 제휴업체[52] 운임 대비 이사화물 수송임 지원액 비교]

(기준: 5톤 1대)

구 분	軍 지원액 (A)	제휴업체 운임(B)		군인 등 부담액(A-B)
		할증 없는 평일	금요일, 공휴일, 손 없는날	
40km 이내	119만원	110~120만원	121~144만원	-1~ -25만원
81~120km	151만원	162~180만원	178~214만원	-29~ -63만원
201~240km	210만원	245~267만원	273~321만원	-57~ -111만원
321~360km	246만원	321~350만원	346~420만원	-104~ -174만원
401~440km	270만원	360~397만원	406~476만원	-127~ -206만원
480km 초과	289만원	400~440만원	446~529만원	-151~ -240만원

자료: 국방부

○ 더욱이「이사화물 수송임 지급 훈령」에서는 이사 시 필수 비용이라 할 수 있는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설치비[53] 등에 관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이들 비용도 군인 및 군무원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음.

○ 이사화물 수송임은 군인 및 군무원이 국가의 인사명령에 따라 복무지로 이사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그 지원수준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 수준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의 이사화물 수송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52) 국군복지단이 군인 및 군무원의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함.

53) 국군복지단 제휴업체 기준 사다리차 이용료와 에어컨 설치비는 다음과 같음
 * 사다리차(1회당): 2~9층(12~15만원), 10~16층(16~19만원), 17~23층(20~35만원)
 * 에어컨 설치: 15~30만원

(17) 군수정책지원(2341-301): 채용인력의 고용 안정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수정책지원(2341-301)은 군수경영효율화과제 추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군수품 상용전환 등 군수 관련 각종 정책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군 전투력 발휘 보장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126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1억 4,900만원과 이·전용 등(증) 1억 4,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49억 4,200만원 중 120억 9,900만원을 집행하고, 25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5,8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군수정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수정책지원	12,648	2,149	145	14,942	12,099	2,585	258	12,304
군수경영효율화 과제 추진	513	2	-20	495	493	-	2	469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3,893	1,597	-	5,490	3,142	2,322	27	2,633
군수품상용전환	3,513	420	20	3,953	3,598	200	155	3,303
부품단종관리	350	-	-	350	306	24	19	315
기타 정책사업	1,012	130	145	1,287	1,193	39	55	925
기품원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금	3,367	-	-	3,367	3,367	-	-	4,65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군수경영효율화과제 추진,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기품원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금 등 여섯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기품원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금 내역사업은 국방부와 각 군 획득사업의 ROC(군사요구도)를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문서화하여 구매요구서를 작성하고, 연구개발과제의 ROC 설정을 위한 소요기획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액 33억 6,700만원 전부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출연금으로 교부하였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교부받은 금액에 전년도 이월액 1억 5,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억 2,200만원 중 25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200만원은 불용하였음.

[기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방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예산액	출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기품원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금	3,367	3,367	3,367	154	3,522	2,577	123	822	73.2

자료: 국방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집행한 출연금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73.2%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교부액의 72.6%를 차지하는 사업인건비 예산액 24억 4,700만원 중 17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1.5%에 머무른 것이 주된 이유라 할 수 있음.

[기품원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 출연금 세부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기품원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 출연금	3,367	155	3,522	2,577	123	822	73.2
사업인건비	2,447	-	2,447	1,750	-	697	71.5
연구활동비	920	-	920	672	123	125	73
- 사업수행비	403	-	403	158	123	122	-
- 일반수용비	185	-	185	184	-	1	-
- 국내여비	99	-	99	98	-	1	-
- 임차비	213	-	213	212	-	1	-
- 세미나개최비	20	-	20	20	-	-	-
- 연구활동비(이월) * 사업수행비	-	155	155	155	-	-	100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진흥연구소는 재직 중인 직원의 경우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하거나 채용과정 중에 입사를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채용공백이 발생하여 사업인건비 집행 실적이 70%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함.

[최근 3년간 예산상 정·현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정원	25	29	29
현원(12월말 기준)	21	21	22
고용형태	비정규직(2년, 기간제)		

자료: 국방부

○ 2023년 중 퇴직 및 이직 현황을 보면, 동 내역사업에 따른 예산상 정원 29명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총 11명이 퇴직이나 이직하였는데, 사유별로는 계약기간 만료로 6명이 퇴직하였고, 정규직 일자리로 5명이 이직하였음.

이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예산상 정원 29명의 고용형태를 최장 2년의 근무만이 가능한 비정규직 형태로 운용함에 따라 동 사업에 따른 일자리의 고용 안정성이 높지 않아 발생하는 퇴직 및 이직으로 보이며, 이 점이 사업인건비 집행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퇴직과 이직으로 인한 빈번한 채용공백 발생은 채용인력의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워 동 내역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채용인력의 고용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형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사업인건비 집행률 저조 문제는 국방부의 예산 산출방식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임.

즉, 국방부는 2023년 사업인건비 예산 편성시 예산상 정원 29명의 연 평균 근무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함.

○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동 내역사업에 따라 채용된 인원의 실제 연 평균 근무기간은 11개월에 그쳐 그 차이만큼 예산이 과다 편성되고 있어 사업인건비 불용액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출연금 예산 편성시 인건비 산정기준의 변경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사업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8)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2400) 내 20개 세부사업: 사업 내용과 관련 없는 성과지표 설정 부적절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2400)」[54]에는 7개 단위사업[55]이 포함되어 있으며, 7개 단위사업 내에는 총 23개의 세부사업이 있음. 이 중 3개 세부사업[56]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사업은 모두 동일한 성과지표를 공유하고 있음.

○ 이상 20개 사업의 결산을 보면, 2023년도 예산액 8,569억 7,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93억 5,300만원과 이·전용등(감) 96억 7,5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866억 4,900만원 중 7,835억 7,400만원이 집행되고, 664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66억 7,100만원이 불용됨.

---

54) 2007년 도입된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분야-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세부사업> 구조이며, 실무상 세부사업 내의 각 사업을 '내역사업'으로 부르고 있음. 참고로 국방 분야(040)에는 전력유지 부문(042) 등 3개 부문이 있고, 3개 부문내 총 22개 프로그램, 87개 단위사업이 있음.

55) 군인양성교육(2431), 군인적자원개발교육(2432), 과학화훈련(2434), 정훈문화활동(2435), 교육시설(2436), 훈련 및 교육지원(2438), 군인사(2439)

56) 3개 사업은 인건비성 경비 등으로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임. 전쟁기념사업회(2435-305), 상근예비역 운영(2439-302), 장병복무적응지원(2439-304)

[2023년도 군인사및교육훈련 프로그램 내 20개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인 양성교육	병양성교육	4,046	-	189	4,235	4,031	29	175	3,688
	간부양성교육	41,076	270	△339	41,007	38,213	111	2,683	47,874
군 인적자원 개발교육	군사대학교육	11,779	75	△51	11,803	11,311	-	492	11,360
	병과학교교육	12,988	348	72	13,407	12,457	68	883	16,289
	부대자체교육	1,946	-	20	1,966	1,804	-	162	-
	국외군사교육	17,301	134	△2,290	15,145	15,044	-	100	48,626
	민간위탁교육	34,635	-	2,361	36,996	36,609	100	287	-
	자기개발교육	56,230	258	△112	56,376	55,131	205	1,041	37,953
과학화훈련	과학화훈련	93,118	7,748	△6,776	94,090	81,122	7,346	5,622	84,994
정훈문화 활동	정훈문화활동	56,315	146	△159	56,302	53,893	155	2,254	49,070
교육시설	훈련장 및 일반교육시설	289,611	28,446	-	318,057	258,818	48,715	10,523	259,409
훈련 및 교육지원	부대훈련및지원	53,817	171	788	54,776	53,612	1	1,163	55,669
	작전상황연습	32,724	483	△3,790	29,416	28,070	123	1,223	33,802
	공통교보재지원	30,196	824	392	31,412	21,319	8,933	1,160	29,812
	전투발전연구	5,934	290	△362	5,862	5,276	242	345	5,907
	교육정책지원	2,243	23	60	2,326	2,220	5	102	2,257
군인사	간부확보장려사업	83,136	-	△134	83,002	76,249	-	6,753	93,313
	단기국내외시찰	3,525	-	△90	3,435	3,204	-	231	3,232
	유해발굴	8,258	41	136	8,435	7,326	-	1,109	8,461
	인사정책지원	18,096	96	410	18,601	17,865	374	363	17,366
합계		856,974	39,353	△9,675	886,649	783,574	66,407	36,671	809,082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군인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2400)」내 23개 세부사업 중 20개 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는데,[57]

20개 사업 중 **16개 세부사업**은 각 사업의 내용과 **성과지표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고**, 나머지 **4개 사업**도 각 사업 내용 중 **일부만 성과지표와 연관성**이 있어 성과지표와 각 사업의 실제 성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상황임.

[2023년도 군인사및교육훈련 프로그램 내 20개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출처
① 군 전문/기능인력 양성률(%)	목표	신규	신규	50.1	50.45	학위취득 인원 / 교육종료 인원 × 100 × 0.5 + 자격취득 장병수 / 복무장병수 × 100 × 0.5	각군 학위취득 현황자료 / 각군 전수조사
	실적	신규	신규	50.3	50.27		
	달성	-	-	○	×		
② 과학화훈련 전투능력 향상 기여도(점)	목표	신규	신규	88.74	89.36	[마일즈장비 훈련의 전투수행능력 향상 기여도] × 0.4 + [VR 가상훈련의 전투수행능력 향상 기여도] × 0.3 + [워게임훈련의 전투수행능력 향상 기여도] × 0.3	훈련 대상자 설문
	실적	신규	신규	88.86	88.25		
	달성	-	-	○	×		
③ 장병 정신전력 지수(점)	목표	83	82	82.3	82.6	[0.6 × {(국가관 × 0.4) + (안보관 × 0.3) + (군인정신 × 0.3)}] + [0.3 × {(군기 × 0.3) + (사기 × 0.4) + (단결 × 0.3)}] + [0.1 × {(공통 인성 × 0.5) + (신분별 인성 × 0.5)}]	설문조사
	실적	81.9	82.3	82.5	82.75		
	달성	×	×	○	○		

자료: 국방부

57) 참고로 2023년에는 3가지 성과지표 중 ① 군 전문/기능인력 양성률, ② 과학화훈련 전투능력 향상 기여도 **2개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

○ 구체적으로, ① 군 전문/기능인력 양성률의 경우 학위 취득과 관련된 사업은 ‘민간위탁교육(2432-305)’, 기능 자격 취득과 관련된 사업은 ‘자기개발교육(2432-308)’ 등 각각 1개 사업에 불과하며, 이 경우에도 각각의 세부사업 중 일부 내역사업만 학위 취득 또는 자격 취득과 연관되어 있음.[58)]

[학위 취득 및 자격 취득 관련 사업 2023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민간위탁교육	**학위과정**	**28,157**	-	**1,737**	**29,894**	**29,812**	**99.7**
	비학위과정	6,478	-	624	7,102	6,797	95.7
자기개발교육	**자격취득 관련**	**4,685**	**245**	**△288**	**4,643**	**3,814**	**82.1**
	자격취득 미관련	51,545	13	176	51,733	51,317	99.2

자료: 국방부
주: 표에서 굵게 표시한 항목만 성과지표와 관련이 있음

한편, ② 과학화훈련 전투능력 향상 기여도는 ‘과학화훈련(2434-301)’ 1개 사업만 연관되고, ③ 장병 정신전력 지수는 ‘정훈문화활동(2435-301)’ 1개 사업만 연관됨.

58) 예컨대, 민간위탁교육 사업은 학위 과정외에 비(非)학위 과정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2023년 기준 2개 사업 총예산 346억원 중 282억원**(81.5%)만 학위 과정 관련 예산**임. 한편 자기개발교육 사업 2023년 기준 총예산 562억원 중 47억원**(8.3%)만 자격 취득 관련 예산**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는 각각의 세부사업과 연관성이 부족한 지표가 성과지표로 설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위 지침이 “국민이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닌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세부사업과 완전히 유리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성과지표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프로그램 내 각각의 세부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개발[59]하여 성과지표가 각 세부사업의 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9) 예컨대, 각 세부사업별로 과학적으로 설계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전체의 성과를 반영하는 성과지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임.

(19) 간부양성교육(2431-302): 학군단 역량강화활동비 집행률 제고 필요 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간부양성교육(2431-302)은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사관학교(육·해·공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군단(ROTC, RNTC), 학사장교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410억 7,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억 7,000만원과 이·전용등(감) 3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10억 700만원 중 382억 1,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억 8,3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간부양성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간부양성교육	41,076	270	△339	41,007	38,213	111	2,683	47,874
학군단 역량강화 활동비	4,831	-	△1,049	3,782	3,768	-	14	12,256
해사 순항훈련	2,269	-	1,011	3,280	3,131	5	143	2,14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① 학군단 역량강화활동비 집행률 제고 필요

○ 학군단 역량강화활동비는 학군사관후보생 및 학군부사관후보생의 교내교육 여건 보장 및 간부후보생으로서의 역량강화를 위한 자기개발비용 지원 목적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음.

2023년까지는 연간 1인당 최대 64만원[60] 지급으로 교내교육이 진행되는 8개월 동안 월 8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후보생 개인이 선결제를 한 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시 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80%를 지급하는 방식임.

2024년부터는 연간 1인당 **최대 180만원** 지급으로 10개월 동안 월 18만원을 후보생 개인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별도의 증빙자료는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가 개편되었음.

○ 사업 개시연도인 2022년 이후 국방부 예산편성을 보면, 계획 인원 전원이 1인당 지급 가능한 64만원 전액을 지급받는다는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2년 예산 48억 2,200만원 중 42억 4,100만원만 집행하였고, 2023년에도 예산 48억 3,100만원 중 37억 6,800만원만 집행하였음.

---

60) 다만, 예외로 학군부사관후보생 1학년은 4개월분 32만원만 지급하고 있음. 학군부사관후보생은 3월이 아니라 9월에 입교하기 때문임.

[학군단 역량강화활동비 편성·집행 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예산	4,822백만원 (7,715명 × 64만원)	4,831백만원 (7,704명 × 64만원)	12,256백만원 (6,928명 × 180만원)
집행	4,241백만원 **(집행률 87.9%)**	3,768백만원 **(집행률 78.0%)**	4,290백만원 (2024.5 기준)
사업방식	**선결제 후 증빙자료 제출시 80% 보전**		**직접 지급** **(증빙자료 요구 없음)**

자료: 국방부

주: 학군부사관 1학년생은 1인당 지원금이 다른 대상자의 50%임.

○ 2023년 집행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군 부사관을 제외하면 계획 인원 대비 훈련 입교시점(3월 2일) 인원이 모두 적게 나타났으며, 중도포기 등에 따라 **계획인원 대비 연도말 인원**은 **모든 대상에서 더 적었음.**

[학군역량강화활동비 편성·집행 현황]

(단위: 천원, 명)

구분	군	편성액	계획 인원	입교 인원	연도말 인원	집행액	미집행액
사관	육군	4,063,360	6,349	5,931	5,367	3,209,982	**853,378**
	해군	144,000	225	185	165	105,864	**38,136**
	공군	268,800	420	330	301	205,444	**63,356**
	해병대	76,800	120	106	106	47,668	**29,132**
	소계	**4,552,960**	**7,114**	**6,552**	**5,939**	**3,568,958**	**984,002**
부사관	육군	163,200	345	283	240	127,038	**36,162**
	해군	54,400	115	81	72	32,429	**21,971**
	공군	35,200	75	78	71	33,493	**1,707**
	해병대	25,600	55	17	17	6,489	**19,111**
	소계	**278,400**	**590**	**459**	**400**	**199,449**	**78,951**
계		**4,831,360**	**7,704**	**7,011**	**6,339**	**3,768,407**	**1,062,953**

자료: 국방부

주: 입교 인원은 3월 2일 기준 인원임.

이처럼 편성 대비 실제 교육 인원이 적었던 점(‘인원감소분’)과 1인당 지급 가능액 64만원을 전액 사용하지 않은 점(‘실적저조분’)에 따라 **총 10억 6,200만원의 미집행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미집행액 중 **인원감소분에 의한 미집행이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계상됨.[61]

○ 앞서 본 것처럼, 동 사업은 2024년부터 사업 구조가 개편되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실적저조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어졌으나, ‘인원감소분’으로 인한 집행 저조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국방부는 학군후보생 입교 인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 예측을 통해 예산 미집행을 최소화하는 한편, 학군후보생의 학습 역량 강화라는 동 사업의 당초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61) 연도말 인원 기준 계상 시 **미집행액 10억 6,200만원에 대한 기여도**는 **인원감소분이 78.3%**(8억 3,200만원), **실적저조분이 21.7%**(2억 3,100만원)임.

② 해군사관학교 순항훈련 훈련계획 수립절차 개선 필요

○ **‘해사 순항훈련’**은 **해군사관학교 4학년**의 함상 적응능력 배양과 방문국과의 군사 외교활동 목적으로 매년 8월부터 다음연도 1월까지 기간 중 훈련함에 승선하여 세계 주요국가에서 해상작전을 훈련하는 사업임.

최근 5년간 집행을 보면,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을 크게 축소하였고, 2023년은 편성 대비 집행률이 138%를 초과하는 등 당초 계획과 실제 집행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해사 순항훈련 최근 5년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편성액	2,130	2,136	2,367	2,235	**2,269**
집행액	2,367	491	1,429	2,129	**3,131**
참가인원	623	546	534	471	507
내용	세계일주(14개항) (’19.8.28. ~ ’20.1.15./141일)	동남아권(2개항) (’20.10.14. ~ ’20.12.11./59일)	태평양권(5개항) (’21.10.22. ~ ’21.12.23./63일)	인도태평양권(10개항) (’22.9.6. ~ ’22.12.20./106일)	세계일주(12개항) (’23.8.28. ~ ’24.1.10./136일)

자료: 국방부

주: 참가인원에는 사관생도(연 150~160여명) 외에 지휘부, 훈육요원, 승조원, 지원요원 등이 포함됨.

○ 2023년 집행액은 예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인데, 국방부와 해군은 세계적인 물가상승 및 기항지 증가 등에 따라 항무(港務)비용 및 운하통과료 비용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일반수용비(편성 15억원, 집행 19억원)와 임차료(편성 3억원, 집행 7억원)에서 집행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해사 순항훈련 2023년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목명	예산액	집행액	내역	계획(기간)
일반수용비(210-01)	**1,495,412**	**1,914,507**	항만사용료, 운하통과료. 예인선료, 도선료, 오물수거료, 청수사용료, 훈련용품 등	**세계일주(12개항)** 미국(하와이)→콜롬비아 →미국(볼티모어) →캐나다→독일 →영국→프랑스 →스페인→이집트 →사우디→인도→필리핀 (2023. 8.28. ~ 2024.1.10./136일)
임차료(210-07)	**323,919**	**726,263**	차량사용료	
재료비(210-11)	20,981	20,047	훈련 재료	
기타 운영비(210-16)	55,656	66,338	리셉션 준비	
국내여비(220-01)	4,847	-	-	
국외업무여비(220-02)	293,774	331,009	일비 및 긴급환자 항공료	
관서업무추진비(240-02)	74,065	73,250	행사 및 회의, 리셉션, 오찬 준비 및 외교활동비	
계	**2,268,654**	**3,131,414**		

자료: 국방부

이에 따라 발생한 편성 대비 집행 차액 8억 6,300만원은 훈련 및 교육지원 5억원 등 3개 사업에서 전용하거나 동 사업내에서 자체 조정하여 집행하였음.[62)]

62) 예산 조정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비목		내역사업 명	비목
전용 ('23.9.6.)	훈련 및 교육지원(2438-301)	일반용역비	335	해사 순항훈련	일반수용비
	과학화훈련(2434-301)	시설장비유지비	53		임차료
		일반연구비	79		
	공통교보재지원(2438-303)	관리용역비	106		
	훈련 및 교육지원(2438-301)	일반용역비	165		
		일반연구비	2		
내역변경 ('23.10.17.)	간부양성교육(2431-302)	일반수용비	197		일반수용비
		급식비	9		
		임차료	10		임차료
		급식비	10		
		국외여비	45		국외여비

○ 2023년 발생한 과다집행의 근본 원인은 편성과 집행이 완전히 유리되어 별개 제도처럼 운용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동 사업은 **편성** 시 **예년의 예산 수준만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해당연도 2~3월**이 되어서야 해군참모총장 보고를 통해 **항로계획을 결정**하고 있음.[63]

물론,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외교·안보환경 및 경제 상황 변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편성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동 사업처럼 애초에 항로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편성과 집행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해군도 향후에는 **중기계획 확정시점에 순항훈련 예정 항로를 계획**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예산 편성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입장인바,

국방부와 해군은 해사 순항훈련 훈련계획 수립절차 개선을 통해 편성·집행간 괴리 문제를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음.

63) 해군에 따르면 항로 결정시에는 기본 항로권 4개(세계일주, 유럽권, 태평양권, 인도양권) 중 과거 운용 현황 및 국내·외 여건 등을 고려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매년 1월경 항로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무관부, 주재국 대사관 등), 2~3월경 항로 선정 보고(해군참모총장), 4~5월경 순항훈련 기본계획 보고, 8월경 세부계획 보고 및 국방부 승인을 거치고 있음.

(20) 군사대학교육(2432-301) : 국방대 야간 석사학위과정 성과 미흡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사대학교육(2432-301)은 국방대학교 및 합동군사대학교, 각군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강사료, 교육재료비, 교육비품·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117억 7,9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500만원과 이·전용등(감) 5,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8억 300만원 중 113억 1,100만원이 집행되고, 4억 9,2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군사대학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사대학교육	11,779	75	△52	11,803	11,311	-	492	11,360
국방대학교	3,525	29	239	3,793	3,721	-	72	3,36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대학교는 안보정책·국방관리 등에 관한 교육·연구·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 업무 전문인력을 양성[64]하기 위해 설립되어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등을 두고 학위 과정과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대학[65]임.

○ 국방대의 최근 3년간 학위과정 교육실적을 보면 타 과정에 비해 **야간 석사학위과정**의 **입학생 대비 졸업생이 상당히 적음.**

[최근 3년간 국방대학교 학위과정 교육실적]

(단위: 명)

구분	박사 학위과정		주말 박사학위과정		주간 석사학위과정		야간 석사학위과정	
	입학생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	입학생	졸업생
2021년	10	1	5	-	133	121	233	45
2022년	7	8	7	-	127	128	226	40
2023년	7	5	8	2	136	124	220	33

자료: 국방부

통상, 석사학위의 경우 졸업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국방대도 주간 석사과정은 입학생 대부분이 졸업하는데 비해 야간 석사과정은 입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이 15~20%에 그치고 있음.[66]

64)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안보정책·국방관리 등에 관한 학술의 교육·연구·분석 및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65) 특정한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석박사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학을 의미함.
「고등교육법」 제30조(대학원대학) 특정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이하 "대학원대학"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야간 석사과정의 10년간 입학 및 졸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입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이 36.3%**로 저조한데, 특히 **2020년 이후 비율이 매년 15.1~30.4%**로 2019년 이전에 비해 현격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으며 군별로 비교하면 전체 입학생의 75% 정도[67]를 차지하는 **육군의 비율이 특히 저조**함.

[최근 10년간 야간 석사학위과정 운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입학생(A)					졸업생(B)					입학생 대비 졸업생 비율(B/A)				
	계	육군	해군	공군	기타	계	육군	해군	공군	기타	계	육군	해군	공군	기타
2013	265	203	4	9	49	103	61	4	5	33	38.9	30.0	100.0	55.6	67.3
2014	280	192	2	10	76	108	70	2	8	28	38.6	36.5	100.0	80.0	36.8
2015	245	180	-	6	59	93	64	1	3	25	38.0	35.6	-	50.0	42.4
2016	259	207	1	6	45	94	54	3	4	33	36.3	26.1	300.0	66.7	73.3
2017	160	127	1	3	29	134	88	1	1	44	83.8	69.3	100.0	33.3	151.7
2018	207	165	7	8	27	87	58	1	3	25	42.0	35.2	14.3	37.5	92.6
2019	171	127	8	2	34	91	60	-	5	26	53.2	47.2	-	250.0	76.5
2020	236	181	3	4	48	49	36	-	1	12	20.8	19.9	-	25.0	25.0
2021	148	109	3	1	35	45	36	-	-	9	30.4	33.0	-	-	25.7
2022	225	171	1	2	51	40	27	1	2	10	17.8	15.8	100.0	100.0	19.6
2023	219	148	5	2	64	33	23	1	1	8	15.1	15.5	20.0	50.0	12.5
계	**2,415**	**1,810**	**35**	**53**	**517**	**877**	**577**	**14**	**33**	**253**	**36.3**	**31.9**	**40.0**	**62.3**	**48.9**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주1. 기타는 군무원, 공무원 및 일반인을 포함함.

2. 입학생 대비 졸업생의 비율은 졸업률이 아니기 때문에 100%이상으로 집계될 수 있음.

66) 2021년 19.3%(45명/233명), 2022년 17.7%(40명/226명), 2023년 15.0%(33명/220명). 이 비율은 입학생이 졸업하는 비율인 졸업률과는 차이가 있음. 다만 입학생 숫자에 큰 변동이 없다면 중장기적으로 졸업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67) 기간 중 전체 입학생 2,415명 중 육군이 1,810명으로 74.9%를 차지함.

○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 특성상 일반인에 비해 보직(부대) 이동이 잦고[68] 2019년 논문대체 추가학점이수제[69]가 폐지되면서 졸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군인·군무원·공무원**의 경우 통상 각 기관의 신청 절차를 거쳐 학위과정 교육대상자로 선발되는데 **학비가 무료**이며, **학위 미취득에 대한 벌칙이 없거나 미약한** 점도 성과 저조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국방부는 주간 위탁교육이 국가안전보장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것과 달리, 야간 석사학위과정은 개인의 능력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 차원에서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나, 야간 석사학위과정 역시 다른 과정과 마찬가지로 국가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므로,

국방부와 국방대학교는 야간 석사학위과정 입학생들이 학업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유인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68) 국방대 야간석사학위과정의 **휴학률은 43.9%**로 다른 **민간 특수대학원 대비 높은 수준**임. (연세대 14.4%, 고려대 13.3%, 경북대 13.6%, 충남대 14.3%, 전남대 11.6%, 강원대 32.7%)
69) 논문 제출 대신 추가학점을 이수하면 논문없이 졸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1) 병과학교교육(2432-302): 육군 신임장교 KCTC 체험 사업 중도 폐지 결정에 따른 불용 발생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병과학교교육(2432-302)은 보병, 포병, 군수, 정보통신, 방공포병 등 병과(특기) 학교기관의 신분별·계급별·기능별 전문 보수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료, 교육재료비, 교육비품·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129억 8,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억 4,800만원과 이·전용등(증)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4억 700만원 중 124억 5,700만원이 집행되고,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억 8,3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병과학교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병과학교교육	12,988	348	72	13,407	12,457	68	883	16,289
육군 신임장교 KCTC 체험	394	-	△87	307	-	-	307	-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 예산으로 육군은 '**신임장교 KCTC 체험**' 사업을 수행했으나, 야전부대 보직 이후 실시하는 **야전부대 KCTC 훈련**[70]**과 중복**되고 체험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에 따라 2023년에는 편성된 예산 3.9억원 중 0.9억원을조정하고 나머지 **예산 3.1억원은 모두 불용**하였음.

○ 국방부에 따르면 신임장교 KCTC 체험은 2019년부터 신임장교의 임무수행능력 향상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2022년까지 훈련결과 분석에 따라 사업중복을 감안, 2023년부터 미실시하게 된 것임.

[KCTC 관련 유사중복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신임장교 KCTC 체험	야전부대 KCTC 훈련
사업 코드	병과학교교육 (2432-302)	부대훈련 및 지원 (2438-301)
내용	• 임관하여 병과학교 입교 후 **교육생만으로 제대를 편성**하여 KCTC 체험	• 연간 10여개 차수를 편성하여 **여단 쌍방훈련**으로 실시
유사성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훈련** 실시	
훈련 방식	• **교육생으로** 훈련이 편성되어 **병과(직책)에 맞지 않는** 직책에서 훈련	• **병과학교 수료(배출)후** 야전부대에서 해 **병과(직책)에** 맞는 훈련
2023년 편성액	394	289
2023년 집행액	-	289

자료: 국방부

70)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Korea Combat Training Center)에서 시행하는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마일즈 장비**(발사기, 감지기, 모의장비 등)를 활용하여 **양개 여단 쌍방훈련** 또는 **전문대항군 연대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함.

구체적으로, 신임장교 KCTC 체험은 직책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생만으로 훈련제대를 편성하여 효과가 저조하고, 신임장교들이 향후 각급부대로 배치될 경우 해당 **야전부대에서 KCTC 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복 문제가 있었음.

○ 이상의 사업 개시·종료 경과를 볼 때, 훈련간 중복성 인지에 4년(2019~2022년)이나 걸린 이유, 2022년 중복성을 인지하고도 2023년 예산에 이를 편성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육군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2021년 신임장교 KCTC 체험을 미실시[71]하여 4년 중 실제 훈련을 실시한 것은 2개 연도(2019년, 2022년)에 불과했고,

사업 중복 등을 고려 육군교육사 교육운영위원회[72]에서 최종 폐지결정하여 이를 육군본부에 보고한 시점이 2022년 11월 23일로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는 입장임.[73]

○ 그러나, 중복 문제 제기는 9월부터 있었다는 점,[74] 상기 교육운영위원회 결정일이 10월 31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육군이 지체없이 의사결정절차를 진행했다면 국회심사과정에서 반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

71) 야전부대 KCTC 훈련은 코로나-19기간에도 실시하였음.
72) 주관: 육군교육사령관
73) 참고로, 2022년 정부예산 국회심사 시기는 다음과 같음.
국방위(상정: 10.31, 의결: 11.4), 예결위(상정: 11.7, 소위심사: 11.19~29), 본회의(의결: 12.24)
74) 육군교육사령부에서 육군본부로 2개 훈련 중복 문제를 보고

따라서, 향후 국방부와 육군은 예산사업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회 예산심사 일정을 고려**해 국방부 내부 의사결정이 국회 심사단계 이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심사를 보다 내실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반영 및 미집행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2) 국외군사교육(2432-304): 교육파견 국가의 과도한 편중 지양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국외군사교육(2432-304)은 국외 군사교육기관 교육·연수를 통한 전투력 향상을 목적으로 지휘참모대 교육, 병과교육, 연수교육 등 파견목적, 대상 및 파견기간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국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173억 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억 3,400만원과 이·전용등(감) 22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51억 4,500만원 중 150억 4,400만원이 집행되고, 1억원이 불용됨.

[2023년도 국외군사교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외군사교육	17,301	134	△2,290	15,145	15,044	-	100	48,626

자료: 국방부
주: 2024년부터 동 사업과 '민간위탁교육(2432-305)'을 '국내외 전문군사교육(2432-304)'로 통합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파견목적, 대상 등에 따라 3개 내역사업으로 구분됨.

'지휘참모대 교육'은 장교 대상으로 **무관요원** 및 **해외 지역전문가 육성** 교육(1년~1년 6개월) 사업이고, **'병과교육'**은 장교·부사관·군무원 대상 병과별 **군사교리 및 기술 습득** 사업과 사관생도 파견 사업(병과교: 평균 6개월, 사관생도: 1~4년)이며, **'연수교육'**은 장교·부사관·군무원 대상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식 교육(평균 3개월) 사업임.

○ 해외 지역전문가 육성, 군사교리 및 기술 습득 등 동 사업의 목적을 감안하면 대상자들이 다양한 국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그런데 실제 파견국가 현황을 보면, **미국(73%)** 및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82.4%)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병과학교 교육은 미국 편중이 91.5%, 미·영·독·일 편중이 92.6%로 매우 높음.

[2023년 국외군사교육 국가별 파견 현황]

(단위: 명, %)

국 가		계	지휘참모대	병과교육				연수교육			
			장교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소계	장교	부사관	군무원
계		370	59	189	169	19	1	122	93	19	10
미국		271	18	173	155	17	1	80	66	10	4
영국		14	4	-	-	-	-	10	6	3	1
일본		8	4	1	1	-	-	3	3	-	-
독일		12	1	1	1	-	-	10	7	1	2
기타		65	32	14	12	2	-	19	11	5	3
비중	미국	73.2	30.5	91.5	91.7	89.5	100.0	65.6	71.0	52.6	40.0
	미·영·독·일	82.4	45.8	92.6	92.9	89.5	100.0	84.4	88.2	73.7	70.0

자료: 국방부
주: 2023년 교육시작 인원 기준 통계임.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휘참모대 교육은 군사외교 및 지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병과교육 및 연수교육은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 다소 편중되고 있다는 입장임.[75]

이러한 국가 편중 문제에 대해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지적**[76]이 있었는데, 파견 국가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지휘참모대에서 오히려 주요국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77]

75) 국방부는 병과학교·연수교육 미국 편중에 대해 미국 군사교육기관은 다른 국가에 비해 외국군에 개방된 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며, 한미동맹 및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76) 「2021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 2022.8., 국방위원회
77) 다만, 지휘참모대의 주요국 편중 현상은 보다 심화되었지만, 파견국가 수 자체는 2021년 32개국에서

[2021년 대비 2023년 주요국 편중 현황]

(단위: %)

구분	국가	계	지휘참모대	병과교육	연수교육
2021	미국	74.1	30.4	88.6	68.3
	미·영·독·일	82.7	42.0	93.0	82.6
2023	미국	73.2	**30.5**	**91.5**	65.6
	미·영·독·일	82.4	**45.8**	92.6	**84.4**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 따라서 국방부는 교육파견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지 않도록 사업을 운영하고, 교육 목적별로 주요국 외에도 여러 국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다양한 과정을 발굴해 나갈 필요가 있겠음.

2023년 40개국으로 확대되었음.

(23) 작전상황연습(2438-302): 계약 실패로 인한 동원선박 임차료 전액 미집행으로 해병대 연합/합동상륙훈련 차질 발생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작전상황연습(2438-302)은 연합지휘소 훈련, 을지태극훈련 등 각종 작전 연습 및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327억 2,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억 8,300만원과 이·전용등(감) 37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94억 1,600만원 중 280억 7,0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억 2,3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작전상황연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작전상황연습	32,724	483	△3,790	29,416	28,070	123	1,223	33,802
상륙훈련 동원선박 임차	2,966	-	△2,966	-	-	-	-	2,968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연합/합동상륙훈련 동원선박 임차’ 사업은 연 2회(전·후반기) 실시되는 연합/합동상륙훈련[78] 시 실재 탑재 및 양륙(揚陸)[79]을 연습하기 위한 민간선박을 임차하는 사업임.

해병대에 따르면 전시 실제 상륙작전시 해군 상륙함정(10척) 대비 동원선박(80여척) 의존도가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종별 민간선박을 활용한 주기적인 훈련이 필수적임.

○ 그런데, 동 사업은 2021년 이후 매년 사업조정을 통한 예산 축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예산 전액(29억 6,6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 이·전용**하였음.

[2023년 해병대 동원선박 임차 이·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비목		세부사업 명	비목	
이용 (2023.11.16.)	작전상황연습 (2438-302-102)	임차료	1,500	공공요금 (2536-302-011)	공공요금	전기료 단가상승 및 사용량 증가로 지원
이용 (2023.12.4.)	작전상황연습 (2438-302-102)	임차료	1,300	군배상금 (7136-301-002)	배상금	5.18 민주화운동 손해보상금 지원
전용 (2023.12.4.)	작전상황연습 (2438-302-102)	임차료	166	부대훈련및지원 (2438-301-101)	국내여비	국내여비 부족소요 지원

자료: 국방부

78) 연합/합동상륙훈련은 해병대 주도 및 육·해·공군 지원을 통해 반기 1회 시행하는 훈련으로(연 1회 미국 해병대도 참가), 상륙군을 바다로부터 해안으로 상륙하여 적군의 핵심지역 공격하고 중요시설 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임.

79) 배에 실려 있는 짐을 뭍으로 운반함.

○ 2021년 훈련계획 수립시에는 Deck Carrier(갑판운반선)를 활용한 해상환적 연습을 하고자 했으나 민간업체 사정에 따라 해당 선박 임차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산이 남았고,

2022년 후반기부터 2023년 전·후반기까지 **3회 연속** 민간업체간 계약조건 충족여부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낙찰 취소 등에 따라 계약에 실패하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음.

[최근 5년간 해병대 동원선박 임차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본예산 (A)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B)	집행률 (B/A)	불용액	축소집행 사유
2019	1,511	-	1,511	1,511	100.0	-	
2020	3,023	-	3,023	2,786	92.2	237	
2021	3,023	△833	2,190	1,977	65.4	213	전·후반기 훈련 모두 실시했으나, 소요 대비 축소계약(Deck Carrier 미활용)
2022	3,023	△1,957	1,066	1,066	35.3	-	전반기 축소계약(Deck Carrier 미활용) **후반기 임차계약 미실시**
2023	2,966	△2,966	-	-	0.0	-	**전·후반기 모두 임차계약 미실시**

자료: 국방부

○ 2022년 후반기부터 3회 연속 계약 실패와 관련하여, 국방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다량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업체는 많지 않으며 사실상 2개 업체간 경쟁으로 보임.[80]

80) 최근 5년간 동 사업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한 업체가 총 2개임.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는 2순위 업체의 적격심사 기술평가항목에 대한 이의제기, 서류제출 기한 해석에 대한 이견 제시 등을 통해 1순위 업체를 부적격이라고 주장하였고, 2개 업체 모두 인원수송선 요구 척수를 미충족하는 문제도 발생하는[81] 등 계약 과정상 문제가 지속되었고,

再공고시 훈련 일정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3회 연속으로 계약 추진을 중단하여 결국 해병대는 1년 반 이상 당초 계획한 수준의 상륙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축소된 규모의 훈련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

○ 2024년 상반기의 경우 기존 2순위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고 다행히 이의제기가 없어 훈련을 진행했으나,[82] 소수의 전문성 있는 대형 업체만이 경쟁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업체간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향후 계약조건 적절성 검토 강화, 모호한 문구 수정 등 면밀한 사전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여 상륙훈련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83]

---

81) 2022년 하반기: 업체 민원제기에 따른 검토, 2023년 상반기: 업체 기술점수 부족에 따라 적격심사 불합격, 2023년 하반기: 2회 유찰

82) 총 8일(2024.4.19.~26.)간 여단급 합동 상륙훈련(1,500여명 참가)을 실시했으며, 5종 8척의 민간선박을 임차하였음.(11.9억원)

83) 국방부는 2024년부터 실적 인정 방식 변경(기존 유사용역도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방식(2개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허용 등을 도입하여 업체의 이의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24)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계획 대비 모집 인원 부족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은 대학·전문대 재학생에게 군 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액만큼 장교·부사관으로 가산복무하게 하는 **가산복무지원금** 및 단기복무 장교 확보를 위해 학사·학군사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단기복무장려금** 사업[84]으로 구분됨.

○ 2023년도 예산액 831억 3,600만원에 이·전용등(감) 1억 3,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30억 200만원 중 762억 4,900만원이 집행되고, 67억 5,3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간부확보장려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간부확보 장려사업	83,136	-	△134	83,002	76,249	-	6,753	93,313
장교 가산복무 장려금	40,666	-	4,047	44,713	44,008	-	705	39,325
부사관 가산복무 장려금	7,730	-	△131	7,599	3,868	-	3,731	5,196
단기복무 장려금	34,740	-	△4,050	30,690	28,373	-	2,317	48,792

자료: 국방부

84) 참고로, 부사관의 경우 '단기복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비과세 대상인 장교 '단기복무장려금'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2개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유사하므로 통합방안 검토가 필요함.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우수 인력을 군으로 유인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하여 7년 이내의 기간을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편성시 계획한 인원을 실제 달성하는 것이 우선적인 사업 목표라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최근 4년간의 실적을 보면 2021년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및 2020년 단기복무장려금을 제외하면 모든 경우에서 **계획 대비 실제 지급한 인원 수가 저조**하며, 경쟁률도 감소 추세임.

[간부확보장려사업 집행 현황(2020~2023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연도	계획		집행		지원/선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지원	선발	경쟁률
장교 가산복무 지원금	2020	4,926	42,005	4,553	41,741	5,664	1,477	3.8
	2021	4,462	40,926	4,547	40,692	6,368	1,401	4.5
	2022	4,706	40,666	4,516	42,574	6,046	1,419	4.3
	2023	4,706	40,666	4,592	44,008	5,298	1,622	3.3
부사관 가산복무 지원금	2020	1,559	8,739	1,162	6,803	3,146	1,143	2.8
	2021	1,438	8,061	1,098	6,376	2,900	1,075	2.7
	2022	1,438	8,061	1,020	5,888	2,359	928	2.5
	2023	1,380	7,730	666	3,868	1,215	544	2.2
단기복무 장려금	2020	3,855	11,565	4,054	11,875	15,064	5,601	2.7
	2021	3,838	15,352	3,761	14,948	14,977	5,784	2.6
	2022	3,833	22,998	3,634	21,773	12,759	5,137	2.5
	2023	3,860	34,740	3,179	28,130	9,657	4,892	2.0

자료: 국방부

○ 참고로, 가산복무지원금은 대상자가 재학하고 있는 대학교 1년 등록금을 지급하므로 개인별 단가 차이가 있고, 단기복무장려금은 유인 강화 목적에서 매년 지원금 단가가 증가하고 있음.

[간부확보장려사업 1인당 실 지원단가 현황]

(단위: 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917	895	943	958	-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585	581	577	581	-
단기복무장려금	300	400	600	900	1,200

자료: 국방부
주: 가산복무지원금은 1년 등록금 상당액을 지원하므로 2024년 실 지원단가는 2학기 개강 이후 산출가능함.

○ 최근 병력자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방부도 직업으로서의 군 복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85]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국방부는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재학 대학에 관계없이 일정액 지급 등), 단기복무수당과 장려금 제도 일원화, 홍보 강화 등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86]

85) 국방부에 따르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증액, 소령 정년연장(40→45세), 간부지휘여건 보장, 복지여건 개선 등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있음.
86) 국방부에 따르면 가산복무와 관련하여 중기복무 장교 및 전투/기술 부사관의 확보를 위한 적정 가산복무지원금 산정방식에 대해 정책현안과제를 한국국방연구원에 부여하였고, 향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25) 인사정책지원(2439-306): 초급간부 AI 면접 실효성 재검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인사정책지원(2439-306)은 장교·부사관 선발 및 군무원 채용 사업과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 등 병영정책활동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부터 군 간부 선발 면접시 AI를 활용한 비대면 면접 사업도 수행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액 180억 9,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9,600만원과 이·전용등(증) 4억 1,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6억 100만원 중 178억 6,500만원이 집행되고, 3억 7,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6,3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인사정책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인사정책지원	18,096	96	410	18,601	17,865	374	363	17,366
AI 면접	616	-	△229	392	385	-	2	50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2022년부터 군 간부(장교·부사관) 선발 면접시 AI를 활용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육·해·공군은 AI 면접 결과를 20%(50점 만점에 10점) 반영하고 있음.[87]

[AI 및 비대면 면접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1단계(AI 면접)	2단계(대면 면접)	
	대인관계 기술 및 행동역량 평가	1면접(개인발표/집단토론)	2면접(개별)
평가 항목	• 확고한 윤리의식 • 공감적 소통 • 회복 탄력성 • 적극적 임무수행 • 솔선수범	• 군 기본자세 • 리더십/상황판단 • 국가관/안보관 • 이해력/판단력 • 표현력/논리성	• 인성, 자질평가 • 인성검사 결과 (MMP-II) 참조
배점	10점	40점	합/불

자료: 국방부(2023년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선발)

○ AI 비대면 면접에 대해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AI 면접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 면접체계 운영비가 감소하지 않아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국방부는 AI 면접 시행의 비용과 효과성 및 채용의 공정성·타당성을 고려하여 면접평가 배점비중, 사업의 유지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시정**)"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87) 해병대는 AI 면접 실시를 권장하고 있으나, 점수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

○ 2024년 3월 한국국방연구원[88]에서도 AI 면접에 대해 609명[89]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AI 면접의 긍정적 요소**로 ① 면접관 오류(첫인상 효과 등), 면접시간이 짧은 대면면접 단점 보완, ② 대면면접에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질문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③ 선발평가 공정성과 군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 등이 제시되었음.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 ① 모니터로 분석된 생체정보를 이용해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90]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항목은 아직까지 AI가 좋은 성능을 보이기 어렵다는 점,

② AI 면접 질문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비슷한 질문 반복, 이미 답변한 내용 재질문 등 쌍방향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으며,[91]

③ AI 면접 시행환경 준비(장소 마련, 장비 준비)의 어려움 및 프로그램 오류 등의 문제, ④ AI 모델이 신뢰성·타당성이 있는지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92] ⑤ AI 면접이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전담인력이 부재하다는 점 등도 지적되었음.

---

88) 이하의 내용은 국방논단 제1983호 「초급간부 선발 시, AI 면접의 발전방향」, 2024.3.15., 한국국방연구원 참조.

89) 609명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군사학과 재학생 485명(1~4학년별 각 102~134명), 부사관과 재학생 124명(1학년 52명, 2학년 72명)이며 성별은 남성 469명, 여성 140명임. 또한, 초급간부 선발평가 응시경험자 406명, 미경험자 203명임. (응시경험자 406명 중 응시결과 합격 367명, 불합격 39명)

90) 면접 영상의 비주얼, 오디오 정보를 활용한 **타인과의 관계 및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도구

91) 설문 응답자의 21%가 AI 면접 질문이 '적절하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함. (대면면접은 3.5%)

92) 공사 사관생도 선발 면접시험의 AI 타당도 검증 결과, AI 면접의 최종판정 결과와 대면면접 합격/불합격 결과가 불일치했는데, **대면면접이 더 설명력이 높았다는 연구**도 있음. (「공군사관학교 생도 선발면접시험에서 AI 면접의 타당성 연구, 2022, 윤유경 외, 공군사관학교.)

○ AI 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에 대해 여러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타 부처에 비해 이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것 자체는 도전적인 업무추진이라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다고 봄.

그러나, 지난 3년간 AI 면접을 실제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성·타당성 문제에서부터 기술적 오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대부분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소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최근 전문가들의 연구결과 및 기존 국회 결산심사에서의 지적 등을 감안할 때, 국방부는 AI 면접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26) 병영생활관(2531-301) : 연례적 집행부진 및 과도한 이월 개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병영생활관(2531-301) 사업은 노후·협소한 병영생활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육군병영생활관, 해공군/국직 병영생활관, GOP소초 병영생활관, 교육생생활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3,552억 5,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19억 5,300만원과 이·전용등(감) 236억 7,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35억 3,100만원 중 2,373억 200만원이 집행되고, 1,111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1억 1,7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병영생활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병영생활관	355,251	31,953	△23,673	363,531	237,302	111,112	15,117	311,85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병영생활관 사업 집행률은 지난 3년간 저조하였으며, 특히 2023년에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5.3%**에 불과하여 **예산현액의 30.6%인 1,111억 1,200만원을 사업지연에 따라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음.

[병영생활관 사업 결산 현황(2020～2023년)]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0	121,312	12,692	△13,873	120,131	108,668	90.5	9,341	2,122
2021	185,311	9,341	△149	194,504	144,792	74.4	44,326	5,386
2022	133,404	44,326	8,932	186,662	140,907	75.5	31,953	13,801
2023	355,251	31,953	△23,673	**363,531**	**237,302**	**65.3**	**111,112**	15,117

자료: 국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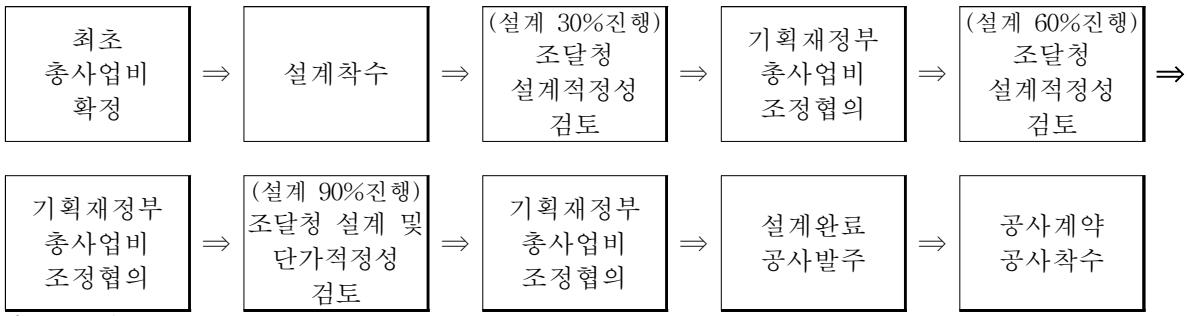
○ 국방부가 2004년부터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한 병영생활관 현대화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심층평가[93] 결과,

① 683개 대대분의 현대화사업 중 2026년 이후 병영생활관으로 활용되지 않을 108개 대대분에 현대화사업을 진행한 문제가 있고, ② 예산관리 측면에서 병영생활관 사업 총액을 설정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총액을 조정하지 못하였으며 ③ 병영생활관 사업 집행 관련 서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적됨.

93) 2015년 10월～2016년 11월

이에 기획재정부는 병영생활관 사업의 구체적 예산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병영생활관 신축사업에 대하여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바,[9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 및 공사발주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설계 및 공사발주 절차]



자료: 국방부

○ 그런데, 이처럼 여러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률은 지속적으로 저조하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이월율은 증가하는 추세임.

94)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국방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부사업 또는 그 하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하되, 매 회계년도에 반복되는 경상비적 성격의 사업과 극도의 보안을 요하는 비닉사업은 제외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연구개발·구매·토목 및 정보화 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개별시설의 시설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개별시설별로 각각의 총사업비를 관리한다)
3.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매년 예산에 신규 반영된 병영생활관·군관사 신축사업 금액 합계가 각각 200억원 이상인 경우 하나의 총사업비로 관리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사업

특히, 병영생활관 사업의 이월액 1,111억 1,200만원은 2023년도 대한민국정부 일반회계 전체 이월액 2조 56억원의 5.54%를 차지하며, 이는 아래 표와 같이 **59개 정부부처의 개별 부처별 이월액보다도 많은 수치**임.

[2023회계연도 정부부처 일반회계 소관별 이월 규모]

(단위: 억원)

소 관	이월액	소 관	이월액
합 계	**20,056**		
국방부(병영생활관 사업 포함)	**9,672**	식품의약품안전처	36
방위사업청	2,635	재외동포청	32
국방부 병영생활관 사업	**1,111**	공정거래위원회	19
해양수산부	89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3
문화체육관광부	729	감사원	12
질병관리청	655	국민권익위원회	12
국토교통부	560	국가교육위원회	11
환경부	540	새만금개발청	9
산림청	50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87	금융위원회	5
문화재청	323	국가인권위원회	4
행정안전부	308	통일부	1
소방청	286	방송통신위원회	1
경찰청	2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
보건복지부	23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
국가보훈부	215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산업통상자원부	210	헌법재판소	-
해양경찰청	1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대법원	172	국가정보원	-
고용노동부	171	중소벤처기업부	-
교육부	166	인사혁신처	-
법무부	123	법제처	-
기상청	121	원자력안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97	국세청	-
국회	93	조달청	-
외교부	90	통계청	-
관세청	72	병무청	-
대통령경호처	57	특허청	-
농촌진흥청	5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기획재정부	3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여성가족부	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주: 구성항목별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3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재구성

○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장여건 변동·대관협의 기간 소요 등에 따른 설계지연 및 이에 따른 공사 착공지연으로 공사비 집행률이 저조하며, 조달청 설계 및 단가적정성 검토에 약 4개월에서 6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년 지연 사업들이 일부 발생하고 그 결과 어느 정도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반복되는 집행률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소요되는 설계기간을 고려하여 설계완료가 예정되는 연차에는 공사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등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하지만 병영생활관 사업의 관리부실 등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동 사업이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으로 지정되어 기획재정부 및 조달청의 절차적 통제를 받고 있으며, 국가 전체 단일 사업 중 이월액이 가장 큰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집행률 제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향후 보다 세심한 연차별 예산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집행실태 수시 점검 등의 노력을 통해 과도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으로 국가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2024년 군 시설사업 연차별 예산배분기준]

총공사비	구분	사업지역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0 ~3억 미만	총사업비 非관리대상	전방·산악	(설계비100%) (공사비 70%)	(공사비 30%)				
		여타	(설계비 100%) (공사비 100%)					
3억 이상~ 10억 미만		전방·산악	(설계비 10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70%)	(공사비 30%)			
		여타	(설계비 10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100%)				
10억 이상 ~30억 미만		전방·산악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70%)	(공사비 30%)		
		여타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100%)			
30억 이상 ~100억 미만		전방·산악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60%)	(공사비 40%)		
		여타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70%)	(공사비 30%)		
100억 이상 ~200억미만		전방·산악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30%)	(공사비 40%)	(공사비 30%)	
		여타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60%)	(공사비 40%)		
100억 미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전방·산악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30%)	(공사비 40%)	(공사비 30%)	
		여타	(설계비 50%)	(설계비 5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50%)	(공사비 50%)		
100억 이상 ~200억미만		전방·산악	(설계비 40%)	(설계비 6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30%)	(공사비 40%)	(공사비 30%)	
		여타	(설계비 40%)	(설계비 6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50%)	(공사비 50%)		
200억 이상 ~500억미만		전방·산악	(설계비 40%)	(설계비 40%)	(설계비 2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30%)	(공사비 40%)	(공사비 30%)
		여타	(설계비 40%)	(설계비 40%)	(설계비 2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50%)	(공사비 50%)	
500억 이상		전방·산악	(설계비 30%)	(설계비 30%)	(설계비 4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20%)	(공사비 40%)	(공사비 40%)
		여타	(설계비 30%)	(설계비 30%)	(설계비 40%) (공사비 백만원)	(공사비 30%)	(공사비 40%)	(공사비 30%)

자료: 국방부

(27) 관사 및 간부숙소(2532-301): 관사매입 프로세스 개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관사 및 간부숙소(2532-301) 사업은 군인의 안정적 주거 여건 보장을 위해 부족한 군 주거시설의 확보 및 노후 주거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4,785억 3,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425억 8,600만원과 이·전용등(감) 5억 4,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205억 7,500만원중 4,273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736억 8,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95억 8,9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관사 및 간부숙소	478,535	42,586	△546	520,575	427,305	73,681	19,589	525,97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 중 자산취득비(430-01) 비목은 민간 아파트 등 숙소를 매입하여 군 간부에게 주거시설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하 “민간숙소 매입사업”)임.

○ 민간숙소 매입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연초에 각 군에 배정된 자산취득비 예산을 전액 국방시설본부로 조정하고, 국방시설본부는 예하 시설단에 민간숙소 매입사업을 배정하여 집행한 후, 집행잔액 발생 시 다시 각 군으로 조정하는 집행과정을 거침.

○ 그런데, 육군 및 해군의 민간숙소 매입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430-01) 비목은 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전액이 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음[95].

[2023년도 관사 및 간부숙소 사업 중 민간숙소 매입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육군]

내역사업명	비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관사	자산취득비 (430-01)	6,760	-	△6,760	-	-	-	-	-	27,558
부대개편 간부주거시설		34,200	-	△34,164	-	36	-	-	36	12,137
합 계		40,960	-	△40,924	-	36	-	-	36	39,695

95) 공군 및 해병대는 2023회계년도에 민간숙소 매입사업을 진행하지 않음

[해군]

내역사업명	비목명	2023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부대개편 간부주거시설	자산취득비 (430-01)	9,179	-	△9,152	-	27	-	-	27	11,607

자료: 국방부

○ 구체적으로, 육군의 경우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액 409억 6,000만원을 연초에 국방시설본부로 조정하고, 연말에 집행잔액 3,600만원을 다시 국방시설본부에서 육군으로 조정하여 집행잔액은 전액 불용됨.

해군의 경우 자산취득비 예산편성액 91억 7,800만원을 연초에 국방시설본부로 조정하고, 연말에 집행잔액 2,700만원을 다시 국방시설본부에서 해군으로 조정하여 집행잔액은 전액 불용됨.

[2023년도 민간숙소 매입사업 중 자산취득비 비목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조정사유
	세부사업명	비목명		세부사업명	비목명	
육군 ('23.2.1.)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자산취득비 (430-01)	-40,960	관사 및 간부숙소 (2532-301)	자산취득비 (430-01)	**위탁수행기관(시설본부) 예산 전환:** (육군 → 국방시설본부)
육군 ('23.12.18.)			36			**위탁수행기관(시설본부) 계약잔액 반납:** (국방시설본부 → 육군)
해군 ('23.1.9.)			-9,178			**위탁수행기관(시설본부) 예산 전환:** (해군 → 국방시설본부)
해군 ('23.11.30.)			27			**위탁수행기관(시설본부) 계약잔액 반납:** (국방시설본부 → 해군)

자료: 국방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96]에 의하면 시설사업 집행기관은 원칙

96) **「군 시설사업 관리훈령」** 제14조(집행기관의 선정 및 변경) ①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방홍보원 을 제외한 **소요제기기관의 시설사업 집행기관은 원칙적으로 시설본부가 담당**한다.

적으로 국방시설본부이며,

다만 사업 특성 및 집행 여건상 소요제기기관(각 군)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요제기기관이 자체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97]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 따르면 각 군에서는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자체 집행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처럼, 실제 사업을 국방시설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국방시설본부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각 군에 예산을 배정하여 연초에 사업예산을 각 군에서 국방시설본부로 조정하고, 계약잔액을 연말에 각 군으로 조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음.

참고로, 매입된 민간숙소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되어 이에 대한 관리도 국방시설본부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도[98] 각 군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국방부는 민간숙소 매입사업의 예산배정 및 사업 집행을 국방시설본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③ 소요제기기관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방부 사업국에 자체 집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방부는 시설본부와 소요제기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5. 사업 특성 및 집행 여건상 소요제기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97)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에 따르면, 각 군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각 군을 집행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음.

98) 시설유지·보수 등 자원관리는 각 군에서 담당함

(28) 환경보전시설(2533-301): 사업 소요에 부합하는 감리비 편성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환경보전시설(2533-301) 사업은 수질·토양오염 방지 및 복원, 유해환경으로부터 장병의 건강을 보호하는 등 환경 친화적 군 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1,534억 9,4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3억 7,800만원과 이·전용등(감) 30억 4,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688억 3,000만원 중 1,393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173억 8,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0억 4,3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환경보전시설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환경보전시설	153,494	18,378	△3,042	168,830	139,399	17,388	12,043	199,870
토양오염 복원	29,180	4,025	△931	32,274	24,089	4,050	4,135	30,11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환경보전시설 사업 중 토양오염복원 사업은 군 활동에 의해 발생한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사업임.

토양오염복원 과정에서 건축물 해체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2022년 개정된 「건축물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감리인원을 의무 배치하여야 하는 경우(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감리비 소요가 발생함.[99]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23년 토양오염복원 사업 예산에 감리비 17억 8,900만원을 최초로 편성하였음.

○ 그런데 2023년 감리비 예산 17억 8,900만원은 **전액 집행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으로 16억 5,000만원 조정하였고[100] 2,200만원은

---

99) **「건축물관리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②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제1항의 명부에서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인 건축물
2. 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제21조제6항 각 호의 건축물
나. 해체하려는 건축물이 유동인구가 많거나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100) 예산의 대부분을 전용(감)·사업조정하였는데 그 내역은 공공요금(3억 1,000만원), 토양오염복원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700만원은 불용처리함.

[2023년도 토양오염복원 내역사업 중 감리비 비목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토양오염 복원	29,180	4,025	△931	32,274	24,089	4,050	4,135	30,119
감리비 (420-04)	**1,789**	**-**	**△1,650**	**139**	**-**	**22**	**117**	**785**

자료: 국방부

○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23년의 경우 다음연도(2024년)로 이월된 1건(2,200만원)[101] 외 감리비 소요가 없어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장으로,

결국 국방부는 감리비 소요가 있는 사업을 제대로 식별하지 않고 감리비 예산을 과다 편성(17억 8,900만원)한 후, 대부분의 예산을 다른사업으로 조정한 것임[102].

○ 토양오염 복원 절차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오염도조사와 정밀조사를 걸쳐 실시설계를 거치기 때문에 정화공사 이전에 적어도 수 개월의 시간이 소요됨.

업 설계비로 세목조정(12억 6,700만원), 기타환경시설로의 내역변경(7,300만원)임.

101) 해병 1사단 미군 반환기지 부지 토양오염 식별에 따른 건축물 해체사업 - 계약체결이 지연됨('23.12.18)에 따라 이월되어 2023년도 집행액은 없음

102) 이에 대해 국방부는, 예산편성 시점에는 식별이 제한되는 신규소요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토양오염복원 사업의 특성으로 정확한 감리 소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토양오염 복원 절차]

오염도조사 (각 군)	⇨	**정밀조사** (각 군)	⇨	**실시설계** (시설본부)	⇨	**정화공사** (시설본부)	⇨	**정화검증** (시설본부)
2~3개월		3~6개월		3~6개월		12~36개월		2~3개월
오염도 확인 * 조사결과 지자체 통보	지자체 정밀조사 명령 (6+6월)	오염량(농도), 오염범위 등 확인 * 조사결과 지자체 통보	지자체 정화명령 (2+1+1년)	정화공법 설정		토양오염 복원		정화결과 확인

자료: 국방부

즉, 국방부는 정화공사 이전 절차인 조사·설계 단계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등에 따른 **감리소요를 예산편성 이전에 대부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리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음.

○ 따라서 국방부는 감리가 필요한 토양오염복원 사업 추진시, 토양오염 복원 절차에 따른 조사·설계 단계에서 적정 소요를 파악하여 예산편성에 이를 반영하고 감리비 예산이 목적 외 사업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9) 공공요금(2536-302): 감사원 지적사항 준수 및 추가적 예산 편성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공공요금(2536-302) 사업은 군의 시설 및 시설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5,381억 1,000만원에 이·전용(증) 등 1,343억 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724억 1,600만원 중 6,703억 5,9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5,7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공공요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공공요금	538,110	-	134,306	672,416	670,359	-	2,057	538,11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공공요금은 군의 시설 및 시설장비 운영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에도 전기료가 크게 부족하여 1,343억 600만원을 예산의 이용 839억 2,000만원, 전용 470억 9,800만원 등을 통해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을 과소 편성하였음.

[2023년도 공공요금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공공요금	538,110	-	134,306	672,416	670,359	-	2,057	538,110
전기료	348,122	-	139,393	487,515	486,553	-	962	368,604
상수도료	130,371	-	△5,480	124,891	124,368	-	523	116,578
하수도료	59,617	-	392	60,009	59,438	-	571	52,928

자료: 국방부

○ 이와 관련하여 2020년 감사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사 요구[103]에 따라 국방부의 공공요금 예산 과소편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음[104].

국방부는 공공요금 예산 편성 시 전전년도 집행실적에 최근 공공

103) 「국회법」 제127조의2에 근거함
104) 「국방부의 공공요금 등 예산 이·전용 및 조정 실태」 감사원, 2020.3.

요금 증가율을 반영한 집행예상액에 대하여 **조정비율(국방부 편성 명칭으로는 현실화율)[105]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었음.

[국방부 공공요금 사업 예산편성 요구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전전년도 집행실적(A)	B=(1+최근 5년간 증가율)[2]	집행예상액 (C=A×B)	조정비율(D)	요구액 (E=C×D)
2015년	3,732	1.1972	4,468	80	3,578
2016년	3,752	1.1543	4,331	86	3,725
2017년	4,229	-	4,120	93	3,831
2018년	4,350	1.1374	4,948	90	4,453
2019년	4,562	1.1181	5,101	92	4,690
2020년	4,950	1.1107	5,498	90	4,950
2021년	4,913	1.0845	5,370	99	5,299
2022년	5,033	1.0677	5,374	100	5,381
2023년	5,321	1.0494	5,584	96	5,381
2024년	5,649	1.0975	6,200	87	5,381

주: 2017년도 집행예상액은 다른 해와 달리 전전년도 집행실적에 예산편성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
주: 2020년 이후 B값은 최근 5년간이 아닌 3년간 증가율을 적용하였음(「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자료: 국방부

○ 2020년 감사원은 국방부가 조정비율을 임의로 낮게 적용하여 공공요금 예산이 매년 과소편성되는 바, 국방부장관에게 공공요금 예산 현실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조정비율을 예산편성 산출기초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요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음.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앞으로 과다한 전용 또는 조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요금 예산편성 시 조정비율을 제외하는 등

105)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현실적인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율을 의미함

공공요금을 실소요액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감사원 지적에 따라 국방부는 2021년에 조정비율을 99%로 적용하고, 2022년에는 조정비율 적용 없이 필요예산 100%를 예산에 반영한 바 있으나,

2023년 예산편성시에는 조정비율을 96%로 설정하여 예산이 과소편성됨에 따라, **이용 21회, 전용 174회** 등을 통해 부족예산을 충당함.

한편, **2024년 예산편성에서는 조정비율이 감사원의 감사 당시 수준보다도 더 하락**(90% → 87%)하였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또는 국회 예산제출 단계에서 예산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국방부 부처 요구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정비율이 감사원 감사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것은 감사원 지적사항을 준수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국방부는 공공요금 예산편성 시 조정비율을 현실화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준수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전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임.

(30) 동원훈련(2632-303): 비상근예비군 제도 운영 개선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동원훈련(2632-303)은 전시 부대 증·창설 절차의 숙달, 병과 및 주특기별 임무수행능력 향상 등을 위한 예비군 교육훈련(동원예비군훈련) 운영에 따라 예비군훈련 보상비, 비상근 예비군 복무 보상비 등 예비군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498억 7,300만원에 전년도 이월 2,900만원, 이·전용 감 14억 4,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84억 5,600만원 중 416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68억 9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동원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동원훈련	49,873	29	-1,446	48,456	41,635	11	6,809	50,191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비상근예비군 제도는 유사시 예비군으로 90% 이상 충원되는 동원위주부대(동원사단, 동원보충대대, 동원자원호송단 등)에서 주요 직책을 수행하게 될 예비역(장교, 부사관, 병)을 평시에 소집 및 훈련시켜, 전시 동일한 직책으로 동원하여 즉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제도로 단기 비상근예비군과 장기 비상근예비군으로 구분됨.

[비상근예비군 운영 개념도]

구분	비상근 예비군	
	단기 비상근 예비군(연 30일 이내)	장기 비상근 예비군(연 180일 이내)
대상	예비역 병 ~ 소·중령	
운용 직위	• 비교적 단기간 운용으로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직위 * 육군·해병(중·소대장 등), 해군(함장 등), 공군(통제실장 등)	• 전문성과 장기간 운용이 요구되는 직위 * 주요 지휘관(자)/참모,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업무 성격	• 작전계획에 따라 하위 전투제대 현장 지휘, 전투장비·물자관리	• 부대 창설계획, 작전계획, 전투부대 편성 최적화 검토 등 장기·지속·전문성 업무 • 무기체계 정비 수리 등 전투장비·물자 관리 업무
복무 기간	• 단기간 복무(연간 30일 이내) * 현재 15일 근무	• 장기간 복무(연 180일 이내)

자료: 국방부

○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상비 병력 감축에 따라 군 부대 해편·감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전 세계적으로 국지적인 전쟁 발발 등

각종 안보위협은 증가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고자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안보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동원 병력 확보 및 군 정예화를 위하여 비상근예비군 제도를 도입함.

○ 2014년부터 ‘예비군간부 비상근 복무’ 제도라는 명칭으로 동원위주 부대의 간부 예비군(육군 79명) 대상 연간 30일 이내 소집 및 훈련을 시작하여 2023년 말 전군에서 약 4,400여명 운용하고 있음.[106)]

○ 2022년 「예비군법」 및 「병역법」 개정으로 30일 이하 단기 소집(단기 비상근예비군)만 가능했던 것을 연간 소집일을 180일 장기 소집(장기 비상근예비군)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모집 대상 범위 또한 기존 간부에서 병 직위까지로 확대했으며 제도명을 ‘비상근예비군’ 제도로 변경함.

○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육군 분석평가단의 내부 평가[107)]를 살펴보면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경우 ① 전투준비 투입시간 29% 감소, ②전투준비태세 수준 13% 향상, ③ 부대관리 능력분야 7 ~ 17% 향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었고,

장기 비상근예비군의 경우 ① 동원 및 적소 지정률 3~4% 증가, ② 예방정비 및 물자관리 향상 ③ 장비 가동률 및 치장물자의 전시

106) 2024년 4월말 현재 약 3,600여명 운용 중이며, 5월 중 추가모집 공고 예정

107) 총 4차례에 걸친 평가 결과임 : ①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실효성 분석결과(육군분석평가단, 2015.), ② 간부예비군 비상근 복무제도 실효성 분석결과(육군분석평가단, 2017.), ③ 「예비역 간부(상근) 평시복무제도」 효과 분석결과(육군분석평가단, 2019.), ④ 장기 비상근예비군제도 실효성 분석결과(육군분석평가단, 2022.)

활용성 향상, ④ 전투준비 완료시간 9~20% 단축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어 동원위주부대의 조기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비상근 예비군 제도 도입으로 병력자원 감소로 인한 국방 인력 획득 제한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으로서의 효과성은 일정 부분 입증되었다고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제도를 보완할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첫째, 비상근예비군으로 지원하는 병력 자원의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비상근예비군 선발현황]

(연말 기준, 단위: 명)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정 원		585	1,023	1,769	3,011	3,804	4,449
단기	정원(명)	585	1,023	1,769	3,011	3,754	4,349
	지원(%)	1,098 (188%)	1,730 (169%)	2,959 (167%)	4,101 (136%)	5,418 (144%)	5,876 (135%)
	선발(%)	585 (100%)	1,023 (100%)	1,759 (99.4%)	2,908 (96.5%)	3,257 (86.7%)	3,713 (85.3%)
장기	정원(명)	-	-	-	-	50	100*
	지원(%)	-	-	-	-	258 (516%)	355 (355%)
	선발(%)	-	-	-	-	50 (100%)	95 (95%)

주: 복무선택제 적용으로 50명 예산으로 100명 운용

자료: 국방부

○ 2014년 비상근예비군 제도 도입 이래 2016년에 한차례 손실보상금(훈련보상비) 단가 인상 이후 현재의 손실보상금 단가를 유지하고 있음.

[단기비상근 손실보상근(훈련보상비) 단가변동 추이]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훈련보상비	단기	평일 8만원 휴일 10만원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						
	장기	제도 미도입 시기								평·휴일 15만원

자료: 국방부

○ 2016년도 단기 비상근예비군 평일 손실보상금 단가는 100,000원으로 당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99,882원(2016년 하반기 기준)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매년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어 인상되는 시중노임단가와 현재 적용되는 손실보상금 단가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4년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가 165,545원(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대비 손실보상금 단가는 65,545원 차이가 있으며 약 60.4% 수준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108] 변동 추이]

(연말 기준, 단위: 원)

해당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99,882	106,846	118,130	130,264
해당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138,989	144,481	153,671	161,858

자료: 국방부

○ 이러한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 사항을 감안하지 못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비상근예비군으로 복무할 유인을 떨어뜨려 비상근예비군 지원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경제적인 이유로 훈련 소집을 기피하여 훈련 응소율[109] 또한 저조한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비상근예비군 응소율 변동 추이]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단기 비상근	79.7%	90%	미실시	62.4%	67.4%	58.2%
장기 비상근	-	-	-	-	90%	88.6%

자료: 국방부

108) 출처 :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탈
109) 2023년 기준 훈련 응소율 : 단기 비상근예비군 58.2%,, 장기 비상근예비군 88.6%,임.

○ 둘째, 단기 및 장기 비상근예비군 간의 손실보상금 단가가 상이한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단기 비상근예비군과 장기 비상근예비군은 군에서의 운용 직위, 업무 분야, 소집 기간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집 기간에 군 부대에 입소하여 각 개인에게 부여된 군사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소정의 훈련을 받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으로 장·단기 비상근예비군 개인이 부담하는 신체적·정신적 부담 정도는 유사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단기 비상근예비군과 장기 비상근예비군 간의 손실보상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비상근예비군에 대하여 손실보상금 외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을 통하여 비상근예비군으로서 장기적·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재 비상근예비군에 대하여 훈련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복지 혜택 지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비상근예비역이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여 군 전투력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실보상금 지급 외에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4대 보험 가입, 유급휴가 지원 등 복지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상의 사항을 종합하여 국방부는 비상근예비군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손실보상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장·단기 비상근예비군간 손실보상금 격차를 해소하며, 비상근예비군의 장기적인 복무를 위하여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31) 일반훈련(2632-304): 일반훈련 훈련보상비 지급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일반훈련(2632-304)은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지역예비군대원 등의 예비군 교육훈련 운영에 따라 급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변상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568억 2,800만원에 이·전용 등 5억 9,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74억 2,200만원 중 518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55억 5,2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일반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훈련비	56,828	-	594	57,422	51,870	-	5,552	56,356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예비군훈련은 크게 병력동원훈련과 일반훈련으로 구분되는데 병력동원훈련은 「병역법」 제50조[110]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고, 일반훈련은 「예비군법」 제6조[111]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임.

[병력동원훈련 및 일반훈련 비교 현황]

항목	병력동원훈련	일반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작계훈련
훈련대상	1~4년차 예비역 ('병' 기준)	1~4년차 예비역	5~6년차 예비역
훈련형태	2박 3일	4일 또는 2박 3일[112]	3일
훈련인원 구성	20대 중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20대 중·후반의 자영업자 등 생업 종사자	

자료: 국방부

○ 병력동원훈련(이하 '동원훈련'이라 한다)은 예비군 1년차~4년차 중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동원사단 등 군 부대로 입영하여 2박 3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고,

일반훈련은 예비군 1년차~4년차 중 병무청의 병력동원훈련 소집 지정을 받지 못한 인원이 지역별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 동안 실시하는 훈련(이하 '동미참훈련'이라 한다) 및 예비군 5년차~6년차를

110) 「병역법」 제50조(병력동원훈련소집)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다만,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른 비상근 예비군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한다.

111) 「예비군법」 제6조(훈련) ①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의 한도에서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훈련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공직 선거기간 중에는 훈련을 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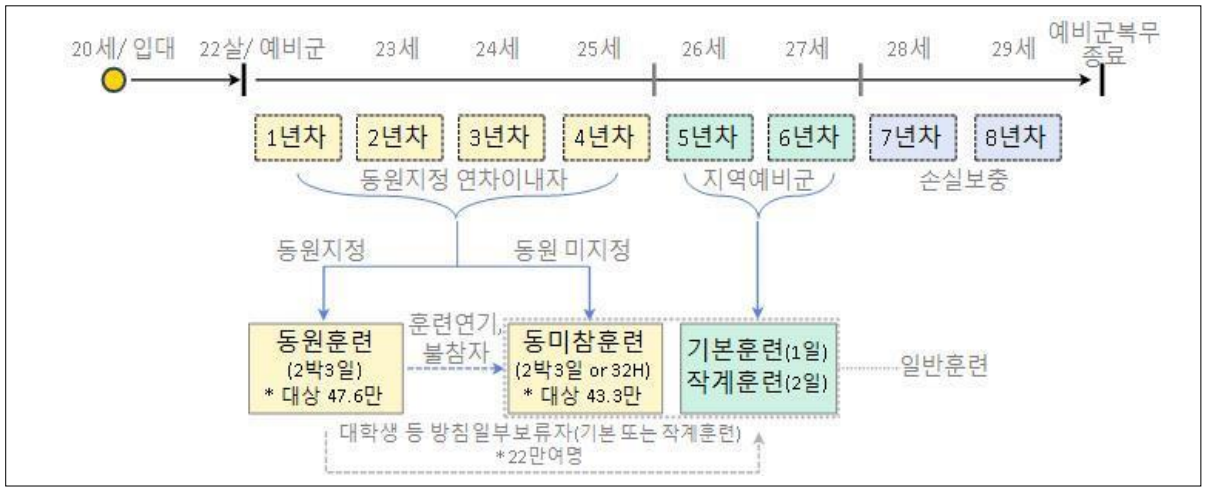
112) 4일 대상자 : 1~4년차 병, 미참석자 등, 2박 3일 대상자 : 간부, 공군 병

대상으로 하는 기본훈련·작계훈련[113]을 말함.

○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방식은 군의 예비군훈련 필요 병력 규모에 따라 병무청이 예비군 1년차~4년차 중 지역·특기·병과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를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예비군 병력은 동미참훈련 대상자로 지정하는 구조임.

[예비군 연차별 복무 흐름도]

자료: 국방부



○ 군의 예비군훈련 계획 및 병무청의 예비군병력 지정 관련 행정절차에 의한 동원훈련 지정 여부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별 예비군이 받아야 하는 훈련의 종류가 우연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현실[114]이나 지정되는 훈련 종류에 따라,

113) 「예비군 교육 훈련 훈령」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역예비군훈련"이란 「예비군법」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제)을 실시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말한다.

○ 동원훈련 대상자는 훈련 근거 법률인 「병역법」 제52조제1항[115]에 따라 교통비 등 실비보상 외 소정의 훈련보상비를 지급받고 있으나 「예비군법」에 훈련 근거를 두고 있는 동미참훈련은 실비인 교통비·식비 외에 훈련보상비[116]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117]

[동원훈련 및 일반훈련 예비군 훈련비 지급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구분	동원훈련(2박 3일 기준)	일반훈련/동미참훈련(1일 기준)
훈련보상비	82,000원	미지급
교통비	연료비 * 131.82원 / ㎞	8,000원
식비	부대 급식 (13,000원, 1일)	8,000원

자료: 국방부

○ 실제적인 훈련 내용 및 의무 이행자의 훈련에 따른 부담의 정도라는 측면에서 두 훈련 간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 수행에 따른 보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118]이 반복되고 있음.

---

114) 전시 군에서 필요한 직책, 특기의 일치여부, 신속한 동원집행을 위한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한 전시 행정계획(충무계획)과 병무행정시스템에 의하여 동원훈련으로 지정되거나 동미참훈련으로 분류 지정

115) 「병역법」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된 사람의 복무) ①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은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116) 「예비군법」 제11조(실비 변상)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과 그 밖의 실비(實費) 변상을 할 수 있다.

117) 기획재정부 동미참훈련 시 훈련보상비 지급에 대한 입장 : 훈련보상비는 「병역법」 제52조제1항 본문 중 '실비 지급 등'에는 포함되나, 「예비군법」 제11조 본문 중 '그 밖의 실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임.

118) 제20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2020.10.8.) : (김병주 위원 발언 요지) 예비군훈련이 들어오면 훈련보상비 3일치를 지급하여야 함. 그것도 동원훈련 나온 인원만 주고 후방에서 지역방위훈련을

○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두 훈련 간의 유사점을 살펴보면,

우선 두 훈련 모두 유사 시 군사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훈련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훈련 과목[119], 훈련 방식, 훈련 시간 등이 유사하여 예비군 대원이 훈련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체력적·정신적 부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며,

두 훈련 모두 훈련 대상자가 1년차~4년차 예비군 대원으로 20대 초·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훈련을 수행함으로써 학업·생업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 측면에서의 개인 부담 정도 또한 유사한 것으로 보임.

○ 국회는 동미참훈련의 훈련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비군법」 제11조를 개정하려는 입법 조치를 2007년 제17대 국회에서 최초 제기한 이후 제21대 국회에서도 5건의 「예비군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바 있음.

받는 인원은 훈련보상비조차도 없음.
"보상비'0원' 내 돈 내고 가는 예비군 훈련"(2024.3.31. 이데일리 보도)

119) -동원훈련(2박 3일) : 인도인접/증·창설, 안보교육, 개인화기 사격, 핵/화생방 개인방호, 주특기 및 통제과목 순환식 훈련, 주·야간 작계시행훈련, 장비/물자 반납
-동미참훈련(4일) : 안보교육, 개인화기 사격, 개인 기본전투기술, 직책수행훈련, 병과 및 주특기 훈련

[제21대 국회 「예비군법」 제11조 개정안 제출 현황]

(2023년 12월말 기준)

발의일	의안번호	대표 발의	결과
’20.08.03.	제2102638호	장제원 의원	소위 보류 (’21.02.19./’22.11.15.)
’21.08.30.	제12301호	김경협 의원	소위 회부 (’21.11.16.)
’21.12.23.	제2114075호	강대식 의원	소위 회부 (’22.08.29.)
’22.11.18.	제18332호	조응천 의원	소위 회부 (’22.12.28.)
’23.01.03.	제2119312호	윤후덕 의원	소위 회부 (’23.02.17.)

자료: 국방부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동미참훈련에 대한 훈련보상비 지급 시 과도한 재정 부담이 야기된다는 사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여 관련 법안이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음.

○ 「예비군법」 제11조 개정을 통하여 일반훈련에 대하여 훈련보상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훈련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나,

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의 유사성과 행정법규에 있어서 침익적인 행정행위는 법령의 유추해석이 금지되나 수익적·수혜적인 행적행위는 법령의 유추해석도 가능하다는 원칙[120], 개별법에 재정 지원 재량권 근거가 없더라도 이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한 정부는

120) <법령 유추해석의 원칙>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연구[121] 결과를 고려했을 때 일반훈련인 동미참훈련에 대하여 훈련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일반훈련의 유형 중 하나인 동미참훈련이 '입영' 형식으로 진행할 경우 「병역법」 상 동원훈련이 아님에도 훈련보상비를 지급 중이며, 마찬가지로 일반훈련인 '작계훈련'에 간부소대장으로 소집되는 인원에게는 동원훈련이 아님에도 훈련보상비를 지급 중에 있음.

[일반훈련 훈련보상비 지급 현황]

대 상	병역법 제52조 해당 여부	보상금 지급 여부	비 고
동원훈련	○	○	'24년 훈련계획인원 411,769명(지급기준 82,000원), 총 338억원 예산 편성
공군 병 동미참훈련(입영)	×	○	'24년 훈련계획인원 12,157명(지급기준 82,000원), 총 10억원 예산 편성
간부 동미참훈련(입영)	×	○	'24년 훈련계획인원 7,887명(지급기준 82,000원), 총 6억원 예산 편성
작계훈련(소대장)	×	○	'24년 훈련계획인원 12,156명(지급기준 65,000원), 총 16억원 예산 편성

자료: 국방부

항목	유추해석의 원칙 내용	출처
정의	법률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으로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하는 것	• 대법원(2020.4.29.선고) 2019다226135 판결 • 대법원(2021.7.22.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적용요건	①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함	
	②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유추해석이 정당하여야 함	
제한	행정법규의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는 유추해석 불가하나, 수익적 행정행위는 유추해석 가능	

121) 출처 : '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171쪽(한국법제연구원, 2023.10.)

○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국방부는 재정당국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미참훈련 시 훈련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2)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3735-301): 의무장비 획득 시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3735-301)는 군 책임운영기관인 국군수도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381억 5,6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93억 6,100만원 중 348억 300만원이 집행되고, 18억 5,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6억 9,9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군수도병원 사업 및 지원	38,156	1,200	5	39,361	34,803	1,859	2,699	38,851
의무장비 확보	7,385	1,027	△149	8,263	4,788	1,790	1,685	5,50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군수도병원은 국군의무사령부 예하의 군 의료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으로, 2023년 기준 운영병상은 681병상, 외래진료 건수는 약 30만건임.[122)]

○ 국군수도병원의 최근 5년간 의무장비 확보 예·결산 현황을 보면 매년 이월·불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특히 2023년에는 57.9%에 그치고 있음.

[의무장비 확보 결산 현황(2019~202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9	18,371	105	16,764	6,510	38.8	7,581	2,673
2020	5,366	7,581	12,392	10,023	80.9	916	1,453
2021	9,767	916	10,151	6,649	65.5	2,210	1,292
2022	6,248	2,210	7,931	6,458	81.4	1,027	446
2023	**7,385**	**1,027**	**8,263**	**4,788**	**57.9**	**1,790**	**1,685**

자료: 국방부

○ 2023년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군수도병원은 편성시 엑스선기 병원용 디지털 1대 등 **총 82건,** 73.9억원을 편성했으나, 이 중 62건만 계약을 진행하고 **20건(18.9억원)은 미집행**했음.

122) 참고로 국립의료원의 경우 2022년 기준 505병상, 외래진료 28만건임.

이에 반해, **당초 미편성**한 전자동정제분류포장기 1대 등 **22건**에 대해서는 **계약미실시 예산, 계약잔액 등을 활용**하여 연도 중 **계약체결(13.3억원)**하였고, 이 중 4.6억원은 연도내 집행, 나머지는 2024년으로 이월하였음.[123)]

이에 대해 국군수도병원은 상기 22건 중 19건은 국군의무사령부 재투자사업 심의를 거쳐 추진한 것으로 해당 연도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설명과 달리 연도내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이 발생한 점, 국회에서 심사·확정된 예산을 그 심사 의도와 다르게 집행하는 것은 「국가재정법」[124)]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한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예산 편성시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의무장비 소요를 산출하고, 집행시 계약잔액을 활용한 불요불급한 장비구매를 지양하는 등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

123) 한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된 사업을 보면, 총 MRI 1대 등 8건을 위해 10.3억원을 이월했는데, 8건 중 5건이 2022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었음에도 2022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으로 이월하였음.

124) 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33) 한국국방연구원(R&D)(5137-301): 공공기관 구매의무 준수를 위한 노력 제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한국국방연구원(R&D) 사업은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국방연구원(KIDA[125])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국방부는 2023년도 예산액 543억 6,600만원 중 539억 4,500만원을 한국국방연구원에 출연하고, 4억 2,100만원은 불용(정원 대비 결원 인건비)하였음.

그리고 한국국방연구원은 동 교부액에서 51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 6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한국국방연구원(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예산액	출연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한국국방연구원(R&D)	54,366	53,945	-	421	53,945	51,776	863	1,306

자료: 국방부

125) KIDA: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나) 검토의견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매년 구매하는 물품이나 용역 등의 총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등으로부터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가 등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의무 부과 현황]

법률명	규정내용	구매 대상	법정구매 비율 ('23년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구매 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중소기업 제품	총 구매액의 50%
	제13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기술개발 제품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여성기업 제품	물품 및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공사: 공사 구매총액의 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장애인 기업제품	총구매액의 1%

법률명	규정내용	구매 대상	법정구매 비율 ('23년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창업기업 제품	총구매액의 8%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생상품	총구매액의 1%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총구매액의 0.8%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 동 연구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분류상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여 동 연구원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이 부과하고 있는 구매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동 연구원의 2023년도 구매의무 이행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제품 및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구매의무는 법정비율을 초과하여 이행하였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 등 나머지 5개 구매의무는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 등 장애인 관련 구매의무 준수비율이 낮음.

[2023년 물품 등 구매의무에 대한 이행실적]

구분	법정구매 비율	구매의무 이행비율	달성여부
중소기업제품	총 구매액의 50%	75.3%	달성
여성기업제품	물품 5%, 공사 3%, 용역 5%	18.4%	달성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총구매액의 0.8%	0.2%	**미달성**
장애인기업제품	총구매액의 1%	0.2%	**미달성**
중증장애인 생산품	총구매액의 1%	0.4%	**미달성**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의 15%	10.5%	**미달성**
창업기업제품	총구매액의 8%	3.2%,	**미달성**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 이에 대해 동 연구원은 연구원이라는 특성상 외주용역은 전문성이 높은 연구용역이 대다수이고, 공사의 경우도 발주 건수가 많지 아니하여,

오로지 물품 구매를 통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단가가 높지 않은 물품구매(화장지, 종이 등) 건수가 많아 의무사항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함.

○ 그런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를 부여받은 기타공공기관의 2023년 이행실적을 보면, 총 260개 기타공공기관 중 168개 기관이 법정비율을 준수하여 기타공공기관의 64.5%가 구매의무를 준수하였음.

[2023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 이행실적]

유형	대상기관수 (A)	제출기관수 (B)	우선구매비율 준수기관수(C)	우선구매비율 준수율(C/A)
기타공공기관	260	260	167	64.6%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126)]

반면, 동 연구원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 준수비율이 0.2%에 불과하였고, 이는 전체 260개 기타공공기관 중 21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국방부 4개 산하기관 중에서도 준수비율이 가장 낮음.

[국방부 산하 4개 기타공공기관의 이행실적]

(단위: 원)

유형	기관명	총구매액(A)	표준사업장생산품구매액(B)	비율(B/A)
기타공공기관	국방전직교육원	8,728,793,516	88,223,060	1.01%
기타공공기관	국방기술품질원	24,270,349,144	238,656,600	0.98%
기타공공기관	국방과학연구소	253,668,769,990	1,734,850,000	0.68%
기타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5,449,284,550	11,062,100	0.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

○ 더군다나 동 연구원은 2022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2023년에는 법정의무 준수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22년 3.8%→'23년 0.2%)한 것은 적정하지 아니함.

126) https://www.withplus.or.kr/user/result/resultScheduleStatistics.do

[2022년 및 2023년 동 연구원 이행실적]

구분	2022년		2023년		법정구매 비율 ('23기준)
	이행비율	이행여부	이행비율	이행여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3.8%	이행	0.2%	미이행	총구매액의 0.8%

자료: 한국국방연구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의 법률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의무를 선언적 노력의무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각 구매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관련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동 연구원은 각 법률에서 부과하고 있는 구매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배가할 필요가 있음.

(34) 국방행사지원(7131-313): 국군의 날 행사 사전계획 미흡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국방행사지원(7131-313)은 국방부, 각 군 및 기관에서 시행하는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260억 8,600만원에 이·전용등(증) 19억 9,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80억 4,600만원 중 265억원이 집행되고, 2,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억 1,8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국방행사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국방행사지원	26,086	-	1,960	28,046	26,500	29	1,518	23,224
국군의 날 행사	7,985	-	2,259	10,244	9,936	-	308	7,985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군의 날 행사’ 사업은 당초 79억 8,500만원을 편성했으나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22억 5,9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조정**한 후, 예산현액 102억 4,400만원 중 99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8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국군의 날 행사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대통령 취임 첫해 대규모 행사를 실시하고 기타 연도는 소규모 행사를 실시하여 왔음.

[국군의 날 기념행사 추진 현황]

구분	추진 방식
1956~1978	매년 대규모 행사 실시
1979~1992	3년 주기 대규모 행사 실시
1993~2018	5년 주기 대규모 행사 실시, 기타 연도는 소규모 행사
2019~2023	**대통령 취임 첫해 대규모 행사 실시, 기타 연도는 소규모 행사**
2024~	대통령 취임 첫해 대규모 행사 실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안보 상황·국군 사기 등)에도 대규모로 실시**

자료: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등 참조.

○ 이에 따라 국방부는 現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예산 편성시 대규모 행사 기준으로 79.9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 소규모 행사로 진행됨에 따라 37.6억원만 집행하였고, 2023년에 다시 대규모 행사를 계획[127]하여 79.9억원을 편성, 99.4억원을 집행한 것임.

편성 대비 부족액은 전용(17.3억원), 조정(5.7억원)을 통해 마련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2023년 국군의 날 예산 전용 및 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금액
	세부사업 명	비목		세부사업 명	비목	
전용 ('23.7.21.)	지상방위 기본경비 (7111-251)	일반수용비 (210-02)	1,400	국방행사지원 (7131-313)	일반용역비 (210-14)	1,600
		직책수행경비 (250-02)	200			
	전력발전지원 (7131-314)	일반연구비 (260-01)	120		일반수용비 (210-01)	53
		정책연구비 (260-02)	10		국내여비 (220-01)	77
	주요기관 기본경비 (7111-254)	포상금 (310-03)	4		포상금 (310-03)	4
	소 계		1,734	소 계		1,734
조정 ('23.07.21.)	모형항공기/에어쇼 (7131-313-005)	일반용역비 (210-14)	273	국군의 날 행사 (7131-313-001)	일반용역비 (210-14)	209
	부대개방행사 (7131-313-012)	일반수용비 (210-02)	23			
	모형항공기/에어쇼 (7131-313-005)	일반용역비 (210-14)	11		일반수용비 (210-01)	264
	지상군페스티벌 (7131-313-004)	일반용역비 (210-14)	12			
	기타정책사업 (7131-315-009)	일반용역비 (210-14)	154			
조정 ('23.9.20.)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7131-301-008)	임차료 (210-07)	100		일반용역비 (210-14)	100
	소 계		573	소 계		573

자료: 국방부

127)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은 코로나-19 등 고려 축소시행하고, 2023년이 건군 75주년, 한미동맹 70주년 등 주요계기와 겹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규모 행사로 계획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3년 비목별 편성근거와 실제 집행 내역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비목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특히 일반수용비(편성 6.7억원, 집행 18.9억원), 일반용역비(편성 24억원, 집행 64.9억원)에서 차이가 두드러짐.

[2023년 국군의 날 행사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편성		집행	
	금액	주요 내용	금액	주요 내용
일반수용비 (210-01)	**6.7**	훈련/행사용품 구매, 각종 수수료 등	**18.9**	기념음악회(8억), 개발장비 참여(4.3억), 초청 및 영접안내 등(3.7억), 기타(2.9억)
공공요금 (210-02)	1.5	전기료, 체신료(숙영지 IPTV 수신료) 등	0.1	공공요금
피복비 (210-03)	1.0	훈련피복비(T셔츠, 태권도복 등)	0.9	행사피복
급식비 (210-04)	8.7	행사제대 급식비	1.6	훈련장병 증식비
임차료 (210-07)	10.5	시설·행사차량·장비 등 임차료	7.4	수송버스 임차(1.5억), 행사병력 휴게시설 임차(4.8억), 기타(1.1억)
시설장비유지비 (210-09)	2.2	행사용 시설물 유지 보수비	0.1	행사장 복구
재료비 (210-11)	8.6	각종 소모품 구매	3.3	훈련 재료비(1.3억), 고공강하, 군기단 등(2억)
일반용역비 (210-14)	**24.0**	기획사 행사용역비, 해외참전용사 초청 등	**64.9**	행사기획사, 해외초청사업 용역 등
국내여비 (220-01)	0.3	출장여비	0.6	여비지원
사업추진비 (240-01)	0.6	훈련/행사 업무추진비	0.2	소집교육 지원 등
관서업무추진비 (240-02)	0.3	훈련/행사 업무추진비	0.6	대외기관 업무협조 등
포상금 (310-03)	0.8	우수부대 포상금	0.9	국군의 날 우수부대 포상금
공사비 (420-03)	14.6	행사용 설치물 공사비	-	-
자산취득비 (430-01)	0.1	행사용 통신장비 구매	0.1	행사장 비품 구매
계	**79.9**		**99.4**	

자료: 국방부

○ 한편, 국군의 날 행사 최근 5년간 결산을 보면, 대규모 행사를 계획했다가 소규모 행사를 실시한 2022년을 제외하면 매년 집행이 편성액을 초과하고 있음.

[국군의 날 행사 편성 및 집행 현황(2019~202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999.7	999.7	999.7	7,985.1	7,985.1
집행액	1,016.5	1,209,7	1,353	3,761.5	9,935.7

자료: 국방부

○ 이처럼 편성과 집행간 차이가 발생한 것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과 달리 구체적인 **행사 계획서 작성이 미흡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128)]

따라서 국방부는향후 행사 추진 시에는 편성 시점 이전에 구체적인 행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사 종료 후 사후 검토 및 환류를 통해 편성·집행간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방부는 **2024년초 「부대관리훈령」을 개정**했는데, 기존 훈령은 대통령 취임 첫해에만 대규모 행사를 하도록 했으나 개정 훈령은 “안보 상황,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 판단에

128) 위 지침은 행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행사계획서**는 허례허식이나 낭비요소가 없도록 행사개최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분석한 후 작성**”하고, “행사경비는 경비의 성질에 따라 **예산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 5년 주기보다 자주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국방부는 **2024년에도 대규모 행사**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79.9억원)하였음.

[「부대관리훈령」 개정 현황]

기 존	현 행(2024. 2.23. 시행)
제313조(행사규모)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실시**하고, **소규모 행사는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3조(행사규모) ① 국군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하며, 행사내용의 구성, 초청 인사의 규모 및 행사 참여 장병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와 소규모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

○ 이처럼 향후 대규모 행사 실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는데 대규모 행사를 연속하여 실시해야할 필요성·적절성[129] 및 훈령 상 요건의 불명확성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행사 예산 편성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임.

129) 예컨대, 2023년 행사의 경우 증강현실로 등장한 정조대왕함 재현과정에서 일부 방송사의 송출오류로 끊김현상이 발생하였고, 당일 우천으로 인해 한미연합 공중전력 분열, 집단·고공강하 등이 취소되는 등 행사 진행 상의 제한사항도 발생하였음. 대규모 행사 실시는 국군의 사기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행사준비 행정소요 증대, 예측하지 못한 상황 발생시 예산대비 효과 저하 등 부정적 효과의 발생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5) 군 배상금(7136-301): 5.18 배상금 급증에 대한 대비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군 배상금(7136-301)은 민간에 대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군용 비행장·사격장 소음(‘소음피해배상금’) 또는 국방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 피해(‘일반 배상금’)로 구분됨.

○ 2023년도 예산액 277억 500만원에 이·전용등(증) 606억 9,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83억 9,800만원 중 878억 9,800만원이 집행되고, 5억원이 불용됨.

[2023년도 군 배상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군 배상금	27,705	-	60,693	88,398	87,898	-	500	17,689
일반배상금	17,689	-	60,754	78,443	78,248	-	195	17,68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에서는 2023년 국방부 이·전용 등 예산변경 중 **가장 큰 규모의 이용 증액 약 607억원이 발생**하였는데, 대부분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을 위한 것임.

[2023년도 군 배상금 이용 현황]

(단위: 백만원)

이용일자	금액	세부사업 명	비목	재원 이용 사유
'23. 4.25.	30,000	병인건비 (1101-153)	보수 (110-01)	'22년 하반기 입영률 저조로 인한 '23년 병 인건비 불용액
'23. 9.21.	4,493	의무물자확보 (2231-304)	일반수용비 (210-01)	육군 마스크 구매 감소에 따른 의무물자 불용액
'23.10.27.	1,700	진료지원 (2231-301)	일반수용비 (210-01)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집행잔액
	3,500	의무물자확보 (2231-304)	일반수용비 (210-01)	
'23. 12. 4.	600	민간조리원운영 (1231-305)	상용임금 (110-03)	민간조리원운영 집행잔액 의무물자확보 집행잔액 항공장비, 함정장비, 정밀측정장비, 항공장비(유지), 기동장비(유지) 등 집행잔액 작전상황연습 집행잔액
	5,000	의무물자확보 (2231-304)	일반수용비 (210-01)	
	1,400	항공장비 (2331-303)	자산취득비 (430-01)	
	3,800	함정장비 (2331-304)	자산취득비 (430-01)	
	200	정밀측정장비 (2331-308)	자산취득비 (430-01)	
	5,300	기동장비(유지) (2333-305)	재료비 (210-11)	
	680	항공장비(유지) (2333-307)	시설장비유지비 (210-09)	
	800	항공장비(유지) (2333-307)	재료비 (210-11)	
	1,920	과학화훈련 (2434-301)	자산취득비 (430-01)	
	1,300	작전상황연습 (2438-302)	임차료 (210-07)	
합계	**60,693**			

자료: 국방부

○ 관련 경과를 보면, 1990년 제정된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법률」[130]은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는데, 2021년 헌법재판소는 재판상 화해의 범위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하였음.[131]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旣 보상금 수령 피해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2023년 대법원이 최종 지급판결을 하면서 배상금 소요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20년 재출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132]가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의 범위를 과거보다 넓게 인정함에 따라 피해자 인원 자체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소송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133]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방부 일반 배상금 소요가 크게 증가하여 5.18 배상금이 2023년 56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 6월 현재 배상금도 이미 100억원을 초과하였음.[134]

---

130) 현행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전신 법률임.

131) **구법 제16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등과의 관계등)** ②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단순위헌**, 2019헌가17,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13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3조(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독립성)** ①이 법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둔다.

133)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배상금 소멸 시효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함(대법원 2020다270633)

134) 군(국방부)과 경찰(법무부) 공동 소송수행 사건은 판결문상 가해정도, 군·경찰간 이송 등 수많은 변수를 감안할 때 책임 비율 계산의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범위에서 부처간

[일반배상금 지급 현황]

(단위: 건, 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6.현재		
	건수	인원	지급액	건수	인원	지급액	건수	인원	지급액
합 계	591	971	16,193	845	2,646	77,591	214	522	13,869
518 민주화운동	**10**	**34**	**1,796**	**224**	**1,648**	**55,953**	**41**	**240**	**10,079**
기타 과거사 (보도연맹, 긴급조치 등)	11	147	2,937	56	294	11,340	8	73	2,078
무단점유	17	148	1,306	32	40	2,671	12	24	422
소송비용	99	104	637	74	75	545	14	14	92
구상금, 기타 손해배상	36	80	8,469	53	152	5,818	8	22	917
지배심·특배심	418	458	1,048	406	437	1,264	131	149	281

자료: 국방부

○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135]은 법정 지급기한을 7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여야 함.

국방부는 배상금 조기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2023년에도 예산 이용 관련 절차 소요시간 등에 따라 약 6,562만원의 지연이자가 추가 발생되었음.

협의하여 지급하고 있음.

135) 제13조(임의변제의 절차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변제청구서를 받은 지급기관은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특별회계 소관사건에 관하여는 2주일 이내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2023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인 향후 3년간 5.18 **기존 배상금 수령자**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배상금 소송이 지속될 것이 거의 확실히 예견되는 상황임.[136]

따라서 국방부는 관련 소송 경과 및 기존 피해자 통계 등을 분석하여 배상금 소요를 과학적으로 추계한 후, 이를 기반으로 정부 예산안 편성시 배상금 예산을 정확히 반영하여

2023년과 같이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예산 이·전용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지연이자 등 불필요한 예산 추가소요 발생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음.

136) 그 외에 기존 피해자가 아닌 신규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배상금 소요도 제기될 수 있음. 다만, 이들의 숫자는 기존 피해자보다는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1) 평택기지이전사업(4231-301): 한미간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 부진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평택기지이전사업(4231-301)은 용산, 동두천, 부평 등 전국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462억 3,1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22억 1,1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84억 4,200만원 중 393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183억 1,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평택기지이전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평택기지이전 사업	46,231	12,211	-	58,442	39,385	18,313	744	27,553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주한미군기지 이전계획은 크게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있는데[137]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 및 효율적인 국토활용 등을 목적으로, 산재된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평택, 대구 등으로 이전[138]하는 계획임.

[미군기지 이전계획 개황(총 40개 기지)]

구분	기지 수	비용분담	이전계획	비고
용산기지이전계획 (YRP)	9개	한국	**용산 주변 9개소 → 평택**	YRP·LPP 협정에 의거, 먼저 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비용부담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8개	한국	**동두천(2개), 서울, 인천 등 4개소→ 평택**	
			기타 4개소: 평택 외 이전	
	23개	미국	의정부, 파주 등 → 평택 등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은 이전계획 중 평택 이전 13개 기지(YRP 9개, LPP 4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LPP는 완료되었으며, YRP의 경우 73개 프로젝트 중 71개가 완료(2023년 말 기준)되었고, '임시기반시설 추가공사' 및 '용산잔류미군시설' 2개가 진행 중임.

---

137) LPP(Land Partnership Plan): 미2사단 7개+한강이남 24개, YRP(Yongsan Relocation Plan): 용산 주변 등 9개 기지
미군기지 이전은 **2003년 5월 양국 정상이 용산기지 이전에 합의하면서 시작**되어 2004년 12월 YRP 포괄협정 및 LPP 개정협정 국회 비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2005년 12월부터 부지 매입이 개시되었음.

138)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 전국 **91개 지역 총 2억 4,197만m²**에 산재된 미군기지를 평택, 대구 등 2개 권역 **49개 지역 7,664m²**로 이전하는 계획임.

○ 2023년의 경우 상기 진행 중인 2개 사업의 지연에 따라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7.4%에 그치고 있는데,[139]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23년도 평택기지이전사업 예산현액 대비 집행]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국제 부담금 (340-02)	기본조사 설계비 (420-01)	실시 설계비 (420-02)	공사비 (420-03)	감리비 (420-04)	시설 부대비 (420-05)	자산 취득비 (430-01)
계	**예산**	**58,442**	**12,121**	**568**	**541**	**37,286**	**7,510**	**56**	**360**
	집행	**39,385**	**12,121**	**-**	**41**	**19,734**	**7,192**	**39**	**258**
다운타운지원시설Ⅱ (2023년 완료)	예산	10,008				10,008			
	집행	10,008				10,008			
임시기반시설	**예산**	**10,357**	**77**		**275**	**10,005**			
	집행	**1,847**	**77**		**-**	**1,770**			
용산잔류 미군시설	**예산**	**568**		**568**					
	집행	**-**		**-**					
정보보안시설Ⅰ (2023년 완료)	예산	11,770	11,770						
	집행	11,770	11,770						
기타 시설 (2022년 완료)	예산	1,755			77	1,678			
	집행	1,691			41	1,650			
(C4I)용산잔류 미군시설	**예산**	**608**	**274**			**334**			
	집행	**455**	**274**			**181**			
(C4I)이전/기타	예산	4,541			189	3,992			360
	집행	1,050				792			258
공기연장간접비	**예산**	**11,269**				**11,269**			
	집행	**5,333**				**5,333**			
사업관리용역비	예산	7,510					7,510		
	집행	7,192					7,192		
시설부대비	예산	56						56	
	집행	39						39	

자료: 국방부

139) 최근 5년간 집행률: 2019년 85.0%, 2020년 78.3%, 2021년 78.3%, 2022년 82.8%, 2023년 67.4%

○ 첫째, 임시기반시설은 ① 대테러/부대방호 시설 관련 미측이 요구하는 시설소요에 대한 이견으로 집행이 지연되었고,[140] ② 의료캠퍼스 저류지는 설계 착수(2019.12.) 후 미측의 추가과업 요구 등을 이유로 설계업체와 계약을 해지(2021.8.)하고, 미측의 수리분석 결과에 따라 추진예정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잠정 보류된 상태임.

둘째, 용산잔류 미군시설은 위치·면적·경계 등 잔류시설 소요 변경(2022.4.)에 따라 한·미가 재협의에 착수하면서 미측의 설계업체 선정이 중지되었고, 2024년 7월 현재까지 잔류시설 소요를 확정하기 위해 한미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음.[141]

○ 한·미 협의 지연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방부는 양국간 협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등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40) 2024년 5월 시설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소요도출을 위한 양측 관계자 합동토의를 2회 실시하였으며 계획된 예산 내에서 기본설계를 연내착수하고 설계단계에서 시설소요를 재검증하기 위해 협의 중임.

141) 이외에, 공기연장간접비(예산 112.7억원 중 53.3억원 집행) 집행부진은 창고시설 등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추가공사비 등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판결 지연에 따른 것임.

(2) 기타이전지원(4232-303): 이사용역비 연례적 집행부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기타이전지원(4232-303)은 반환기지 내의 구 시설물 철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 및 이전수당 제공,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 35억 4,3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6,200만원과 이·전용등(감) 5억 9,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6억 1,500만원 중 23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1,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억 2,0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기타이전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기타이전지원	3,543	662	△590	3,615	2,381	114	1,120	2,614
이사용역비	311	620	-	931	310	67	554	7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이사용역비’는 매년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2022 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에도 “국방부는 이사에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시장조사·원가조회를 면밀히 하여 연례적인 이사용역비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주의)”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음.

그런데, 2023년에도 예산현액 9억 3,100만원 중 3억 1,000만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은 33.3%로 매우 저조한 상황임.

[이사용역비의 결산 현황(2018～2023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전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18	18,221	-	18,221	9,157	50.3	1,445	7,619
2019	2,735	1,445	4,180	2,936	70.2	1,244	-
2020	1,383	1,244	2,627	547	20.8	1,372	708
2021	1,628	1,372	3,000	512	17.1	1,628	860
2022	1,089	1,628	2,687	820	30.5	620	1,247
2023	**311**	**620**	**931**	**310**	**33.3**	**67**	**554**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측 부대이전 계획 취소·변경 등 이사 소요 감소(미 본토에서 장병 직접 이동, 3개월 내 본토귀국 예정자 이사 미실시 등), 수도권 선호에 따른 이사 미실시[142] 등으로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미군 측 이사계획 변경·취소에 따른 이사용역비 미집행이 일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예산 감축 편성 등에도 불구하고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따라서, 국방부는 지속적으로 미군측과의 협의를 강화[143]하는 등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142) 국방부는 미군이 자녀 교육여건(국제학교 등), 미 연합사의 서울-평택간 출퇴근 셔틀버스 운행 등에 따라 수도권 거주를 선호하여 이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음.

143) 국방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3년 중 이사용역 공동실무작업반 협의회 7회, 서신 발송 2회 등을 수행했다고 하나 집행률 개선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음.

3.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4131-457):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재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은 광주 지역 내 무등산 정상에 위치하는 방공포대를 이전함으로써 지역 내 부대이전 요구 민원 해소 및 도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임.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3억 9,0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 이·전용 없이 예산현액 3억 9,000만원 중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전액인 3억 9,0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390	-	-	390	-	-	390	39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은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을 통해 무등산 정상 일대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무등산 방공포대 부지는 광주광역시(7.6만㎡), 화순군(1.9만㎡), 대한불교조계종(1.3만㎡)이 소유하고 있고, 무상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 소유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한 이전이 불가능하여 특별회계를 통해 이전이 추진되고 있음.

○ 무등산 방공포대의 이전후보지에 대해 2016년 4개소, 2023년 6개소 대상 작전성검토를 시행한 결과, 現 광주군공항 위치가 최적지로 검토됨.

그러나, 광주 군공항이 현재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144] 방공포대의 주요 설치목적은 군공항 방어라는 점에서 무등산 방공포대를 現 광주 군공항 부지로 이전하더라도 광주 군공항이 이전하게 될 시 재차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2023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전액 불용되었는데, 국방부는 2024년에도 동일한 액수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144)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는 토지 매각대 등의 세입을 재원으로 지출 예산을 마련하는데, 2023회계연도에는 세입재원이 부족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784억 2,000만원을 예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이자로써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 35억 6,800만원을 세출로 편성함.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당장 진행되기 어려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이자 상환액 감소로 이어지는 바 국방부 특별회계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 예산편성을 중단한 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가시화되면 다시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사업을 연계편성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2) 부대개편 8차 사업(4131-489): 부대개편 사업의 적기추진 노력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부대개편 8차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 내용으로 1사단, 3사단, 6사단, 7군수지원단, 특수기동지원여단, 육군검찰단, 해체/이전부대 역사관 등 22개 부대를 미래 부대구조로 개편하고 있음.

○ 2023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79억 1,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은 없으며, 이·전용등(감) 1억원으로 예산현액 78억 1,800만원 중 57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16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억 2,200만원이 불용됨.

[2023년도 부대개편 8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대개편 8차 사업	7,918	-	△100	7,818	5,756	1,640	422	14,539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부대개편 8차 사업은 「'14～'30 국방개혁 기본계획」 중 「'17～'22 부대개편 추진계획」에 따라 22개 부대의 구조 및 관련 시설을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예산이 편성·집행되었음.

○ 육군 부대개편 사업은 2023년 기준으로 8차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부대개편 2차 사업을 제외하고는 당초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완공되었거나 초과할 것으로 보임.

부대개편 8차 사업 역시 사업 첫해부터 3사단 본부개편 사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당초 사업기간 초과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육군 부대개편 사업 추진 현황]

구분	대상 부대수	당초 사업기간	변경 사업기간	사업 추진 현황	비고
부대개편 1차	4	'15 ~ '20	'15 ~ '21	완료	-
부대개편 2차	35	'17 ~ '20	-	완료	-
부대개편 3차	22	'18 ~ '21	'18 ~ '22	완료	-
부대개편 4차	27	'19 ~ '22	'19 ~ '25	진행 중	2023년도 집행률(현액대비) 70.8%
부대개편 5차	38	'20 ~ '23	'20 ~ '26	진행 중	2023년도 집행률(현액대비) 79.9%
부대개편 6차	29	'21 ~ '24	'21 ~ '26	진행 중	2023년도 집행률(현액대비) 74.5%
부대개편 7차	41	'22 ~ '25	-	진행 중	2023년도 집행률(현액대비) 56.1%
부대개편 8차	22	'23 ~ '26	('23 ~ '28)	진행 중	2023년도 집행률(현액대비) 73.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부대개편 8차 사업 중 3사단 본부 개편 내역사업은 집행률이 특히 낮음. 3사단 본부 개편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3억 4,200만원 중 100만원이 집행되고, 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억 3,6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예산현액대비 0.3%에 불과함.

[2023년도 3사단 본부 개편 내역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부대개편 8차 사업	7,918	-	△100	7,818	5,756	1,640	422	14,539
3사단 본부 개편	342	-	-	342	1	5	336	345

자료: 국방부

○ 3사단 본부 개편 사업의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사단본부 이전 계획 재조정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져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임.

[3사단 본부 이전 내역사업 진행 경과]

구분	기간	사단본부 이전 계획	비고
사업타당성조사	2021.10. ~2022.6.	강원 철원군 자등리 → 경기 포천시 사정리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철원 지역 민원 등으로 사업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함
사업타당성재조사	2023.9. ~2024.4.	강원 철원군 자등리 → 강원 철원군 문혜리	-

주: 상기 조사는 모두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수행하였음.
자료: 국방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국방부는 타 지역으로의 이전을 반대하는 철원 지역 민원(안보지방자치단체(철원군) 대표성 상실, 지역경제 악화 우려)에 의해서 사업타당성재조사를 실시했다는 입장임.

그런데, 해당 민원내용은 사업타당성조사를 할 때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로 보이는바, 군부대의 소재지 등은 전방 지역에 있어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국방부는 초기 입지선정 단계에서 해당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한 부대개편 사업에 있어 사업타당성조사를 의뢰하기 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한편, 부대개편 8차 사업이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음.

4. 군인연금기금

(1) 변상금(57-571): 장기 미수납 변상금에 대한 관리강화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

○ 변상금(57-571)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없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입과목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으나 25억 5,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된 금액 25억 5,500만원 전액을 미수납하였음.

[2023년도 변상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예산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변상금	-	-	-	-	2,555	-	2,555	-	-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변상금은 군인연금기금이 보유한 부동산 계약만료 후 무단점유에 따른 것으로, 총 2건[145] 25억 5,500만원(2021년 기준)이 장기미수납되고 있으며, 무단점유가 지속됨에 따라 변상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는 변상금을 매년 고지하지 않고, **2019년, 2021년, 2024년에 각각 징수결정**하여 고지했기 때문에 결산상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일정 기간 증가하지 않고 동일금액이 유지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변상금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이체등 증감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						
2019(고지)	-	-	-	-	1,648	-	1,648	-
2020	-	-	-	-	1,648	-	1,648	-
2021(고지)	-	-	-	-	2,555	-	2,555	-
2022	-	-	-	-	2,555	-	2,555	-
2023	-	-	-	-	2,555	-	2,555	-
2024(고지)	-	-	-	-	4,389	-	4,389	-

자료: 국방부

145) 대전광역시 부지 2개소.

○ 2건 변상금은 각각 2016년, 2017년부터 발생했지만 회생절차, 관련 소송 제기 등으로 납부가 장기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상금 원금 뿐 아니라 연체료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연체료 5억 6,500만원 중에서 1억 5,800만원만 수납(2024년 6월 기준)되었음.[146]

[장기 미수납 변상금 개요]

구분	㈜이OO	김OO
소재지	대전광역시 A부지	대전광역시 B부지
금액	2023년 기준: 1,360백만원 2024.6. 기준: 2,391백만원	2023년 기준: 1,195백만원 2024.6. 기준: 1,998백만원
발생사유	사용허가기간('13.5.~'17.5) 종료 후 미철거	사용허가기간('12.11.~'16.11) 종료 후 미철거
수납현황	대상기업이 회생절차를 개시하여 440백만원 10년간 변제 예정('22~'31)	변상금 회수업무(재산조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23.11.)
관련 소송 등 현황	화해조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 제기('23.11.10.)하여 소송 진행 중 * 화해조서 : 계약해지 시 ㈜이OO이 건물철거 하겠다는 확약 - 화해조서 시효 만료일('23.11.10.)에 소장 접수 - 법원은 화해권고('24.5.)했으나, ㈜이OO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진행 중	김OO 대상 건물철거·토지인도청구 소송 승소('22.4.)했으나, 김OO가 건물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일부이전하여 제3자 대상으로도 토지인도 소송제기('23.11)

자료: 국방부

○ 국방부는 납부고지서·독촉장 발부, 유선 연락, 직접 방문 등 회수 활동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146) 연체료는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비목으로 수납되고 있음. 변상금 및 연체료가 모두 있는 경우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채권의 징수 순위)에 근거하여 연체료를 우선 수납함.

관련 소송 경과에서 보는 것처럼 시효 만료일 당일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유권 제3자 일부이전 소송제기에 약 1년이 소요되는 등 미납채권에 대한 적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일반적으로 미납채권에 대해 연 1회 이상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는 것[147]과 달리 2, 3년 간격으로 고지서를 발부함에 따라 「국가채권 관리법」[148]에 따른 납입 독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정기적 채무자 재산유무 확인 조치 등도 원활히 실시되지 못하였음.

○ 따라서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 장기 미수납 변상금 수납실적 제고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변상금을 부과하고, 담당자 변경·교체 등과 관계없이 관련 지침[149]에 따라 채권회수 업무가 연속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147)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미수납채권이 있는 경우 회수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148) **법 제14조(독촉)**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3조에 따라 고지된 납입기한(납입고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채권은 이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징수관에게 이행의 독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은 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하고 독촉에 의한 납입기한(이하 "독촉기한"이라 한다)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149) 연관 규정으로 「국방부 채권관리지침」이 있으나, 해당 지침은 **일반회계 채권관리에만 적용**되고 있음. 국방부는 2024년 중 해당 지침이 일반회계 뿐 아니라 기금 등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는 입장임.

5. 군인복지기금

(1) 장학사업(2239-646): 「군인복지기금법」 미준수 등을 고려한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기금 집행내역

○ 장학사업(2239-646)은 군 자녀 중 대학 신입생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액은 28억원으로 이 중 23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8,7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3년도 장학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장학사업	2,800	2,800	-	2,800	2,313	-	487	2,800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동 사업은 「군인복지기금법」[150]에 근거하여 **현역 군인 자녀 중 대학교 신입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최초 도입(1999년)시에는 성적 기준없이 모든 대학신입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다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모든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지원하였고, 2017년 다시 제도가 변경되어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1학년 1학기 성적 '85점 이상' 학생에게 지급하다가, 2018년부터 '8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음.

2024년부터는 '80점 이상'인 경우 100만원 지원하고, 여기에 더해 '95점 이상'이면 100만원을 추가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2024년 지급방식 변경은 **2022회계연도 기금존치평가**에서 국가장학금 등이 차등지급하는 점을 고려하여 동 사업도 장학금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성적기준을 강화하라는 지적에 따른 것임.

○ 2022년 및 2023년은 기존에 비해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는데, 국방부는 군인부모 전역, 성적 미달, 미신청 등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

150) 법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장학사업 집행현황(2019~2023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2,400	2,400	2,400	2,800	2,800
집행액	2,270	2,402	2,399	2,389	2,313
집행률	**94.6**	**100.1**	**100.0**	**85.3**	**82.6**

자료: 국방부

○ 동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군인복지기금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달리,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2016년부터 **수행하지 않고 있음**.

[「군인복지기금법」상 복지계정의 용도]

제4조(복지계정의 재원과 용도) ② 복지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복지시설등의 유지 및 관리
2. 복지시설등의 신설 및 증설
3. 군인·군무원 및 그 가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군인 및 군무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의 지원**
5. 예비역 군인의 군사연구활동의 지원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그 밖에 복지계정의 조정·관리 또는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상기 법률에 규정된 복지계정의 용도 중 현재 **실제 수행하지 않는 사업**은 군무원 자녀 장학사업이 **유일**함.

군무원 자녀 장학사업은 동 법 제정시(1995년)부터 기금의 용도로 명시되어 있었으며, 국방부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6년 이를 폐지하였음.[151]

둘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152]등 관련 법령이 **학자금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교육부에 따르면 생활비 목적 지원금이 아닌 모든 학자금 지원은 위 법률에 따라 '국가장학금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153] 국방부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것임.

---

151) 국방부에 따르면 주거이동이 잦은 군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한 것인데, 군무원의 경우 주거이동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에 따라 2014년부터 군무원은 다자녀, 장애 자녀 등에 한정하였다가 2016년부터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152)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①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학자금대출 및 학자금 무상지급이 다른 학자금에 관한 지원과 중복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학자금 중복 지원의 기준 및 예외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학자금 지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전자시스템(재단이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지원기관의 설립 유형 및 학자금 지원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

153) 구체적으로, 중복지원 금지는 여러 기관의 장학금 지원 합계가 해당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임. 한국장학재단은 동 법률의 취지에 대해 "정부 학자금이 일부 학생에만 편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https://www.kosaf.go.kr/ko/main.do)

국방부는 동 사업은 당초 잦은 전학 등으로 학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학에 진학한 군인 자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으로 시작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중복지원 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는 입장임.

그러나, 과거의 사업추진방식과는 별론으로 현재 동 사업은 사업명칭(‘장학사업’) 및 추진 방식(성적 기준 장학금 지원)을 볼 때 학자금 지원 사업으로 보이는바, 중복지원 대상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추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셋째, 성적 기준이 일정하지 않고, 1학년 1학기 성적만을 기준으로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움.

일반적인 장학사업처럼 매 학기 성적 또는 졸업 시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학년 1학기 성적 기준으로만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장학금 지원방식으로 보기 어려운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과거 사업 시작 당시의 연원(격려금 성격의 지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결론적으로,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법」(군무원 자녀 장학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중복지원 금지) 등 관계 법률 규정 및 성적 기준의 합리성 미흡 등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겠음.

(2)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자금부족 및 지원근거 미비를 고려한 회계이관 등 검토 필요

(가) 주요 사업내용 및 기금 집행내역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은 군 관사 부족으로 입주 대기 중인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계획액은 476억 1,000만원, 수정계획액은 781억 6,700만원으로 이 중 781억 6,7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음.

[2023년도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군간부 전세자금 이자지원	47,610	78,167	-	78,167	78,167	-	-	52,107

자료: 국방부

(나) 검토의견

○ 국방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서 국가가 군 간부에게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와 민간주택임대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군인복지기본법 상 주거지원 규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국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거지원을 제공받은 군인에게 입주**보증금 등 주거지원에 따른 금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군 숙소의 규모와 시설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④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 법률에 따른 주거지원은 관사·독신자숙소와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관사·독신자숙소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세자금은 군인복지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는 월 16만원의 주택수당[154]을 지급하고 있음.

[군 간부 주거지원 현황]

구분	군 관사	독신자 숙소	민간주택 임대지원
지원 대상	부양가족 有	부양가족 無	부양가족 有 (근무지 관사 부족 시)
종 류	일반(직접건립, 매입) BTL(민간건립)		이자지원 (시중은행 대출)
회 계	일반회계		군인복지기금

주: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은 주택수당 지급(하사~중령)

자료: 국방부

○ 2023년에는 금리급등을 고려하여 9월 14일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수정계획액은 781.7억원으로 당초 계획액보다 65% 정도 증가하였음.[155]

[2023년 기금운영계획 변경]

2023년 당초 계획		기금운영계획변경(9.14)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7,610	○ 이차보전금(320-05) : 47,610백만원 **· 7,110세대×182백만원×3.68%** = 47,610백만원	78,167	○ 이차보전금(320-05) :78,167백만원 · (1~7월 실집행) 42,998백만원 평균 8,216명 × 대출 194,614천원 × 금리 4.61% × 7/12개월 · (8~12월 집행전망) 35,169백만원 평균 8,216명 × 대출 198,710천원 × 금리 5.17% × 5/12개월

*자료: 국방부

154) 관사·독신자숙소의 노후화·부족문제 및 민간주택 전세자금 이자지원 과소 편성과 별개로, 주택수당은 실질적인 주거비용 보전에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55) 앞서 본 것처럼, 「군인복지기본법」이 군 간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평균주거수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하여 적용 금리를 상향 조정한 것임.

○ 국방부는 2013년부터 군인복지기금으로 전세자금 이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도의 연혁을 보면 2001년 원금대부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3년 이자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원금대부와 병행 운영하다가, 2021년부터는 이자지원으로 단일화되었음.[156)]

○ 이자지원은 융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많은 인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원금이 회수되지 않으므로 별도 수입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는 군인복지기금 주거계정 수입으로 2022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각각 200억원씩 총 400억원, 2023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350억원을 편성·수납한 바 있는데,

2024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50억원을 편성하여 최근 추세 대비 감액 편성하였음.

이러한 예결산 상황을 볼 때, 2024년말에는 여유자금이 3,647억원으로 감소하여 군인복지기금의 채무 성격인 주거지원보증금 3,648억원(2023년말 기준)보다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156) 2017년부터 이자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원금 대부보다 사업비가 커졌으며, 원금 대부는 2022년부터 미편성하며 단계별 종료 예정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 여유자금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3년말 여유자금 (A)	2024년 공자기금 예수금 (B)	2024년			2024년말 여유자금 (A+B-C)
			소계(C)	전세대부 이자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금액	4,041	150	544	521	23	3,647

주: 주거지원계정내 주요사업(전세자금 이자지원) 지출만을 반영하여 추산(이자, 경상 수입·지출 제외)
자료: 국방부

○ 물론, 주거지원보증금은 채무이긴 하지만 연간 신규 보증금 징수 수입과 보증금 반환 지출이 약 1,200억원 수준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보증금 총액보다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당장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아님.

하지만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어야 하는 보증금을 타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군인복지기금 내 타 계정인 복지계정 등의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병사들의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수익을 간부의 주거지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157]이 이러한 계정간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57) 시행령 제5조(주거지원계정의 운용)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인복지기금의 다른 계정으로부터의 예수금은 **주거지원계정의 다른 재원으로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시행자금 부족 문제는 동 사업을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 계정으로 편성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제기되었고, 국방부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부터 **일반회계 이관결정**하였으나 2024년까지 회계이관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국방부는 동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거나[158]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을 편성하는 방안 등 뿐 아니라 기금 내 여유자금 활용의 적절성 및 법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자금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음.

158) 앞서 본 것처럼, 군 간부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중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만 기금에서 추진하고 있고 다른 사업은 모두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전문위원 류승우)

Ⅰ 결산개요

1. 결산총괄

1. 결산총괄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159]제정에 따라 설치된 독립 위원회로 2019년 12월 27일 출범하였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160]은 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후 2년간 진상규명을 하되,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2차례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2023년 12월 26일에 위원회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었으며, 2024년 6월 26일 종

1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일: 2018. 3. 14, 시행일: 2018. 9. 14)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에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6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기간 만료 이전에도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조사를 종료할 수 있다.

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함으로써 최종 위원회 활동은 종료되었음. 2024년 8월 현재 위원회 사무처만 존속하여 잔존사무를 처리하고 있음.[161]

○ 위원회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38억 7,100만원이며, 이 중 112억 4,000만원(81.0%)을 집행하고, 26억 3,100만원(19.0%)이 불용되었음.

1.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등	이체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도	13,268	603	-	-	-	13,871	11,240	-	2,631
2022년도	13,733	481	-	-	-	14,214	11,914	603	1,697

161) [참고자료 2] 5·18조사위 잔존사무 추진 계획 참조

Ⅱ 주요내역

1. 세입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지체상금 반납금 징수에 따라 6,700만원의 위약금 수입이 발생하였음

2. 세출

가. 총 괄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예산액 132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00만원을 더한 138억 7,100만원으로, 이 중 112억 4,000만원(81.0%)을 집행하고, 26억 3,100만원(19.0%)을 불용처리 하였음.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경비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로 36억 7,800만원(32.7%)이 집행되었으며, 기본경비로 40억 4,600만원(36.0%), 사업비로 35억 1,600만원(31.3%)이 집행되었음.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합 계	13,268	603	-	-	13,871	11,240	-	2,631
○ 인건비	3,922	-	-	-	3,922	3,678	-	244
○ 기본경비	4,421	-	-	-	4,421	4,046	-	375
○ 5·18진상규명 지원	4,925	603	-	-	5,528	3,516	-	2,012

나. 인건비 및 기본경비

○ 2023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39억 2,200만원이며, 이 중 36억 7,800만원(93.8%)을 집행하고 2억 4,400만원(6.2%)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인건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인건비	3,922	-	-	-	3,922	3,678	-	244
- 인건비	3,922	-	-	-	3,922	3,678	-	244

○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예산액 44억 2,100만원이며, 이 중 40억 4,600만원(91.5%)을 집행하고, 3억 7,500만원(8.5%)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기본경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기본경비	4,421	-	-	-	4,421	4,046	-	375
- 위원회 기본경비	4,421	-	-	-	4,421	4,046	-	375

다. 주요 사업비

○ 2023년도 주요사업비 예산현액은 예산액 49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00만원을 더한 55억 2,800만원이며, 이 중 35억 1,600만원(63.6%)을 집행하였고, 20억 1,100만원(36.4%)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이체 전용 등	예비비				
▢ 5·18진상규명 지원	4,925	603	-	-	5,528	3,516	-	2,011
- 5·18진상규명 지원	4,925	603	-	-	5,528	3,516	-	2,011

라. 이월내역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액은 미발생하였음

마. 불용내역

○ 2023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38억 7,100만원 중 26억 3,100만원(19.0%)임.

내역을 살펴보면, 집행 잔액 등으로 인건비 2억 4,400만원, 지급 사유 미발생 등으로 기본경비 3억 7,500만원,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비 20억 1,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2023회계연도 불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 용 액
합 계	**2,631**
ㅇ 인건비	244
ㅇ 기본경비	375
ㅇ 5·18 진상규명 지원	2,012

○ 주요 불용 내역 및 사유는 위원회 인건비의 경우 별정직 급여에 대한 집행 잔액 등이고, 기본경비의 경우 청문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 발생

이 주요 원인이며,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의 경우 '5.18민주화운동 디지털 트윈 역사플랫폼 구축' 사업 등 일부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가 사업 미실시로 불용되었고, 손실보상금 및 포상금 또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됨.

3. 재무제표 분석

2. 가. 재정상태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13억 1,500만원이고, 부채는 2억 7,500만원이며, 순자산은 10억 4,000만원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상태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자 산	유동자산	1,054	1,542	△488	△31.6
	일반유형자산	255	315	△60	△19.1
	무형자산	5	218	△213	△97.7
	기타비유동자산	-	-	-	-
	자산계	**1,315**	**2,074**	**△759**	**△36.6**
부 채	유동부채	9	-	9	순증
	장기충당부채	267	50	217	434
	부채계	275	50	225	450
순자산	기본순자산	442	442	0	0
	적립금 및 잉여금	598	1,582	△984	△62.2
	순자산조정	-	-	-	-
	순자산계	1,040	2,024	**△984**	**△48.6**

○ 2023회계연도 말 자산은 2022회계연도 대비 7억 5,9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진행 중인 용역 관련 선급금 감소 및 소프트웨어 무형자산 상각에 기인한 것임

○ 2023회계연도 말 부채는 2022회계연도 대비 2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무실 원상복구 관련 기타장기충당부채 증가등에 기인함

○ 2023회계연도 말 순자산은 2022회계연도 대비 9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음.

3. 나. 재정운영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128억 4,100만원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운영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12,841	12,350	491	4.0
Ⅱ. 관리운영비	-	-	-	-
Ⅲ. 비배분비용	-	-	-	-
Ⅳ. 비배분수익	-	1	△1	△100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2,841	12,349	492	4.0
Ⅵ. 비교환수익 등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12,841**	**12,349**	**492**	**4.0**

○ 프로그램 순원가는 128억 4,100만원으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억 9,200만원 증가함

4. 다. 순자산변동표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10억 4,000만원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Ⅰ. 기초순자산	2,024	1,880	144	7.7
Ⅱ. 재정운영결과	12,841	12,349	492	4.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1,857	12,494	△637	△5.1
Ⅳ. 조정항목	-	-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040**	**2,024**	**△984**	**△48.6**

○ 순자산의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28억 4,100만원임.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118억 5,700만원으로 주로 국고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감소함

Ⅲ 검토의견

1. 세출

가. 5·18 진상규명 지원(1031-300) 사업 관련

(1) 결산 개요

○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1031-300)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5·18 조사위”라 함)의 조사활동을 위한 사업임.

○ 2023년도 예산현액은 예산액 49억 2,5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6억 300만원을 더한 55억 2,800만원으로, 이 중 35억 1,600만원(63.6%)을 집행하였고, 20억 1,200만원(36.4%)은 불용되었음.

[2023년도 5·18 진상규명 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목-세목 코드	목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10-01	일반수용비	531	531	-	-	-	531	439	-	92
210-14	일반용역비	610	610	337	-	-	947	680	-	267
210-15	관리용역비	20	20	-	-	-	20	20	-	-
220-01	국내여비	925	925	-	-	-	925	349	-	576
220-02	국외여비	42	42	-	-	-	42	2	-	40
240-01	사업추진비	2	2	-	-	-	2	2	-	-
240-02	관서업무추진비	52	52	-	-	-	52	52	-	-
260-01	일반연구비	2,564	2,564	266	-	-	2,830	1,940	-	890
310-01	손실보상금	22	22	-	-	-	22	-	-	22
310-03	포상금	97	97	-	-	-	97	13	-	84
430-01	자산취득비	60	60				60	20	-	40
합 계		**4,925**	**4,925**	**603**	**-**	**-**	**5,528**	**3,516**	**-**	**2,011**

(2) 국내여비 집행율 저조

○ 5·18 조사위는 21건의 직권조사과제 및 신청사건의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내여비를 2023회계연도에 9억 2,500만원 편성하였고 이 중 3억 4,9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37.7%임.

[국내여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목-세목 코드	목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20-01	국내여비	925	925	-	-	-	925	349	-	576

- 국내여비 세부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를 위하여 내부 직원 46명의 일비·식비·숙박비 등으로 총 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술인 등 30명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금[162] 지급 명목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3년 국내여비 세부 편성 내역]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세부 편성내역
925백만원	349백만원	37.7%	- 직원 46명×15만원(일비2, 식비2, 숙박6, 교통5만원) ×10회×12개월 = 828백만원 - 진술인 등 30명×10만원×3회×12개월= 9백만원

○ 2018년 3월「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5·18 조사위가 성립되어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한 2020년 이후부터 매년 국내여비 집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연도별 국내여비 편성/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목-세목 코드	목 명	집행내역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20-01	국내여비	예산액	925	949	780	100
		집행액	349	321	207	99
		집행률(%)	37.7	33.8	26.5	99.0

16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6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 2021년~2022년 조사활동 기간 동안 적게는 26.5%, 많게는 37.7%의 국내여비 불용률을 고려했을 때 2023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으나, 2023회계연도에서도 예산 집행률을 감안하지 않은 관계로 국내여비 과다 편성이 이루어졌음.

○ 5·18 조사위는 2023회계연도 국내여비 과다 불용 원인으로 2023년 12월 26일 위원회의 조사활동(현장조사, 대인조사, 관계기관 방문 등)이 종료[163]됨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2023년 상반기에 마무리되었고 하반기부터는 주로 조사활동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작성준비 작업 등을 수행함에 따라 현장조사 수요가 줄어들었다는 점을 국내여비 불용 주요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5·18 조사위의 설명은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예상 가능한 상황 요인으로 사전에 위원회 조사활동 종료 시점을 감안하여 하반기 국내 출장 소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내여비 과다 불용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청문회 경비 불용

163)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활동을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18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8조[164]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참고인 등의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2023회계연도에 1억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되었으나, 5·18 조사위의 결정으로 청문회를 실시하지 못하고 전액 불용함.

[청문회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내 역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 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청문회 개최 운영비	47,072	47,072	-	-	-	47,072	-	-	47,072
청문회 관련 업무협의	42,500	42,500	-	-	-	42,500	-	-	42,500
청문회 주요 자료 검증비	20,000	20,000	-	-	-	20,000	-	-	20,000
청문회 운영 임차료	22,000	22,000	-	-	-	22,000	-	-	22,000
계	131,572	131,572	-	-	-	131,572	-	-	131,572

* 자료 : 5·18 조사위

○ 5·18 조사위는 2023년 10월 16일 제98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청문회 개최 찬성 위원

164)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청문회의 실시)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문회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3명, 반대 위원 6명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위원회의 조사활동 종료 시한(2023년 12월 26일)이 2개월 정도 남았음을 고려할 때 직권조사 및 신청조사 과제 조사활동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이 당면한 선결 과제라는 점과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함.

○ 하지만 청문회 개최는 2023년도에 최초 계획되어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5·18 조사위 조사활동 초기인 2021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되어온 사업이라는 점에서 청문회 준비 기간의 부족이라는 사유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청문회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하여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할 수 공식적인 공론의 장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준비 미흡을 이유로 2021년 이후 단 한차례도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위원회 활동 결과의 문제점이라 지적할 수 있음.

[연도별 청문회 개최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목-세목 코드	사업명	집행내역	2023년	2022년	2021년
210-01	청문회 개최	예산액	131	131	131

목-세목 코드	사업명	집행내역	2023년	2022년	2021년
		집행액	0	0	0
		집행률(%)	0	0	0

* 자료 : 5·18 조사위

(4)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집행 부진

○ 5·18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연구, 사실확인 및 조사자료 보존 등을 위하여 2023회계연도에 일반용역비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5억 2,400만원을 집행(집행율 85.9%)하였고, 일반연구비로 25억 6,400만원을 편성하여 16억 7,600만원(집행율 65.3%)을 집행하였음.

[일반용역비/일반연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일반용역비	610	524	86	85.9%
일반연구비	2,564	1,676	890	65.3%

* 자료 : 5·18 조사위

○ 일반용역비 및 일반연구비 예산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5·18민주화운동 디지털 트윈 역사플랫폼 구축 사업'(사업 예산 3억 2,00만원)의 경우 플랫폼에 등재될 조사 내용이 위원회에서 의결

지연된 관계로 사업 추진조차 못 하였는데, 사전에 위원회 의결 지연에 대비한 사업 추진 계획 수립이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됨.

○ 전년도 이월 사업인 '5·18희생자 및 행불자 조사과정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및 '제3공수단 주요 작전상황 등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의 경우 사업자가 인건비 집행 등 계약 조건을 지키지 못한 관계로 계약 금액을 정산(금액 하향 조정)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는데,

두 사업의 계약방식은 '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165]으로 계약체결 사후에 과업을 완수하여 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정산한 사실은 계약 관련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한 행위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5·18조사위에서는 해당 업체가 납기 지연[166], 산출내역서와 다른 자금 집행, 사전 협의 없는 인력 변경 등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해당 업체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167]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

16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166)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 5·18희생자 및 행불자 조사과정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 23,612,100원
- 제3공수단 주요 작전상황 등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 29,400,000원

16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계약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5·18행불자 유전자 검사 위탁용역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계획한 검사 건수에 비하여 실제 이루어진 검사 건수[168] 차이 발생이 불용 발생의 주요 요인인바, 이는 유족이 유전자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파악되는데 조사위가 유족에 대하여 진상 규명을 위한 검사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설득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일반용역비/일반연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일반 용역비	계	947	680	267
	5·18조사위 자료총서 발간	170	164	6
	5·18관련 군경트라우마 사례조사 및 치유프로그램 개발	70	70	-
	전일빌딩 탄흔 증거물 확보 실험조사 및 탐색 조사	80	7	73
	조사활동 기록영상물 등 제작	100	90	10
	고백과 증언 국민캠페인 운영	150	140	10
	위원회 기자 간담회(대국민보고회)	10	10	-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심판결 등 분석용역	30	30	-
	(이월사업)5·18희생자 및 행불자 조사과정의 아카이브 구축 사업	155	50	105
	(이월사업)제3공수단 주요 작전상황 등	98	35	63

168) 계획건수 : 512건(유해 312건, 유가족 200건)
검사건수 : 323건(유해 293건, 유가족 30건)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			
	(이월사업)5·18조사위 자료총서 발간	84	84	-
일반 연구비	계	2,830	1,941	976
	5·18민주화운동 디지털 트윈 역사플랫폼 구축	320	-	320
	5·18행불자 유전자 검사 위탁용역	2,156	1,588	656
	암매장 제보내용 조사 및 발굴용역	176	176	-
	(이월사업)신착자료 DB탑재 위한 스캔분류 및 목록 세분화용역	178	178	-

자료 : 5·18 조사위

병무청 소관 (전문위원 류승우)

Ⅰ 결산개요

1. 결산 총괄

○ 병무청은 일반회계 예산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2023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가. 세입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원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가한 5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이 중 4억 8,700만 원이 수납되고 4,8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 미수납액 4,800만원은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임.

[2023년도 세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3년	300	534	487	-	48
2022년	302	531	483	-	48

나. 세출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세출예산현액은 3,33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3,074억 8,800만 원(92.3%)을 집행하고 256억 2,100만 원(7.7%)은 불용처리 하였음.

[2023년도 세출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 도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등	전용액 등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	333,109	333,109	-	±782	333,109 (100%)	307,488 (92.3%)	-	25,621 (7.7%)
2022년	272,952	272,021	-	±68	272,021 (100%)	241,581 (88.8%)	-	30,440 (11.2%)

○ 세출예산현액 3,331억 900만 원은 당초 예산과 같으며,

전용액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억 3,800만 원, 동원훈련 및 사회복무요원교육 수송임차료 2억 5,700만 원, 한시임기제 및 청년인턴 고용부담금 8,100만 원, 예산성과금 600만 원이고,

불용액은 인건비 24억 500만 원, 기본경비 3억 4,800만 원, 사업비 228억 6,800만원 등 총 256억 2,100만원임.

Ⅱ 주요내역

1. 세입

가. 총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 (C/B)	불납결손액 (D)	% (D/B)	미수납액 (E=B-C-D)	% (E/B)
합 계	300	534	487	91.1	-	-	48	8.9
○ 토지대여료 (511)	1	2	2	100.0	-	-	-	-
○ 건물대여료 (512)	116	111	111	100.0	-	-	-	-
○ 기타관유물 대여료 (513)	20	29	29	100.0	-	-	-	-
○ 과태료 (563)	5	48	-	0.0	-	-	48	100.0
○ 변상금 (571)	-	14	14	100.0	-	-	-	-
○ 위약금 (572)	4	-	-	0.0	-	-	-	-
○ 기타경상 이전수입 (596)	80	273	273	100.0	-	-	-	-
○ 기타잡수입 (691)	3	2	2	100.0	-	-	-	-
○ 기타고정 자산매각대 (713)	71	55	55	100.0	-	-	-	-

나. 집행내역

(1) 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수납액	수납액 내역
계	487	
○ 토지대여료	2	○ 청사부지 일부 임대
○ 건물대여료	111	○ 구내식당(서울청, 충북청) ○ 병역판정검사장 나라사랑카드발급소 임대 등
○ 기타관유물 대여료	29	○ 서울청 구내식당 물품 대여료 ○ 주거용 임차숙소 사용료
○ 변상금	14	○ 병무행정 보안체계 고도화 사업 입찰담합 관련 손해배상 금액
○ 기타경상이전 수입	273	○ 소속기관 임차숙소 전세보증금 반납 ○ 맞춤형복지 단체보험료 정산 ○ 과오납 환수 등
○ 기타잡수입	2	○ 폐기문서 및 고철 매각대금 등
○ 기타고정자산 매각대	55	○ 의료장비 등 불용물품 매각대금

* 자료 : 병무청

(2) 미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목 별	미수납액	미수납액 내역
계	48	
○ 과 태 료	48	○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보증인 체납 과태료(2건)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병무청 소관 2023년도 당초 세입예산액은 3억 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5억 3,400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1.1%인 4억 8,700만 원임.

○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은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라 기존 지출했던 임차숙소보증금 2억 2,200만원이 추가로 세입조치됨에 따라 기타경상이전수입이 추가 징수 결정된 것에 기인함.

○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은 8.9%로 나타나고 있는바, 미수납액은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게 부과한 체납과태료(2건) 4,800만 원임.

2. 세출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 확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B)	(B/A, %)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등					
계	333,109	333,109	-	±782	333,109	307,488	-	25,621	7.7
□ 인 건 비	135,595	135,595	-	-519	135,076	132,671	-	2,405	1.8
□ 기본경비	9,678	9,678	-	+525	10,203	9,855	-	348	3.4
□ 사 업 비	187,836	187,836	-	+257 -263	187,830	164,962	-	22,868	12.2
○ 병역자원선발	**18,174**	**18,174**	-	-	**18,174**	**17,653**	-	**482**	**2.7**
• 병역판정검사	18,174	18,174	-	-	18,174	17,692	-	482	0.8
○ 병역자원충원	4,638	4,638	-	-	4,638	**4,333**	-	**305**	**6.6**
• 현역병모집	3,583	3,583	-	-	3,583	3,320	-	263	7.3
• 현역병입영	377	377	-	-	377	370	-	7	1.9
• 병력동원소집 관리	678	678	-	-	678	643	-	35	5.1

구 분	예산액		예산 확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A)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B)	(B/A, %)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등					
○보충역복무지원	8,652	8,652	-	-	8,652	8,449	-	203	2.3
• 산업지원인력	331	331	-	-	331	323	-	8	2.4
• 사회복무요원 교육	5,860	5,860	-	-	5,860	5,837	-	23	0.4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272	1,272	-	-	1,272	1,246	-	26	2.0
• 대체역심사	1,189	1,189	-	-	1,189	1,043		146	12.3
○ 병무행정지원	156,372	156,372	-	+257 -263	156,366	134,488	-	21,878	14.0
• 병무행정안내	1,807	1,807	-	-	1,807	1,764	-	43	2.4
• 병무청 건강보험부담금	5,075	5,075	-	-	5,075	5,023	-	52	1.0
• 병무행정운영	8,714	8,714	-	-263	8,451	7,883	-	568	6.7
•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3,545	3,545			3,545	3,391		154	4.3
• 병역의무자지원	120,480	120,480	-	+257	120,737	100,283	-	20,454	16.9
• 사회복무요원 운용	5,116	5,116	-	-	5,116	4,958	-	158	3.1
• 시설관리	2,503	2,503	-	-	2,503	2,425	-	78	3.1
•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60	260	-	-	260	259	-	1	0.3
• 병무행정정보화	8,872	8,872	-	-	8,872	8,502	-	370	4.2

* 자료 : 병무청

5. 나. 집행내역

(1) 전용액

(단위: 백만원)

목 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782	
○ 인 건 비		○ 해당사항 없음
○ 물 건 비	695	○ 운영비 : 695백만원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 438백만원 - 사회복무요원교육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임차료 : 257백만원
○ 이전지출	87	○ 보전금 : 6백만원 - 예산성과금 지급 : 6백만원 ○ 민간이전 : 81백만원 - 청년인턴 및 한시임기제 등 고용부담금 : 81백만원
○ 자산취득 및 운용		○ 해당사항 없음

* 자료 : 병무청

(2) 불용액

(단위: 백만원)

목 별	예산현액	불용액	%	불용액 내역
계	333,109	25,621	7.7	집행잔액 25,621백만원
○ 인 건 비	142,109	2,561	1.8	집행잔액 2,561백만원
· 직원보수	123,202	1,788	1.5	집행잔액 1,788백만원
· 연가보상비 등	18,907	773	4.1	집행잔액 773백만원
○ 물 건 비	58,858	2,299	3.9	집행잔액 2,299백만원
· 운 영 비	52,011	2,167	4.2	집행잔액 2,167백만원
· 여 비	4,103	69	1.7	집행잔액 69백만원
· 업무추진비	550	2	0.3	집행잔액 2백만원
· 직무수행경비	554	4	0.7	집행잔액 4백만원
· 연구용역비	1,639	57	3.5	집행잔액 57백만원
○ 이전지출	124,451	20,513	16.5	집행잔액 20,513백만원
· 보 전 금	118,664	20,441	17.2	집행잔액 20,441백만원
· 민간이전	5,787	72	1.2	집행잔액 72백만원
○ 자산취득 및 운용	7,691	248	3.2	집행잔액 248백만원
· 건 설 비	1,606	92	5.7	집행잔액 92백만원
· 유형자산	4,639	4	0.1	집행잔액 4백만원
· 무형자산	1,446	152	10.5	집행잔액 152백만원

* 자료 : 병무청

다. 집행실적 분석

○ 2023년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31억 900만 원으로, 이 중 3,074억 8,800만 원(92.3%)을 집행하였음. 예산집행 과정에서 전용액은 7억 8,200만 원, 불용액은 256억 2,100만 원(7.7%)이 발생하였음.

○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용액 7억 8,200만 원의 내역은

-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억 3,800만 원
- 사회복무요원교육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수송임차료 2억 5,700만 원
- 청년인턴 및 한시임기제 등 고용부담금 8,100만 원
- 예산성과금 지급 600만 원임

○ 불용액 256억 2,100만원의 내역은

- 인건비 집행잔액 25억 6,100만 원
- 운영비 및 여비 등 물건비 집행잔액 22억 9,900만 원
- 이전지출 집행잔액 205억 1,300만 원
- 자산취득 및 운용 집행잔액 2억 4,800만 원임.

3. 재무제표 분석

○ 병무청의 2023회계연도 재무제표는 중앙관서 전반의 자산·부채 상황을 보여주고 있음.

가.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A-B)	
				금액	비율
재정 상태표	자 산	377,214	377,247	△33	△0.0 %
	부 채	53,694	19,607	34,087	173.9 %
	순 자 산	323,520	357,640	△34,120	△9.5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8,650	28,519	131	0.5 %
	관리운영비	332,306	230,327	101,979	44.3 %
	비배분비용	-	-	-	-
	비배분수익	2,189	460	1,729	375.9 %[169]
	재정운영순원가	358,767	258,386	100,381	38.8 %
순자산 변동표	기초순자산	357,640	359,705	△2,065	△0.6 %
	재정운영결과	358,767	258,386	100,381	38.8 %
	재원의조달및이전	324,907	258,297	66,610	25.8 %
	조정항목	△260	△1,977	1,717	86.8 %
	기말순자산	323,520	357,640	△34,120	△9.5 %

* 자료 : 병무청

169) 비배분수익 376%(1,729 백만원) 증가 사유 : 유형자산처분이익 211백만원 감소한 반면, 기타수익(전기오류수정이익 등) 1,917백만원 증가, 경인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 중 토지대장(공부면적)과 실제 사용면적(현황면적)이 상이함을 확인하여 이를 일치시키고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기오류수정이익 발생하였고 기타이자수익 등 23백만원 증가함에 기인함.

나. 재무제표 분석

○ 2023년 병무청 자산은 3,772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원(0.0%) 감소하였으며, 부채는 536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0억 8,700만원(173.9%)이 증가하였음.

자산의 감소는 일반유형자산 1억 3,2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 16억 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무형자산 11억 3,200만원, 유동자산 등이 6억 3,500만원 감소함에 기인함.

부채의 증가는 장기차입부채가 29억 100만원 감소한 반면, 유동부채 53억 3,500만원, 장기충당부채 316억 5,300만원이 증가함에 기인함.

○ 2023년 재정운영결과는 3,587억 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3억 8,100만원(38.8%) 증가하였음. 이는 프로그램순원가(286억 5,0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3,323억 600만 원)와 비배분비용(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21억 8,900만 원)을 차감한 값임.

○ 2023년 기말순자산은 3,235억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1억 2,000만원(△9.5%) 감소하였음. 이는 기초순자산(3,576억 4,000만원)에서 당기 재정운영결과(3,587억 6,700만원)를 차감하고, 당기 재원의 조달 및 이전(3,249억 700만원)과 당기 조정항목(△2억 6,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임.

Ⅲ 검토의견

1. 세출

가. 총괄 개요

○ 2023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총 3,331억 900만원이며, 4개 프로그램 20개 세부사업에 3,074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256억 2,100만원을 불용함.

병무청의 예산 집행률은 92.3%로서 정부 전체 집행률(93.0%)[170]과 유사한 수준이며, 불용률은 7.7%로서 최근 5년 불용 규모와 유사함.

○ 병무청 예산은 일반회계 단일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인건비, 기본경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43.5%)이 일반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 실적 역시 최근 5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결산상 특이점을 찾아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기 이전인 2019년 이전 병무청 예산 집행률(97.0%)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이는 전체 불용률의 80%에 가까운 금액(203억 9,600만원)이 사회복귀 준비금 지원 사업 단일 항목에서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예산 편성시 현실성 없는 목표치를 산정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170) 일반회계 기준

[병무청 최근 10년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집행율(%)	98	96	96	96	97	95	90	90	89	92

○ 병무청이 2023회계연도 예산 집행을 통해 신규로 추진한 사업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결산서 상에 나타나고 있음.

○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고도화·정밀화 필요성, 특별사법경찰 수사력 제고 방안 마련, 산업지원인력 실태조사 강화, 현역병 충원률 제고 방안 마련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병역판정검사 고도화 · 체계화 필요성 등

(1) 사업 개요

○ 병역판정검사 사업(1131-301)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고, 최신 의료장비 적기 구입 등 필요경비 지원으로 원활한 병역판정검사를 수행하는 한편,

병역면탈예방·단속 및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행위 차단, 확인신체검사 등 사전 병역면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181억 7,400만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97.3%인 176억 9,200만원을 집행하여 2.7%인 4억 8,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병역판정검사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역판정검사	18,174	18,174	-	±67	18,174	17,692 (97.3%)	482 (2.7%)
- 병역판정검사	17,943	17,943	-	±67	17,943	17,464 (97.3%)	479 (2.7%)
- 병역면탈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231	231	-	-	231	228 (98.7%)	3 (1.3%)

* 자료 : 병무청

○ 불용액은 4억 8,200만원으로 잠복결핵 위탁검사 낙찰차액[171] 4억 4,800만원, 특근매식비, 특정업무경비 등 집행잔액 3,400만원임.

(2) 정신건강 관련 병역판정검사 고도화 · 체계화 방안 마련 필요

○ 병역판정검사 사업은 공정하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로 군에서 필요로

171) 잠복결핵 위탁검사 낙찰차액 : 예산편성단가(16,000원)보다 계약단가(14,500원)가 낮게 형성

하는 우수자원을 선발하는 사업임.

- 병역판정검사는 크게 신체검사, 심리검사로 구분되는데 신체검사는 질병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검사이고, 심리검사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군 복무 부적격자를 선별하는 과정임.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검사 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을 판정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및 임상심리사를 서울, 부산 등 전국 10개 병역판정검사장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배치하여 검사 대상자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 여부 및 병증 정도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업무인력 현황]

('23. 12.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중검소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남	경기 북부
			1반	2반								
전담의사	22	2	2	2	2	2	2	2	2	2	2	2
임상심리사	51	4	5	5	4	5	5	5	5	5	3	5

* 자료 : 병무청

○ 현재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 및 학업·진로 등에 의한 스트레스 증가로 병역 의무 대상자인 20대의 정신건강 관련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172]으로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질환 관련 검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시 내과, 외과 등 10개 검사 과목[173]으로 분류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신체 등급을 판정하고 있는데, 정신건강 분야는 신체 질환을 다루는 여타 검사 과목과는 다르게 객관적인 의료 자료를 통한 증상 및 중증 정도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이러한 점을 악용한 병역면탈 시도 행위가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174]임.

○ 병무청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체 등급 판정의 정확도 향상과 병역면탈 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를 4단계 절차로 운영하고 있음.

- 1차 심리검사는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이용한 인성검사(271문항), 인지능력검사(89문항)를 실시함.

---

172) 우울한 20대, 우울증·불안장애 5년새 127%·86% 폭증(메디컬타임즈, 2022.6.24.)
[1020 정신건강] ① 희망 잃은 젊은 세대, 마음도 병든다.(연합뉴스, 2022.9.17.)
'정신질환자 56만명' 4년만에 42% 늘어…2030세대 환자 급증(뉴스핌, 2023.10.10.)

173) 병역판정검사 검사과목 : 수석, 내과, 신경・정신건강의학과, 일반・신경・심장혈관흉부외과, 치과, 성형・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174) 최근 5년 병역면탈 현황 순위 : 뇌전증위장(136) >정신질환위장(106)>고의체중 증·감량(79) 순

- 2차 심리검사는 1차 심리검사 결과 및 질병상태문진표(13문항)[175]에서 추가적인 심리상태 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임상심리사가 개별 면담과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하고 평가결과서를 작성함.

- 정신과 검사는 2차 심리검사 결과, 추가 정밀 검사가 필요한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1·2차 심리검사 결과 및 진단서, 의료기록 등을 참고하여 면담·문진 검사 절차를 통해 신체등급을 판정함.

- 특히 지적능력 저하자, 심리취약자 등 정신적·심리적 상태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수검자에 대하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밀심리검사를 의뢰하여 임상심리사가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참조하여 신체 등급 판정에 반영하고 있음.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체계 및 절차]

① 1차 심리검사	② 2차 심리검사	③ 정밀심리검사	④ 정신과 검사
심리검사시스템 활용 · 인성검사 · 인지능력검사	▶ **임상심리사 검사** · 개별면담 · 심리검사 도구활용 검사	▶ **임상심리사 검사** · 심리취약성 평가 · 종합 심리평가	▶ **병역판정의사 검사** ·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 신체등급 판정

* 자료 : 병무청

175) 1차 심사시 병행하여 실시하며, 정신건강의학과 6문항, 심리검사 7문항으로 구성

○ 3차(정밀심리검사를 거치는 경우 4차)에 걸친 정신질환 관련 병역판정검사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을 구실로 병역을 면탈하고자 하는 행위[176]는 그치지 않고 있는 반면,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 적합으로 판정되어 입영한 병역 의무자 중 군 복무 시 정신질환·부적응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177]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했을 때,

정신질환 관련 병역판정검사 체계 개선등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병역 의무 수행이 어려운 인원과 정신질환을 가장한 병역면탈 시도자를 보다 정밀히 선별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요청으로 심리취약 7급[178], 저지능자[179] 등에게 실시하고 있는 정밀심리검사의 직접 수행 비중의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176) 정신질환 사유 병역면탈행위 적발 현황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정신질환 위장	16	24	29	26	11
뇌전증 위장	136	-	-	-	-

177) 정신질환 사유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현황

구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정신질환 사유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인원	3,028	3,640	4,223	4,915	4,930

178) 심리취약 7급 : 정신질환(증상) 발생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하에 부적응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특성 및 조건을 가진 대상으로, 정신과적 평가 및 치료가 필요하여 치료기간 부여를 위해 재신체검사(7급) 판정 받은 사람

179) 저지능자 : 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 등 낮은 지능 및 사회성 부족으로 일상생활 적응 상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정밀심리검사는 2020년까지는 병무청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021년부터 일부 정밀심리검사를 병무청에서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현재는 위탁 방식과 직접 수행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음.

[정밀심리검사 위탁 및 직접수행 실적 비교]

(단위: 명)

구분	계	정밀심리검사	
		위탁검사	자체검사
2023년	2,606	1,295	1,311
2022년	2,310	1,294	1,016
2021년	2,040	1,933	107

* 자료 : 병무청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정밀심리검사와는 다르게 병역 의무 수행 가능 여부 판단에 초점을 두는 정밀심리검사라는 점에서, 외부 위탁에 의한 정밀심리검사보다는 병무청 자체 정밀심리검사가 보다 정밀한 신체등급 판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외부 위탁 시 우려되는 병역면탈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로, 정밀심리검사 실시 범위를 현역병 이외 판정대상자(4급~6급 신체등급 판정 대상자) 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역병 이외 판정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6급 판정을 받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대상자 전원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실시하여 병역면탈 행위를 보다 면밀히 구분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임.

[4~6급 대상자 중 정신과 신체등급 판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병역판정검사 수검인원		238,604	248,361	254,361	282,167	323,763	315,698
병역판정 (4~6급)	전체(A)	32,115	33,567	35,752	42,805	50,244	50,326
	정신과(B)	5,927	6,288	6,666	5,766	6,839	6,677
	비율(B/A)	18.5%	18.7%	18.6%	13.5%	13.6%	13.3%
	정밀심리검사 실적(C)	1,728	1,580	1,617	1,387	1,241	1,511
	비율(C/B)	29.1%	25.1%	24.3%	24.1%	18.1%	22.6%

* 자료 : 병무청

○ 마지막으로, 외부 위탁 정밀심리검사 비율을 점차적으로 줄이고 궁극적으로 모든 정밀심리검사를 병무청 자체에서 실시하기 위하여 현재 지방청 검사반[180]별로 편재되어 있는 정밀심리검사 운영 조직을 권역화하여 각 권역별 정밀심리검사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인원의 재배치 및 증원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정밀심리검사 체계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입영판정검사 수행 능력 제고 필요

○ 병무청은 2025년 7월 전면 시행 예정인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관련 시설의 확충, 전문인력의 확보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병무청은 2021년 8월부터 병역 의무자 중 일부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 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영일 전에 입영판정검사(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병역판정검사와는 별도로 실시하고 있음.[181]

180) **지방청 정밀심리검사 인력 현황(9명) : 9개 검사반별 1명, 경남청 미배치**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인천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경남	경기 북부
	1반	2반								
9	1	1	1	1	1	1	1	1	0	1

181) 「병역법」 제14조의3(입영판정검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자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입영판정검사 절차도]



대 상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
검 사	(시기/장소) 입영일 14일전 ~ 3일전까지 / 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 (내용)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혈액, 소변 등 기본검사 및 각 과목 검사)
병역처분	신체등급 판정 및 병역처분 → 현역·군사교육 적합 여부 결정

* 자료 : 병무청

-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전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입영한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군 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군 부대에 따라 입영 후 귀가하는 귀가자의 비율이 상이하고 입영 후 귀가에 따른 병역 의무자의 불편[182]을 해소하기 위하여 군 부대 입영 전 병무청이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제도 도입 후 전국 10개 병역판정검사장을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입영판정검사 실시 대상 부대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 7월부터는 모든 입영부대로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182) 군 부대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후 재입영까지 평균 3개월의 대기기간이 소요되어 학업·취업 복귀가 지연됨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

[입영판정검사 연도별 수행 계획]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2026년
대 상 부 대	2작사	2작사 + 지작사 일부(舊1군)	2작사 + 지작사 전체(舊1,3군)		전면 시행 (육군훈련소, 해·공군·해병대)	
대 상 인 원	1.3만명	3.7만명	8.7만명	8.9만명	17.1만명	23.7만명

* 자료 : 병무청

○ 현재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입영판정검사와 각 군 입영부대에서 실시하는 입영신체검사 병행 수행 체계를 2025년 7월부터 병무청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할 경우, 연간 약 17.7만명[183] 이상의 추가 검사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입영판정검사 전면 도입에 따른 신체검사 추가 수요 예측 현황]

(단위: 만명)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검사 대상	32.2	41.3	49.9	49.1	48.9
'24년 대비 증가 인원	-	9.1 ↑	17.7 ↑	16.9 ↑	16.7 ↑
%	-	28.3 ↑	54.9 ↑	52.5 ↑	51.9 ↑
검사반별 평균 검사인원	3.2	3.9	4.5	4.5	4.4
%	-	21.9 ↑	40.6 ↑	40.6 ↑	37.5 ↑

* 자료 : 병무청

183) 2024년 평균 수검인원에 2026년 전면 시행시 발생하는 추가 검사 인원임.

○ 병무청은 현재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수행을 위하여 서울지방병무청 등 10개의 검사반을 운영[184]중인데 이는 주로 병역판정검사 수행을 위한 시설로서 입영판정검사 전면 실시에 따라 검사 대상 인원이 2024년 현재 대비 연간 약 54.9% 이상 증가할 것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병무청은 경인지방병무청에 제2병역판정검사장을 2025년 6월 개소를 목표로 건설 중이지만, 충청지역 이하 남부권 등에도 검사 시설 추가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병역 의무자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애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입영판정검사 수행 시설 확충 외에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의료기술요원, 행정요원 등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185] 순수 인력 증원 방안 이외에도 기관 자체 업무 재배치를 통해 입영판정검사 수행을 위한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병역판정검사장의 연간 검사기간[186]을 확대하며, 수검 인원을 각 검사장에 적정 배분하는 등 별도의 자구책 마련도 병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184) [참고자료 1] 2023년 지방청 병역판정검사 운영 현황 참고

185) 병무청은 추가로 설치되는 경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하여 국방부 및 행정안전부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13인 및 검사장 운영 필수 인력 22명에 대하여 인력 증원을 요구하였으며, 유관기관에서는 현재 검토 중에 있음.

186) 현행 병역판정검사 기간 : 매년 2월 1일~12월 6일(휴무달 : 12월, 1월)

[주요 병역판정검사장 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구 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행정요원						의료기술요원			
		병역판정관	병역판정보좌관	적성분류관	심리검사사무원	의무사무원	일반사무원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혈압측정
서울1반	13	1	1	1	2	1	4	2	4	5	1
서울2반	13	1	1	1	2	1	4	3	4	5	1
부산울산	13	1	1	1	2	1	4	3	4	4	1
대구경북	13	1	1	1	1	1	4	2	4	5	1
경인	13	1	1	1	2	1	5	3	4	5	1
인천	13	1	1	1	2	1	5	3	4	5	1
경기북부	13	1	1	1	2	1	3	3	4	5	1
광주전남	13	1	1	1	2	1	3	3	4	5	1
대전충남	13	1	1	1	2	1	3	3	4	5	1
경남	13	1	1	1	2	1	3	3	3	3	1

* 자료 : 병무청

다. 병역면탈 행위 수사 및 처벌 강화

(1) 사업 개요

○ 병역면탈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사업(1131-301)은 병역면탈 예방·단속 및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 행위 차단, 확인신체검사 등 사전 병역면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 수사 활동을 통해 병역면탈 기도 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2억 3,100만원이며, 이중 98.7%인 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 불용하였음.

[2023년도 병역면탈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사업 예산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병역면탈 예방 및 특별사법경찰	231	228	98.7%

(2) 과학적 · 체계적인 병역면탈 행위 단속 수사 기법 도입 필요

○ 병무청은 2012년부터 병역면탈 범죄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대부분 수작업 분석과 제보에 의한 수사에 의존[187]하고 있어 병역면탈 행위 단속에 많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음.

187) 제보에 의한 적발인원은 '23.12.31. 기준 적발인원(421명)의 85.7%(361명) 차지, 최근 뇌전증 위장 면탈 사례처럼 다수가 연루된 병역면탈 범죄는 제보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음.

지능화·다양화되는 병역면탈 행위의 단속 강화 및 예방을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기법의 도입 및 유관기관과의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

('24. 5.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본 청	광역수사청			현장청
			서울청	경인청	경북청	
2024년	60	22*	10*	8	9	11
2023년	40	11*	9*	-	8	12**

* 본청, 서울청 디지털 포렌식 전문분석관 각 1명 반영

** 2023년 경인청은 현장청에 포함, 2024년부터 광역수사청으로 개편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는 ①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②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에서,

2024년 7월 17일 ①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에 대한 수사, ②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해당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수사,

③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법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수사, ④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를 게시·유통한 경우에 대한 수사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 확대 현황]

기 존	확 대
• 기피·감면 목적 신체손상·속임수(제86조) • 대리수검(제87조제1항)	• 기피·감면목적 도망·행불 및 신체손상·속임수(제86조) • 대리수검(제87조제1항) • 기피·감면 등 관련정보의 게시·유통자(제87조의2) • 신체검사 및 징·소집 등 기피자(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 * 제88조제1항제4호는 제외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본청에 사이버조사과를 신설하고 지방청에 수사 인력을 보강(특별사법경찰관 인원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병역면탈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특별사법경찰 인원 증원에 따른 조직 개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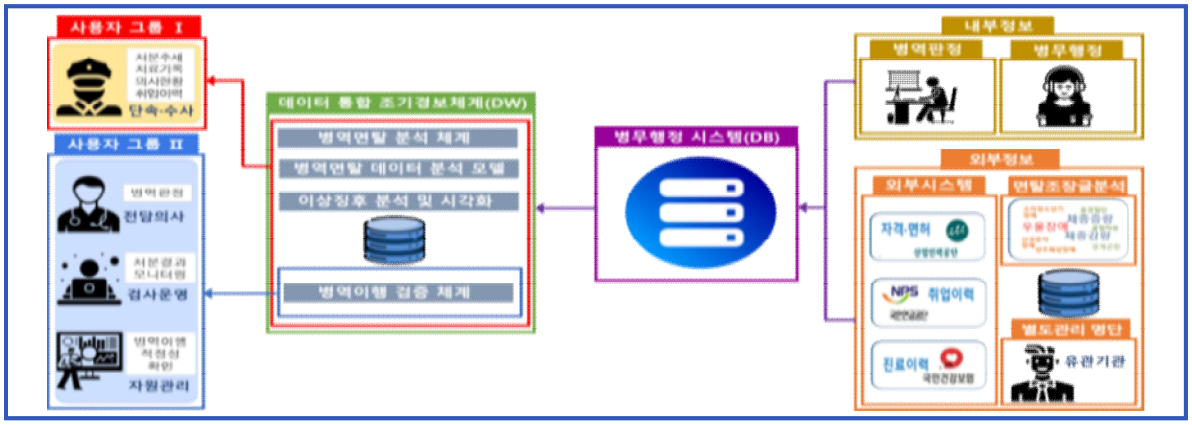
구분	조직개편 전		조직개편 후	
	본청	지방청	본청	지방청
조직	1과 (병역조사과)	2개 광역청 (서울, 경북)	**2과** (병역조사과, 사이버조사과)	**3개 광역청** (서울, 경북, 경인)
특사경 인원	11명	29명	**22명** * 병역조사과 11, 사이버조사과 11	**38명** * 광역청 27, 현장청 11
광역청 관할구역	▸ 중부권 : 서울청, 강원청, 강원영동청, 대전충남청, 충북청 ▸ 경인권 : 경인청, 인천청, 경기북부청 ▸ 남부권 : 대구경북청, 부산울산청, 경남청, 광주전남청, 전북청, 제주청			

* 자료 : 병무청

○ 또한, 병무청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시스템'[188]을 구축(2024년)하여 병역면탈 행위의 예방·단속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음.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시스템 체계도]

6.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금까지 병역면탈 행위 등을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자체 확보한 병역판정검사 자료 등을 활용한 병역 정보에 대한 수작업 분석과 제보에 의한 수사에 주로 의존하여 왔으나,

188) 병역이행 단계별로 병역면탈 이상 징후 분석, 질환 발생 통계분석, 병역면탈 고위험 대상자 분류 등 병역면탈 시도 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분석·탐지하는 통합적인 체계

병역면탈 범죄가 점점 지능화·다양화함에 따라 기존의 수작업 및 제보에 의한 수사는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병역면탈 범죄 단서별 송치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421	169	48	60	69	75
기획수사 189)	52	13	10	6	7	16
확인신검	8	1	0	0	3	4
제보 등	361	155	38	54	59	55

* 제보 등 : 제보, 면탈의심 언론보도 관련 수사 / 확인신검 : 자격면허취득・계속치료대상
* 자료 : 병무청

○ 이와 관련하여 병무청은 '데이터 통합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제공하는 병역면탈 단서 포착, 병역면탈 시도 행위에 대한 분석자료를 통해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병무청이 구축 중인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시스템은 내부자료를 DB화하고 기존 수작업 분석을 시스템화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병역면탈 범죄 적발이 제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189) 기획수사 : 신체등급 4~6급 판정자 중 특정 질병, 특정 의사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상 징후,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병역 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 분석하여 병역면탈 의심자에 대한 수사

이 외에도 범죄 모의 단계에서의 단속률을 높이고 병역면탈 행위의 사전 예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체계 도입,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의 수사 및 자료 공조 시스템 구축 등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특별사법경찰관 증원에 따라 신규 채용되는 인력에 대하여 수사 기법 전수 및 수사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3) 병역면탈 행위자 처벌 수준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병역면탈 행위로 기소된 자들 대부분이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에 그치고 있는바, 병역면탈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하여 보다 강력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임.

○ 현행 「병역법」에서는 병역면탈 행위와 관련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23년 기준 병역면탈 행위로 169명이 기소되어 이 중 122명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음.

[병역면탈 범죄 중 유죄 판결 세부 처분 현황]

(송치일 기준, 단위: 명)

구 분	계	징역(실형)	집행유예	기소유예	선고유예
계	300	7	234	55	4
2023년	122	-	119	2	1
2022년	27	-	17	8	2
2021년	40	2	20	18	-
2020년	51	3	33	15	-
2019년	60	2	45	12	1

* 자료 : 병무청

병역면탈 범죄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5% 미만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며, 이는 형량 결정 시 대부분의 범죄자가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반이고 초범이라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병역면탈행위 내용 및 처벌 기준]

구 분	내 용	벌 칙	법조항
병역면탈	병역을 기피·감면 목적 도망·행불자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제86조
대리수검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하여 검사받은 사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제87조 제1항
병역판정검사 기피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6개월 이하의 징역	제87조 제3항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금지 위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86조 및 제87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7조의2
징·소집 기피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제88조 제1항

○ 병역면탈 행위가 국방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병역의무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조성하고 병역 이행 기피 현상을 조장하는 등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190)]

라. 산업지원인력 사업 운영 · 관리 강화

(1) 사업 개요

○ 산업지원인력 사업(1434-309)은 군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 연구·생산 인력을 지원하여 국가산업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동 사업의 예산현액은 3억 3,100만원으로, 이 중 3억 2,300만원(97.6%)을 집행하였고, 800만원(2.4%)이 불용되었음.

[산업지원인력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 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산업지원인력	331	331	-	-	331	323 (97.6%)	8 (2.4%)

190) 병무청은 병역면탈 관련 범죄가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설정을 요청(2023년 5월)하였으나, 대법원 양형위원회 심의(2023년 6월) 결과 병역면탈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양형 기준 설정의 시급성이 낮다는 이유로 양형 기준 설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2) 병역지정업체 관리 및 전문연구요원 등 복무 실태조사 철저 필요

○ 병역지정업체 관리현황 및 산업지원인력의 복무상황 실태조사 결과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 인력 등의 제약으로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령 위반 업체 및 복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효과적이고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방식의 개선, 인력 증원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병무청에서 현재(2023년 12월 기준) 관리 중인 병역지정업체는 총 8,707개이며, 연간 병역지정업체 배정 인원은 12,500명, 누적 복무 인원은 21,564명 수준임.

[연도별 병역지정업체 관리 현황 및 배정·복무인원 현황]

(단위: 개/명)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관리업체	8,707	10,417	10,938	11,107	11,022
배정인원	12,500	13,000	15,500	15,500	15,500
복무인원	21,564	25,522	28,790	31,722	34,715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가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를 적절히 수행하는지를 파악하고, 병역지정업체가 선정 요건에 필요한 시설·인력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복무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복무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의무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수시로 실시하고 있음.[191]

- 실태조사는 연 1회 모든 병역지정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 실태조사와 위반업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특정(취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 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의 경우 정기 실태조사는 약 6,000회 실시하였고, 특별 실태조사는 약 670회 정도 실시하는 등 약 6,700회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연도별 병역지정업체 현장 실태조사 실적 현황]

(단위: 회)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계	6,739	7,386	4,271	6,592	8,256
정기 실태조사	6,061	6,147	3,540	5,711	7,653
특별 실태조사	678	1239	731	881	603

* 2020~2021년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조사를 일부 온라인 조사로 대체하였음

* 자료 : 병무청

○ 병무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약 75개 정도의 업체가 의무복무자인 산업기능요원 등을 지정된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타 업체 또는 타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지시하거나, 의무 복무자 및 병역지

191) 「병역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 등) ② 지방병무청장이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정업체의 신상·기업규모 변동 사항 미통보 등의 사유로 고발 등 행정조치[192]를 받고 있으며,

매년 약 80명 정도의 전문연구요원 등 의무 복무자 또한 무단 결근 등 복무 규정 위반 사유로 편입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있음.

[연도별 병역지정업체 및 의무 복무자 규정 위반 행정조치 현황]

(단위: 개/명)

연 도	업 체				의 무 자			
	계	고발	경고	주의	계	편입취소	연장복무	경고등
2023년	75	17	25	33	88	4	54	30
2022년	71	12	22	37	73	2	42	29
2021년	75	14	32	29	139	3	52	84
2020년	54	7	16	31	63	7	31	25
2019년	79	4	20	55	64	1	44	19

* 자료 : 병무청

○ 매년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의 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병역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복무 관리·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고발, 편입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확인 및 행정 지도를 통한 실태조사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병무청은 병역지정업체 및 의무 복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192) 행정조치 종류 및 조치 내용 :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를 받은 업체는 당해연도 배정 인원 회수 및 다음 해부터 인원 배정 제한
(고발 3년, 경고 2년, 주의 1년)

본청 및 14개 지방청·지청에 총 44명 규모의 인력을 배치하여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방청별 실태조사 담당자 인원 배치 현황]

('24. 3.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인	광주 전남	대전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동
인원	44	5	3	6	3	4	6	3	2	2	4	1	2	2	1

* 자료 : 병무청

○ 2023년 기준으로 현장 방문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병역지정업체가 5천여개[193]이고 정기·특별 실태조사 실적이 약 6,700건임을 감안할 때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병역지정업체의 수는 약 113개 업체, 1인당 수행해야 하는 현장 실태조사는 약 152회로 연간 근무일수가 240일 정도임을 고려할 때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업체수 및 실태조사 건수가 과도한 수준으로 보임.

- 병무청이 운영하고 있는 실태조사 인력의 세부적인 업무 분장을 살펴보면 서울지방병무청 5명, 경인지방병무청 3명, 인천병무지청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방청·지청 근무자 34인은 실태조사 담당자가 실태조사 업무뿐만 아니라 편입 등 다른 산업지원업무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인력 제약으로 인하여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193) 현장조사 대상(5,000여개) : 병역지정업체 약 9,000개 중 전년도 복무관리 우수업체(30%) 및 복무인원 없는 업체는 서면조사로 대체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업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

○ 병무청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수행을 위하여 병역지정업체 담당자 및 의무 복무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성실 관리·복무를 유도하고, 법령 위반 업체 및 의무 복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현행 실태조사 대상, 방식 등을 분석하여 한정된 인원으로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실태조사 인원 증원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마. 병역진로설계 및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연계 검토

(1) 사업 개요

○ 현역병모집 사업(1232-303)은 징집으로 획득하기 어려운 각 군의 주요 군사특기를 개인의 자격·전공·면허 등 적성과 연계하여 선발하고, 군 복무가 개인의 취업·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영 전, 복무 중, 전역 후를 아우르는 병역진로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35억 8,300만원이며, 이중 92.7%인 33억 2,000만원이 집행됨.

- 불용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는 인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의 보증금 없는 임대차 계약(1억원), 수원·인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공사비 낙찰차액(5,200만원) 등임.

[현역병모집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현역병모집	3,583	3,583	-	±129	3,583	3,320 (92.7%)	263 (7.3%)
- 현역병모집	556	556	-	±69	487	487 (100.0%)	-
- 병역진로설계	3,027	3,027	-	±60	3,096	2,833 (93.6%)	263 (6.4%)

(2) 취업맞춤특기병 사업과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 연계 강화 필요

○ 병역진로설계 사업과 취업맞춤특기병 사업은 도입 배경 등에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사업 목적, 사업 운영 방식, 사업 수혜 대상 및 고용노동부, 각 군 등 유관 기관과의 협업 형태 등이 유사함[194] 을 고려했을 때 사업 연계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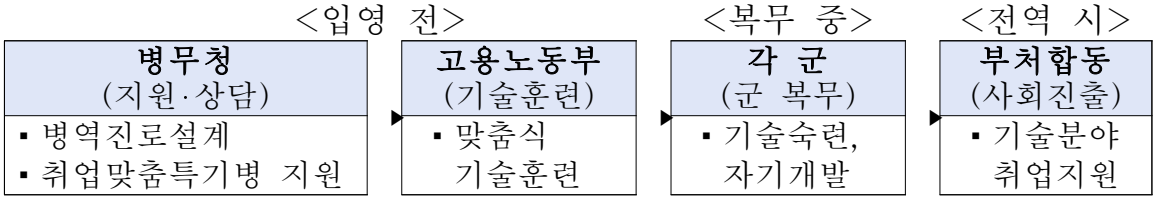
- 두 사업 모두 병역의무자가 전공·적성 등에 맞는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역 후 해당 군 복무 경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군 경력과 사회 경력을 연계시켜 군 복무가 사회와의 단절이 아닌 자기 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정책 목표로 하고 있음.

194) [참고자료 5] 취업맞춤특기병 및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사업 실적

○ ‘취업맞춤특기병 사업’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관의 상담을 통해 입영 전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입영 후 관련 분야 기술병으로 복무한 뒤 전역 후에는 연관 산업 분야로의 취업 알선 등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14년 육군에 처음 도입 후 2016년에는 해·공군, 2018년에는 해병대까지 모집 범위를 확대하였고, 사업 시행 초기 고졸 이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폴리텍대학·학점은행을 통한 전문학사 및 방송대 재학·졸업자, 직업계고 재학자 등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대상을 확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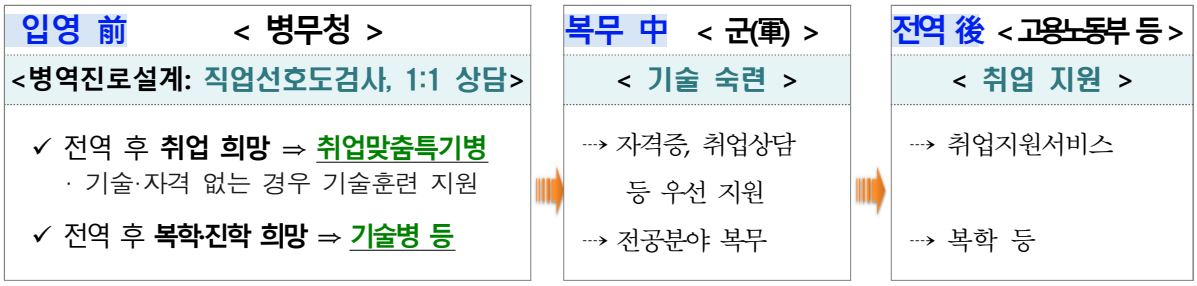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추진 체계도]



* 자료 : 병무청

○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입영 전 전문상담관이 맞춤형 병역진로 상담을 진행하여 개인의 전공·경력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하고, 군 복무시 추천받은 군 특기 분야에서 개인 경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역 후에는 군 경력을 바탕으로 복학·취업 등 사회 진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임.

[병역진로설계 사업 추진 체계도]



* 자료 : 병무청

○ 동 사업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운영과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직업계고 등에 방문하여 병역진로상담 등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도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로 구성됨.

- 2018년 '찾아가는 입대전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시범 운영한 이후 2020년 서울지방병무청 내에 수도권 관할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지역, 경기지역 등에 총 8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195] 중임.

195) 2024년 울산, 창원, 의정부에 3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고, 2025년 청주, 전주에 추가 센터 설치를 추진하여 전국적으로 총 13개소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임. [참고자료 4]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 현황 참조

[연도별 취업맞춤특기병/병역진로설계 사업 실적]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인원	1,615	4,693	16,310	32,287	48,734
취업맞춤특기병 모집인원	2,716	3,286	5,101	5,098	5,116

* 자료 : 병무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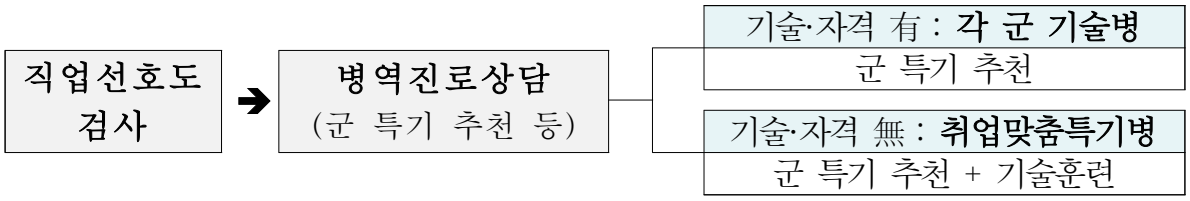
○ 취업맞춤특기병 사업 대상은 고졸 이하, 폴리텍·방송대 재학·졸업자, 직업계고·전문대학 재학·졸업자인 반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대상자는 모든 병역의무자이므로 취업맞춤특기병 대상자가 병역진로설계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두 사업 모두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전문상담관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의 경력 등에 비추어 적합한 군 특기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으며,[196]

두 사업 모두 군 복무 시 경력개발을 위해서는 일선 군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군 전역 후 효과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수행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196) 취업맞춤특기병의 경우 전문상담관의 상담 후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상담 대상자에게 적합한 맞춤식 기술훈련 과정을 거치나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전문상담관의 군 특기 추천에 그치고 별도의 맞춤식 기술훈련 과정은 거치지 않음.

[취업맞춤특기병/병역진로설계 사업 비교]



구분	취업맞춤특기병('14년~)	병역진로설계('19년~)
취지	취업이 어려운 고졸이하 병역이행 부담 완화 및 청년 취업 활성화	모든 병역의무자에 대해 병역과 진로를 연계, 국가 인적자원으로 육성
내용	- 군 지원절차 상담 및 입영 전 고용부 기술훈련 추천 - 관련 분야 복무 및 전역 후 군 경력 활용 관련 분야 취업	- 직업선호도검사 및 자격·전공·흥미 등 고려 군 특기 추천 - 군 생활 체험, 적응 교육 - 관련분야 복무 및 취업정보 제공
방식	- 방문 상담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방문 - 찾아가는 병역진로설계 - 온라인 서비스

* 자료 : 병무청

○ 두 사업 간 유사성과 서비스 이용자 증가세 등을 감안하였을 때 두 사업 성격이 일부 차이는 있으나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인력 운영, 체계적인 사업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바. 현역병 충원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 사업 개요

○ 현역병입영 사업(1232-305)은 군에서 필요한 현역자원의 적정 충원을 통해, 안정적인 병력 운영 지원 및 군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국외

병역의무자 대상 병역제도 홍보 등 자발적인 병역이행 분위기 확산 및 이들의 병역이행을 지원하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3억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 중 98.1%인 3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9%인 7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현역병입영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 현역병입영 사업	377	-	-	-	377	370 (98.1%)	7 (1.9%)
- 현역병입영	261	-	-	-	263	258 (98.1%)	5 (1.9%)
- 국외자원관리	116	-	-	-	114	112 (98.2%)	2 (1.8%)

(2) 현역병 충원율 제고 및 월별 균형 충원 필요

○ 2020년 이후 현역병 징집 및 모집 충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역자원의 적기 충원이 병무청의 주요 임무임을 고려할 때 현역병 징집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시기별 충원율이 큰 폭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연도별 현역병 징집·모집 충원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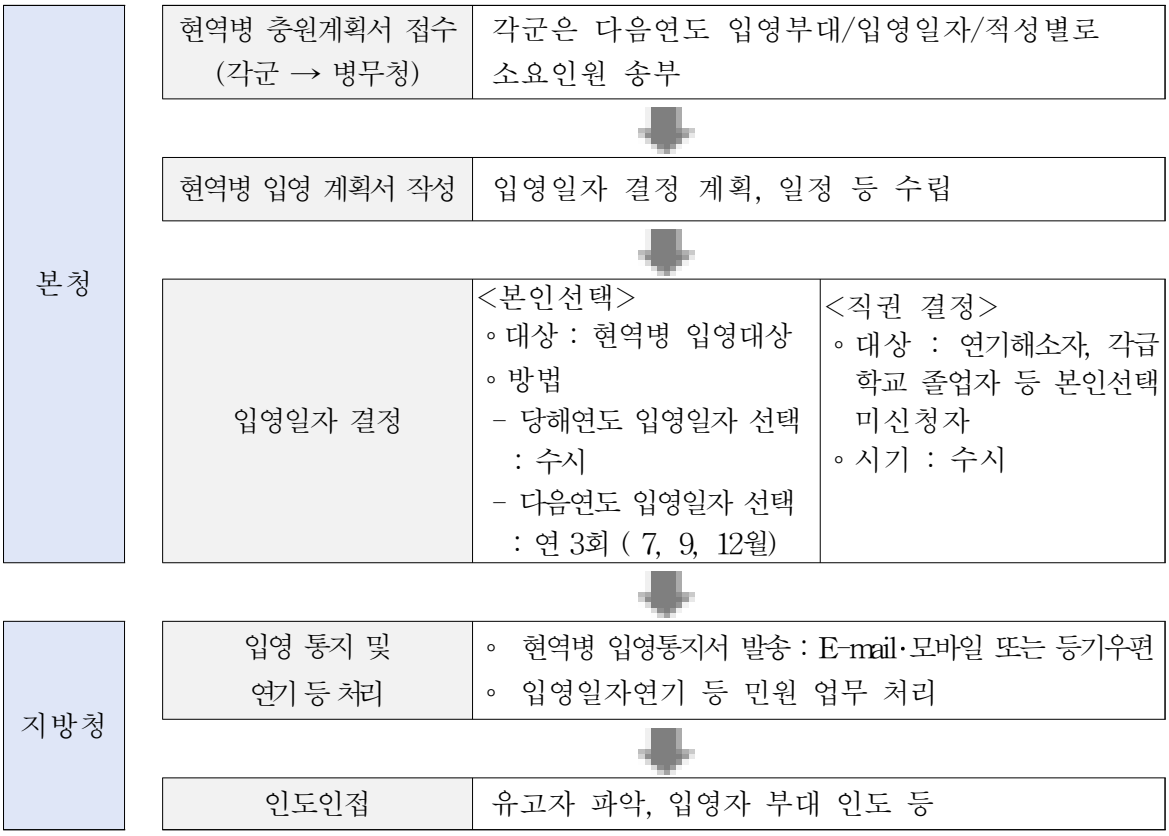
구분	징 집				모 집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계획	96,327	101,369	101,986	115,709	117,583	113,164	121,411	130,803
입영	85,324	90,358	97,649	109,371	101,864	95,843	118,105	126,775
%	88.6	89.1	95.7	94.5	86.6	84.7	97.3	96.9

* 자료 : 병무청

○ 현역병 입영 사업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적정 충원함으로써 군의 안정적인 병력운영 지원 및 전투력 증강에 기여하고, 현역병 입영신청제도 등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군과 병역이행자 모두가 만족하는 입영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

- 현역병 입영은 대부분 징집에 의한 입영이나, 징집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주요 군사특기의 병 충원을 위한 모집도 병행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현역병 입영 사업 집행 절차 모식도]



* 자료 : 병무청

○ 2021년 이후 징집 및 모집 충원률이 매년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충원 가능한 병역자원이 줄어듦에 따라 부득이하게 현역병 충원율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는 최근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 사업의 제약 요인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대비 가능한 제약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음.

병무청은 병력 동원 가능 인구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역병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역병 충원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문제와는 별개로 충원율이 시기별로 차이가 나고 있음.

[연도별 월간 현역병 충원율]

(단위: %)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3년	87.5	95.2	100.7	100.8	100.4	98.0	93.8	93.0	90.8	85.3	68.5	43.6	66.8
2022년	86.8	95.5	91.2	90.1	101.0	98.8	94.2	95.1	91.4	90.9	72.8	46.0	67.3
2021년	96.6	99.0	96.8	98.3	97.3	98.7	97.2	100.3	101.3	100.3	97.6	92.1	76.9
2020년	95.8	97.6	98.1	100.1	99.8	98.6	96.1	98.5	99.1	96.8	93.1	88.0	83.1

* 자료 : 병무청

○ 현역병 월별 충원율 통계를 살펴보면 1분기부터 3분기(1월~9월)까지는 월에 따라 충원율이 100%를 상회하는 월도 있으며, 대부분이 90% 중반 내외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나, 4분기(10월~12월)의 경우 충원율이 낮게는 40% 초반에 그치고 있어 4분기 충원율이 나머지 1~3분기의 충원율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음.

병무청은 이러한 분기별 충원율 차이의 원인에 대하여 현역병 입영자의 약 80%가 대학생으로 학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상반기 입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혹한기·혹서기에 입영을 기피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그러나 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역병 필요 인원은 연간 비교적 일정한 반면, 하반기에 군에서 요구하는 필요 병력을 원활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군 전투력 유지 등 군 부대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병무청은 충원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충원 인원 부족이 예상될 시 입영 대상자 추가 모집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국방부 및 각 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충원율이 저조한 모집 선호 특기 4분기 소요 확대, 병역의무자 학사일정을 고려한 입영일정 조정[197], 휴가 활용을 통한 미복귀 전역[198] 등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사.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집행 부진

(1) 사업 개요

○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7135-314)은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복무여건 조성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역의무자가 징·소집 등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지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동안 건강보험료 및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등을 지원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197) 병역의무자 학사일정 고려한 12월 입영일정 조정 : 1,2주차 →3,4주차
198) 휴가 활용을 통한 미복귀 전역 : 전역 전 휴가 사용 후 부대 복귀 없이 전역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023년도 예산현액 1,207억원 중 83.1%인 1,002억원을 집행하고 204억원을 불용하였음.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역의무자 지원	120,480	-	-	+257	120,737	100,283 (83.1%)	20,454 (16.9%)
-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1,338	-	-	-	1,338	1,222 (91.3%)	116 (8.7%)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86,557	-	-	-	86,557	66,161 (76.4%)	20,396 (23.6%)
- 의무자여비 등	32,585	-	-	+257	32,842	32,900 (100.2%)	-

* 자료 : 병무청

(2) 사회복귀준비금 예산 과다 불용 방지 방안 마련 필요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865억 5,700만원이며, 이중 661억 6,100만원(76.4%)을 집행하고 203억 9,600만원(23.6%)를 불용 처리함.

동 사업의 불용액은 병무청 전체 불용액 256억 2,100만원의 80%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동 사업 집행 부진이 병무청 예산 집행 실적 부진의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집행 부진이 발생한 원인은 예산 편성 당시 과도한 기준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후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사업’과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정부가 1% 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자 납입 원리금에 정부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는 원리금의 33%, 2023년도는 원리금의 71%, 2024년 이후에는 원금의 100%를 국가가 매칭 지원하는 사업임.[199)]

[사회복무요원 보수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 비율]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예정)
보수(월액, 병장 기준)	67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적금 납입한도액	40만원	40만원	40만원	55만원
매칭비율	(원리금의) 33%	(원리금의) 71%	(원금의) 100%	(원금의) 100%
월 최대 지원금액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자료 : 병무청

○ 사회복귀준비금의 2023년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2023년 소집

199) 장병내일준비적금 1%이자지원 및 사회복귀준비금 재정지원은 2022년부터 실시하였음.

해제 예상인원 31,823명, 적금 가입율 77.45%로 예상하고, 1인당 평균 사회복귀지원금 지급 예상액을 3,511천원으로 보아 총 866억원을 편성하였으나,[200]

사회복귀준비금의 2023년 예산 집행내역은 2023년 소집해제 인원이 33,943명, 적금 가입율 74.9%, 1인당 평균 사회복귀지원금 2,601천원으로 총 662억원을 집행됨.[201]

[장병내일준비적금 및 사회복귀준비금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A)	집행 (B)	집행률 (B/A)	비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1,338	1,222	91.3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86,557	66,161	76.4	

* 자료 : 병무청

○ 예산 집행 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2023년 예산 편성시 1인당 평균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금액을 3,511천원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 예산 집행 결과 1인당 평균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금액이 2,601천원으로 1인당 지급단가가 예상과는 다르게 크게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추계 오류는 2023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 자료인 1인당

200) 사회복귀준비금 예산 편성 산식 : 소집해제 예상인원(31,823명) × 예상 적금가입율(77.45%) × 1인당 평균 사회복귀준비금 지급 예상액(3,511천원)

201) 사회복귀준비금 집행 내역 : 소집해제 인원(33,943명) × 적금가입율(74.9%) × 1인당 평균 사회복귀준비금 지급액(2,601천원)

사회복귀준비금 예상 지급 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① 적금 납입 기간을 소집 즉시 가입하고 중도해지가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 복무기간인 21개월로 설정하였고, ② 납입 금액 또한 법정 납입 최대 한도인 월 40만원으로 설정하였으나,

가입 현황은 60% 초·중반에 불과하고 평균 납입 금액도 36만원 수준에 불과하여 편성된 예산과 집행액이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 현황(전체 복무자 대상)]

(단위: %)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입률	51.8	56.7	62.3	64.5	66.6	67.2	69.2	70.7	71.1	73.3	73.8	74.7
구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입률	80.3	76.8	79.9	80.6	80.7	83.2	83.6	83.7	85.5	85.8	85.4	86.7

* 자료 : 병무청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금액 현황(전체 복무자 대상)]

(단위: 만원)

구 분	‘22.1월	‘22.8월	’23.1월	’23.8월	’24.1월	’24.3월
1인당 평균 가입금액	34.5	36.1	36.5	37.2	37.4	37.5

* 자료 : 병무청

○ 동 사업 예산의 집행 부진 현상은 사업 초기인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부터 예상되어 개선이 요구되었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동일한 요인으로 인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사회복귀준비금 예산 연도별 집행 실적]

(단위: 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액	30,301	86,557
집행액	11,673	66,161
집행률(%)	38.5	76.4

* 자료 : 병무청

○ 향후 병무청은 예산 과다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가입률, 가입금액, 가입기간 등 예산 추계에 필요한 추정치를 실제 통계 데이터에 근거하여 현실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 병무행정정보화 관련

(1) 사업 개요

○ 병무행정정보화 사업(7138-501)은 병무행정 전반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수행체계 유지를 총괄하는 사업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로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과 보안·통신 등 정보화 인프라의 지속 고도화를 통해 상시 안정적인 병역자원 선발·충원 및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정보화 사업임.

○ 이를 위하여 병무청은 2023년도 예산현액 8,872백만원 중 95.8%인 8,502백만원을 집행하고 370백만원을 불용하였음.

[병무행정정보화 사업 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o 병무행정정보화	8,872	-	-	-	8,872	8,502 (95.8%)	370 (4.2%)
- 연구용역비	1,364	-	-	-	1,364	1,328 (97.4%)	36 (2.6%)
- 시스템 운영 제반비용	6,600	-	-	-	6,600	6,266 (94.9%)	334 (5.1%)
- 장비 및 SW 구입비	908	-	-	-	908	907 (100%)	- (0%)

* 자료 : 병무청

(2)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보안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병무청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영역에서 활발히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보안 강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매년 약 25만명 규모의 19세 병역의무자와 관련한 약 700만건의 병역의무자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기록 데이터를 생산·보유하고 있음.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실시 실적]

(단위: 명)

구분	누적인원수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병역판정검사	1,363,769	241,714	251,038	256,755	287,162	327,100
입영판정검사	136,917	86,637	37,459	12,821	-	-

* 자료 : 병무청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13년 7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동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

[병무청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공공데이터 포털		제공 심의		데이터 관리과		개인정보 점검		Kdata→신청자
제공요청 접수	>	제공여부 판단 (사업부서) 필요시 위원회 심의	>	데이터 추출	>	정보보호팀 등 3차 점검	>	Kdata 안심구역 (분석작업)

○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등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민간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고, 2023년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202] 결과 우수 등급(89.7점)을 받는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적극적이나, 병무청 보유 공공데이터 민간 이용 확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병무청 보유 공공데이터 민간 제공 실적]

제공시기	제공기관	목 적	건 수
'24. 1월	0000병원	흉곽기형과 성장과의 상관관계 분석	400만
'24. 1월	00병원	잠복결핵치료의 효과에 대한 분석	160만
'23. 10월	000병원	간염 역학데이터 분석, 백신개발 연구	600만
'23. 1월	000병원	연령증가에 따른 건강기록 변화에 대한 연구	600만
'22. 10월	000병원	성인 남성 비만율 변화에 대한 연구	300만
'22. 1월	000병원	잠복결핵 유병율 조사	25만

* 자료 : 병무청

○ 현재 병무청이 제공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수요처를 살펴보면 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에 국한되어 있는데,[203]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영역에서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기록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데이터의 가치 및 활용성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협회 등에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204]

---

202)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결과를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696개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5개 영역, 16개 세부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보통, 미흡 3개 등급을 부여한다.

203) 이에 대해 병무청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남성의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데이터라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204) 실제로 병무청은 2023년 7월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병역판정검사 관련 의료 기록 데이터에 대하여 서울대학교병원 등 11개 의료기관 및 제약·의류·보험 업계 등 관련 산업 기관에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한 사례가 있음.

○ 또한, 민간분야에서 병무청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손쉽게 가공·처리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품질 데이터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체계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수요처의 효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비하여 전담조직인 정보보호팀을 운영중이며 3단계 방어체계[205]를 구축하는 등 나름의 정보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병무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는 우리나라 20대 남성 대다수의 의료 기록이라는 점에서, 유출 시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해킹 시도 및 그에 따른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병무청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보안 관리 활동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205) - 1단계 :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망분리 시스템
- 2단계 : 방화벽 등 각종 보안장비를 운영하는 보안시스템
- 3단계 :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보안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병무청 유형별 사이버공격 시도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2024.6월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계	7,121	730	1,071	1,293	1,986	2,041
정보유출시도	1,036	116	169	258	193	300
정보수집	937	170	216	104	172	275
바이러스	329	19	40	72	115	83
시스템권한획득	3,894	269	502	654	1,325	1,144
서비스거부	20	1	5	4	2	8
비인가시도	542	117	83	150	123	69
기타	363	38	56	51	56	162

* 자료 :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제1장 결산개요

Ⅰ 일반회계

1.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2023년도 방위사업청 세입예산액은 3,319억 5,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6,406억원 증가한 9,725억 5,700만원임.

징수결정액 중 41.8%인 4,068억 8,200만원은 수납하였으나, 58.2%인 5,656억 7,500만원은 수납하지 못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없음.

[2023년도 세입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세 입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B/A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	D/A
331,955	972,557	406,882	41.8	-	565,675	58.2

(2) 세입결산 내용

가.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예산과목은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예산액 3,319억 5,5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이전수입은 방위사업청 전체 세입예산액의 96.5%인 3,204억 400만원이며, 재산수입이 3.4%인 114억 6,3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이 0.03%인 8,800만원임.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예산액 중 경상이전수입이 가장 많은 이유는 무기체계 획득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 및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임.

○ 징수결정액은 9,725억 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406억원을 초과하여 징수결정 하였는데 이는 주로 위약금(지체상금 등), 기타경상이전수입(계약정산액, 출연금 반납 등)에서의 고액채권 발생과 과년도에 징수결정 되었으나 수납되지 않은 미수납채권이 당해연도에 다시 징수결정 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음.

[2023년도 세입과목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계	331,955	972,557	406,882	-	565,675	41.8
◉ 재산수입	11,463	31,699	30,766	-	934	97.1
-건물대여료	-	-0.4	-0.4	-	0	100.0
-기타관유물대여료	860	749	749	-	0	87.1
-기타재산이자수입	6,837	25,528	25,515	-	13	99.9
-기타재산이자외수입	3,766	5,422	4,502	-	921	83.0
◉ 경상이전수입	320,404	940,852	376,110	-	564,742	40.0
-과징금	-	74	74	-	0	100.0
-변상금	-	487	44	-	443	9.0
-위약금	164,655	335,370	-39,458	-	374,828	11.8
-기타경상이전수입	155,749	604,921	415,450	-	189,471	68.5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8	6	6	-	0	100.0
-면허료및수수료	75	4	4	-	0	100.0
-기타잡수입	13	2	2	-	0	100.0

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실적

① 수납액

○ 2023년도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9,725억 5,700만원으로, 이 중 41.8%인 4,068억 8,200만원을 수납하였음.

주요 수납내역은 재산수입 307억 6,600만원, 경상이전수입 3,761억 1,000만원,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00만원임

[2023년도 세입 과목별 수납액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비율 (B/A)
계	331,955	972,557	406,882	41.8
•재산수입	11,463	31,699	30,766	97.1
•경상이전수입	320,404	940,852	376,110	40.0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8	6	6	100.0

② 미수납액

○ 2023년도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9,725억 5,700만원이며, 이 중 58.2%인 5,656억 7,5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미수납액은 소송 등으로 인한 정리유예(4,816억 3,800만원), 재력부족(828억 9,400만원), 납기미도래(11억 4,300만원) 등으로 발생하였음.

[세입 과목별 미수납 사유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정리유예	재력부족	납기미도래
계	565,675	481,638	82,894	1,143
■ 재산수입	934	6	6	922
- 기타재산이자수입	13	6	6	1
- 기타재산이자외수입	921	-	-	921
■ 경상이전수입	564,742	481,632	82,889	222
- 변상금	443	443	-	-
- 위약금	374,828	373,570	1,253	6
- 기타경상이전수입	189,471	107,619	81,636	216

2. 세출결산

(1) 세출결산 총괄

가. 지출내역

○ 방위사업청의 세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20억원을 포함하여 17조 2,989억원으로 이 중 97.5%인 16조 8,671억원을 지출하였고, 1.5%인 2,635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인 1,683억원은 불용하였음.

[2023년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월액	%	불용액	%
계	172,989	168,671	97.5	2,635	1.5	1,683	1.0
•지휘정찰사업	27,036	26,075	96.4	615	2.3	346	1.3
•기동화력사업	31,598	31,061	98.3	407	1.3	130	0.4
•함정사업	22,496	21,697	96.5	715	3.2	85	0.4
•항공기사업	25,613	25,211	98.4	305	1.2	97	0.4
•유도무기사업	25,095	24,765	98.7	238	0.9	93	0.4
•방위사업정책지원	38,801	38,327	98.8	238	0.6	235	0.6
•방위사업행정지원	2,253	1,440	63.9	118	5.3	694	30.8
•내부거래지출	97	95	97.6	0	0	2	2.4

○ 지출 성질별로 보면 자산취득이 61.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지출, 물건비, 인건비, 전출금(내부거래) 순으로 지출하였음.

[지출액의 성질별 내역]

(단위: 억원)

계	인건비	물건비	이전지출	자산취득	전출금
168,671 (100%)	879 (0.5%)	19,395 (11.5%)	44,346 (26.3%)	103,956 (61.6%)	95 (0.1%)

나. 이체 및 이·전용 내역

○ 이체 및 이·전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2,494억원임.

[2023년도 이체 및 이·전용 규모]

(단위: 억원, %)

예산현액 (A)	이·전용액				비 율 (B/A)
	계(B)	이체액	이용액	전용액	
172,989	2,494	-	-	2,494	1.4

○ 전용액은 2,494억원으로, ① F-X 2차 사업 FMS LOA 수락을 위한 초입금 지급을 위해 항공기 사업 프로그램에서 505억원, ② K105A1자주포 2차양산 사업의 납품대금 등 지급을 위해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에서 393억원, ③ 소형무장헬기 양산 사업의 착·중도금 지급을 위해 항공기사업 프로그램에서 164억원, ④ TA-50 Block2사업의 납품대금 보전을 위해 항공기사업 프로그램에서

159억원, ⑤ 고속상륙정 2차 사업의 원가정산 대금 지급을 위해 함정사업 프로그램에서 140억원, ⑥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의 시제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함정사업 프로그램에서 120억원, ⑦ Link-16 성능개량 사업의 착수금 지급을 위해 지휘정찰 프로그램에서 83억원, ⑧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의 시설비 보전을 위해 지휘정찰 프로그램에서 71억원, ⑨ 425사업(R&D)의 SAR위성에 대한 항공운송료 보전을 위해 지휘정찰 프로그램에서 63억원 등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분야별 이체 및 이·전용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예산액	전년이월	이체	이용	전용	예산현액
계	169,169	3,820	-	-	2,494 -2,494	172,989
•지휘정찰사업	26,047	989	-	-	470 -470	27,036
•기동화력사업	30,695	903	-	-	489 -489	31,598
•함정사업	22,280	216	-	-	349 -349	22,496
•항공기사업	24,852	761	-	-	1,035 -1,035	25,613
•유도무기사업	24,463	632	-	-	116 -116	25,095
•방위사업정책지원	38,495	306	-	-	13 -13	38,801
•방위사업행정지원	2,239	14	-	-	22 -22	2,253
•내부거래지출	97	-	-	-	-	97

[2023년도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전용액	전 용 사 유	
계	249,441	-	
지휘정찰사업	47,025	• Link-16 성능개량 사업: 착수금 지급	8,315
		• 전술정보통신체계(TICN)사업: 시설비 보전	7,100
		• 425사업(R&D): SAR위성에 대한 항공운송료 보전	6,340
기동화력사업	48,859	• K105A1자주포 2/3차양산: 납품대금 및 착수금 부족분 보전	39,275
		• 230mm급다련장: 착·중도금 부족분 보전	6,303
함정사업	34,915	• 고속상륙정 2차: 원가정산 대금 보전	13,972
		• 근접방어무기체계-Ⅱ 사업: 시제비 부족 예산 확보	12,000
항공기사업	103,535	• F-X 2차 사업: FMS LOA수락을 위한 초입금 보전	50,477
		• 소형무장헬기 양산: 착중도금 보전	16,369
		• TA-50 Block2: 납품대금 보전	15,918
유도무기사업	11,607	• 철매-II 성능개량: 양산 주장비 납품대금 보전	5,994
		•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시설비 보전	2,356
방위사업정책지원	1,346	•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일반용역비 보전	500
방위사업행정지원	2,152	• 기타행정지원: 중재예납금 등 위임비용 보전	915

다. 이월 내역

① 이월 규모

○ 2023년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로서, 예산현액 17조 2,989억원의 1.5%인 2,634억 6,800만원임.

[2023년도 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현액 (A)	이 월 액			비 율 (B/A, %)
	계 (B)	명시이월	사고이월	
17,298,894	263,468	0	263,468	1.5

② 이월발생 내역

○ 이월은 주로 계약지연, 사업일정 지연, 패키지시설사업 집행 부진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액 2,634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음.

프로그램별 사고이월 내역은 ①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구매시험평가 일정 지연 등으로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에서 614억 7,301만원,

② 특임여단 능력보강 계약지연 등으로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에서 406억 8,040만원,

③ 잠수함구조함-Ⅱ 사업 시험평가 지연으로 인한 납품지연 등으로 함정사업 프로그램에서 714억 6,758만원,

④ 소형무장헬기 양산 사업 시설비 선금 집행 후 잔액 등으로 항공기사업 프로그램에서 304억 5,383만원,

⑤ GPS유도폭탄(2,000lbs급) 사업 주장비 일부 물량 납품 지연 등으로 유도무기사업 프로그램에서 237억 5,421만원,

⑥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사업범위 변경 등으로 사업지연 등 방위사업정책지원 프로그램에서 237억 9,707만원,

⑦ 청사이전 사업 청사신축 대형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진행에 의한 공사비 이월 등으로 방위사업행정지원 프로그램에서 118억 4,195만원임.

[사고이월 내역]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이월액	주 요 이 월 사 유	
계	263,468	-	
지휘정찰	61,473	•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구매시험평가 일정 지연	22,943
		•근거리 정찰드론 : 구매시험평가 일정 지연	16,981
기동화력	40,680	•특임여단 능력보강 : 계약지연	12,594
		•조종사보호의세트-II : 원재료 공급문제로 납품지연	6,595
함 정	71,467	•잠수함구조함-Ⅱ: 시험평가 지연으로 납품 지연	63,437
		•장보고-Ⅲ Batch-l : 선금 집행 후 잔액 등	2,422
항공기	30,454	•소형무장헬기 양산 : 시설비 선금 집행 후 잔액 등	9,058
		•기초비행훈련용헬기 : 업체대금 청구 지연	6,035
유도무기	23,754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 주장비 일부 물량 납품지연 등	6,957
		•30mm차륜형대공포 : 시설공사 지연	6,582
방위사업 정책지원	23,797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 사업범위 변경 등으로 사업지연	17,390
		•신속시범획득 : 계약과제 납품지연	4,625
방위사업 행정지원	11,842	•청사이전 : 설계·시공 일괄입찰 진행으로 공사비 이월	10,846

라. 2023년도 종료 및 신규사업 내역

○ 2023년도에는 10톤구난차 등 총 20개 사업이 종료되었음.

[2023년도 종료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3예산액	'23집행액	집행률
① 10톤구난차	'01～'23	171,035	0	756	-
② 장애물개척전차	'19～'28	758,464	90,900	91,143	100.2
③ 기관총조준경	'18～'23	17,872	550	565	102.7
④ 복합화기원격사격통제체계	'21～'23	77,260	21,674	23,289	107.5
⑤ 도시지역작전능력보강	'17～'23	-	0	6,249	-
⑥ 특수작전용유탄발사기	'18～'23	-	0	855	-
⑦ K계열전차소부대전술모의훈련장비	'11～'23	176,890	0	3,271	-
⑧ GPS화물낙하산	'20～'23	-	5,547	5,771	104.0
⑨ 12.7mm저격용소총	'21～'23	-	0	30,731	-
⑩ 화생방정찰차-Ⅱ(장갑형)	'16～'21	237,284	0	127	-
⑪ 소형무장헬기(R&D)	'11～'23	673,052	62,154	72,763	117.1
⑫ 상륙기동헬기	'16～'23	944,302	23,279	23,790	102.2
⑬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개량	'20～'23	85,642	14,534	11,204	77.1
⑭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 Ⅰ-②(TMMR)(R&D)	'20～'23	12,139	1,839	1,850	100.6
⑮ 차기열상감시장비(TOD-Ⅲ)	'11～'22	330,249	0	3,899	-
⑯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19～'22	61,662	0	32	-
⑰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14～'23	1,318,020	1,761	3,520	199.9
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17～'23	227,709	410	9,433	2,300.7
⑲ 레이저대공무기 Block-1(R&D)	'19～'23	87,081	8,980	8,991	100.1
⑳ 폭발물 탐지/제거로봇 체계개발	'17～'23	25,557	1,921	1,911	99.5
계	20개 사업		233,549	300,150	

○ 2023년도에는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등 18개 사업이 신규로 착수되었음.

[2023년도 신규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3예산액	'23집행액	집행률
①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23~'30	127,500	1,470	1,812	123.2
②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R&D)	'23~'28	146,767	1,300	2,298	176.8
③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II(R&D)	'23~'28	65,127	4,673	8,358	178.9
④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성능개량(R&D)	'23~'26	40,693	8,038	8,028	99.9
⑤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2차	'23~'26	86,957	7,884	30,088	381.6
⑥ K9자주포 2차 성능개량(R&D)	'23~'27	49,432	2,535	2,537	100.1
⑦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23~'25	8,771	3,066	21	0.7
⑧ 울산급 Batch-IV	'23~'32	3,252,550	14,854	289	1.9
⑨ F-X 2차	'23~'28	4,288,058	18,800	73,157	389.1
⑩ 대형공격헬기 2차	'23~'28	3,302,720	441	258	58.6
⑪ VH-92 성능개량	'23~'27	49,520	158	6	3.7
⑫ 철매-II 성능개량 2차	'23~'27	627,181	27,813	27,655	99.4
⑬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R&D)	'23~'27	288,490	12,747	12,747	100.0
⑭ 함대공유도탄-II(R&D)	'23~'30	331,766	997	16	1.6
⑮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23~'31	383,365	850	27	3.2
⑯ ○○○○-II(R&D)	-	-	337,708	337,708	100.0
⑰ 패키지핵심기술(R&D)	계속	-	663,586	663,586	100.0
⑱ 방산혁신기업 100지원	계속	-	31,021	30,989	99.9
계	18개 사업		1,137,941	1,199,580	

(2) 세출결산 내용

가. 개 요

○ 2023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현액은 17조 2,989억원으로 이 중 97.5%인 16조 8,671억원을 지출하였고, 1.5%인 2,635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인 1,683억원을 불용하였음.

전용은 2,494억원으로, 착·중도금 및 납품대금 지급, 시설비 보전 등을 위해 발생하였음.

○ 2023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 규모(17조 2,989억원)는 정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449조 672억원)의 3.8%임.

방위사업청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7.5%로서 2023년도 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 90.4%에 비하여 약간 높음.

주요 미집행 사유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계약·납품 지연 등임.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방위사업청 결산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정부전체	3,362,994	3,904,205	4,258,810	4,978,955	4,490,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방위사업청	159,666	160,786	166,359	164,255	**172,989**
	(%)	(100.0)	(100.0)	(100.0)	(100)	**(100)**
지출액	정부전체	3,308,841	3,852,230	4,177,207	4,850,492	4,058,862
	(%)	(98.4)	(98.7)	(98.1)	(97.4)	(90.4)
	방위사업청	154,029	157,433	162,231	157,448	**168,671**
	(%)	(96.5)	(97.9)	(97.5)	(95.9)	**(97.5)**
이월액	정부전체	12,936	14,248	26,477	27,933	20,056
	(%)	(0.6)	(0.4)	(0.6)	(0.6)	(0.4)
	방위사업청	3,159	2,024	2,888	3,820	**2,635**
	(%)	(2.0)	(1.3)	(1.7)	(2.3)	**(1.5)**
불용액	정부전체	41,216	37,728	55,127	100,531	411,753
	(%)	(1.2)	(1.0)	(1.2)	(2.0)	(9.2)
	방위사업청	2,478	1,329	1,240	2,987	**1,683**
	(%)	(1.5)	(0.8)	(0.8)	(1.8)	**(1.0)**
이체 및 아전용액	정부전체	11,589	27,313	18,801	34,049	18,351
	(%)	(0.3)	(0.7)	(0.4)	(0.7)	(0.4)
	방위사업청	2,196	2,639	1,268	2,255	2,494
	(%)	(1.4)	(1.6)	(0.8)	(1.4)	(1.4)
	이 체		-9	0	-0.8	0
	이 용	710	746	0	2	0
	전 용	1,486	1,893	1,268	2,254	2,494

자료: 일반회계 기준

나. 이체 및 이·전용

○ 2023년도 이체 및 이·전용은 예산현액의 1.4%인 2,494억원으로 이 중 이체 및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2,494억원임.

2023년도 이체 및 이·전용 전체금액은 2022년도에 비해 239억원 증가하였는데, 사유는 착·중도금 및 납품대금 지급, 패키지시설사업 시설비 보전 등임.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이체 및 이·전용액 증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정부전체	3,362,994	3,904,205	4,258,810	4,978,955	4,490,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방위사업청	159,666	160,786	166,359	164,255	**172,989**
	(%)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출액	정부전체	3,308,841	3,852,230	4,177,207	4,850,492	4,058,862
	(%)	(98.4)	(98.7)	(98.1)	(97.4)	(90.4)
	방위사업청	154,029	157,433	162,231	157,448	**168,671**
	(%)	(96.5)	(97.9)	(97.5)	(95.9)	**(97.5)**
이체 및 이·전용액	정부전체	11,589	27,313	18,801	34,049	18,351
	(%)	(0.3)	(0.7)	(0.4)	(0.7)	(0.4)
	방위사업청	2,196	2,639	1,268	2,255	2,494
	(%)	(1.4)	(1.6)	(0.8)	(1.4)	(1.4)
	이 체	0	−9	0	−0.8	0
	이 용	710	746	0	2	0
	전 용	1,486	1,893	1,268	2,254	2,494

다. 이월

① 이월액 규모 및 증감

○ 2023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이월액 규모는 2,635억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임. 세출예산 현액 대비 이월액 비율은 1.5%로, 2022년도의 2.3%보다 0.8%p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정부 대비 이월액 증감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정부전체	3,362,994	3,904,205	4,258,810	4,978,955	4,490,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방위사업청	159,666	160,786	166,359	164,255	**172,989**
	(%)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출액	정부전체	3,308,841	3,852,230	4,177,207	4,850,492	4,058,862
	(%)	(98.4)	(98.7)	(98.1)	(97.4)	(90.4)
	방위사업청	154,029	157,433	162,231	157,448	**168,671**
	(%)	(96.5)	(97.9)	(97.5)	(95.9)	**(97.5)**
이월액	정부전체	12,936	14,248	26,477	27,933	20,056
	(%)	(0.6)	(0.4)	(0.6)	(0.6)	(0.4)
	방위사업청	3,159	2,024	2,888	3,820	**2,635**
	(%)	(2.0)	(1.3)	(1.7)	(2.3)	**(1.5)**

② 이월액 증감내역

○ 사고이월은 계약지연, 시설사업 부진, 사업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2,635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년 대비 1,185억원이 감소되었음.

[연도별 이월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사고이월	3,159	2,024	2,888	3,820	2,635
명시이월 (승인액)	0 (0)	0 (0)	0 (0)	0 (0)	0 (0)
계	3,159	2,024	2,888	3,820	2,635

라. 불용

○ 2023년도 방위사업청 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인 1,683억원으로, 2022년도의 2,987억원보다 1,304억원 감소하였음.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사업일정 지연, 사업계획 변경, 집행잔액 등임.

[연도별 불용액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정부전체	3,362,994	3,904,205	4,258,810	4,978,955	4,490,672
	(%)	(100.0)	(100.0)	(100.0)	(100.0)	(100.0)
	방위사업청	159,666	160,786	166,359	164,255	**172,989**
	(%)	(100.0)	(100.0)	(100.0)	(100.0)	**(100.0)**
지출액	정부전체	3,308,841	3,852,230	4,177,207	4,850,492	4,058,862
	(%)	(98.4)	(98.7)	(98.1)	(97.4)	(90.4)
	방위사업청	154,029	157,433	162,231	157,448	**168,671**
	(%)	(96.5)	(97.9)	(97.5)	(95.9)	**(97.5)**
불용액	정부전체	41,216	37,728	55,127	100,531	411,753
	(%)	(1.2)	(1.0)	(1.2)	(2.0)	(9.2)
	방위사업청	2,478	1,329	1,240	2,987	**1,683**
	(%)	(1.5)	(0.8)	(0.8)	(1.8)	**(1.0)**

(3) 프로그램별 집행실적

가. 지휘정찰사업

○ 지휘정찰사업 프로그램은 총 61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7,036억원임.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개량, 폭발물 탐지/제거로봇 체계개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 I-②(TMMR), 차기열상감시장비(TOD) 4개 사업이 종료되었고,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무인항공기(R&D),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Ⅱ(R&D), 육군항공전술훈련시뮬레이터 성능개량(R&D),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2차 5개 사업이 신규로 착수되었음.

○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6.4%로 방위사업청 전체 집행률(97.5%) 보다 낮음.

주요 미집행 사유로서 신속획득(해안정찰용무인항공기 등)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지연에 따른 239억원 이월되었으며, 근거리정찰드론 사업의 구매시험평가 지연에 따른 이월액 169억원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지휘정찰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무인지상감시센서(R&D)	-	29	50 0	-	0 0	79	69	10	0
MS-SAR 2차(R&D)	891	0	0 0	-	0 -10	881	872	0	9
425사업(R&D)	90,395	6	6,340 -6,340	-	317 -6	90,712	90,231	419	62
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JTDLS) 완성형(R&D)	34,614	0	0 0	-	0 0	34,614	34,614	0	0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3,412	1,423	0 0	-	0 -175	4,660	4,265	202	194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R&D)	-	32	0 0	-	0 0	32	32	0	0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JFOS-K) 성능개량	14,534	64	0 -3,378	-	0 -10	11,211	11,204	0	7
연합군사정보처리체계(MIMS-C) 성능개량	19,659	0	0 0	-	0 -507	19,152	18,977	29	146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	192,738	0	643 -674	-	0 0	192,707	190,844	120	1,743
해안감시레이더-II(R&D)	2,896	15	0 0	-	0 -2	2,909	2,892	13	4
장거리레이더(R&D)	2,014	0	0 0	-	2 0	2,016	2,014	0	2
소형무인기대응체계(Block-Ⅰ)(R&D)	4,190	0	0 0	-	0 0	4,190	4,189	0	1
MCRC 성능개량	47,692	0	0 -323	-	19 -96	47,292	47,268	0	24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BTCS-A2)	4,663	0	0 0	-	0 -2	4,661	4,523	64	74
사이버전장관리체계(R&D)	1,470	0	0 0	-	410 -3	1,877	1,812	7	58
함탑재정찰용/서북도서용 무인항공기(R&D)	1,300	0	100 -100	-	1,000 0	2,300	2,298	0	2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Block-Ⅰ-②(TMMR)(R&D)	1,839	0	1,688 -1,688	-	18 0	1,889	1,850	0	39
해군음향정보관리체계-II(R&D)	4,673	0	3,680 0	-	7 0	8,360	8,358	0	2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함정용전자전 장비-Ⅱ(R&D)	28,883	0	0 0	-	0 0	28,883	28,883	0	0
초소형위성체계(R&D)	27,042	0	0 0	-	0 0	27,042	27,042	0	0
군용 한국형 위성항법체계(R&D)	39,809	0	0 0	-	1,869 -1,848	39,830	39,824	0	6
개인전장 가시화체계(R&D)	3,991	0	45 -10	-	0 0	4,026	3,880	143	3
폭발물 탐지 및 제거 로봇(R&D)	1,921	0	0 0	-	0 -9	1,912	1,911	0	1
무인수색차량(R&D)	35,631	0	0 0	-	234 -234	35,631	35,631	0	0
수중자율기뢰 탐색체(R&D)	1,386	0	0 0	-	23 -1,000	409	188	0	221
육군합성전장훈련체계 Build-Ⅰ(R&D)	8,520	0	0 0	-	0 -6	8,514	8,511	0	3
창공모델 성능개량(R&D)	5,426	0	17 -10	-	0 -3	5,431	5,416	0	15
해군교전급 분석모델(R&D)	7,944	0	0 -14	-	1 0	7,931	7,931	0	0
비전21모델 성능개량(R&D)	2,913	0	0 0	-	1 -1	2,913	2,913	0	0
육군항공전술훈련 시뮬레이터 성능개량(R&D)	8,038	0	706 -706	-	10 0	8,048	8,028	20	0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736,303	546	9,427 -9,447	-	48,386 -7,601	777,614	773,089	3,056	1,470
지상전술데이터링크 (KVMF)	8,500	0	0 0	-	561 -192	8,869	8,849	0	20
전투원용무전기	34,183	875	0 0	-	55 -34,166	947	881	57	9
군위성통신체계-Ⅱ	175,984	17,741	3,270 -3,270	-	11,404 -29,893	175,236	173,996	1,231	9
차기열상감시장비(TOD)	-	3,548	0 0	-	508 -157	3,899	3,899	0	0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124,908	0	3,292 -3,292	-	24,736 -1,103	148,541	148,431	77	33
정보보안장비	6,288	4,482	0 0	-	0 0	10,770	9,712	0	1,058
원거리탐지용음향센서	31,228	22	0 0	-	3,865 -105	35,010	34,456	498	55
전술항법장비(TACAN)	7,614	1,899	20 0	-	18 0	9,551	7,474	2,032	45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국지방공레이더	51,954	783	2,141 -2,141	-	650 -684	52,703	51,965	484	254
항공관제레이더(PAR)	24,479	689	0 0	-	2,375 -1,084	26,459	23,883	1,195	1,381
이동형장거리레이더	2,428	1	782 -782	-	17 0	2,446	693	174	1,579
항공관제레이더(ASR)	29,069	2,461	0 -200	-	346 -10,811	20,866	8,314	4,234	8,318
해상감시레이더-II	21,853	90	0 0	-	1,403 0	23,346	23,279	0	67
지상전술C4I체계 2차성능개량	46,127	1	0 0	-	22,062 -17,138	51,052	49,393	1,382	276
이동형기상레이더	4,737	338	0 0	-	860 -65	5,870	5,781	0	89
항공통제기 2차	26	0	31 0	-	49 0	106	99	0	7
해상작전위성통신체계 (MOSCOS)-II	8,426	353	239 -239	-	2 -5,752	3,029	1,982	998	50
공지통신무전기 (SATURN) 성능개량	189,627	15,217	0 -124	-	59,503 -54,107	210,116	196,595	0	13,521
연합해상전술 데이터링크(Link-22)	89,196	0	200 -14,309	-	2,311 -24,612	52,786	50,314	0	2,472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1,032	0	0 0	-	0 0	1,032	851	181	0
중요시설경계시스템	5,845	1,583	34 0	-	103 -4,706	2,859	986	1,566	307
파이식별장비 성능개량	97,044	74	0 0	-	2,329 -14,949	84,497	84,125	332	40
Link-16 성능개량	67,665	0	14,309 0	-	25,149 -3,040	104,084	101,423	2,000	661
근거리 정찰드론	88	16,978	0 0	-	25 -25	17,066	85	16,981	0
신속획득	18,422	24,559	0 -10	-	293 -18,214	25,050	853	23,960	237
군단정찰용무인항공기 경미한성능개량	5,009	0	0 0	-	1 -879	4,131	4,131	0	0
GCCP과학화경계시스템 경미한 성능개량	93	5,069	0 0	-	74 -14	5,222	5,208	7	7
지상레이저 표적지시기 2차	7,884	0	0 0	-	22,212 -1	30,095	30,088	0	7
지휘정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201,400	0	0 0	-	0 0	201,400	201,346	0	54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고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HUAV)	8,836	0	10 0	-	0 0	8,846	8,845	0	1
계	2,604,732	98,878	47,026 -47,026	-	233,207 -233,207	2,703,610	2,607,492 (96.4)	61,473 (2.3)	34,645 (1.3)

나. 기동화력사업

○ 기동화력사업 프로그램은 총 50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1,597억원임.

10톤구난차, 기관총조준경, 복합화기원격사격통제체계, 도시지역 작전능력보강, 특수작전용유탄발사기, K계열전차소부대전술모의훈련장비, GPS화물낙하산, 12.7mm저격용소총 8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K9자주포 2차 성능개량(R&D),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2개 사업이 신규로 착수되었음.

○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8.3%로, 방위사업청 전체 집행률(97.5%) 대비 높음.

주요 미집행 사유로서, 특임여단 능력보강 사업의 계약 지연으로 126억원 이월, 조종사보호의세트-Ⅱ사업의 원재료 공급문제로 납품지연이 발생하여 66억원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기동화력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전술교량-Ⅱ Block-Ⅰ(R&D)	7,366	955	3 0	-	0 0	8,324	8,324	0	0
상륙돌격장갑차-Ⅱ (R&D)	6,917	0	0 0	-	239 -239	6,917	6,912	5	0
230mm급 무유도탄(R&D)	6,716	0	0 0	-	0 0	6,716	6,715	0	1
K1E1전차 성능개량 (R&D)	5,381	0	0 0	-	0 0	5,381	5,381	0	0
사단급대포병탐지 레이더(R&D)	6,019	0	0 0	-	0 0	6,019	6,018	0	1
기동저지탄(R&D)	3,615	0	0 0	-	0 0	3,615	46	3,569	1
K-9자주포2차 성능개량(R&D)	2,535	0	3 0	-	0 0	2,538	2,537	0	1
기동화력 소규모업체 개발(R&D)	1,707	279	0 0	-	0 0	1,986	1,333	0	654
K-2전차	178,763	2,412	662 -234	-	131 -3,636	178,098	176,882	771	445
차륜형장갑차	97,139	223	24 -24	-	6,165 -4,494	99,033	98,944	2	88
10톤 구난차	0	756	0 0	-	0 0	756	756	0	0
장애물개척전차	90,900	975	0 -429	-	996 -872	91,571	91,143	125	303
지휘소용차량	136,942	5	14 -14	-	0 -1,670	135,277	135,225	50	2
소형전술차량	69,742	0	6 0	-	2 0	69,750	69,750	0	0
다기능관측경	19,894	1,468	0 -3	-	22 -31	21,350	21,339	0	11
K16기관총	40,793	1	0 0	-	1,069 -1,069	40,794	40,794	0	0
지뢰탐지기-Ⅱ	15,988	30	0 0	-	0 0	16,018	16,013	0	5
K15기관총	94,831	0	0 0	-	0 -64	94,767	94,766	0	1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기관총조준경	550	18	0 0	-	6 -8	565	565	0	1
자주도하장비	40,043	195	0 0	-	10 -2	40,246	39,971	161	113
복합화기 원격사격 통제체계	21,674	34	0 0	-	1,763 -182	23,289	23,289	0	0
도시지역 작전능력 보강	0	6,875	0 0	-	58 0	6,933	6,249	0	684
특수작전용유탄 발사기	0	885	0 0	-	4 0	889	855	0	35
제독차-Ⅱ	0	1,829	0 0	-	45 0	1,874	1,832	0	42
화생방장비물자	6,748	11,256	9 0	-	1,820 -174	19,659	19,658	0	0
화생방정찰차-Ⅱ (장갑형)	0	0	0 0	-	127 0	127	127	0	0
방독면-Ⅱ	17,073	0	0 0	-	821 -2,467	15,427	15,427	0	0
화생방정찰차-Ⅱ (차량형)	202,458	3,742	1,365 -1,374	-	14,314 -14,314	206,191	204,214	990	987
조종사보호의세트-Ⅱ	11,049	0	0 0	-	0 0	11,049	4,453	6,595	0
K-36탄약운반장갑차	39,377	633	6,,312 -13,212	-	11,740 -10,954	40,796	40,605	23	168
230mm급다련장	41,663	7,221	0 0	-	241 -2,906	39,319	35,298	3,260	760
대포병탐지레이더-Ⅱ	24,709	4,024	0 0	-	7,253 -120	35,865	34,583	904	379
편제장비보강	169,487	2,113	0 0	-	8,160 -8,158	171,602	170,035	628	939
120mm자주박격포	197,289	1,025	0 0	-	342 -49	198,608	192,170	5,839	599
사격지휘차량(120mm 자주박격포용)	29,702	0	0 0	-	0 -662	29,040	29,030	0	10
81mm박격포-Ⅱ	70,110	995	0 0	-	3,515 -5,053	69,567	68,779	500	289
K계열전차소부대 전술모의훈련장비	0	1,901	0 0	-	1,577 0	3,478	3,271	0	207
K-55자주포 성능개량(K-55A1)	8,139	4,711	8 -8	-	523 -1,992	11,381	11,304	0	77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K1A2전차	10,510	0	0 0	-	4 0	10,514	9,547	245	722
K1E1전차	14,203	0	0 0	-	0 -4	14,199	14,193	6	0
K9A1자주포	18,134	0	7 -320	-	0 -11	17,810	17,783	0	27
K105A1자주포	105,321	2,115	40,133 -33,233	-	2,558 -597	116,297	115,610	657	31
GPS화물낙하산	5,547	0	0 0	-	224 0	5,771	5,771	0	0
특임여단 능력보강	27,099	551	0 -9	-	13 -14	27,640	14,783	12,594	262
127mm 저격용소총	0	31,731	0 0	-	0 0	31,731	30,731	0	1,000
소화기음향탐지기	4,143	18	0 0	-	0 0	4,161	0	0	4,161
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22,410	0	0 0	-	0 0	22,410	22,410	0	0
전투예비탄약	974,997	1,291	1 -1	-	49,431 -53,431	972,288	971,568	716	5
기동화력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218,744	0	313 0	-	0 0	219,057	219,055	0	2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3,066	0	0 0	-	6 -7	3,065	21	3,040	4
계	3,069,493	90,266	48,860 -48,860	-	113,180 -113,180	3,159,759	3,106,064 (98.3)	40,680 (1.3)	13,015 (0.4)

다. 함정사업

○ 함정사업 프로그램은 총 29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2,496억원임.

울산급 Batch-Ⅳ 1개 사업이 신규로 착수되었음.

○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6.4%로, 방위사업청 전체 집행률(97.5%) 대비 낮음.

주요 미집행 사유로서, 잠수함구조함-Ⅱ사업의 시험평가 지연으로 납품지연 634억원 이월, 장보고-Ⅲ Batch-Ⅰ 선금 집행 후 잔액으로 24억원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함정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광개토-Ⅲ Batch-Ⅱ 통합소나체계(R&D)	9,073	0	0 0	-	0 0	9,073	9,058	0	15
울산급 Batch-Ⅲ 전투체계(R&D)	8,007	0	0 0	-	650 -650	8,007	8,007	0	0
한국형수직발사체계 (KVLS-Ⅱ)(R&D)	7,057	0	0 0	-	0 0	7,057	7,043	0	14
근접방어무기체계-Ⅱ(R&D)	53,781	0	12,000 -12,000	-	0 0	53,781	53,777	0	4
구축함(KDDX) 전투체계(R&D)	82,357	0	0 0	-	0 0	82,357	82,350	0	7
구축함(KDDX) 소나체계(R&D)	27,403	0	0 -5	-	0 0	27,398	27,388	0	10
울산급 Batch-Ⅱ	173,270	8,338	900 -900	-	39,902 -165	221,346	220,916	13	416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검독수리-B Batch-Ⅰ	35,872	3,966	0 0	-	338 -30,970	9,206	8,330	0	876
울산급 Batch-Ⅲ	429,489	0	2,198 -198	-	21,636 -24	453,101	453,011	0	90
한국형구축함(KDDX)	4,711	0	3 0	-	16 0	4,730	4,705	0	25
광개토-Ⅲ Batch-Ⅱ	350,517	1	2,496 -2,496	-	12 -12	350,518	348,412	0	2,106
검독수리-B Batch-Ⅱ	97,016	0	2,045 -2,045	-	1,623 -2	98,637	98,489	134	14
전투근무지원정	10,221	1,413	0 0	-	0 -356	11,278	7,360	3,680	239
소해함 2차	0	604	0 0	-	3,501 0	4,105	4,044	13	49
대형수송함(LPX) 2차	1,560	0	0 0	-	0 -993	567	567	0	0
고속상륙정 2차	78,505	0	13,972 0	-	50,152 -2,379	140,249	138,744	1,341	164
특수전지원함	66	0	0 0	-	0 -14	52	45	0	7
잠수함구조함-Ⅱ	159,803	24	0 -13,972	-	825 -71,603	75,078	9,305	63,437	2,336
소해함-Ⅱ	15,274	0	0 0	-	35 0	15,309	15,306	0	3
특수침투정	112	0	0 0	-	0 -50	62	33	0	29
장보고-Ⅲ Batch-Ⅰ	248,616	6,273	560 -560	-	2 -21,502	233,389	229,356	2,422	1,611
장보고-Ⅲ Batch-Ⅱ	310,009	0	0 0	-	21,546 -11	331,544	331,536	0	8
장보고-Ⅰ 성능개량	23,153	0	4 -4	-	120 -67	23,206	22,972	0	234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체계	14,098	223	737 0	-	5,263 0	20,321	20,290	2	29
고속전투주정	1,709	747	0 -737	-	0 -955	764	764	0	0
울산급 Batch-Ⅳ	14,854	0	0 -2,000	-	- 12,517	337	289	0	48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30,235	0	0 0	-	573 0	30,808	30,807	0	1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KDX-Ⅰ성능개량	6,854	6	2 0	-	5 -3,924	2,943	2,401	427	115
함정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34,366	0	0 0	-	0 -5	34,361	34,361	0	0
계	2,227,988	21,596	34,916 -34,916	-	146,200 -146,200	2,249,584	2,169,666 (96.4)	71,468 (3.2)	8,450 (0.4)

라. 항공기사업

○ 항공기사업 프로그램은 총 28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5,613억원임.

소형무장헬기, 상륙기동헬기 2개 사업이 종료되었고, F-X 2차, 대형 공격헬기 2차, VH-92 성능개량 3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착수되었음.

○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8.4%로, 방위사업청 전체 집행률(97.5%) 대비 높음.

주요 미집행 사유로서 소형무장헬기 양산 사업 시설비 선금 집행후 잔액으로 90억원 이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업체대금 청구 지연으로 60억원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항공기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소형무장헬기(R&D)	62,154	11,062	2,913 -710	-	0 -84	75,335	72,763	57	2,515
보라매(R&D)	76,139	12,277	2,901 -3,012	-	0 0	88,305	82,612	5,211	482
상륙공격헬기(R&D)	88,328	0	271 -271	-	140 -9	88,459	88,431	0	28
KUH-1비행훈련 시뮬레이터(R&D)	77	2,000	0 0	-	0 -47	2,030	2,010	0	20
소해헬기(R&D)	59,279	0	0 0	-	0 0	59,279	59,278	0	1
F-X 2차	18,800	0	50,656 0	-	3,833 -8	73,281	73,157	0	124
공중급유기	1,378	0	143 0	-	32 0	1,553	1,520	25	7
상륙기동헬기	23,279	1,720	19 -19	-	1,698 0	26,696	23,790	2,784	123
한국형기동헬기 후속양산	239,145	1,991	5,107 -5,082	-	52 -1,718	239,496	233,950	4,208	1,338
의무후송전용헬기	0	13	0 0	-	0 0	13	9	0	4
기초비행 훈련용헬기	61,144	15	3,135 0	-	3,114 -654	66,755	60,685	6,035	35
TA-50 Block2	199,966	3,344	15,918 -16,061	-	91 -10,933	192,326	189,945	380	2,001
소형무장헬기	207,125	2,734	16,369 18,468	-	61 -2,561	205,259	194,319	9,058	1,881
T-50시뮬레이터	0	101	0 0	-	0 0	101	79	0	21
C-130H 성능개량	15,896	16,369	11 -11	-	0 -15,034	17,232	17,231	0	0
항공기 항재밍 GPS체계	29,285	0	0 0	-	0 -10,328	18,957	18,894	30	32
KF-16D 수명연장	8,694	0	0 0	-	0 0	8,694	8,694	0	0
대형수송기 2차	126,717	15,709	842 -842	-	32,386 0	174,812	174,810	0	1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대형공격헬기 2차	441	0	0 -5	-	3 -35	404	258	49	97
VH-92 성능개량	158	0	0 0	-	0 0	158	6	0	152
항공기 전력화 장비 후속지원	315,431	0	0 0	-	4 -4	315,431	313,775	1,249	407
F-35A	751	0	0 -176	-	0 -1	573	572	0	1
대형공격헬기(AH-64E)	0	10	0 0	-	0 0	10	10	0	0
KF-16 성능개량	79,833	0	5 -22,901	-	16 -5	56,949	56,949	0	0
해상초계기-Ⅱ	223,929	8,761	2,663 -2,663	-	999 0	233,689	232,256	1,151	282
대형기동헬기-Ⅱ	333,221	0	7 0	-	0 0	333,228	332,913	217	98
F-35A 성능개량	27,777	0	0 -27,604	-	0 -110	63	0	0	63
해상작전헬기	286,272	0	2,575 -5,710	-	0 -899	282,238	282,226	0	11
계	2,485,219	76,105	103,535 -103,535	-	42,429 -42,429	2,561,324	2,521,144 (98.4)	30,454 (1.2)	9,726 (0.4)

마. 유도무기사업

○ 유도무기사업 프로그램은 총 45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5,095억원임.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3개 사업이 종료되었고,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R&D), 함대공유도탄-Ⅱ(R&D), 철매-Ⅱ 성능개량 2차, 장거리함대공유도탄 4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착수되었음.

○ 2023년도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98.7%로, 방위사업청 전체 집행률(97.5%) 대비 높음.

주요 미집행 사유로서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사업의 주장비 일부 물량 납품 지연 등으로 69억원 이월, 30mm차륜형대공포 사업의 시설공사 지연으로 66억원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유도무기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R&D)	211,455	0	0 -10	-	1 -21	211,434	211,426	0	8
장거리공대지 유도탄 2차(R&D)	28,167	0	0 -2	-	0 -2	28,163	28,147	0	16
130mm유도로켓-Ⅱ(R&D)	12,080	5,608	0 0	-	0 -4	17,684	17,615	0	69
155mm사거리 연장탄(R&D)	0	4	9 0	-	5 0	18	18	0	0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OO2차 성능개량(R&D)	11,433	0	0 0	-	0 0	11,433	11,429	0	4
△△2차 성능개량(R&D)	171,416	13,700	27 -620	-	0 0	184,523	183,765	444	314
경어뢰-Ⅱ(R&D)	14,457	0	0 -4	-	0 0	14,453	14,451	0	2
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R&D)	8,980	0	7 0	-	35 -30	8,992	8,991	0	1
전술지대지 유도무기-Ⅱ(R&D)	12,747	0	0 0	-	112 -112	12,747	12,747	0	0
정전탄(R&D)	7,265	0	12 -6	-	0 0	7,271	7,262	0	9
장사정포 요격체계(R&D)	76,931	0	0 -4	-	13 -17	76,923	76,922	0	1
함대공유도탄-Ⅱ(R&D)	997	0	0 0	-	9 0	1,006	16	989	1
유도무기 소규모 업체개발(R&D)	549	256	26 -11	-	2 0	822	184	534	103
휴대용지대공 유도무기(신궁)	0	514	0 0	-	946 -451	1,009	581	359	69
방공지휘통제 경보체계	63,234	2,074	2 -5	-	156 -11,141	54,320	51,564	1,786	969
30mm차륜형 대공포	258,218	3,160	2,424 -2,426	-	6,442 -1,734	266,084	259,114	6,582	388
철매-Ⅱ	12,716	0	7 -7	-	0 0	12,716	12,649	24	42
탄도탄조기경보 레이더-Ⅱ	410	3,248	2,356 0	-	4,067 -1	10,080	9,433	0	647
30mm 복합대공화기	62,352	0	2 0	-	0 0	62,354	62,293	61	0
전술함대지 유도탄(경사형)	1,835	0	0 0	-	0 0	1,835	1,835	0	0
대함유도탄 방어유도탄 2차	41,977	0	0 0	-	0 0	41,977	41,977	0	0
중어뢰-Ⅱ	41,283	0	0 0	-	3 -3	41,283	41,283	0	0
자항기뢰	32,169	8,130	210 -657	-	0 0	39,851	36,926	69	2,856
130mm 유도로켓	27,521	685	447 0	-	0 0	28,653	28,495	0	158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전술함대지 유도탄(수직형)	17,670	0	0 0	-	0 0	17,670	17,670	0	0
2.75″유도로켓 (차량탑재형)	2,742	0	0 0	-	3,344 -105	5,981	5,376	604	1
GPS유도폭탄 (2,000lbs급) 4차	64,249	17,580	0 0	-	0 0	81,829	73,274	6,957	1,598
보병용중거리 유도무기	156,062	3,484	0 0	-	147 -147	159,546	157,400	1,631	515
전술지대지유도무기	36,262	64	0 0	-	168 -7,059	29,435	29,204	127	104
철매-Ⅱ 성능개량	52,245	1,785	5,310 -5,310	-	5,397 -30	59,398	57,419	1,745	234
OO2차성능개량	616,974	1,445	754 -167	-	1,784 -1,784	619,006	617,234	1,666	106
함대함유도탄 (해성-Ⅰ) 5차	5,907	0	0 0	-	0 0	5,907	5,907	0	0
철매Ⅱ 성능개량 2차	27,813	0	0 0	-	0 0	27,813	27,655	0	158
유도무기 전력화장비 후속지원	93,300	22	4 0	-	2,501 -2,501	93,326	93,150	158	17
함대공유도탄	73,087	0	2 0	-	0 0	73,089	73,008	0	81
잠대함유도탄	318	0	0 0	-	0 0	318	302	16	0
패트리어트 PAC-3유도탄	69,717	0	0 -2,368	-	0 0	67,349	67,335	0	14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1,761	1,443	0 0	-	316 0	3,520	3,520	0	1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129,186	0	7 -10	-	0 -316	128,867	128,862	0	5
장거리함대공유도탄	850	0	0 0	-	0 0	850	27	0	823
계	2,446,335	63,200	11,607 -11,607	-	25,449 -25,449	2,509,535	2,476,465 (98.7)	23,754 (0.9)	9,316 (0.4)

바. 방위사업정책지원

○ 방위사업정책지원 프로그램은 총 37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조 8,801억원이고, 패키지핵심기술(R&D), 방산혁신기업 100 2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착수되었음.

○ 2023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은 98.8%로, 방위사업청 전체 집행률(97.5%) 대비 높음.

주요 미집행 사유로서, 현존전력 극대화 사업 사업범위 변경 등으로 사업지연에 따라 174억원 이월, 신속시범획득 사업의 계약과제 납품지연으로 46억원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방위사업정책지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기초연구(R&D)	51,170	0	0 0	-	875 -875	51,170	51,170	0	0
개별핵심기술(R&D)	376,390	0	0 0	-	6,509 -6,509	376,390	376,385	0	5
전용기술(R&D)	500,664	0	0 0	-	0 0	500,664	500,664	0	0
부품국산화 개발지원(R&D)	184,707	0	0 0	-	0 0	184,715	184,659	36	20
미래도전 국방기술(R&D)	355,967	0	0 0	-	20 -10	355,977	355,977	0	0
신속연구개발(R&D)	49,236	0	0 0	-	2,210 -2,220	49,226	49,174	0	52
전용기술(R&D)-Ⅱ	337,708	0	0 0	-	0 0	337,708	337,708	0	0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민군기술협력(R&D)(방사청)	198,231	0	0 0	-	0 0	198,231	198,231	0	0
패키지 핵심기술(R&D)	663,586	0	0 0	-	0 0	663,586	663,586	0	0
국방과학연구소 인건비(R&D)	326,363	0	0 0	-	0 0	326,363	322,235	0	4,128
국방과학연구소 운영비(R&D)	43,476	0	0 0	-	0 0	43,476	43,207	0	269
국방과학연구소 시설건설유지(R&D)	45,209	0	0 0	-	0 0	45,209	43,273	0	1,936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인프라보강(R&D)	126,093	0	0 0	-	0 0	126,093	124,607	0	1,486
국방과학연구소 기술/연구지원(R&D)	86,486	0	0 0	-	0 0	86,486	86,376	0	110
국방기술품질원 인건비(R&D)	52,496	0	0 0	-	0 0	52,496	51,163	0	1,333
국방기술품질원 운영비(R&D)	8,681	0	0 0	-	0 0	8,681	8,681	0	0
국방기술품질원 시설건설유지(R&D)	5,954	0	0 0	-	0 0	5,954	5,954	0	0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경영(R&D)	32,336	0	0 0	-	54 -116	32,274	32,274	0	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인건비(R&D)	29,029	0	0 0	-	759 -759	29,029	27,485	0	1,544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운영비(R&D)	3,801	0	0 0	-	0 0	3,801	3,801	0	0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기술진흥연구(R&D)	25,767	0	0 0	-	569 -507	25,829	25,829	0	0
선행연구/분석평가	14,073	854	0 -46	-	0 -7	14,874	14,544	108	222
원가관리	4,848	0	80 -70	-	20 -14	4,864	4,380	140	344
계약관리	741	0	62 -89	-	22 -18	718	690	0	28
표준/규격관리	666	0	2 -2	-	4 -6	664	621	0	43
감항인증	809	0	14 -14	-	15 -15	810	707	0	102
신속시범획득	20,268	5,836	21 -864	-	3 -3	25,261	15,315	4,625	5,321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128,939	23,162	0 0	-	0 -2	152,100	129,759	17,390	4,951
국제방산협력지원	3,189	40	426 -31	-	61 -61	3,624	3,373	40	211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3,198	0	515 -15	-	47 -15	3,729	3,545	27	158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지원	16,472	0	0 0	-	0 0	16,472	16,472	0	0
국방벤처기업 육성	23,694	0	0 0	-	2,840 -2,840	23,694	23,694	0	0
방위산업 수출지원	81,373	0	7 -35	-	120 -120	81,345	80,993	31	322
방위산업 이차보전	10,985	0	0 0	-	0 0	10,985	10,985	0	0
방산혁신기업 100	31,021	0	0 0	-	0 -32	30,989	30,989	0	0
방위산업기술 기반조성	289	0	30 0	-	0 0	319	192	120	7
방산기술보호	5,584	702	182 -182	-	51 -51	6,286	4,054	1,280	953
계	3,849,499	30,594	1,347 -1,347	-	14,178 -14,178	3,880,093	3,832,750 (98.8)	23,797 (0.6)	23,546 (0.6)

사. 방위사업행정지원

○ 방위사업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총 11개의 세부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253억원이고, 신규 및 종료사업은 없음.

○ 2023년도 예산 집행실적은 예산현액 대비 63.9%이며, 방위사업청의 전체 집행실적(97.5%)보다 낮음.

주요 미집행 사유로서, 기타행정지원(청사이전) 사업의 청사신축 공사비 108억원 이월이 발생하였음.

[2023년도 방위사업행정지원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세출 예산	전년 이월	전용	이용	조정	예산현액 (A)	지출액(B) (B/A)	이월액(C) (C/A)	불용액(D) (D/A)
청인건비	88,904	0	0 -99	-	1,307	88,805	86,194	0	2,611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742	0	44 -47	-	44	4,756	4,617	0	139
소속기관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573	0	0 -27	-	0	514	385	0	129
사회복무요원 운용	76	0	0 0	-	0	76	57	0	19
기본경비	3,741	61	412 -143	-	287	4,100	3,898	21	180
소속기관기본경비	874	0	70 -27	-	113	904	873	0	30
방위사업청 건강보험부담금	3,387	0	0 0	-	0	3,387	3,279	0	108
방위사업정보화	26,745	928	127 -127	-	10	27,673	26,304	47	1,323
교육훈련	2,319	0	6 -70	-	109	2,201	2,061	42	98
청사유지관리	432	4	0 -29	-	20	422	362	20	40
기타행정지원	92,124	370	1,494 -1,582	-	11,684	92,443	16,002	11,712	64,729
계	223,917	1363	2,152 -2,152	-	13,574 -13,574	225,280	144,032 (63.9)	11,842 (5.3)	69,407 (30.8)

Ⅱ 국가채권 · 채무

1. 채권

○ 2023년도 말의 현재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채권의 현재액은 5,690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5,200만원 감소하였으며, 고액 지체상금 채권과 관련된 소송이 계속 진행중으로 전체 미수납 채권액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말 현재액 (A)	'23년도 발생액 (B)	'23년도 소멸액 (C)	증 감 (B-C)	'23년도말 현재액 (A+B-C)
계	572,122	527,302	530,354	△3,052	569,070

2. 채무

○ 2023년도 말 현재 방위사업청 소관 국가채무액은 없음.

Ⅲ 국유재산 및 물품

1. 국유재산

○ 2023년도 말의 현재 방위사업청 소관 국유재산은 208억 1,600만원으로 전년보다 35억 3,000만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리전환(용도폐지), 감가상각으로 인한 재산 감소 등에 기인한 것임.

[국유재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말 현 재 액	'23년도 중 증감액			'23년도 말 현 재 액
		증 가	감 소	증 감	
계	24,346	350	3,880	△3,530	20,816
• 토 지	11,840	-	63	△63,	11,777
• 건 물	3,036	-	232	△232	2,804
• 공작물	691	-	124	△124	567
• 무체재산	8,779	350	3,461	△3,111	5,668

2. 물품

○ 2023년도 말 현재 방위사업청이 관리하는 물품은 4,420억 200만원으로, 전년보다 970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전 임시청사 사무용기기 증가 및 사업본부 시제품 증가 등에 기인한 것임.

[물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도 말 현재액	'23년도 중 증감액			'23년도 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증 감	
계	344,912	455,450	358,360	97,090	442,002
•전기·통신기기	7,352	53,290	47,407	5,883	13,235
•사무용기기	24,696	11,669	8,548	3,121	27,817
•사무용집기	687	1,024	263	761	1,448
•운반·건설기계, 차량	1,253	2,756	522	2,234	3,487
•기계요소, 공작기계	11,167	21,580	26,564	△4,984	6,183
•산업기계	4,222	50	1,244	△1,194	3,028
•의료/화학분석기기	2,775	18	1,086	△1,068	1,707
•물리실험 및 측정기기	26,514	43,037	34,324	8,713	35,227
•인쇄 사진 및 시청각기기	1,708	1	436	△435	1,273
•기타 잡기기	264,538	322,025	237,966	84,059	348,597

제2장 검토의견

(생 략)

Ⅴ. 대체토론 요지

【국방부 소관】

○ 병영시설 개선 사업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 장병내일준비적금제도의 인원을 너무 많이 편성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므로 불용액을 줄일 것

○ 내일준비적금제도를 초급간부에까지 확대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것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없 음

【병무청 소관】

○ 병사들이 지연 입대를 많이 하므로 통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방위사업청 소관】

○ 인도네시아로부터 KF-21 분담금이 1조 원 줄어들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

Ⅵ.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소위원장 강대식)

□ 국방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 10건, 주의 9건, 제도개선 34건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없이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병무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주의 1건, 제도개선 11건 등 총 12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 방위사업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시정 5건, 주의 20건, 제도개선 15건 등 총 40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전제로 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함.

Ⅶ. 심사결과

1. 국방부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 군인연금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 군인복지기금 수입지출 : 원안의결

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3. 병무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4. 방위사업청 소관

○ 일반회계 세입세출 : 원안의결

Ⅷ. 부대의견

1. 국방부 소관

○ 없 음

2.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없 음

3. 병무청 소관

○ 없 음

4. 방위사업청 소관

○ 없 음

Ⅸ.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X. 시정요구사항

1.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결과 : 총 105건

(단위: 건)

부 처 명	변 상	징 계	시 정	주 의	제도개선	(중 복)	합 계
국방부	-	-	10	9	34	-	5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				-	
병무청	-	-		1	11	-	12
방위사업청	-	-	5	20	15	-	40
합 계	**-**	**-**	**15**	**30**	**60**	**-**	105

2. 시정요구사항(결산)

가. 국방부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연도별 수납률을 보면, 2020년도는 징수결정액 1,565억 6,600만원 중 886억 1,1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56.6%를 보이고 있고, 2023년도는 징수결정액 2,802억 4,000만원 중 1,948억 7,700만원이 수납되어 수납률 69.5%를 보여 전반적으로 수납률이 저조한 상태에 있음 ○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징수결정된 채권이 미수납되고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부실자산의 정리와 채권회수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미수납 채권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형	조치대상 기관
2	**초급간부 등 장교·부사관 획득의 어려움 심화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교인건비(1101-151)·부사관인건비(1101-15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병 봉급 인상과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선호도 감소로 장교·부사관 획득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초급간부의 획득경로 중 하나인 학사장교·학군장교(ROTC) 및 단기복무부사관의 최근 5년간 지원율은 모두 하락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음 ○ 장교 및 부사관 획득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봉급과 근무환경의 문제로 직업으로서의 군인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임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초급간부 등 장교·부사관에 대한 선호도 제고 및 원활한 충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	**임기제부사관 복무여건 개선을 통한 충원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사관인건비(1101-15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3년 임기제부사관의 정원 대비 운영률은 51.7%이며 특히 육군의 경우 기본급 예산운영률은 46.4%에 불과함 - 이는 병사와 임기제부사관의 봉급 및 지원금 실수령액 차이 감소로 인해 금전적 유인이 감소하기 때문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우수한 임기제부사관을 당초 목표만큼 충원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원 및 처우 개선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4	**부사관 명예전역 신청 증가에 대한 원인규명 및 대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부사관인건비(1101-15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부사관의 명예전역 신청은 2021년 712건에서 2023년 1,61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음 - 국방부는 부족예산 충당을 위해 165억 1,300만원을 조정(기본급여→명예퇴직수당)을 통해 확보함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부사관 명예전역의 급격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명예전역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5	**현역병의 입영률 저하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 인건비(1101-15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병 봉급이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 입영 대상자들이 입대시기를 늦추고 있어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각 군의 현역병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예산의 불용도 상당 규모로 나타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 96.6%, 입영률 86.8%, 2023년의 경우 예산 집행률 94.7%, 입영률 87.5%로 나타나 예산 집행률 및 입영률이 저조함 ○ 병 봉급 인상과 병역자원의 감소에 따라 입영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계획인원 산정 시 실제 입영 대상자 수 및 입영 선택비율 등에 근거하지 않고 군 정원 대비 병사 전역에 따른 현원의 부족분을 그대로 계획인원에 반영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입영률 저하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역병 운용 및 인건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6	**입영월별·군별 현역병 입영률 편차의 해소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 인건비(1101-15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대학 복학시기 고려, 동계기간 훈련소 기피 등의 이유로 4분기 입영률이 떨어져 병력 운용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 2022년의 경우 11월 입영인원 7,295명, 입영률 46.0%, 2023년의 경우 11월 입영인원 6,138명, 입영률 43.6% ○ 해군과 해병대의 입영률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해군의 입영률은 2021년 94.3%에서 2023년 70.5%로, 해병대 입영률은 2021년 105.1%에서 2023년 76.8%로 감소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입영월별·군별 현역병 입영률 편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영률 편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7	**군무원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군무원인건비(1102-15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병역자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하여 군무원 정원을 확충하였으나 매년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고 중도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 - 중도퇴직자가 2019년 670명에서 2023년 1,720명으로 증가하고, 전체 퇴직자 중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의 비율이 18.9%에서 49.2%로 크게 증가하였음 ○ 군무원의 인력 운용상 문제와 관련하여 공직 전반에 대한 선호도 하락 외에, 군무원의 역할 확대 과정에서 군무원의 모호한 역할 및 업무 설정, 기존 군인 직위의 군무원 전환에 따른 업무수행상 갈등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군 내 군무원의 역할 및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인사·보수제도를 개선하는 등 군무원 충원율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8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만족도 증진방안 강구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기본급식비 단가가 2022년 11,000원/일에서 2023년에 13,000원/일로 18.2% 상승하였으나, 급식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병사 비율은 61.3%에서 60.8%로 감소함 - 국방부는 「'23~'27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서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과 균형있는 식단편성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식만족도 하락 ○ 식재료의 질, 식단, 양 등 부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모든 부문에서 만족도가 하락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기본급식비 인상에 따른 급식만족도 증진 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9</td><td rowspan="3">영외자 급식비 법령 불일치 해소 및 정당한 보상 지급방안 마련</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기본급식(1231-301)</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2023년 기준 영외자급식비(일 4,784원)는 영내 급식비(일 13,000원)의 1/3 수준으로 적게 편성하고, 국방부 「급식방침」은 급식을 실시한 금액이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봉급에서 공제함
○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은 급식(현물) 미지급 금액을 영외자 급식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급식방침」 및 「급식운영 지시」는 급식을 실시한 만큼 영외자급식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여 불일치가 발생함
- 영외자가 1일 3식을 할 경우 지급받은 급식비는 4,784원이지만 급식비용으로 13,000원을 부대에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함
<table>
<tr><th>구분</th><th>유형</th><th>내용</th></tr>
<tr><td>군인 급식 규정</td><td>대통령령</td><td>- 영외자에게 주식과 부식에 갈음하여 급식비 지급
- 급식을 실시한 경우 현물을 지급받지 않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다음 달에 지급</td></tr>
<tr><td>급식 방침</td><td>국방부 방침</td><td>- 급식을 실시할 경우 다음 달 급식비에서 해당분 공제
- 공제액이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액을 봉급에서 공제</td></tr>
<tr><td>급식 운영 지시</td><td>각 군 지시</td><td>- 급식을 실시할 경우 부대별로 희망송금하여 공제하거나 부대통장으로 입금해야 함</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영외자 급식비에 대한 법령 체계상 불일치를 해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0	민간조리원 채용률 제고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간조리원(1231-305)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민간조리원의 채용률은 2022년 78.2%, 2023년 82.1%로 저조하고 예산집행률도 2022년 87.8%, 2023년 83.7%로 낮아지는 추세임 - 민간조리원의 인력운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주된 요인은 조리직 전반의 경쟁력 약화와 격오지 근무 및 보수수준 등과 관련된 근무여건상 문제로 확인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특수지역 근무에 대한 유인을 강화하고 지역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 민간조리원 채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1	**특수지역근무수당 지급근거 및 지침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민간조리원(1231-305)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민간조리원에 대한 특수지역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지침이 부재하고, 근무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함 - 예시: 1사단 미지급, 25사단 지급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지역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지침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2	**입영시기 및 사용률을 고려한 피복류 보급기준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본피복(1241-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육군 병사의 경우 입영시기에 따라 동·하절기 근무기간이 상이함에도 동일 기준으로 피복이 지급되고 있고 실제 사용률이 낮은 품목이 지속적으로 보급됨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18개월간 복무로 입영시기에 따라 계절별 피복 수요가 상이함(예: 운동복, 하계 전투복 상의, 방한양말 등) -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지급품목 중 9개 품목 사용률이 50% 미만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병사의 입영시기 및 실제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피복류 보급기준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3	**정보화사업 일반연구비 이월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정보체계개발유지(2131-302)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자원관리 및 M&S 체계의 개발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정보체계 개발 사업의 연구과제 중 상당수에서 연말 계약체결, 보안절차 등 관련 절차 지연으로 인한 일반연구비 이월이 나타나고 있음 - 내역사업인 정보체계개발 사업의 2023년 일반연구비 예산현액 681억 7,800만원 중 109억 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됨 - 특히, 계약이 연말에 체결되거나 연말에 계약을 발주한 후 관련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 편성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2023년에도 편성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에 계약 발주 전 필요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계약이 연말에 발주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군방첩사령부 등의 보안 검토 등과 관련하여 행정적 지연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4	**교체 대상 장비의 선별 기준 및 절차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무장비획득(2231-30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동 사업 예산의 집행부진이 나타난 사유는 계약잔액 또는 낙찰차액 발생, 납품 지연,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한 장비의 사양 조절, 노후장비 상태가 양호함에 따른 미조달 등임 - 이러한 집행부진 사유 중 의료기관 상황을 고려한 장비의 사양 조절, 노후장비 상태가 양호함에 따른 미조달의 경우 구매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관련 지연사유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구매 대상 의료장비의 수가 많아 현장여건 및 장비의 실제 노후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군의관이 바뀌면서 교체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교체 대상 장비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실제 노후도와 교체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5	**안경제작 사업 집행률 제고를 위한 추진방식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무물자확보(2231-304)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안경제작 사업은 2022년부터 제조업체가 안경테만 제작하고 병사 개인이 직접 안경업소를 방문하여 렌즈를 제작하고 수령한 후, 사후에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조달방식 변경되었음 ○ 이로 인해 2022년 이후에는 병사 개인의 행정 부담 증가라는 집행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2022년 집행률이 58.1%로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2023년에도 70.6%에 그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병사 개인에게 제작 책임을 지우는 현행 조달방식의 유지보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군인 특례 마련 등을 추진하는 등 안경제작 사업의 추진방식을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6	**의무시설개선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의무시설개선(2231-305)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2년 연속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집행부진에 대한 주의를 받은 바 있으나, 2023년에도 여전히 집행률이 67.9%로 저조함 - 의무시설개선 사업은 집행률이 2022년 67.8%, 2023년 67.9%에 그쳐 연례적으로 부진하였고, 과다한 다음연도 이월액('22년 107억원, '23년 165억)과 불용액('22년 45억, '23년 36억원)이 발생하였음 - 특히 국군외상센터 헬리포드 개선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3.8%이고,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시설 증·개축은 55.9%, 해병 6여단 의무대 신축사업은 52.5%에 불과함 - 주요 집행부진 사유로는 지자체와의 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임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7	**양성평등담당관의 성실한 임무 수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건복지지원(2242-30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양성평등담당관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상담실적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효과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없음 ○ 양성평등담당관의 신분이 현역 군인 또는 군무원인 관계로 행정업무와 상담을 겸직으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상담자 또한 전문 상담자가 아닌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동료에게 상담을 받는 것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과 임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8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 내일준비지원(2242-304)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사업개시연도인 2022년 병사들의 가입 저조 등의 이유로 집행률이 41.3%에 그쳤는데, 2023년의 경우에도 76.2%만 집행되어 1,570억 2,1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 2023년 예산 편성시 '적금 가입률 95%, 납입금액 4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으나, 2023년 중 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인 '2021년 5월~2022년 5월 입대자'의 적금 가입률과 납입금액이 그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였음 - 또한, 2023년 12월 전역자의 경우 2024년 이후 지원금을 받게 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애초에 불가능하나 예산편성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이로 인해 약 490억원의 불용이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매칭지원금 관련 예산소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병 내일준비지원금 지급을 제고하여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불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19</td><td rowspan="3">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이전용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군수지원 및 협력(2300)</td><td rowspan="3">주의</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군수지원 및 협력(2300) 프로그램 사업은 장비·물자·탄약 등의 획득·운영 및 유지로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전투지원 능력을 확보하고, 군 재난의 예방·대응·복구를 위한 장비·물자 확보로 재난대비 태세 확립 및 적극적인 대민업무 지원 사업임.
○ 회계연도 20~23년 국방부 이용 현황(세출예산 12개 프로그램) 중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비중 매우 높고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음.
(단위 : 억원)
<table>
<tr><th>구분</th><th>2020년</th><th>2021년</th><th>2022년</th><th>2023년</th><th>합계</th></tr>
<tr><td>국방부 이용 전체(A)</td><td>2,176</td><td>3,045</td><td>2,196</td><td>2,257</td><td>9,674</td></tr>
<tr><td>군수지원 및 협력 이용(B)</td><td>655</td><td>726</td><td>1227</td><td>908</td><td>3,517</td></tr>
<tr><td>B/A(%)</td><td>30.10</td><td>23.84</td><td>55.87</td><td>40.23</td><td>36.36</td></tr>
</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 사업의 이·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0	**장비획득 사업 지연 및 집행 부진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획득(2331)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구매요구서 등 필요서류 작성지연·보완, 조달청 위탁조달품목의 우선순위 후순위 설정, 예산편성 후 사업방식 변경 등 행정상 문제로 인한 장비획득 사업의 지연 및 집행부진이 나타남 - 2023년 주요 집행부진 사례로써 ①구매요구서 등 필요 첨부서류 작성이 지연되어 발주가 지연된 경우, ②조달청 조달의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설정되었음에도 발주시점에서 서류 등의 미흡점이 존재하여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 ③사업검토 과정에서 계획변경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 ④조달 관련 각종 서류의 수정·보완에 따라 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행정상 문제로 인한 장비획득 사업의 지연 및 집행부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장비획득 관련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 및 사전검토 강화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1	장비획득 사업 편성단가와 계약단가 불일치 문제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획득(233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군수품 조달계약과 관련하여 군사요구도와 핵심부품의 가격상승에 비하여 편성단가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거나, 시장환경 및 동일 품목의 과거 낙찰률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여 편성단가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결과 군수품 조달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각 군의 군사요구도에 부합하는 군수품의 적정 단가가 예산편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성단가와 계약단가 간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2	**군수품 조달계약 업체의 생산지연 또는 납품포기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획득(233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군수품 조달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생산지연 또는 납품포기로 인하여 군수품이 조달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함 - 2023년도 장비획득 단위사업의 세부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계약업체의 생산지연과 납품포기로 인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 -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납품을 포기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나, 사업자 변경 등을 통해 사실상 동일한 업체가 다른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업체 선정 시 생산능력과 신뢰성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 및 심사를 강화하고, 방위사업청 및 조달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산지연 또는 납품포기 업체에 대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3	**예산 편성 시 장기계속계약의 집행잔액 반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장비획득(233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3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장비획득 사업 중 2022년도 이전 장기계속계약이 체결된 건과 관련하여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2023년도 연부액에서 차감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취소된 경우 또는 장기계속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예산 연부액과 계약 연부액의 차이가 미반영된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 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장기계속계약의 체결 현황 등 관련 내용 보고를 통해 장기계속계약의 집행잔액 미반영으로 인한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4	**이사화물 수송임 현실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수송활동(2336-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이사화물 수송임은 국가의 인사명령에 따라 이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이지만 지원액이 실제 지출비용보다 낮아 그 차액을 군인 및 군무원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담액의 규모는 이사거리가 증가할수록 더욱 확대됨 ○ 이사 시 필수비용인 사다리차 이용료, 에어컨 설치비 등에 관한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군인 및 군무원이 온전히 부담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인 및 군무원의 이사화물 수송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25</td><td rowspan="3">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효과 작성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재난 및 안전관리(2337-301)</td><td rowspan="3">시정</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결산설명자료상 예산의 사업목적은 재난예방·보수이나 사업효과 및 실적에는 대민지원이라고 작성되어 있음
○ 이는 과다홍보에 치중한 결과로 보여져 이러한 결산서류 작성은 시정되어야 함
<table><tr><td>2023</td><td>○ 유관기관 요청에 의한 긴급구조지원 및 재난피해복구 대민지원
- 병력 167,031명/ 장비 9,365대
* 풍수해(태풍·호우·대설), 폭염, 하천정비 147,437명/7,548대
* 철도파업 1,234명
* 실종자 탐색구조 1,787명/226대
* 산불, 화재 13,607명/697대
*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방역 1,050명/463대
* 해외재난 지원 1,916명/431대</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결산서에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효과 및 실적이 나타나도록 작성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6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급의 형평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간부확보장려사업(2439-30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2019년 200만원에서 2024년 1,200만원으로 6배 인상된 반면, 단기복무부사관에게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수당은 2019년 500만원에서 2024년 1,000만원으로 2배 인상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단기복무장려금 및 장려수당의 경우 장교·부사관으로서의 의무복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되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복무기간이 더 긴 부사관에 대하여 더 적은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단기복무장려금의 경우 임관 전에 지급되고 장려를 위한 보전금으로 간주되어 세금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단기복무장려수당의 경우 임관 후 수당으로서 지급되기 때문에 과세가 이루어져 장려금과 장려수당 간 실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문제도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단기복무부사관의 지원율·의무복무기간·장려수당 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려수당 형평성 등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입법적·제도적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7	**초급간부 AI 면접 지속 추진에 대한 재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인사정책지원(2439-306)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지난 3년간 AI 면접을 실제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성·타당성 문제에서부터 기술적 오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의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대부분의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모니터로 분석된 생체정보를 이용해 지원자의 '소프트 스킬'을 평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항목은 아직까지 AI가 좋은 성능을 보이기 어려움 - AI 면접 질문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비슷한 질문 반복, 이미 답변한 내용 재질문 등 쌍방향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되었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도 "국방부는 AI 면접 시행의 비용과 효과성 및 채용의 공정성·타당성을 고려하여 면접평가 배점비중, 사업의 유지 여부 등을 재검토할 것"(시정)으로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된 바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AI 면접 지속 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8	**병영생활관 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영생활관(2531-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병영생활관 사업은 과도한 이월로 인해 집행부진이 발생되고 있음 - 2023년 예산현액 3,635억 3,100만원 중 1,111억 1,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51억 1,700만원은 불용됨 - 집행부진 사유로는 설계지연, 대관 협의 지연, 업체 부도 등, 현장여건 변동, 감리계약 지연이 있음		
		시정요구사항	○ 국방부는 사업별 공정률을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에 반영하고, 제반 여건이 완료된 사업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별 진행 정도를 수시로 점검하여 제한사항 발견 시 선제적 대응으로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9	**시설사업 변경기준의 소급 적용에 따른 사업지연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영생활관(2531-301)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2023년 3월 병영생활관에 대한 국방·군사시설기준을 변경한 후 이미 진행 중인 병영생활관 사업에 대하여 변경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업지연 및 집행부진이 발생함 - 변경된 시설기준을 기 진행 중인 병영생활관 사업에 적용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부지 추가확보, 총사업비 변동, 설계 변경 등에 따른 집행부진이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향후 시설사업의 기초가 되는 기준의 개정이 예정되어 있거나 개정을 검토 중인 경우, 기준의 변화와 예산 편성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변경기준의 소급 적용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0	**미등재 건축물의 조속한 양성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시설정책지원(2533-320)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미등재 건축물이 국방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2023년 말 기준 등재 건축물 50,665동, 미등재 건축물 51,018동) - 미등재 건축물은 국방시설 기준 면적 확대, 구조·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보수·보강, 시설 현대화를 위한 증·개축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 국방부는 미등재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 매년 기본조사설계비 등 예산을 투입하여 2023년 말 현재 19,902동을 양성화하고 있으나, 미등재 건축물의 양성화 실적은 아직 미진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건축법」 등의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1	**적정한 공공요금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공공요금(2536-302)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0년 감사원은 국방부의 공공요금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고, 국방부는 예산편성 시 조정비율을 제외하여 공공요금을 실소요액 수준으로 적정하게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부처 요구안 작성 단계에서부터 조정비율이 감사원 감사 이전 수준으로 하락하여 감사원 지적사항이 준수되지 않았고, 이용 21회, 전용 174회 등을 통해 부족예산을 충당함(이·전용등(증) 금액은 1,343억 600만원에 달함) ○ 지금과 같이 이·전용(증) 등으로 과도하게 사업비를 증액하면 이·전용해 준 사업에 영향을 주어 국회가 승인해 준 사업내용이 왜곡될 수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전년도 공공요금 집행실적과 전기료 인상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의 공공요금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2	**비상근예비군 지원율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동원훈련(2632-30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비상근예비군으로 지원하는 병력 자원의 지원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2014년 비상근예비군 제도 도입 이래 2016년에 한차례 손실보상금(훈련보상비) 단가 인상 이후 현재의 손실보상금 단가를 유지하고 있음 ○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감안하지 못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비상근예비군으로 복무할 유인을 떨어뜨려 비상근예비군 지원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훈련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등 비상근예비군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3	**동미참·지역예비군 훈련 시 훈련보상비 지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일반훈련(2632-304)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동원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보상비가 지급되는 반면 동미참·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하여는 훈련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 2023년 기준 동원훈련(입영) 훈련보상비 : 8만 2,000원 ○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또한 국가를 위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동원훈련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훈련 시에도 훈련보상비 지급이 필요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정당한 보상의 관점에서 훈련에 대한 보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4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불용 방지 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동원훈련(2632-303)·일반훈련(2632-304)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동원훈련 및 일반훈련 시 예비군에게 지급되는 훈련보상비 등을 편성함에 있어 훈련인원 산정이 면밀히 이루어지지 못해 상당 규모의 예산이 불용됨 - 2023년도 손실보상금(훈련보상비 등)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동원훈련 사업에서 67억 4,400만원, 일반훈련비 사업에서 52억 2,300만원의 손실보상금 불용이 발생 ○ 국방부는 2023년 예산안 편성 시 2017년~2019년 평균 훈련인원을 기준으로 훈련인원을 산정하였는데, 현역병 등 입영인원의 감소, 현역부대의 해·감편 등으로 인하여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감소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손실보상금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5	**군수분야 방위비분담금 미지급금 지급계획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5131-304)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정 공백으로 발생한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미지급금의 해소를 위한 연차별 지급계획이 부재하여 2023년의 경우 타 사업으로부터 이·전용을 통해 미국측 요구액을 충당하였고, 향후 연차별 재정소요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2020~2025)의 체결이 지연되어, 미측에 대한 미지급금이 크게 증가함 - 2024년 예산에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 92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아직 상당 수준의 잔여 미지급금이 존재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주한미군사 및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잔여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6	**현재 운영 중인 한시조직 등 정비 및 규정에 부합하는 운영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 국방정책실 소속 3개 T/F는 육군 준장 및 각군 중령 등을 상근인원으로 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실상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어,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 등에 따른 한시조직 운영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 국방부는 국방정책실 소속으로 2023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 T/F,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 전략사령부 창설지원 T/F를 운영하였음 ○ 국방부는 특정한 T/F의 운영이 종료된 이후 동일 조직 내에 새로운 T/F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국방부는 2023년 말 국제정책관 소속 한미동맹 70주년 회담준비 T/F의 운영을 종료한 직후 다시 지역안보협력 T/F를 설치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현재 운영 중인 T/F를 정비하는 등,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한시조직을 운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7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의 상설 운영을 위한 방안 강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주요기관 기본경비(7111-254)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부 인사복지실 소속 한시조직인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군인사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조직으로,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성격상 이를 한시조직이 아닌 정식 부서로 직제에 반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상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4월 기준 5명의 상근인원으로 구성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을 직제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이 상설 부대 형태로 운영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8	예산에 부합하는 국군의 날 행사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방행사지원(7131-313)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국군의 날 행사예산은 당초 79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방부의 행사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22억 5,900만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조정하여 총 99억 3,600만원(3억 800만원을 불용함)을 집행하였으나,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하여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함 - 특히, 전용·조정한 예산은 기념음악회·무대설치 등으로 집행함 ○ 기념식 및 행사의 경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도 모든 기념일의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는 엄숙하고 검소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과도한 행사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을 심의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집행방식은 부적절함 - 2023년에 적용된 「부대관리훈령」 제313조(행사규모)는 “대규모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실시하고, 소규모 행사는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군의 날 행사 등 행사 관련 예산 등을 국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증액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9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의 개최 빈도 및 주기 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국방행사지원(7131-313)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군의 날 행사는 당초 5년 주기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그 밖의 해에는 소규모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국방부는 2022~2023년 모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등 대규모 행사의 개최빈도를 증가시켜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 국방부는 2024년 2월 「부대관리훈령」 제313조(행사규모)를 개정하여 제2항에서 “국군의 날 행사는 대통령 취임 첫해에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보 상황과 국군의 사기 등을 고려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대규모로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2010년 이후 대규모 국군의 날 행사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이전까지는 2013년과 2018년에만 대규모 행사 개최를 계획하였으나, 2022년 이후에는 3년 연속 대규모 행사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군의 날이 가지는 의의, 국군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목적 및 국방예산의 효율적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4년 2월 개정된 「부대관리훈령」 제313조를 개정 전으로 다시 개정하는 등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의 개최 빈도 및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40</td><td rowspan="3">군수품 분실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총괄</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국방부</td></tr>
<tr><td>지적사항</td><td>○ 무기·탄약류 등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군수품이 분실되었지만 회수가 되지 않고 있고, 군수품 관리 소홀로 인해 분실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육군(대검, 5.56mm 보통탄, 7.62mm 보통탄), 해군(K-2소총, 45구경 권총, 5.56mm 보통탄), 공군(5.56mm 보통탄)
<table>
<tr><td>구분</td><td>계</td><td>육군</td><td>해군</td><td>공군</td></tr>
<tr><td>수량(건)</td><td>8,183</td><td>6,250</td><td>116</td><td>1,817</td></tr>
<tr><td>금액(원)</td><td>7,554,912,781</td><td>721,649,500</td><td>6,705,745,310</td><td>127,517,971</td></tr>
</table>
○ 해군의 경우 분실방지대책 수립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장비를 분실하는 비슷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 ’21년(광대역송신안테나, 항공기용 음파송수신기), ’22년(수중음파탐지기, 전자구성품조립체, 기음향측정장비), ’23년(중어뢰훈련용완성탄)</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국방부는 무기류 군수품 분실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군수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1	**병역자원 감소를 반영한 국방분야 중장기 예산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30년대 중반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됨에도 국방개혁 기본계획 등 국방분야 중장기 계획에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를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는 체계도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임 - 20세 남성인구는 2024년 25만명에서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수준의 상비병력 규모(50만명)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국방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중장기 계획은 현재수준의 상비병력 규모(50만명)를 가정하고 수립되어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분야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상비병력의 변화 등이 국방분야의 재원배분에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군과의 협의를 통해 국방 인력체계 개편 및 상비병력 규모 설정에 관한 개편안을 신속히 제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2	**국방혁신 4.0 관련 국방분야 재원배분 방향성 제시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혁신 4.0은 계획범위를 국방 전 분야가 아닌 첨단과학기술 관련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있어 국방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계획으로서의 기능이 제한됨 - 병 봉급 인상 등 국방혁신 4.0의 내용과 관계가 없는 국방예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국방혁신 4.0의 추진목표와 국방예산 내 재원배분 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전체 국방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국방혁신 4.0의 목표 달성이 제한될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방분야의 재원배분이 국방혁신 4.0의 목표 달성과 개혁방향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혁신 4.0과 관련된 국방분야 재원배분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3	**국방혁신 4.0과 국방예산 간 연계성 확보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혁신 4.0 및 그 추진계획에 따른 과제·과업과 이에 대응하는 예산사업의 분류 및 예산편성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국방혁신 4.0 추진을 총괄하는 국방부 차원에서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하여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방혁신 4.0의 체계적 추진이 제한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각 과제·과업과 국방예산 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국방혁신 4.0의 추진과 관련된 예산사업의 기획·관리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이원화 및 국방부 내 기획부서와 재정부서의 분절적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4	**국방개혁 계획 및 국방중기계획 제출 및 추진실적 보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매년 국회에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비밀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방위사업법」제13조에서 국방중기계획도 수립 즉시 그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고된 적이 없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회 차원에서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의 추진상황 점검 및 그와 연계된 심도 있는 예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사기밀 등을 제외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하여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개혁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추진실적을 보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5	**국방혁신 4.0 관련 주요 연구개발 목표 설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국방혁신 4.0은 그 과업 중 하나로 ‘국방 R&D 예산 확대’를 설정하여 2027년까지 국방비 중 국방 R&D 예산의 비중을 1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핵심기술개발, 미래도전국방기술, 핵심부품 국산화 등 주요 항목에 대한 투자목표는 제시되지 않고 있음 - 2019년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서는 2019~2033년까지의 국방 R&D 및 핵심 항목에 대한 재원 배분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2023년 수립된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서는 2024년 이후의 국방 R&D 및 핵심 항목에 대한 재원 목표가 대부분 삭제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국방혁신 4.0의 과업 중 ‘국방 R&D 예산 확대’와 관련하여 국방비 중 국방R&D의 비중만을 단일한 목표로 제시하기보다는, 미래도전국방기술, 핵심부품 국산화 등 국방혁신 4.0의 목표와 연관성이 높은 연구개발 항목에 대한 별도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6	과도한 사업조정과 집행잔액 사용 관리·감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총괄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편성액 대비 증액 규모가 50억원 이상이거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그 이하는 각 군에서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통해 조정해야 하나, 각 군은 '예산집행심의회' 심의를 형식적으로 시행하여 지침을 위배한 집행잔액 사용이 다수 발생함 - 정보화사업과 시설건설사업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에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나 각 군에서는 일부 기재부 지침과 다르게 임의로 재사용하여 기재부의 정부예산안 편성권과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무시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지침에 근거한 각 군의 예산집행심의회 심의 절차, 각 군의 사업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7	**정화사업의 완결성 제고를 통해 배상금 최소화 필요**	관련사업명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 환경조사 및 치유사업(4232-302)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결성이 떨어져 소송패소로 배상금이 집행되고 있음 - 환경정화를 완료한 20개소 중 5개소가 소송 중(3건)에 있거나 소송이 완료(2건)되어 배상금(277억 800만원)이 지급되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토양오염 정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탁기관과의 협업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토양오염 정화의 완전성을 제고함으로써, 환경정화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8	**부대개편 사업의 적기추진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부대개편 사업(4131)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2023년 진행된 부대개편 사업의 평균 집행률이 74.8%에 불과하며, 8차까지 진행된 사업 중 정상진행된 것은 2차 사업 1건에 불과함 ○ 2019회계연도부터 5년 연속 육군의 부대개편 사업은 국회의 “집행부진과 사업관리 철저”라는 시정 요구를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음		
		시정요구 사항	○ 향후 육군 부대 개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 동안 국회 국방위에 분기별로 집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9	**군 무단점유 토지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관련사업명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사유재산정리(4132-400)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무단점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무단점유지 정리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8월 기준 군 점유지 4,964만㎡ 중 무단점유 토지는 2,534만㎡(51%)이고, 그 중 사유지는 1,986만㎡으로 무단점유 토지의 78.3%에 해당함 - 국방부의 연평균 매입목표에 비하여 매입실적이 부진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방부가 제시한 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적극적 홍보·안내·통지 등 국방부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국방부는 토지의 매수·반환 등을 요구하는 민원, 소송이 제기된 토지만을 대상으로 토지 정리를 위한 사전준비를 이행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무단점유 중인 토지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매입·반환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통지하고, 이를 통하여 충분한 수요를 확보한 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무단점유 해소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0	**군 무단점유 토지사업 실태조사 전문기관 위탁 필요**	관련사업명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사유재산정리(4132-400)	시정	국방부
		지적사항	○ 무단점유지 매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의 매수 협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무단점유지 정리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23년 8월 기준 군 점유지 4,964만㎡ 중 무단점유 토지는 2,534만㎡(51%)이고, 그 중 사유지는 1,986만㎡으로 무단점유 토지의 78.3%에 해당 - 국방부의 연평균 매입목표에 비하여 매입실적이 부진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규모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방부가 제시한 정리계획의 이행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임 ○ 국방부는 사유지 정리사업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법령의 근거가 있지만 실 소요가 있을 때에만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군 무단점유 정리실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무단점유지 현황조사(측량 및 실태조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 위탁을 활성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1	**면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 해병1사단 제1전차대대 이전 (4131-480)	주의	국방부
		지적사항	○ 대부분의 기본조사설계비와 건설보상비 전액이 이월되어 집행이 부진함 - 재공고에 따른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기본조사설계비가 집행되지 못하여 대부분의 금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건설보상비에 편성된 토지보상비 역시 전액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함 ○ 「국가재정법」상 이월요건에 맞지 않음에도 건설보상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해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법」 요건에 맞지 않는 건설보상비 이월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2	이자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이자지원사업은 융자사업과 비교하여 원금이 회수되지 않으므로 별도 수입이 없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군인복지기금의 여유자금(2024년말 3,467억원 예정)이 감소추세임에 따라 군인복지기금의 채무 성격인 주거지원보증금(2023년말 3,468억원) 보다 적어 자체적인 재원마련도 쉽지 않음 ○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부터 동 사업을 일반회계로 이관결정하였으나, 2024년까지 회계이관이 반영되지 않아 향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사업 규모가 상당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동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예년과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수입을 편성하는 방안 뿐만 아니라 기금 내 여유자금 활용의 적절성 및 법령상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3	지원금액 상한을 지정하는 방식 등 기금 소진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군인복지기금 -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2240-640)	제도개선	국방부
		지적사항	○ 최근 3년간 급격한 금리인상 때문에 민간주택임대 지원사업의 자금 소진이 빨라졌음 - 실제 ‘21년 인당 41만원이었던 월평균 지원금액이 ‘23년 88만원으로 2배 넘게 상승하였고, 2023년 7월에는 신규 지원을 일시 중단하고 기금운용 계획을 변경함 ○ 정책대출인 군 간부 민간주택임대자금 전용 협약 상품의 금리가 시중은행 자체 상품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것은 문제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국방부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협약상품 이자율이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급격한 금리 인상기를 대비하여 지원금액 상한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기금 소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없　음)

다. 병무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1	**병역판정기준 조정 가능성 검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현역병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20대 남성인구는 2024년 25만명에서 2040년 1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35년 이후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질 전망임. ○ 2023년 현역병 판정비율은 83.7%인데, 2014년 이전에는 90% 대였다가 입영 적체기에는 검사규칙 변경 등에 따라 82%로 감소하였고, 이후 약 82~84%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병역판정 기준 조정 가능성을 국방부와 함께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	**병역판정검사 체계 개선**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판정검사(1131-301)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과반수의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20세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체검사를 두 번 수검함으로써 병역의무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됨. ○ 검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면 병역의무자가 입영 시기에 맞추어 한차례 신체검사를 수검하고 입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신체검사 체계 개선 노력을 통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신체검사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	**병역진로설계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현역병모집 사업(1232-303)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사업 예산도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	**산업지원분야 병역 제도 적정 규모 설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산업지원인력(1434-309)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산업지원인력의 편입인력이 배정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산업지원인력의 편입인원 규모도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산업지원인력의 적정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2023년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은 2,300명이었으나 편입인원은 1,541명이고, 산업기능요원은 배정인원이 3,200명, 편입인원은 3,078이며,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인원 1,000명, 편입인원은 801명임.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 과학기술 분야 위축 우려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지원분야 병역 제도 적정 규모에 대하여 검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	**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역량 강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복무지도관이 복무 관리하는 1인당 사회복무요원 인원수는 2023년 기준 431명으로 효율적 복무 관리에 한계가 있음. - 2018년도 병무청 정책연구 과제인 「사회복무제도 운영 성과 진단 및 제도혁신 방안」에 따르면, 복무지도관 1인당 업무 소요시간을 고려한 적정 관리 인원수는 300명 정도임. ○ 또한 복무지도관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심리상담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이 중요하나, 관련 자격증 보유 인원은 임기·공무직 48명 중 41명(85.4%), 일반직 66명 중 9명(13.6%)인 것으로 파악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교육 등을 통하여 복무지도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일반직 복무지도관에 대한 상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상시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6	사회복무요원 부당대우 근절 방안 마련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사회복무요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복무기관 내 괴롭힘 등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다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2024년 5월부터 시행중임. ○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부당지시와 비인격적 대우 등의 행위가 매년 수십건씩 적발됨에도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소속 직원을 상대로 신고하기 쉽지 않으며, 신고에 대한 사실조사의 주체가 복무기관 내부 부서인 관계로 조사부서가 같은 소속 직원을 상대로 공정한 조사와 처분이 어려움.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의 부당대우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괴롭힘을 당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 등의 조치를 하고, 복무기관 평가결과를 배정제한·취소에 반영하며,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7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인원 감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1434-320)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206]이 2019년 이후 매년 1만명 이상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보충역 처분을 받고 대기 중이거나, 매년 보충역 처분을 받고 유입된 공급 인원이 사회복무요원 배정 등의 수요 인원 보다 많기 때문임.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기 인원 감축에 노력할 것.		

206)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보충역)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이들의 적기 사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시근로역으로 처분(근거법률 : 「병역법」 제65조제9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8	부적절한 여비 집행으로 인한 사업 차질 방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무행정운영(7134-317)	주의	병무청
		지적사항	○ 전북지방병무청은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실시 예산을 '조직문화 활성화'와 관련 없는 병력동원훈련·산업지원 실태조사 여비 예산으로 집행함. **<전북지방병무청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 직원 워크숍>** **- 워크숍 기간/장소 : 2023.5.19.(금)~5.20(토), 무주리조트** **- 인원/소요예산 : 56명(전북지방병무청 전직원), 824만원** ○ 워크숍 비용을 실태조사 사업에 편성된 여비로 집행하여, 해당 사업 여비 예산이 부족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목적 외로 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이로 인해 기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9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 예산 과다 불용 시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865억 5,700만원이며, 이중 661억 6,100만원(76.4%)을 집행, 203억 9,600만원(23.6%)을 불용함. ○ 예산 집행 부진이 발생한 원인은 예산 편성 당시 과도한 기준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서 향후 예산 편성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편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추계 오류는 적금 납입 기간을 최대 복무기간인 21개월로 설정하였고, 납입 금액을 법정 납입 최대 한도인 월 40만원으로 설정한 것에 기인함.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예산 추계 시 적금 가입액 및 가입기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예산 집행율 제고에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0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미가입자 지원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사회복귀준비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이 납입한 금액만큼 지원해주는 사업임. ○ 그러나 병영 내 합숙 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적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 2024년 3월 기준 현역병의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률은 98.6%이나 사회복무요원 가입률은 87.5%로 10% 이상 낮음.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1	**장병내일준비적금 은행별 납입 한도액 조정**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가입자가 월 최대 지원금을 받으려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개인별 한도 최대액인 40만원을 납입하여야 하나, 은행별 한도액이 월 20만원인 바,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2곳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는 상황임.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이 적금 가입을 위해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도록 은행별 납입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2	**병역의무자 여비 추계 정확도 제고 및 집행 관리 철저**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병역의무자지원(7135-314)	제도개선	병무청
		지적사항	○ 병역의무자 여비는 2023년 242억 8,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으나, 불용이 10억 1,100만원(불용률 : 4.2%) 발생함. ○ 병역의무자 여비의 최근 5년(2019~2023년)간 불용액은 총 167억 4,200만원으로 매년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함. ○ 병역의무자 여비 예산이 정확한 추계에 따라 편성되지 않고 예산 집행도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음. - 2024년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경남지방병무청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가 예산을 횡령(1,780만원)한 사실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병무청은 여비 지급 대상 인원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라. 방위사업청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	**예산배분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2131-323)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패키지시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과 달리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를 단년도에 편성한 결과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나타남.		
		시정요구사항	○ 방위사업청은 「국방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른 연차별 예산배분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무리한 사업추진계획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	**교육 등을 통해 사업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백두체계능력보강 2차(R&D)(2131-323)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사업담당자가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설계 초반에 납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결과 불필요한 예산 전용 및 불용이 발생함. - 당초 예산액 10억 9,700만원과 전용증액 6억 4,300만원을 합한 17억 4,000만원 전액을 불용함. *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의 경우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부과처분이 이루어짐.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업담당자에 대하여 부담금의 편성 및 집행을 비롯한 사업의 추진과정 전반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관련 지침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예산 편성·집행의 원칙에 부합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관제레이더(ASR)(2132-334)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사업청은 동 사업의 불용 예상액을 연말 내역변경을 통해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사업의 중도금 추가 지급 등을 위해 전용함. - 지상전술C4I체계 2차 성능개량 사업은 2024년도 예산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대로 중도금 지급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연부액 조정 없이 연말 불용액 최소화를 목적으로 중도금을 추가 지급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착수금·중도금의 지급이 예산 편성·집행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사업 지연 방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항공관제레이더(ASR)(2132-334)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항공관제레이더(ASR)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소요군 요구에 따른 화생방 방호 설계적용, 비행점검 불합격 등으로 인해 사업지연이 발생한 결과 예산 집행이 부진함. - 동 사업의 경우 2023년도 패키지 시설사업과 장비납품관련 집행 부진이 발생함. 공사비는 154억5백만 중 71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36억 9,100만원 중 3,100만원을 집행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계획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공관제레이더의 추가적인 전력화 시기 지연 방지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5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획득-중요지역대드론통합체계(2132-368-01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당초 2023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것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입 이후 내역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음. ○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내역변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내역변경 등을 통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6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 추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획득-휴대용드론건(2132-368-017)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당초 2023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것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입 이후 내역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음. ○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내역변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내역변경 등을 통해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7	**첨단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대한 기획역량·획득체계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획득-휴대용드론건(2132-368-017)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당초 2023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것으로 북한의 무인기 침입 이후 내역변경을 통해 신규 추진되었음. ○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을 내역변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첨단무기체계 획득 관련 사업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역량·획득체계를 점검·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8	**긴급소요 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전검토를 충실히 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획득-휴대용드론건(2132-368-017)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긴급소요결정을 바탕으로 충분한 선행연구 및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결과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나타났음. - 이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장비에 대한 요구 수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못하여, 업체 측에서 구매시험평가를 준비하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요구하는 성능, 비용 및 일정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포기한 것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긴급소요결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전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중단 및 예산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요결정 등의 과정에서 기술적·비용적 타당성을 충실히 검토할 것		

【 기동화력 】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9	시설공사에 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105A1자주포(2232-354)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4개 사단에 대한 패키지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요구 변경에 따른 설계기본요구조건 작성 지연, 설계·공사계약 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지연 및 예산의 집행부진이 나타났음.		
		시정요구사항	○ 방위사업청은 K105A1자주포 사업의 패키지 시설사업과 관련된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0	**예산 편성·집행 원칙을 위반한 착수금·중도금 지급 주의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K105A1자주포(2232-354)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패키지 시설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금액(380억원)을 연말에 전용하여 3차 양산사업의 착수금을 당초 편성된 예산액(10억원)보다 초과하여 집행함. - 이는 2024년도 연부액* 조정 없이 3차 양산사업 착수금 지급을 통해 연말에 집행률을 제고하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보임. * 2024년도 예산에 3차 양산계약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943억 3,500만원 편성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착수금·중도금의 지급이 예산 편성·집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1	**구매시험평가 관련 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 방안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특수작전무전기(2232-360-015)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구매시험평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기관 간 협의 및 검토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어 연내 전력화를 완료하지 못하였음. - 시험평가 지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부터 시험평가의 주요 내용을 사전검토하여, 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견, 검토기간 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소요결정 및 선행연구 단계에서 시험평가의 주요항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2	**반복 유찰사업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 및 사업 재추진 여부 신속 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소화기음향탐지기(2232-365)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의 경우 6차례 유찰이 발생하였음에도 전력화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소요수정 외에는 별도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국지도발 및 대테러작전 시 적 소화기의 사격위치를 조기에 탐지 ○ 사업중단 및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업체 측의 사업포기로 인한 것이지만, 다수 유찰에도 불구하고 전력화시기를 연기하는 것 외에 별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준비 및 관리 측면의 부실이 존재하였다고 보임. - 또한 총 7차례 유찰되는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의 수가 적고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는 장비를 제안하지 못하거나 공급업체의 신용도 부족으로 유찰되었음에도 입찰공고만 반복한 것은 적절하지 못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참여업체의 사업포기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반복 유찰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획득방식 변경, 작전운용성능(ROC) 및 생산단가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동 사업의 재추진 여부 및 그 방식을 신속히 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3	**일반경쟁 전환 품목의 사업준비 철저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2232-389)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방산물자 지정 해제 후 일반경쟁의 형태로 전환되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핵심부품인 영상증폭관 확보를 위한 충분한 시간보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입찰공고가 지연됨. * 영상증폭관: 달빛이나 별빛과 같은 미세한 빛을 수천, 수만배로 증폭시켜 야간에 사물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는 제품으로 야간투시경의 핵심부품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일반경쟁 최초 전환 품목의 사업추진 시 핵심부품 해외도입 여부, 해외도입 시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초기단계에서 예비설명회를 실시하여 입찰·계약절차 등을 설명함으로써 참여업체의 방위사업 경험 부족 등에 따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 항공기 】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4	인도네시아 분담금 납부 규모 축소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계획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라매(R&D)(2431-302)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KF-21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중으로,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총 1조 6,200억원 중 3,800억원만 납부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총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축소하여 완결하자는 분담금 조정 제안을 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재정당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측 납부 분담금 규모 축소에 따른 부족분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하여 전투기 양산 및 전력화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5	패키지시설사업 추가 지연 방지대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라매(R&D)(2431-302)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보라매 사업은 패키지시설사업의 사업비를 2개 세부사업[보라매(R&D)사업, 보라매(최초양산)사업]에 나누어 편성한 결과 총사업비 관리제도 및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취지가 달성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도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보라매사업의 패키지시설사업의 추가적인 지연 및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연구개발·양산 사업 추진시 총사업관리제도 및 사업타당성조사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6	무기체계 양산과 패키지시설사업 기간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보라매(R&D)(2431-302)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보라매 사업은 패키지시설사업의 사업비를 2개 세부사업에 나누어 편성한 결과 총사업비 관리제도 및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운영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도 발생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패키지시설사업 추진 기간이 무기체계 양산 기간보다 길어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7	**추진방식 변경을 미고려한 과다한 예산 편성 지양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C-130H 성능개량(2432-318)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국외구매 추진 과정에서의 반복 유찰로 사업추진방식의 변경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방위사업청은 관련 예산을 과다 계상한 후 여유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함. -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3년도 예산 158억 9,600만원 중 8억 6,200만원을 집행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업중단 및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따라 예산의 감액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8	FMS 추진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대형공격헬기 2차(2433-301)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FMS로 획득하는 사업으로, 22년 11월 구매계획 수립시는 1기당 기본기종 400억원, 사격통제레이더(FCR) 장착기종 500억원 수준이었음. - 23년 12월 미국측에서 제시한 총사업비는 대폭 증액됨 (기본기종 600억원, 장착기종 700억원 수준)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FMS로 사업 추진 중인 사업목록별 최초 구매요구액(P&A/LOR)과 최종 구매요구액을 국회에 보고하고, FMS 구매 방식에 보완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19	**획득정책 및 P&A 변화 등 총사업비 변동요인 사전 파악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F-35A 성능개량(2433-308)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미국측의 P&A 제공 지연과 방위사업청의 P&A 변동에 대한 고려 부족으로 편성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2022년과 2023년 모두 동 사업 편성 예산 중 대부분이 타 사업으로 이·전용됨. - 미국측과 적극적 협의를 통해 대략적인 P&A 확보시점 및 비용 증가 규모를 파악하였다면 동 사업 예산의 불용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FMS 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획득정책 및 P&A 변화 등 총사업비 변동요인은 사전에 파악하여 예산 편성 시 반영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0	FMS 추진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F-35A 성능개량(2433-308)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F-35A 성능개량 사업은 21년 6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 23년 8월 미국측으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 자료(P&A, Price & Availability) 접수 후 사업타당성 재검증함. - 최초 총사업비는 4,300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측에서 8,000억원 요구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FMS로 사업 추진 중인 사업목록별 최초 구매요구액(P&A/LOR)과 최종 구매요구액을 국회에 보고하고, FMS 구매 방식에 보완책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1	당초 예상보다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F-35A 성능개량(2433-308)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F-35A 성능개량 사업은 21년 6월 사업추진기본전략 의결, 23년 8월 미국측으로부터 가격 및 가용성 자료(P&A, Price & Availability) 접수 후 사업타당성 재검증함. - 최초 총사업비는 4,300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미국측에서 8,000억원 요구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당초 예상보다 증액되어 미국측으로부터 요구된 사업비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2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F-35A 성능개량(2433-308)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23년 사업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F-35A 성능개량 획득정책 변경 및 가격 재산정에 따른 최신 가격 및 가용성 자료(P&A, Price & Availability) 접수 지연으로 착수 시기가 2026년으로 순연될 것으로 보임. - 명확한 산정근거인 가격 및 가용성자료(P&A)와 사업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2023년도 예산은 전액 집행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사업비가 F-X 2차 사업 등으로 전용되는 등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 내용과 다르게 집행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국회에서 심의된 내용과 다르게 사업비의 대부분이 전용을 통해 타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함 정 】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3	시험평가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 설정 후 예산 편성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잠수함구조함-II(2332-316)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현 작전구조 능력에 부합하고, 성능이 향상된 잠수함구조함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평가 과정 중 일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고 시험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외 기술인력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음. ○ 동 사업에 필요한 시험평가의 경우 평가항목이 다양하고 국내 인력만으로는 시험평가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충분한 시험평가 기간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연부액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다수의 평가항목과 국외 기술지원 필요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평가의 경우 충분한 기간을 설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4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잠수함구조함-II(2332-316)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현 작전구조 능력에 부합하고, 성능이 향상된 잠수함구조함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험평가 과정 중 일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고 시험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외 기술인력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되었음. ○ 동 사업은 2024년 5월 기준 399개 시험평가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지연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다수의 평가항목과 국외 기술지원 필요 항목으로 구성된 시험평가의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한 시험평가 지연으로 사업 전체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5	**비용분석 등 근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업방식 결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화계 - 특수침투정 Batch-Ⅰ(2332-320)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2008년 소요 결정된 이후 사업 분리, 사업 일시정지, 사업타당성 재검증, 선행연구 재수행, 감사원 감사, 소요수정 등 현재까지 제대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임. ○ 2022년 소요수정된 이후 사업분석이 이루어져 2024년 6월에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연구개발이 국외구매보다 비용이 과다하여 국외구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하지만 연구용역 기간이 6개월이나 지난 후 제출된 보고서의 국외구매 사업 추진 결론을 납득하기 위해서는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상세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전 사업분석 및 비용분석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방식을 결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26	**사업 지연 발생 요인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울산급 Batch-Ⅳ(2332-332)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함 건조계획 수립 과정에서 탑재장비*와의 전력화 시기 불일치 문제가 확인되어 사업추진 지연이 발생하였음. ○ 예산 편성 전 사업준비 단계에서 탑재장비와의 전력화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으나 이러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근접방어무기체계-Ⅱ(Close-In Weapon System Ⅱ): 적 항공기, 대함유도탄 및 소형·고속 수상함으로부터 최종단계에서 함정을 방어할 수 있는 기관포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전 검토 과정에서 탑재장비와의 전력화 시기 불일치 등 사업지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 정책지원 】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7	과제 사전 선정을 통해 예산 편성 후 협약 체결까지의 기간 단축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연구개발(R&D)(2631-306)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무기체계의 빠른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과제 선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협약 체결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2~2024년 과제별 협약 체결 내역을 살펴보면, 협약의 체결이 연말에 집중되고 있어 예산 편성 후 실제 연구개발 착수까지 약 1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으로, 획득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빠른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과제를 사전에 선정함으로써 예산 편성 후 협약 체결까지의 기간을 단축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8	과제별 연부액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배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연구개발(R&D)(2631-30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신속연구개발 사업의 과제별 연부액 설정이 일관된 기준 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2023년도 협약 체결 과제의 경우 연부액이 2025~2026년에 집중적으로 배분되어 있어 해당 연도에는 계속과제에 대한 지출 증가로 신규 과제의 추진이 어려울 수 있음. - 2022년도 과제의 경우 1년차에 연부액이 집중된 반면, 2023년도 이후 과제의 경우 과제의 3~4년차에 연부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그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과제별 연부액이 사업기간 및 비용소요에 대응하여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 하에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29	**국회에서 심의·의결된 총사업비 규모를 과다 초과한 신규과제 선정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연구개발(R&D)(2631-30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국회에서 심의·확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신규과제를 추가로 선정하고, 신규과제당 총사업비 규모도 약 2배로 협약을 체결한 결과 신규과제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가 540억원(3개과제 계획)에서 1,741억원(5개과제 선정)으로 증액됨. - 당초 방위사업청은 2023년도에 7개 계속과제에 대하여 322억원을 집행하고, 3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168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23년도 예산 490억원을 국회에서 심의·확정받았으나, -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2개 늘어난 5개의 신규과제를 체결하였으며, 이들 과제에 대하여 당초 계획보다 약 10억원이 많은 178억원을 지출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신속연구개발 신규과제 선정 시 국회에서 심의·확정받은 총사업비 규모를 지나치게 초과하여 신규과제의 총사업비가 결정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0	**신속시범획득사업 등 사업 재평가 및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시범획득(2636-30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군이 시범적으로 운용하여 활용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사업임. - 전년도 이월액 58억원에 23년 예산액 202억원을 합한 260억원 중 153억원을 집행하고, 8억원은 타 사업 전용, 4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53억원은 불용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데,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집행부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더구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서 이·전용된 예산 중 일부가 긴급소요결정을 통해 휴대용드론건 사업으로 전용되었는데, 이 사업 또한 충분한 선행연구와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끝에 사업이 중단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사업, 신속연구개발사업 및 이와 연계된 신속도입 사업을 재평가하여 예산 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1	**면밀한 사업계획에 기초한 사업관리 및 예산 집행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신속시범획득(2636-306)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신속시범획득사업은 신기술이 적용된 민간의 제품을 군이 시범적으로 운용하여 활용성을 확인한 후 신속히 전력화하는 사업임. - 전년도 이월액 58억원에 23년 예산액 202억원을 합한 260억원 중 153억원을 집행하고, 8억원은 타 사업 전용, 4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53억원은 불용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한데, 면밀하지 못한 사업계획으로 집행부진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 및 예산집행을 통해 유사한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2	**적정 예산 편성 및 하향식 과제 선정 관련 민간업체 능력 검토 후 사업 추진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위산업 수출지원(2637-304)	시정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기업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매년 계획 대비 선정과제가 부족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3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음.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756억 7,600만원 중 479억 7,9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3.4%에 불과함. ○ 방위사업청은 이와 같은 과제 선정 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4년 하반기부터는 기존의 공모형 과제 선정 외에 정부 차원에서의 하향식 과제 선정(지정공모)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실제 수요 및 과거 선정 실적을 기반으로 지원 목표를 설정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하향식 과제선정은 민간업체의 과제 참여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3	**협약 체결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책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위산업 수출지원(2637-304)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산업 수출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기업공모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매년 계획 대비 선정과제가 부족하였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2023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음. -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756억 7,600만원 중 479억 7,900만원만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63.4%에 불과함. ○ 2023년에 42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지만 최종적으로 14건만 협약 체결이 되었고 나머지 28건은 심사에서 탈락하였음. 2차에 걸쳐 동일한 과제로 응모하였으나 탈락한 업체도 다수 있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과제를 보완하여 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	조치대상 기 관
34	사업의 취지 달성을 위해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방산혁신기업 100(2637-308)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동 사업은 미래 전장 및 통상(通商)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혁신적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 집중 육성하는 사업임.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방산혁신기업을 20개씩 선정하여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를 제출받고 이를 심사하여 과제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지원하는데, 방산혁신기업 선정이 목표보다 저조한 실정이며 채택된 과제의 숫자도 목표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집행률이 62.6%에 불과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자유공모형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방산혁신기업으로 육성·지원하는 동 사업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table>
<tr><th>연번</th><th>시정요구명</th><th colspan="2">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th><th>시정요구
유 형(안)</th><th>조치대상
기 관</th></tr>
<tr><td rowspan="3">35</td><td rowspan="3">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전문계약직
미충원 문제 해결
필요</td><td>관련사업명</td><td>일반회계 - 연구개발출연금(360목)</td><td rowspan="3">제도개선</td><td rowspan="3">방위사업청</td></tr>
<tr><td>지적사항</td><td>○ 방위사업청 소관 다수 사업에서 전문계약직 미충원과 이로 인한 연구개발활동비 예산 불용이 나타나고 있음.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세부사업명</th><th colspan="3">전문계약직 채용</th><th colspan="2">예산액(360-05)</th><th colspan="2">실집행액</th></tr><tr><th>정원</th><th>현원</th><th>결원</th><th>편성액</th><th>교부액</th><th>현액
기준</th><th>이월액
제외</th></tr><tr><td>425사업(R&D)</td><td>34</td><td>12</td><td>22</td><td>8,336</td><td>8,336</td><td>4,473</td><td>3,548</td></tr><tr><td>한국형
합동전술데이터링크체계
(JTDLS)</td><td>10</td><td>6</td><td>4</td><td>1,071</td><td>1,071</td><td>1,016</td><td>680</td></tr><tr><td>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R&D)</td><td>11</td><td>6</td><td>5</td><td>5,427</td><td>5,427</td><td>2,662</td><td>2,323</td></tr><tr><td>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R&D)</td><td>13</td><td>7</td><td>6</td><td>9,384</td><td>9,384</td><td>5,761</td><td>5,634</td></tr><tr><td>레이저대공무기
Block-Ⅰ(R&D)</td><td>21</td><td>9</td><td>12</td><td>955</td><td>985</td><td>597</td><td>597</td></tr><tr><td>무인수색차량(R&D)</td><td>24</td><td>10</td><td>14</td><td>3,786</td><td>4,015</td><td>2,410</td><td>1,863</td></tr><tr><td>울산급 Batch-III
전투체계(R&D)</td><td>12</td><td>7</td><td>5</td><td>2,710</td><td>2,060</td><td>1,409</td><td>1,409</td></tr><tr><td>광개토-Ⅲ Batch-Ⅱ
통합소나체계(R&D)</td><td>26</td><td>10</td><td>16</td><td>3,561</td><td>3,561</td><td>2,039</td><td>2,039</td></tr></table></td></tr>
<tr><td>시정요구
사항</td><td>○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과제별 정원, 전문계약직 처우 수준, 관련 예산의 편성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전문계약직 부족 및 예산의 불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td></tr>
</table>

【 행정지원 및 세입 】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6	사전절차 고려 부족에 따른 예산의 이월 개선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행정지원 - 청사이전(7036-304-13)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청사이전 사업은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결과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향후 대규모 건설공사 등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예산의 이월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전-과천 병행체제 장기화에 따른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7	**청사이전 사업 부진 소명 및 현행 비효율성 개선방안 마련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행정지원 - 청사이전(7036-304-13)	주의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청사이전 사업은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형 공사 입찰방법 심의 등 사전절차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결과 사업비의 대부분이 이월되는 등 졸속 추진임을 반증 - 23년 하반기 6개월간 방사청 공무원의 대전-과천 출장이 1,850회에 달하여 비효율 발생 - 향후 방사청이 과천으로 다시 이전될 경우 예산낭비 등 발생 우려가 있음.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 청본부 이전 과정의 예산 집행 부진 사유에 관하여 소명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재검토하고, 과천-대전 병행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현황 및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8	소송 패소 등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문제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행정지원(7036-304) - 소송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방위사업청은 2023년 총 세입 수납액이 충분히 확보되자 과오납금 반환액을 전액 수입에서 차감하고 소송지원 사업의 배상금으로는 집행하지 않았음. ○ 해당 연도 방위사업청의 세입 수납 상황에 따라 과오납금의 처리 방식을 달리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예산 편성·집행의 일관성·효율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 2021년의 경우 소송 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액 중 25.5%가, 2022년의 경우 48.9%가 세출예산으로 지급되었으나, 2023년에는 세입으로만 지급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재정당국 등과 협의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을 처리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39	**위약금 청구 등 소송 능력 강화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행정지원(7036-304) - 소송지원사업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소송수행 현황 중 민사소송의 건수와 소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소송 1건 당 평균 배상금 집행금액도 증가되고 있음. - 2020년 민사 84건 등 총 109건, 2021년 민사 87건 등 총 108건, 2022년 민사 82건 등 총 110건, 2023년 민사 81건 등 총 103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연도별로 100건 이상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소송의 대부분은 민사소송임.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위약금 등 청구 민사소송에 있어서 충실한 자료 수집과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내부 규정 및 절차를 점검하여 과도한 배상금이 집행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연번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시정요구 유 형(안)	조치대상 기 관
40	수납률 제고를 위한 미수납 채권의 철저한 관리 필요	관련사업명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제도개선	방위사업청
		지적사항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징수결정액 6,049억 2,100만원 중 4,154억 5,000만원이 수납(수납률 68.7%)되고 미수납액 1,894억 7,100만원이 발생되었음. ○ 소송 등에 따른 정리유예와 채무자의 재력부족에 의해 수납률이 저조함.		
		시정요구 사항	○ 방위사업청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 철저한 미수납 채권 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고, 정리유예 채권 중 소송이 진행 중인 채권은 적극적인 소송대응으로 미수납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